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박사학위논문

15~17세기 제주유민의 사회사적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이 영 권

2013년 2월

15~17세기 제주유민의 사회사적 연구

指導教授 조 성 윤

이 영 권

이 論文을 文學 博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13年 2月

이영권의 文學 博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_____

委 員_____

委 員_____

委 員_____

委 員_____

濟州大學校 大學院

2013年 2月

A Sociohistorical Study on the Jeju Migrants
in the 15th~17th Centuries

Yeong-Kwon Lee

(Supervised by professor Sung-Youn Cho)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Doctor of Arts

2013. 2.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Thesis director, Sung-Youn Cho, Prof. of Sociology

.....
(Name and signature)

.....
Date

Department of Sociology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목 차

| | |
|-----------------------------|----|
| I. 머리말 | 1 |
| 1. 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 | 1 |
| 2. 기존 연구 검토 | 4 |
| 3. 이론적 배경 및 연구 방법 | 9 |
| II. 제주유민의 발생 배경 | 16 |
| 1. 조선정부의 제주 통치 강화 | 16 |
| 1) 조선정부의 제주 정치 장악 | 16 |
| 2) 조선정부의 제주 경제 장악 | 22 |
| 2. 제주유민 발생의 자연 환경적 배경 | 28 |
| 1) 토지 척박 요인 | 28 |
| 2) 자연재해 요인 | 31 |
| 3. 제주유민 발생의 사회구조적 배경 | 34 |
| 1) 과다 수취 요인 | 35 |
| (1) 과도한 역(役) 부담 | 37 |
| (2) 과도한 진상·공물 부담 | 39 |
| 2) 경제변동에 따른 요인 | 45 |
| (1) 조선전기 제주 경제구조의 변화 | 45 |
| (2) 조선전기 제주 산업기반의 붕괴 | 56 |
| III. 제주유민의 발생·격감 및 생활 | 68 |
| 1. 제주유민의 명칭 | 68 |
| 1) 두무악(頭無岳)계 명칭 | 68 |
| 2) 포작(鮑作)계 명칭 | 72 |
| 2. 제주유민의 발생 및 격감 시점 | 77 |
| 1) 제주유민의 발생 시점 | 78 |
| 2) 제주유민의 격감 시점 | 81 |
| 3. 제주유민의 구성 | 83 |
| 4. 제주유민의 분포 지역 | 85 |
| 5. 제주유민의 규모 | 92 |
| 6. 제주유민의 생업 및 활동 | 98 |

| | |
|----------------------------|-----|
| IV. 제주유민과 기타 해양집단 | 103 |
| 1. 제주유민과 水賊과의 관계 | 105 |
| 2. 제주유민과 倭寇와의 관계 | 113 |
| 3. 제주유민과 중국 水賊과의 관계 | 119 |
| V. 임진왜란과 제주유민 | 125 |
| 1. 조선 수군으로서의 제주유민 | 127 |
| 1) 수로(水路) 안내인 | 128 |
| 2) 선박 조종인 | 131 |
| 3) 전투병 | 134 |
| 4) 정보 제공인 | 136 |
| 5) 밀사 | 137 |
| 6) 탈영병 | 138 |
| 7) 기타 | 141 |
| 2. 왜병에 편입된 제주유민 | 142 |
| 3. 수전과 포작선 | 147 |
| VI. 제주유민의 성격 | 155 |
| 1. 해양적 성격 | 156 |
| 2. 교역경제인적(交易經濟人的) 성격 | 160 |
| 3. 약탈적 성격 | 162 |
| 4. 용병적(傭兵的) 성격 | 164 |
| 5. 국제적 성격 | 167 |
| 6. 경계인적(境界人的) 성격 | 170 |
| VII. 맺음말 | 175 |
| 참 고 문 헌 | 180 |
| Abstract | 189 |

표 차례

| | |
|--|-----|
| 표 1 『조선왕조실록』에 등장하는 제주의 주산업 | 55 |
| 표 2 『조선왕조실록』속의 두무악계 명칭 기사 횡수 | 75 |
| 표 3 『조선왕조실록』속의 포작계 명칭 기사 횡수 | 76 |
| 표 4 『조선왕조실록』속의 제주유민 분포 지역 | 86 |
| 표 5 이순신 기록 속의 제주유민 | 89 |
| 표 6 조선시대 제주도의 戶口·人口 수 | 95 |
| 표 7 『조선왕조실록』속의 지역별·시기별 수적 관련 기사 횡수 | 107 |
| 표 8 1593~1594년 사이의 수군 도망자 발생 상황 | 139 |

그림 차례

| | |
|------------------------|-----|
| 그림 1 제주유민의 분포지역 | 90 |
| 그림 2 조창의 분포와 조운로 | 109 |

국 문 초 록

이 연구는 조선시대 특히 15~17세기 기간 중에 제주 사람들이 배를 타고 제주도를 떠나 유랑하던 역사를 고찰한 것이다. 이들은 왜 제주도를 떠났을까, 떠난 이들은 바다에서 어떤 삶을 살았을까 그리고 그들의 삶이 지금 우리에게 남기는 의미는 무엇일까 등의 문제를 고민했다. 이들의 삶을 고찰하기 위해 우선 아날학과 역사학자 페르낭 브로델(Fernand Braudel)의 3층구조 역사론을 활용했다.

기존의 연구는 이들의 출륙 배경으로 척박한 토지, 자연재해, 지나친 수취, 지방관과 토호의 수탈 등에 주목했다. 그러나 이러한 요인은 비단 15~17세기만 국한되었던 것이 아니다. 전근대 제주사회 전체를 관통하던 역경이었다. 그런데도 대규모 출륙 유랑은 15~17세기에만 집중적으로 일어났다. 그렇다면 위의 요인만으로는 15~17세기 제주유민 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 본 연구의 문제의식은 이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II장은 출륙 유랑의 배경 찾기다. 이들의 출륙 요인을 사회구조적 배경과 자연 환경적 배경으로 나누어 살폈다. 사회구조적 배경으로는 과도한 역(役) 부과와 말 사고역으로 대표되는 제주경제의 변동을 주요한 요인으로 설정했고 자연 환경적 배경에서는 척박한 토지와 빈번한 자연재해를 유민 발생의 중요 요인으로 설명했다.

III장에서는 본격적으로 이들 제주유민의 발생을 다뤘다. 먼저 이들에 대한 명칭을 살폈다. 명칭은 크게 두 가지 계통이 있다. 두무악(頭無岳)계 명칭과 포작(鮑作)계 명칭이 그것이다. 두 명칭 모두 본래는 한자어가 아니었다. 본래 토속의 민간 명칭에 그 의미를 살리며 발음이 가까운 한자어를 조합했던 것이다. 물론 포작과 두무악은 의미가 본래 다르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사실상 같은 존재 즉 출륙 제주유민을 뜻했다.

그리고 제주유민의 발생 시점과 격감 시점을 고찰했다. 선행 연구에서는 대부분 성종년간을 제주유민 발생의 시점으로 삼았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른 견해를 폈다. 성종년간은 나중에 크게 사회문제화 되었던 시점이며, 발생은 그 이전 즉

세종 때부터 시작이라고 논증했다. 격감 시점은 선행 연구와 일치한다. 인조7년(1629년) 강력한 출륙금지령이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들의 구성을 살폈다. 초기 유민은 제주도민 전반에 걸쳐 형성되었다. 말(馬) 경제 관련자들이 제주도민 전반에 걸쳐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출륙 유랑민 역시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층민으로 집중되고 있었다.

제주유민이 섬을 벗어나 진출했던 지역은 실로 방대했다. 멀리 중국 요동반도 아래의 해랑도에서부터 한반도 전역의 해안에 걸쳐 이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었다. 물론 남해안이 이들의 집중적인 우거지였다. 기록으로는 확인되지 않지만 일본 열도로도 나갔을 것으로 추정한다.

이들 제주유민의 규모는 최소 1만 명, 이는 기록상에서 확인되는 출륙 공노비 숫자이다. 중세의 인구 기록은 부정확하고 통계 방법마다 차이가 많아 대략적 추세를 살필 수밖에 없었다.

이들의 생업은 기본적으로 해산물 채취와 이의 교역이었다.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약탈도 병행하고 있었다.

IV장에서는 이들과 유사했던 집단 즉 수적과 왜구와 중국인 수적과의 관계를 살폈다. 제주유민이 때로는 약탈을 자행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들을 수적으로 의심하기도 했다. 그러나 수적은 보다 조직적으로 약탈을 일삼던 전문적인 집단이며, 제주유민은 우발적이고 일회적인 즉 비조직적인 단순 약탈자로서 수적과는 조금 달랐다. 물론 이들 중 일부가 수적에 편입되기도 했을 것이며 점차 수적으로 진화하기도 했을 것이다.

왜구와의 관계를 보면 일부 일본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제주유민이 곧 왜구인 것은 아니었다. 당시 조선 정부에서는 이들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었다. 하지만 삶의 환경이 비슷했기에 이들 집단은 서로 상당한 교류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때론 협력하고 때론 갈등하던 관계라고 하겠다. 특히 16세기의 후기왜구 활동기에는 일본인, 중국인, 제주유민이 어느 정도 섞여 있을 가능성도 있었다. 그러나 사료상으로는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다만 바다 생활이라는 생태적 공통점 때문에 이들의 협력 관계는 가정해 볼 수 있다.

V장에서는 임진왜란 당시 제주유민의 삶을 다뤘다. 이들은 물길 정보, 배 다루는 능력 때문에 일찌감치 수군의 주목을 받았다. 그것은 곧바로 임진왜란 전쟁

이 터지자 효력을 발휘했다. 충무공 이순신의 기록에 이들의 활동상이 적지 않게 드러난다. 여러 전투에서 사망 부상자 현황을 보면 이들 제주유민의 비율이 10%를 넘는다. 그만큼 그 전쟁에서 맡았던 역할이 컸던 셈이다.

반면 왜병으로 편입되기도 했다. 조선 관료의 수탈이 심할 때 이들은 왜병의 일원이 되기도 했다. 이들에게 중요했던 건 근대의 민족의식이 아니라 생존 그 자체였기 때문이다. 이들의 배 즉 포작선도 전투에 동원되었다. 소규모 배로서 아주 빠른 장점이 있었기에 대형 전투선인 관옥선의 보조 역할을 담당했다.

VI장은 종합 정리의 장이다. 이들의 삶을 총화한 뒤 이들에 대한 성격 규정을 시도했다. 그리고 이 작업을 통해 그 성격이 가진 함의 즉 당시 역사와 오늘날 역사 연구에 던지는 의미를 찾아보았다. 본 논문은 이들의 성격을 해양적 성격, 교역경제인적 성격, 약탈적 성격, 용병적 성격, 국제적 성격, 경계인적 성격으로 규정했다. 그리고 그 성격 규정을 통해서 1국적 역사인식 극복과 해양 역사에의 주목, 농업중심 중세사 극복 등을 제기했다. 국가주의적 시선으로는 변방의, 해양의, 비농업인의 중세사를 들여다 볼 수 없기 때문이었다.

주요어: 15~17세기, 제주유민, 출륙유랑, 페르낭 브로델의 3층구조, 말(馬) 교역 통제, 6고역, 여정(女丁), 진상, 공물, 두무약, 포작, 해랑도, 남해안, 수적, 왜구, 임진왜란, 해양적 성격, 교역경제인적 성격, 약탈적 성격, 용병적 성격, 국제적 성격, 경계인적 성격.

I. 머리말

1. 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

국가주의 역사서술은 역사인식을 도식적으로 만든다. 모든 것을 중앙정부의 관점에 맞춰 재단하고 규정짓는다. 기존의 중세사 서술이 중앙 중심, 농업경제 중심, 육지 중심으로 이뤄진 것도 그 때문이다.

반면 변방에도 사람이 살았다. 삶이 있는 만큼 역사도 있다. 하지만 이를 중앙 중심적 역사 틀로만 바라 볼 경우 오류를 빚을 수도 있다. 제주의 중세사가 이를 잘 보여준다. 제주의 중세사는 농업경제가 아니라 상업교역 경제, 육지가 아니라 바다를 중심 무대로 기술해야 할 부분이 많다.

알프레드 세이어 마한(Alfred Thayer Mahan)은 “역사가는 대체로 바다의 사정에 어둡다. 왜냐하면 그들은 바다의 영향에 관해 특별한 관심이나 지식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들은 해상력(maritime strength)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 결정적이고 심오한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을 가볍게 보아 넘겨 왔다”¹⁾라며 해양으로의 관심 전환을 촉구했다. 주장현도 “바닷가 변방에 대해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것 역시 ‘생각의 반란’이 필요한 일”²⁾라며 발상의 전환을 주문했다.

이 연구는 바로 그런 바다 사람들에 주목한다. 제주도는 고대 탐라시대부터 활발한 해상활동을 벌였던 지역이다.³⁾ 해양 국가는 취약한 토지생산을 보충하기 위해 바다를 통한 대외교역과 유통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⁴⁾ 제주도 역시 그랬다. “탐라는 지질이 척박하고 백성들이 가난하여, 해산물 채취와 배타는 것으로 생계를 도모하고 있습니다”⁵⁾라는 『高麗史』의 기록에서 보듯이 취약한 토지생산성

1) 알프레드 세이어 마한(Alfred Thayer Mahan), 김주식 옮김, 1999, 『해양력이 역사에 미치는 영향』 1, 책세상, 5쪽.

2) 주장현, 2005, 『제국의 바다 식민의 바다』, 웅진지식하우스, 5쪽.

3) 진영일, 2008, 『고대 중세 제주역사 탐색』, 보고사, 25쪽.

4) 박종기, 2008, 『새로 쓴 5백년 고려사』, 푸른역사, 32쪽.

때문에 일찍부터 교역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조선 건국 후 고려 때와는 달리 강력한 중앙집권을 시도했던 중앙정부는 비교적 자치성이 강했던 제주도에 대해서도 강한 통제정책을 취했다. 그에 따라 제주의 자치성은 많이 훼손되고 경제적 수탈 또한 극심해졌다. 특히 현지 실정을 고려하지 않고 강제된 각종 역(役) 부과는 제주민을 고통으로 몰아넣었다. 그래서 또 다른 삶의 활로를 찾아 바다로 진출했다. 소위 ‘포작인(鮑作人)’ 혹은 ‘두무악(頭無岳)’ 등으로 불렸던 해양유민(海洋流民)들이 바로 이들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들을 조선시대 ‘제주유민(流民)’이라 칭하고 논지를 전개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 말하는 제주유민이라 함은 15세기부터 17세기 중엽에 이르기까지의 출륙제주도민(出陸濟州島民)으로서 원주지인 제주도를 불법적으로 이탈하여 전라도 경상도 연해지역을 중심으로 한반도 및 일부 중국의 연해지역에 거주하던 제주도민들을 말한다.

15세기부터 17세기를 주 연구 대상 시기로 삼은 이유는 유독 이 시기에 많은 제주사람들이 제주섬을 떠나 남해안 등 한반도 해안 지방에서 유랑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조선왕조실록』에 이와 관련된 기사가 그 시기에만 집중되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이 연구는 이들이 출륙에서부터 남해안 등지에서의 생활 그리고 소멸까지를 다룬다. 그런 까닭에 연구 대상은 제주를 떠난 사람들로서 어쩌면 시간이 지나면서 제주도와는 관련이 없어져갔던 사람들이다. 또한 시간의 경과에 따라 생겨난 2세, 3세, 4세, 5세 등 그들의 출륙 자체를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현지화된 사람들이 연구 대상이 된다. 그리고 일부이긴 하겠지만 그들이 남해안 등 현지에서 만나 합류한 사람들도 포함된다. 200년 가까이 이어졌던 유민 현상이라서 당연히 현지인들과의 결합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물론 이들의 현지화 과정은 쉽지가 않았다. 오랜 시간 동안 현지들의 배타적 시선 속에 그들만의 집단을 이루며 살았다. 그러나 18세기에 들어오면서는 차츰 현지인들과의 구별이 사라져 갔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기에 이 연구의 대상은 초기의 출륙 제주인부터 시간의 경과에 따라 현지화한 한반도 여러 해안의 해인(海人)들이었다.

5) 『高麗史』 권8, 세가, 문종 12년(1058년) 8월 乙巳(耽羅 地瘠民貧 惟以海產 乘木道 經紀謀生).

이들은 중앙의 역사, 육지 중심 역사에서는 조명 받지 못했던 존재들이다. 이들에 대한 연구를 통해 소외 받고 무시되었던 변방의 역사, 해양의 역사를 드러냄으로써 중세 조선사회를 다양한 모습으로 복원하고 그 내용을 풍부하게 채우고자 한다.

이들은 비록 타의에 의해 섬을 떠났지만, 섬 안에 갇혀 체념하며 살아갔던 사람들과는 달랐다. 자신들을 떠밀었던 상황에 맞서 섬 밖 바다로 나가 새로운 삶을 개척했던 중세 제주의 바다사람들이었다.

이들에 대한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서 우선 I 장에서는 기존의 연구들을 검토할 것이다. 연구 성과를 계승하면서도 기존 연구들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론적 배경과 연구 방법, 활용 자료도 소개할 것이다.

II 장에서는 본격 주제를 다루기 위한 전사(前史)로서 제주유민 발생의 배경을 밝힌다. 유민 발생의 배경으로는 사회구조적 요인과 자연환경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 사회구조적 배경에서는 무엇보다 과중한 역(役) 부과가 중요한 요인이었다. 당시 한반도 여타 지역에 비해 제주지역은 흑독하리만치 역 부과가 심했다. 이것이 제주민을 바다로 내몰았던 주된 요인이었다. 그와 함께 제주의 경제변동을 또 하나의 중요 요인으로 설정했다. 경제기반의 붕괴 역시 출륙 유랑의 중요한 요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자연환경적 배경으로는 사료에서 자주 등장하는 토지 척박 요인과 빈번한 자연재해를 중요 요인으로 설정했다. 생산성이 높지 못하고 자연에 대해 미약한 처지에 있던 중세적 상황에서 자연이 가한 제한력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었다.

III 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제주유민을 살핀다. 우선 여기서는 이들의 명칭부터 고찰한다. 명칭은 크게 두모약계 명칭과 포작계 명칭으로 나눌 수 있는데 본래적 의미는 다르지만 여기서는 모두 출륙 제주유민을 지칭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논지를 전개했다. 그리고 유민 발생과 격감의 시점을 찾는다.

그리고 제주유민의 삶의 모습을 추적한다.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는지, 어느 지역까지 퍼져 나가 살았는지 또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제주섬을 떠났는지 그리고 무엇을 하며 먹고 살았는지에 대한 고찰이다. 이를 통해 제주유민의 총체적 모습을 그려본다.

IV장에서는 그동안 일본학자들이 중심이 되어 제기했던 문제 즉 제주유민과 수적, 왜구와의 관계를 고찰한다. 이들 집단 사이에는 생태적 유사성이 있었지만 당시 조선정부에서는 별개의 존재로 파악했다. 즉 각각 다른 집단으로 존재하면서 때론 교류하거나 연대했고 때론 경쟁 갈등의 모습을 보였다.

V장에서는 임진왜란 당시 제주유민의 삶을 추적한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제주유민은 이미 현지화한 제주유민이다. 임진왜란이 발발했던 16세기 후반에도 현지화한 제주유민의 유랑 현상은 계속 이어졌고, 이들의 주 활동무대가 한반도 남해안이었으며, 또한 이들이 가진 물길 정보, 배 운항 능력 등이 수군의 주목을 끌었으므로 자연스레 이들은 전쟁의 한 복판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이순신 관련 사료에는 이들의 활동 모습이 적지 않게 등장한다. 이순신 앞에서 이순신 함대를 이끌던 뱃길 안내인들도 이들 제주유민들이었다. 이런 모습은 제주유민의 삶의 모습 중 특별히 주목을 끄는 대목이다.

그리고 VI장에서는 그 동안 살핀 제주유민의 모습을 통해 이들의 성격을 규정 짓고자 한다. 기존의 연구는 사료에 등장하는 이들의 모습을 나열하는 데 그친 감이 없지 않다. 여기서는 나열 수준을 넘어 성격을 규명함으로써 이들의 모습을 보다 총체적으로 인식케 하려는 의도이다.

마지막 VII장은 마무리 장이다. 전체 내용을 요약하고 본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를 밝힌다.

결국 이 작업을 통해 중세 조선의 다양한 색채와 면모를 발굴하려 한다. 농업 중심 사회라는 획일적 인식을 넘어 해양의 역사, 변방의 역사를 복원하여 마이너리티들에게도 주인공의 자리를 찾아주려는 의도다. 이것은 역사에서의 패권주의를 걷어내는, 역사 서술의 민주화작업이기도 하다. 역사 속에서 소외당했던 이들을 불러내어 제자리를 찾게 하고 그를 통해 역사 인식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 이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2. 기존 연구 검토

유민에 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으나 중요성에 비하면 연구가 많은 편은 아니다.⁶⁾ 유민에 관한 기존 연구 역시 대부분 중앙 중심적이다. 토지와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중세사회라 전제하고 토지를 이탈한 농민만을 주로 다루고 있다. 그리하여 “유망은 농민들이 자신들의 근거지에서 살 수 없게 되었을 때 그곳을 자의적으로 이탈하여 다른 곳으로 옮겨 가는 행위이며, 이들 유망민을 일컬어 유민이라 한다”⁷⁾라고 정의 내리거나, “유망은 우선 토지와 농민지배를 물적 토대로 국가체제를 유지하던 전근대사회에서 농민이 국가의 과약대상에서 벗어나는 행위”⁸⁾라고 설명할 정도이다.

지역적 특수성에 따른 해양 유민은 일반적으로 연구의 대상이 아니었다. 이렇게 선행 연구들은 대부분 토지와 농업을 기반으로 사고하여 유민 현상을 분석하고 있다. 비교적 가까운 시기에 이뤄진 연구로는 먼저 吳昌勳(1984)의 연구를 들 수 있다. 그는 고려말 유망의 원인을 가림주구, 토지점병, 왜의 침탈로 규정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유민들이 국외의 경우 심양, 요양으로 그리고 국내의 경우 권문세족의 농장으로 흡수되고 있음을 살폈다. 조선시대에 와서는 자연재해, 축성(築城) 동원 노역, 평안도의 경우 사행(使行)의 부담 등으로 원인을 다양하게 추적했다.

裴尙燮(1986)은 19세기 사회경제적 배경 속에서 유민 현상을 고찰했는데, 생산력 발전, 상품화폐경제의 발달, 지주층에 의한 토지집중 및 국가권력에 의한 수탈 강화가 유기적으로 작동하면서 유민 현상을 초래한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국가권력에 의한 폭력적 수탈 요인이 가장 절대적이었음을, 그에 따라 단기 유민이 아닌 浮游계층이 형성되었음을 살폈다.

邊柱承(1992) 역시 19세기 유민 발생이 본질적으로 국가와 지주층의 대민 수

6) 유민에 대해서는 다음의 연구들을 들 수 있다.

양원석, 1956, 「려말의 유민문제-특히 대몽관계를 중심으로」, 『이병도박사화갑기념논총』, 일조각.

신정희, 1981, 「조선전기의 유민문제」, 『역사교육논집』 제2집.

吳昌勳, 1984, 「朝鮮初期 流民研究」, 송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裴尙燮, 1986, 「壬戌民亂 前後 明火賊의 活動과 그 성격」,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邊柱承, 1992, 「19세기 流民의 실태와 그 성격」, 『史叢』 40:41.

邊柱承, 1995, 「18세기 流民의 실태와 그 성격」, 『全州史學』 제3집.

정형지, 1996, 「19세기 전반 유민에 관한 연구」, 『국사관논총』 제72집.

朴成柱, 2002, 「15세기 朝·明간 流民의 發生과 送還」, 『慶州史學』 제21집.

張惠連, 2006, 「조선중기 제주유민의 발생과 대책」,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7) 邊柱承, 1995, 앞의 논문, 69쪽.

8) 정형지, 앞의 논문, 185쪽.

탈에서 비롯되었음을 밝혔다. 18세기 유민 현상을 다룬 글(邊柱承, 1995)에서는 이전의 유민처럼 토지에 재건박되지 않고 완전히 유리되는 현상을 살폈다. 이는 18세기 조선사회의 생산력 발전에 따른 것으로 봉건적 제질서의 해체, 자본주의의 맹아적 발전 과정 속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판단했다.

정형지(1996) 역시 19세기 유민의 발생을 국가와 지주층의 대민 수탈이라는 본질적 요인에서 시작된 농민 몰락으로 분석했다. 농업생산력 발달로 절감된 노동력은 과다하게 유출되었고 그것이 새로운 상공업, 수공업, 광산업 등의 고용노동으로 완전 흡수가 되지 못했음을 밝혔다.

朴成柱(2002)는 앞의 연구들과는 접근방식을 달리했다. 사회경제적 측면 외에 국제관계적 측면을 주요하게 살핌으로써 동북아 정세 변화에 따른 朝·明간 유민 발생과 그 송환을 다뤘다. 앞의 연구들과는 달리 토지와 농업의 문제가 아닌 다른 요인으로 인해서 발생한 유민을 보여준 사례다.

張惠連(2006)은 유민의 발생 배경을 정치적 배경과 사회경제적 배경으로 나눠 살폈다. 정치적 배경으로는 조선중앙정부와 제주 토호의 2중적 수탈, 빈번한 왜구의 침탈에 따른 군역 강화를 꼽았다. 사회경제적 배경에서는 자연재해와 지나친 수취를 유민 발생의 원인으로 설명했다. 분석 대상이 제주유민이었던 점과 이들이 출륙 해양유민이었음은 앞의 연구들과 확연히 다르며 본 연구와 연구 대상이 사실상 유사하다.

연구 테마를 딱히 ‘유민’이라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논문 속에서 조선시대 제주유민을 다룬 글들도 몇 편이 있다.⁹⁾

韓榮國(1981)은 제주유민의 명칭을 소개하고 발생 원인을 찾았다. 조선왕조가 중앙집권적 지배체제를 확립하면서 중앙정부의 통치력을 강화하였고 그에 따라

9) 조선시대 출륙 제주유민을 살필 수 있는 연구로는 다음의 논문들이 있다.

韓榮國, 1981, 「豆毛岳考」, 『한우근박사정년기념사학논총』, 지식산업사.

다카하시 기미야키(高橋公明), 1989, 「中世東亞細亞海域에서의 海民과 交流」,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탐라문화』 제8호.

박찬식, 2004, 「제주해녀의 역사적 고찰」, 『역사민속학』 제19호.

조성윤, 2005, 「조선시대 제주도 인구의 변화 추이」, 제주대학교탐라문화연구소, 『탐라문화』 26호.

張惠連, 2006, 「조선중기 제주유민의 발생과 대책」,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허남린, 2007, 「제주도의 역사적 토포스: 페리퍼리 그리고 프론티어」, 제주대학교탐라문화연구소, 『탐라문화』 31호.

김나영, 2008, 「조선후기 제주지역 포작의 존재양태」, 제주대학교탐라문화연구소, 『탐라문화』 32호.

과중한 부역을 지움으로써 과도하게 수탈했다는 분석이다. 이후 그 유민들이 정착하는 과정을 울산부 호적을 통해 차분히 추적했다.

다카하시 기미야키(高橋公明)(1989)는 국가 단위가 아닌, 동아시아해역이라는 지역 단위 역사 무대를 설정하고 제주유민의 활동 범위를 일본 북큐슈까지로 확장시켰다. 그는 유민의 발생 원인보다는 이들의 생활양태에 관심을 가졌다. 『성종실록』에 집중적으로 등장하는 ‘이선위가(以船爲家)’ 즉 배를 집으로 삼아 바다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을 살핀 것인데, 이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 제주유민과 왜구의 교류 가능성 혹은 결합을 주장했다.

박찬식(2004)의 연구는 테마가 제주유민이 아니라 해녀이다. 그럼에도 제주유민에 대한 고찰이 상당한 분량을 차지한다. 『조선왕조실록』에 등장하는 포작인, 이들은 사실상 피역 제주유민이다. 본래 전복 진상은 포작인의 몫이었는데 이들은 과도한 수탈을 견디지 못하고 출륙 유량을 택했다. 그 결과 17세기에 와서는 전복 진상을 담당할 사람이 없어졌다. 이에 어쩔 수 없이 여성인 해녀들에게 전복 진상역을 넘겼다. 이를 밝히는 과정에서 제주유민인 포작인을 다뤘다. 그 역시 과도한 진상과 노역 징발을 유민 발생의 원인으로 꼽았다. 거기에 더하여 왜구 침범에 대비하기 위한 균역 과다를 유민 발생의 한 요인으로 지적했다.

조성윤(2005)은 조선 전 시기에 걸쳐 제주 인구의 변동을 살폈다. 그 과정에서 포작인들의 출륙에도 주목했다. 그는 사료 속의 인구 관련 기사를 동원, 분석하여 당시 출륙 제주유민의 규모를 대략 2만~3만 정도로 추정했다. 유민 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경작지 부족, 척박한 농업 사정, 주기적으로 닥치는 흉년, 지나친 부역과 진상, 지방 토호와 지방관의 횡포 등으로 간략히 언급했다. 특별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점은 임진왜란 해전사(海戰史)에서 제주의 출륙 유민들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을 것이라는 언급이었다. 이는 본 연구에 큰 시사점을 제공해주었다.

허남린(2007)은 제주도의 역사적 위상을 변경성(페리퍼리)과 개척성(프론티어)이라는 두 개의 정형화된 모티브로 검토했다. 그 과정에서 개척성의 한 주역으로 유리 포작인을 살폈다. 그는 제주도의 구조적 한계를 돌파하여 삶의 영역을 확장한 사람들로 유리 포작인을 설정했다.

김나영(2008)은 포작인의 명칭에 대해 상술하고 포작인의 양태에 주목했다.

조선전기 피역 출륙하여 유민이 된 포작과 조선후기 제주지역에 남아 피역하지도 못하고 갇은 고역을 담당해야만 했던 포작을 구분하지 않고 한꺼번에 분석했다. 출륙 포작이 발생하게 된 요인에 대해서는 앞의 연구자들과 비슷한 진단을 내렸다. 열악한 자연환경, 중앙집권체제 확립에 따른 수탈 강화가 그것이다.

이상에서 검토한 선행 연구들은 각 테마마다의 독특한 내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상당 부분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사료에 충실하여 출륙 제주유민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들의 출륙 배경을 분석하는데 있어서도 대부분 유사한 진단을 내리고 있다. 이들 선행 연구의 길안내는 본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다만 두 가지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우선 유민 발생의 원인을 규명함에 있어서 동원한 근거 사료의 적절성 문제다. 해양유민의 발생은 15세기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기존 연구자들이 활용한 자료는 16세기 후반 이후의 제주상황을 보여주는 자료들이다.¹⁰⁾ 사료부족이라는 한계는 이해하지만 자칫 원인이 결과보다 뒤에 등장하는 형태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런 문제점을 의식하여 본 연구는 가급적 15세기 사료부터 활용했다. 물론 부분적으로 선행 연구처럼 이후 시기의 사료도 병행하여 활용하긴 했다.

다음으로 유민 발생의 원인 문제이다. 선행 연구들에서 제시한 요인들은 전(前)근대사회 내내 존재했던 요소들이다. 토지 척박, 자연재해, 수탈 등은 중세시대에 항상적으로 존재했다. 그런데도 대규모 유민 현상은 15세기~17세기에만 집중되었다. 그렇기에 선행 연구에서 제시한 요인만으로는 15세기~17세기의 유민 현상을 설명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탈의 실상 중 특히 과도한 역(役) 부과를 언급했지만 또한 그에 더하여 경제구조 분석으로 이 문제에 접근했다. 목마(牧馬)와 말(馬) 사교역이라는 제주경제의 기반을 먼저 찾고, 그것이 붕괴되는 과정을 추적한 것이다. 과도한 역(役)과 경제 기반 붕괴는 자연스레 제주민을 출륙 유랑으로 내몰았다.

10) 제주 해양유민 발생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기존 연구에서 활용된 자료는 17세기 자료인 『南槎錄』(김상헌, 1602), 『耽羅志』(이원진, 1653), 『南槎日錄』(李增, 1679), 18세기 사료인 『南宦博物』(이형상, 1703), 『제주대정정의읍지』, 19세기 전반 자료인 『耽羅事例』, 19세기 중반 자료인 『耽營事例』 등이다.

3. 이론적 배경 및 연구 방법

사회현상을 분석함에 있어서 구조와 행위는 언제나 길항 관계에 있다. 연구자에 따라 혹자는 구조를 강조하고 다른 이는 행위를 강조한다. 하지만 그것 중 어느 하나가 절대적일 수는 없다. 연구자에 따라 강조점만 다를 뿐, 사회현상은 구조나 행위 중 어느 하나에 의해 절대적으로 결정되지는 않는다. 양자 간의 관계 해명에 오랫동안 천착했던 앤서니 기든스(Anthony Giddens) 역시 “우리 모두의 행위는 우리가 자라났고 현재도 살고 있는 사회의 구조적 특징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그와 동시에 우리는 행위를 함으로써 구조적 특징을 재창조하고 어느 정도까지는 바꾸어 나간다”¹¹⁾라고 했다.

그런데 지중해 역사를 연구한 아날학파의 페르낭 브로델(Fernand Braudel)은 그 중에서도 특히 구조를 강조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는 개별 사건보다는 구조를 중시했고, 구조 가운데서도 특히 지리적 구조에 주목했다.

물론 그의 지리적 구조 이론에 대해 후대에 지리 결정론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그에 대한 반성으로 인간을 중심으로 역사학과 사회과학이 인간과학으로 통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행위와 구조의 길항 작용 중에 다시 구조를 비판하고 행위가 주목을 받은 것이다. 이런 흐름은 1970년대 프랑스 내에서 브로델의 ‘새로운 역사’를 거부하며 ‘새로운 새로운 역사’이라는 이름 아래 아날학과 3세대가 주도해 나갔다. 브로델의 물질주의에 반대해서 심성이라는 말이 새로운 언어로 역사가들을 지배했던 것이다.¹²⁾ ‘망탈리테사’ 즉 국내에서 번역하기로는 ‘심성사’라는 영역이 그것이다. 특히 자끄 르 고프 등의 아날 3세대는 브로델이 말한 ‘인간은 장기지속적인 구조에 갇힌 수인(囚人)’이라는 주장을 비판하며 망탈리테에 주목했다.¹³⁾

이처럼 조선시대 제주유민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서 동원할 수 있는 이론은 아날학과 내에서도 세대에 따라 차이가 있다. 행위와 구조 중에 어느 쪽에 보다 큰

11) 앤서니 기든스 지음, 김미숙 외 옮김, 1992, 『현대 사회학』, 을유문화사, 44쪽.

12) 金應鍾, 1991, 『아날학파』, 민음사, 165쪽.

13) 김응중, 2006, 『페르낭 브로델』, 살림, 226~224쪽.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분명 두 접근 모두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연구에 있어서 중요하게 제기되는 문제는 자료 접근의 용이성이다. 아날 3세대가 주목한 망탈리테는 찾아가기에 자료의 제한이 크며, 망탈리테사의 경우 자칫 주관적 해석에 빠질 위험성도 크다.

반면 구조로 접근하는 데에는 사료 활용이 용이하다. 중세까지의 역사는 인간이 자연에 대해 대체로 무력한 상태로 전개된다. 때문에 브로델이 강조한 구조 특히 지리적 구조는 중세 역사를 들여다보는데 많은 장점이 있다. 제주의 중세사 역시 자연 환경적 요소에 의해 지배 받는 부분이 많았다. 토지 척박과 섬이라는 자연환경은 강한 구조적 요인으로서 중세 제주인의 삶을 규정지었다.

그리하여 이 연구는 아날 3세대의 망탈리테사적인 접근이 아니라 브로델 역사학의 기본 골격인 3층구조를 이론적 배경으로 삼는다. 지리적 구조를 중시했던 그의 모델이 중세 제주 상황을 설명하는 데에 유용한 점이 많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브로델의 연구대상이었던 지중해 세계와 유사하게 바다라는 지리적 환경을 가지고 있다. 또한 제주도는 화산섬이라서 토양이 매우 척박하다. 그로 인해 근대사회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자연적, 지리적 구조의 제약이 강했다. 이러한 지리적 조건의 유사성에 주목하여 본 연구에서는 그의 지리적 시간 개념을 활용하고자 한다.

물론 인간의 능동적 행위 혹은 개별 사건이 역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없다는 말은 아니다. 이 연구의 주 관심 대상인 조선시대 출륙 제주유민 역시 개인적 결단 없이 섬을 떠났던 것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개인적 결단 이전에 그리고 개별 출륙 사건 이전에 그들을 출륙 유랑하게 만든 구조가 있다. 그 구조를 탐색하는 것이 또한 이 연구의 중요한 구성 부분을 이룬다.

브로델은 자신의 박사학위논문 『필립 2세 시대의 지중해와 지중해 세계』¹⁴⁾ 서문에서 3층구조의 역사들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이 책은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 각각은 그 자체로 일반적인 설명을 가진 논문이다.

14) 이 연구에서는 프랑스어 원서가 아닌 HarperCollinsPublishers에서 1992년에 펴낸 영역본 *THE MEDITERRANEAN*과 2004년에 출간된 일본어본 浜名優美 譯, 『地中海』, 東京: 藤原書店를 참고했다.

제1부는 거의 움직이지 않는 역사, 즉 주위 환경과의 관계 속에 있는 인간의 역사를 다룬다. 모든 변화가 느리며 계속 반복되고 끊임없이 다시 시작하는 주기(週期)들로 이루어진 역사이다. 거의 시간 밖에 위치하며 생명이 없는 사물들과 접하고 있는 이러한 역사를 나는 도외시하고 싶지 않았으며 또한 이와 관련 많은 책들의 서두에 불필요하게 위치한 역사학에 대한 지리학적 서론이라는 전통적인 관행에도 만족하지 않았다.

이러한 움직이지 않는 역사 위에 다른 레벨에서 구별되는 또 다른 역사가 있다. 그것은 완만한 리듬을 가진 역사이다. 만일 그의 완전한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표현을 사용한다면 ‘사회사(social history)’, 집단들과 집단 형성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내 책의 제2부에서 제기한 문제는 해저(海底)의 물흐름이 지중해 세계에서 삶의 전체를 어떻게 자극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경제 시스템들, 국가들, 사회들, 문명들을 연속적으로 연구하면서, 궁극적으로 역사에 대한 나의 인식을 더욱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이러한 심층의 힘들이 전쟁이라고 하는 복합적인 영역에서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보여주려고 시도한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전쟁은 순전히 개인만이 책임지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이다.

마지막 3부는 전통적인 역사에 관심을 기울이게 한다. 전통적 역사라는 것은 인간 차원이 아닌 개인 차원의 역사인데 이것은 폴 라콩브와 프랑스와 시미앙이 비판한 사건사(事件史)를 말한다. 즉 표면의 출렁거림, 강한 움직임을 주는 조수(潮水)에 의한 파도와 같은 것을 다룬다. 짧고, 빠르며 신경질적인 진동의 역사, 극도로 민감하여 조그마한 자극에도 측정기계 전체에 비상이 걸리는 역사이다. 그러나 가장 정열적이며 인간 이해관계에 가장 풍부하게 관여하며 또한 가장 위험한 역사이다. 우리는 이러한 역사를 신뢰하지 않도록 배워야 한다. 이러한 역사는 당시 사람들이 우리 삶처럼 자신의 삶의 리듬에 따라 느끼고 묘사하고 체험했던 그대로 아직도 불타는 정열의 역사이다.¹⁵⁾

브로델은 이처럼 그의 책 서문에서 3개 층위의 역사에 대해 간략히 설명한 후, 3개 층위의 틀을 가지고 각각 제1부 ‘환경의 몫’, 제2부 ‘집단의 운명과 전반적인 움직임’, 제3부 ‘사건들, 정치, 사람들’로 나누어 서술했다. 물론 그가 가장 중시했던 것은 제1부 ‘환경의 몫’이다. 자칫 지리적 결정론으로까지 오해될 수 있

15) Fernand Braudel, 1949, (Translated by Sian Reynolds, 1992) *THE MEDITERRANEAN: and the Mediterranean World in the Age of Philip II*, New York: HarperCollinsPublishers. preface to the First Edition, p.xiv.

을 정도로 그는 지리적 환경이 인간 삶에 미치는 영향을 가장 중시했다.

인간은 자연환경의 영향을 받는다. 또한 자연환경의 영향은 오랜 세월이 지나도 변함이 거의 없다.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거의 변함없이 반복적인 생활을 한다. 브로델은 이것을 ‘장기지속적’이라고 표현했다. 그의 또 다른 표현을 빌린다면 ‘지리적 시간’인 것이다.

중세 제주도를 살펴볼 때 이는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바다라는 지리적 환경은 불변의 요인이다. 더하여 화산회토라는 척박한 토양 역시 근대 화학비료가 시비되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는 자연적 환경이었다. 이러한 상황 아래에서 제주 사람들의 삶은 거의 변함없는 반복적인 생활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우선 농사는 먹고 살지 못했다. 그러니 당연히 교역을 해야 했다. 그 교역은 지속적인 해양교역이었다. 바다가 둘러싼 섬이라는 지리적 조건에 따른 선택이었다. 브로델이 강조점을 두었던 것처럼 중세 제주사람들의 기본적인 삶은 이 틀을 벗어나기 어려웠다.

브로델은 제2부를 시작하면서 “이와 같은 장기지속으로부터 제2부는 더욱 개별화된 리듬을 지닌 역사, 즉 집단의 역사, 집단의 운명 그리고 일반적 경향의 역사로 우리를 다가서게 한다. 이것은 곧 사회사이다”¹⁶⁾라고 하여 장기지속보다는 조금 유동성이 있는 역사에도 눈을 돌렸다. 이것을 그는 앞의 ‘지리적 시간’에 대비해 ‘사회적 시간’이라고 했다. 장기지속의 시간이 ‘거의 움직이지 않는 구조’라면 이것은 ‘서서히 움직이는 국면’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이것을 브로델은 ‘콩종튀르(conjoncture)’라 명명했다. 이 콩종튀르는 그의 책 제2부의 결론 제목으로 쓰일 만큼 중요한 용어로서 국내에서는 주로 ‘국면’, ‘추세’ 등으로 번역하여 쓰고 있다.¹⁷⁾

하지만 브로델이 그렇게 중요시한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명쾌하게 정의된 것은 없다. 그런 만큼 콩종튀르는 단일한 게 아니다. 주기에 따라 여러 가지 경제적인 움직임이 있다. 이에 대해 브로델은 ‘장기적 추세(secular trend)’, ‘중기지속의 경제적 콩종튀르’, ‘단기적 콩종튀르’, ‘계절적 움직임’ 등을 언급했다.¹⁸⁾ 그 중에 장

16) Fernand Braudel, op.cit, p.259

17) 金應鍾, 1991, 『아날학과』, 민음사, 96쪽.

18) Fernand Braudel, op.cit, p.652

기적 추세로서 1450년부터 1650년까지의 200년 동안을 하나의 통일성으로 파악하고 대규모 인구 증가를 고찰했다.¹⁹⁾ 그만큼 ‘인구증감’이라는 요소는 브로델의 설명체계에서 매우 중요했다.

브로델이 중시한 콩종튀르로서의 인구증감은 출륙 제주유민을 다루는 이 연구에서도 충분히 차용할 만하다. 15세기~17세기 200여 년 동안 제주도에서는 대규모 출륙 유량이 이어지면서 엄청난 규모의 인구 감소가 발생했다. 거의 변하지 않는 장기지속의 해양환경을 밑바탕에 깔고, 콩종튀르 즉 국면적 상황으로 출륙 유량현상을 분석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원 지배기 이후 목마 경제의 변성에 따른 제주도의 인구 증가 현상도 콩종튀르 즉 국면적 현상이었다.

브로델은 이렇게 구조와 콩종튀르를 가지고 지중해 세계의 본질은 충분히 파악되었다고 보았다. 하지만 전체사라는 목적에 맞게 제3부에서는 개별 사건을 추가했다. ‘표면의 출렁거림’ 혹은 ‘파도’에 비유한 이 시간은 ‘정치적 시간’이며 ‘단기지속의 시간’이다. 구조를 중시했던 만큼 브로델은 마지막 제3부에 사건사를 추가했으면서도 그 중요성을 높게 보지는 않았다. 사건을 ‘먼지’에 비유했고 그런 역사를 경계하자고 말했을 정도다. 그러나 결론에서 그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러한 빛나는 표면의 먼지들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거나, 전체사적인 재건축이 이러한 미시사로부터 시작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²⁰⁾라며 나름의 의미를 부여하긴 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그는 “나는 기질적으로 ‘구조주의자’이고 사건에 의해서는 거의 자극을 받지 않으며, 동일한 기호를 가진 사건들의 집합인 콩종튀르에 의해서는 절반 정도만 자극을 받는다”²¹⁾라고 말했다.

사건사는 그 자체의 속성상 거대한 움직임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도 브로델의 이런 관점을 따른다. 본 연구에서 중요한 사건으로 ‘우마적 사건’이나 ‘출륙금지령’을 언급하고는 있지만, 이것 역시 국면적 흐름 속에서 파악한다. 우마적 사건은 말(馬) 교역 금지라는 국면적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이며, 출륙금지령 역시 인조 7년(1629년)에 돌출적으로 나온 일회성 사건이 아니었다.

19) Fernand Braudel, op.cit, p.654

20) Fernand Braudel, op.cit, p.662

21) Fernand Braudel, op.cit, p.664

바탕에는 그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던 출륙 통제의 국면이 깔려 있었다.

이렇게 브로델의 삼층구조의 역사들은 중세 제주의 유민현상을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바탕에 브로델의 모델을 깔고 서술을 이어갈 것이다. 그에 앞서 다시 한 번 브로델의 모델을 간략하게 정리한다. 브로델은 자신의 모델을 바다에 비유하기도 했는데, 가장 밑바닥에 지리적 시간이 흐르고 중간에는 사회적 시간이 그리고 표면에는 파도치듯 급변하는 정치적 시간이 흐른다. 이를 구조-콩종튀르(국면)-사건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때로는 장기지속-중기지속-단기지속으로 서술하기도 한다.

물론 가장 기본적인 구속력은 장기지속의 지리적 시간에 주어진다. 제주사람들은 섬이라는 조건과 척박한 토양이라는 자연 지리적 조건으로 인해 장기지속적으로 해양교역의 역사를 보여줬다. 유민 현상도 같은 맥락에서 진행되었다. 육지의 농경 유민이 화전민으로 변화했던 것과는 달리, 제주에서는 해양교역의 장기지속성에 영향을 받아 해양유민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당시 제주도가 농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었다면 대규모 출륙 유랑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물론 유민현상은 중기지속의 콩종튀르적 현상이었다. 하지만 바탕에는 바다라는 지리적 구조가 깔려 있었다. 개별 사건은 구조와 콩종튀르 위에 자리한다. 표면의 일렁거리는 파도처럼 격렬하게, ‘우마적 사건’ 등 다양한 사건이 발생한다. 하지만 이러한 사건들 역시 구조와 콩종튀르의 강한 구속력 안에서 발생한 사건이었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연구를 택했다. 조선시대의 공식 역사 기록인 『조선왕조실록』을 우선 검토했다. 국가의 정사(正史)인 만큼 기록 뒤에 숨은 권력 관계만 놓치지 않는다면 비교적 긴 시간을 일관된 관점 아래서 살필 수 있다. 특히 한 시점만을 보여주는 단편적 지지(地誌)류와는 달리 상당히 긴 시간 동안 기록한 사료이므로 시기별 변화를 고찰할 수 있다. 이것은 이 사료가 가진 큰 장점이다.

장기간을 다룬 장점에 맞게 기록 검토와 인용은 시계열적으로 했다. 기존 연구에서는 시간의 선후 관계를 무시하고 기록을 인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맥락과 무관하게 편의에 따라 분절적으로 기사를 인용하는 경우였다. 또한 세심한 시기 구분 없이 하나의 조선시대라고 해서 뭉뚱그려 분석 서술한 경우도 있었다.

본 연구는 이 점을 지양했다. 15세기부터 시작된 출륙 유량을 고찰하기 위해서 그 배경이 되는 앞의 시기부터 살피는 시계열적 분석을 시도한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런 만큼 시간의 선후 관계를 충분히 고려하며 기록상의 작은 변화에도 주의를 기울였다. 그 과정에서 일관된 흐름 속에서의 변화를 찾을 수 있었고, 그 변화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논지를 강화할 수 있었다.

또한 시계열적 분석은 생업수단의 변화도 짚어 볼 수 있게 해줬다. 생업수단의 변화는 경제구조의 변화를 살피는 데에서 없어서는 안 될 요소이다. 즉 사료의 시계열적 분석으로 경제구조의 변화까지 추적할 수 있었다는 의미다.

그리고 유사 사안의 기록 빈도와 기록 시점도 중요한 고려 대상이 되었다. 빈도를 시기별로 파악하여 비교함으로써 변화를 찾을 수 있었고, 그 변화의 의미도 추정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기근 관련 기사가 집중적으로 등장하던 시기, 말(馬)교역 금지 기사가 집중적으로 등장하는 시기 등은 본 연구가 예민하게 주의를 기울인 대목이다. 이는 『조선왕조실록』이 장기간을 일관되게 기록한 사료여서 가능한 일이었다.

주로 활용한 『조선왕조실록』은 국사편찬위원회가 관리하는 인터넷 상의 朝鮮王朝實錄 사이트(<http://sillok.history.go.kr/>)의 자료다. 그러나 오역이 간간히 등장하기 때문에 원문과 대조하며 활용하였다. 그 다음 활용한 자료는 충무공 이순신이 남긴 기록이다. 그가 남긴 일기와 장계가 관련 자료와 함께 정조 19년(1795년)에 『李忠武公全集』로 묶여 출간되었다. 이 자료 역시 원문과 대조하며 활용하였다. 그 외 『高麗史』, 『高麗史節要』 등의 사료를 활용하였다. 이 역시 검토 방법은 시기 순으로 일정한 흐름을 파악하는 시계열적 검토다.

II. 제주유민의 발생 배경

1. 조선정부의 제주 통치 강화

1) 조선정부의 제주 정치 장악

조선은 고려와는 달리 중앙집권적 국가였다. 종래 향읍의 실질적인 지배자 위치에 있던 향리를 점차 지방관서의 행정 사역인으로 격하시킴으로써 중앙집권적 양반지배체제를 강화하였다.²²⁾ 제주도에서도 상황은 유사했다. 조선정부는 건국 직후부터 제주도까지도 완전히 장악하여 중앙집권체제를 다지려고 하였다.

그러나 제주지역의 상황은 조금 달랐다. 제주도는 조선 초기만 해도 여전히 성주, 왕자²³⁾ 등의 토호 세력이 관직 이름을 바꿔가며 잔존했던 토관제(土官制) 적용 지역이었다. 즉 초기까지만 해도 제주도의 토착 지배층을 중앙정부가 완전히 장악하지는 못했다는 의미다. 이들은 중앙 정치권력에 상당한 정도로 포섭되면서도 여전히 제주도 민중들에게 독자적 영향력을 크게 행사하고 있었다.²⁴⁾

하지만 제주도 역시 중앙집권화의 경향은 피할 수 없었다. 조선정부는 제주지방의 토호세력을 억압과 회유로 누르면서 중앙 지배를 확대해 갔다. 먼저 취한 조치는 유교적 교화였다. 태조는 건국 직후 그의 즉위교서에서 이미 외방 향교의 설치를 강조했고²⁵⁾ 즉위한 해(1392년)에 제주에 학교부터 세웠다.²⁶⁾ 이것은 지방 향교로서는 가장 일찍 설립된 예였다.²⁷⁾ 그리고 곧바로 태조 3년(1394년)에는 학교에 교수관(教授官) 두고 10세 이상의 토관 자제들을 교육시키기 시작했다.

도평의사사에서 상언(上言)하였다.

22) 이수건, 2003, 「지방 통치체제」,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23, 탐구당, 125쪽.

23) 성주·왕자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을 참고할 수 있다.

문경현, 2010, 「탐라국 성주·왕자」, 제주사정립사업추진협의회, 『탐라사』 II.

김창현, 2010, 「탐라의 지배층」, 제주사정립사업추진협의회, 『탐라사』 II.

24) 조성윤, 1992, 「조선 후기 제주도 지배세력에 관한 연구」, 濟州島史研究會, 『濟州島史研究』 2집, 55쪽.

25) 『태조실록』, 권1, 태조 1년 7월 28일 丁未.

26) 『新增東國輿地勝覽』 권38, 濟州牧 學校案 (在域中 金處禮碑 我太祖元年壬申學校成).

27) 梁鎮健, 2001, 『濟州教育行政史』, 제주문화, 76쪽.

“제주(濟州)에는 일찍이 학교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그 자제(子弟)들이 나라에 들어와 벼슬하지 아니한 까닭으로, 글자를 알지 못하고 법제(法制)도 알지 못하여, 각소(各所)의 천호(千戶)들이 대개가 모두 어리석고 방사(放肆)하여 폐해를 끼치오니, 원하옵건대, 지금부터는 교수관(教授官)을 두고 토관(土官)의 자제(子弟) 10세 이상을 모두 입학(入學)시켜, 그 재간을 양성하여 국가의 시험에 응시하게 하고, 또 서울에 와서 시위(侍衛)하고 종사(從仕)하는 사람은 천호(千戶)·백호(百戶)가 되게 하여 차부(筭付)를 주게 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²⁸⁾

위 기사는 『조선왕조실록』에서 제주도 관련으로는 사실상 첫 기록이다. 그 첫 기록의 내용이 교수관(教授官) 설치다. 학교의 설립과 함께 이뤄진 이러한 조치는 근본적으로 선초의 대(對)제주도 정책과 관련한 일종의 회유책이다. 또한 동시에 제주도를 교화가 가장 시급한 지역으로 인식한 중앙의 입장이 개진된 결과다.²⁹⁾

유교적 교화로 지방의 정신세계부터 장악하겠다는 의도가 보인다. 물리적 강제 이전에 타협과 동의를 확보하여 지적이고 도덕적인 지도력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다. 안토니오 그람시의 헤게모니³⁰⁾ 장악에서 볼 수 있는 방법이다. 헤게모니 즉 동의에 의한 지적이고 도덕적인 지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종속계급에 대한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³¹⁾ 조선정부가 제주를 장악하기 위해 시행했던 첫 조치가 학교 설립과 교수관 설치였던 것은 우연이 아니다. 토관의 자제들을 입학시켜 교육을 하고 조선정부의 지배 정당성을 확보하겠다는 의도였다.

거기다가 토관 자제 중에서도 서울에 와서 시위(侍衛)종사(從仕)한 사람만 토관의 말단직인 천호(千戶)·백호(百戶)직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중앙정부에 불려올려 교화 시킨 뒤에야 제주지방에 돌아와서 토호가 될 수 있게 했던 것이다. 중앙정부 시스템에 의한 체제내화 작업의 일환이다.

28) 『태조실록』 권5, 태조 3년(1394년) 3월 27일 丙寅 (都評議使司上言: “濟州未嘗置學校, 其子弟不入仕於國, 故不識字不知法制, 各所千戶, 率皆愚肆作弊。 乞自今置教授官, 土官子弟十歲以上, 皆令入學, 養成其材, 許赴國試, 又以赴京侍衛從仕者, 許爲千戶百戶, 以給筭付。” 上從之)。

29) 梁鎮健, 2001, 『濟州教育行政史』, 제주문화, 76쪽.

30) 안토니오 그람시, 1987, 『그람시의 옥중수고』 I, 거름.

31) Alberto Martinelli, 1968, "In Defense of the Dialectic: Antonio Gramsci's Theory of Revolution", *Berkeley of Sociology*, 13.

물론 토관의 자체 이전에 토관의 존재 자체가 지방 유력층에 대한 포섭책이기도 했다.³²⁾ 제주지역의 토관은 이미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³³⁾ 중앙 권력이 지방의 원활한 통치를 위해 그 지방 유력층에게 일정한 지위와 특권을 보장해주면서 유기적 협조를 이끌어내던 장치다. 그랬기 때문에 토관의 권력도 작지만은 않았다. 그리하여 때로는 중앙에서 파견된 지방관과 갈등을 빚기도 했다. 다음의 사료들은 이를 잘 보여준다.

조선 초 정이오(鄭以吾)는 제주에 부임하는 박덕공(朴德恭)에게, ‘제주의 풍속이 야만적이고 거리가 멀 뿐만 아니라 성주와 왕자 및 토호의 강자가 평민을 다투어 차지하고 사역을 시키어 그것을 인록(人祿)이라 하면서 민을 마음대로 학대하여 욕심을 채우니 다스리기가 어렵다 한다’라고 충고 했다.³⁴⁾

신이 제주에 도임했을 때 고소하는 자가 구름 몰리듯 하였는데, 모두 토호(土豪)들이 불법적으로 양민을 점유하는 일들이었습니다. 물으면 모두 말하기를, ‘이 지방이 멀리 바다 밖에 있어서 수령의 기강이 해이하고, 토호들이 방자한 행동으로 제 마음대로 양민을 점유하여 봉족(奉足)이라 일컫고는 부리기를 노예와 같이 하므로, 양민의 아들로써 나이가 겨우 8, 9세만 되면 벌써 점유를 당하여 아버로서 자식이라 할 수가 없게 되고, 비록 관청에 호소할 권세 있는 부호의 농간대로 안 되는 일이 없으니, 원통하고 억울함을 어떻게 해야 풀 수가 있겠습니까.’³⁵⁾

이에 중앙권력은 끊임없이 토관의 힘을 약화시키려 했다. 조선 건국 이후 중앙정부는 이 같은 시책을 꾸준히 진행했다. 그 첫 조치가 앞서 보았던 학교 설치와 교수관 파견이었다.

그 다음 취했던 조치는 태조 6년(1397년) 원의 직제였던 만호(萬戶)를 혁파하고 ‘목사(牧使) 겸 첨절제사(僉節制使)’를 뒀던 일이다.³⁶⁾ 원 지배기의 분위기를

32) 李載稟, 1966, 「朝鮮初期의 土官에 對하여」, 『진단학보』 29-30합본호, 126쪽.

33) 토관 설치 시점을 이재룡은 위의 글에서 탐라총관부의 환속 이후로 추정하고 있으며, 김동전은 제주가 원의 지배에서 고려로 환속된 충렬왕 20년(1294년) 이후 목사를 파견하기 시작할 때부터라고 추정하고 있다(金東柱, 1991, 「朝鮮時代 濟州島의 郡縣構造와 支配體制」, 『제주도사연구』 창간호, 13쪽).

34) 『新增東國輿地勝覽』 권38, 濟州牧 風俗.

35) 『세종실록』 권36, 세종 9년(1427년) 6월 10일 丁卯(臣到濟州, 告訴者如雲, 皆土豪影占良民事也。 問之則皆曰: “此地邈在海外, 守令紀綱陵夷, 土豪恣行, 自占良民, 稱爲奉足, 使之如奴隸, 故良民之子, 年才八九, 已爲所占, 而父不得爲之子, 雖訴於官, 未有不爲權豪所弄, 冤抑何由得伸).

일소하고 새로운 정부의 새로운 직제 아래 지방 장악을 꾀했던 조치이다. 그리고 3년 뒤인 정종 2년(1400년)에 판관으로 하여금 교수관을 겸하게 했다.³⁷⁾ 유교적 교화를 통한 지방 장악에 더욱 힘을 쓰는 모습이다.

이와 같은 조치 속에 보이지 않는 압박이 계속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시 2년 뒤인 태종 2년(1402년) 제주 토호의 최고 권력자인 성주(星主) 고봉례(高鳳禮)와 왕자(王子) 문충세(文忠世)가 ‘성주·왕자의 호칭이 분수에 넘치는 것 같다’라고 하며 고치기를 청하였다. 이에 성주를 도주관좌도지관(都州官左都知管)으로 삼고, 왕자를 도주관우도지관(都州官右都知管)으로 삼았다.³⁸⁾ 헤게모니적 지배가 관철된 것이었는지, 성주·왕자가 스스로의 호칭이 분수에 넘치는 것이라 하며 중앙정부에 호칭변경을 요청했다. 물론 이것은 명분보다 실리를 취한 지방 토호 세력의 유연한 대응일 수도 있다. 하지만 형식의 변화 속에서도 제주 토호의 세력 약화는 조금씩 진행되었다.

조선 중앙정부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행정구역의 대대적 개편을 통해 다시금 지방 장악을 시도했다. 성주·왕자 칭호가 사라지고 나서 14년 뒤인 태종 16년(1416년)의 일이다.

제주 도안무사(濟州都安撫使) 오식(吳湜)과 전 판관(判官) 장합(張合) 등이 그 땅의 사의(事宜)를 올렸다. 계문(啓聞)은 이러하였다.

“제주에 군(郡)을 설치하던 초기에 한라산(漢拏山)의 4면(四面)이 모두 17현(縣)이었습니다.(중략) 원컨대, 이제부터 본읍에는 동도(東道)의 신촌현(新村縣)·함덕현(咸德縣)·김녕현(金寧縣)과 서도(西道)의 귀일현(貴日縣)·고내현(高內縣)·애월현(厓月縣)·곽지현(郭支縣)·귀덕현(歸德縣)·명월현(明月縣)을 소속시키고, 동도(東道)의 현감(縣監)은 정의현(旌義縣)으로서 본읍을 삼아 토산현(兎山縣)·호아현(狐兒縣)·홍로현(洪爐縣) 등 3현(三縣)을 소속시키고, 서도(西道)의 현감(縣監)은 대정현(大靜縣)으로서 본읍을 삼아 예래현(猓來縣)·차귀현(遮歸縣) 등 2현(縣)을 소속시키되(중략)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³⁹⁾

36) 李元鎮, 『耽羅志』 濟州, 建置沿革 條.

37) 앞과 같음.

38) 앞과 같음.

39) 『태종실록』 권31, 태종 16년(1416년) 5월 6일 丙申(濟州都安撫使吳湜、前判官張合等上其土事宜。 啓曰: “濟州置郡之初, 漢拏山四面凡十七縣…願自今本邑則屬以東道新村縣·咸德縣·金寧縣、西道貴日縣·高內縣·厓月縣·郭支縣·歸德縣·明月縣。 東道縣監以旌義縣爲本邑, 屬以免山縣·狐兒縣·洪爐縣等三縣; 西道縣

원이 지배하던 고려시대 이후 제주지방은 동·서도현 체제로 유지되어 왔다. 이것을 이때 대대적인 행정구역 개편으로 정리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종래 17개 縣을 모두 폐합하고 濟州牧과 旌義縣, 大靜縣으로 나눈 1牧 2縣의 3군체제를 형성하였다. 이 개편에 따라 제주목에는 정3품 당상관 목사가 그리고 대정현과 정의현에는 종6품 현감이 파견되었다. 이들은 각기 수령으로서 독립적인 권력을 가지고 전라도 관찰사의 지시를 받아야 했으나, 바다 건너에 있는 특수지역이라는 이유로 인해 제주목사가 정의현감과 대정현감을 감독하는 특별한 편성을 이루게 되었다. 그에 따라 역할이 커진 제주목사의 경우 그 격을 높여 정3품에서도 當上官인 通政大夫 이상이 파견되는 게 관행이 되고 있었다.⁴⁰⁾ 이것은 그만큼 수령의 권한이 강해졌다는 의미가 된다.

이렇게 군현제 정비를 통해 중앙정부는 강화된 수령의 권한으로 지방행정을 장악해 나갔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세종 때에 두드러졌다. 세종은 여러 차례에 걸쳐 제주 토관의 영향력을 조금씩 약화시켜 나갔다.

제주의 지형이 동서로 1백 20여 리요, 남북으로 60여 리인데, 정의(旌義)와 대정(大靜)이 동과 서의 두 모퉁이에 있고, 목사(牧使)가 중앙에 있으니, 비록 토관(土官)이 없더라도 다스리기 어려울 것이 없는데, 따로 도진무(都鎭撫)와 동서도사(東西都司)와 좌우 도주관(左右都州官)을 설치하여 모두 관인(官印)을 받아 가지고 수령과 대등이 되게 하고, 또 독소(蠹所) 10을 두어서 각처에 있는 토관의 인원수가 70여 인에 달하는데, 각기 아전과 군졸을 거느리고서 권리를 펴고 세력을 빙자하여, 혹은 수령에게 아부하고 혹은 민생을 굶어 먹는데, 관은 많고 백성은 적어서 폐만 있고 이익됨은 없습니다. 그런데 좌우 도주관(左右都州官)만은 혹 성주(星主)·왕자(王子)라 일컫는 예로부터의 풍습이 있으니, 종전대로 두어도 좋겠으나, 나머지는 다 혁파하고 다른 고을의 예에 따라 각기 사는 고을에 분속시키고 모두 관인(官印)을 회수할 것이며, 도진무(都鎭撫)는 안무사가 적당하게 골라 정하되, 진무(鎭撫)의 수를 감하여 많아야 5, 6인에 불과하게 하여, 토호들의 백성을 침해하는 폐단을 억제할 것…… 그대로 따랐다.⁴¹⁾

監以大靜縣爲本邑, 屬以貌來縣、遮歸縣等二縣…從之).

40) 金東柱, 1991, 「朝鮮時代 濟州島의 郡縣構造와 支配體制」, 『제주도사연구』 창간호, 49쪽.

41) 『세종실록』 권36, 세종 9년(1427년) 6월 10일 丁卯(濟州之地, 東西百二十餘里, 南北六十餘里。旌義、

위 기사를 보면 세종 9년(1427년)에 와서 토관을 대폭 정리함을 알 수 있다. 그 동안 토관은 관인(官印)을 가지고 수령과 대등하게 활동하였으며 각기 아전과 군졸을 거느릴 정도였다. 그런데 이때에 와서 도주관(都州官)만 빼고 혁파하며 도진무(都鎭撫)는 안무사가 정하되 5~6명으로 줄였던 것이다.

그리고 2년 뒤인 세종 11년(1429년)에는 토관에게 지급되던 봉족의 수를 급격히 줄였다.⁴²⁾ 39명의 봉족을 받던 도지관은 이때 10명만을 받게 되었고, 동·서사수와 도진무는 과거 30명의 봉족을 받다가 8명만 받게 되었다. 도천호는 24명에서 8명으로 줄여 받았고, 상진무는 21명에서 6명으로 줄여 받았다. 그 감소 비율을 보면 대략 과거의 1/4의 봉족만을 받게 된 셈이었다. 그만큼 토관의 영향력은 줄어들고 중앙권력은 강해졌음을 보게 된다.

가장 결정적인 조치는 성주·왕자의 유습이라고 해서 남겼던 도주관좌·우도지관(都州官左·右都知管)의 혁파였다. 세종 27년(1445년) 중앙정부는 도주관좌·우도지관을 혁파하고 그 관인을 회수해 버렸다.

의정부에서 병조의 정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제주(濟州)는 비록 해외(海外)에 있으나 이미 군현(郡縣)을 삼았고, 목사(牧使)가 그 고을 안을 지키니, 모든 일을 마땅히 다른 예에 의하여 경재소(京在所)에서 오로지 맡아 규리(糾理)할 것이온데, 그 주(州)의 족성(族姓)이 좌우 도지관(左右都知管)이라 일컫고 인신(印信)을 만들어서 양민(良民)을 사역하는 데 이르오니, 예(例)에 어긋남이 있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실로 폐를 받으니, 청하건대, 도지관을 혁파하고 그 인신을 거두어 그 봉족(奉足)을 반으로 줄이고, 고을 안의 모든 일도 다른 예에 의하여, 경재소에서 천호·백호 등의 직무를 고찰(考察)하여 연변(沿邊) 각 고을의 통례(通例)는 예전대로 두옵되, 봉족은 역시 반으로 줄이며, 궐원(闕員)을 보충하지 말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⁴³⁾

大靜, 居東西二隅, 牧官在其中, 雖無土官, 豈難治哉? 而別置都鎭撫、東西都司、左右都州官, 皆受印信, 與守令竝立。又置十羈所, 各處土官之額, 至於七十餘人, 各率衙前吏卒, 席權藉勢, 或附守令, 或剝民生, 官多民小, 有弊無益。然左右都州官, 則或稱星主王子之遺風, 仍舊猶可也, 餘皆革除, 依他郡例, 分隸所居各官, 竝收印信。都鎭撫, 則按撫使隨宜擇定, 減鎭撫之數, 多不過五六人, 以抑豪悍侵民之弊…從之。

42) 『세종실록』 권45, 세종 11년(1429년) 7월 28일 壬申.

43) 『세종실록』 권108, 세종 27년(1445년) 6월 19일 辛酉(議政府據兵曹呈啓: “濟州雖在海外, 然已爲郡縣治

당시 제주사회의 최고 토관은 성주·왕자의 직을 이어온 좌·우도지관이였다. 그런데 세종 27년(1445년)에 와서 그 자리마저 혁파해버렸던 것이다. 이로써 조선 중앙정부의 제주지방 장악은 사실상 완전히 마무리 되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세종 대의 제주지방 완전 장악은 이 시기부터 서서히 발생하고 있던 제주민의 출륙 유량과 대규모 우마적 사건과도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중앙권력의 강압이 제주민에 대한 역 부과와 공물 진상의 부담을 가중시켰고 이것이 결국 제주민의 대규모 출륙 유량의 배경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2) 조선정부의 제주 경제 장악

정치와 경제는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 조선 건국 후 중앙정부가 제주도를 정치적으로 장악하려고 했던 궁극적 목적도 어찌면 경제력 장악에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제주지역은 경제면에서 한반도의 여타 지역과 상황이 많이 달랐다. 특히 토지생산력이 극도로 미약했다.

반면 조선왕조의 물적 토대는 토지와 농민이었다. 그리고 그 토지제도의 근간이 된 것은 고려말에 마련된 과전법이었다.⁴⁴⁾ 여기서 양전(量田)은 새로운 토지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전제가 된다. 그런 만큼 양전은 중앙 집권의 지표였다. 하지만 고려말 과전법 시행의 바탕이 된 己巳量田 때에 전국의 모든 토지를 측량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북방의 동·서 양계 지방과 서·남쪽 연해지역은 이때 양전에서 제외가 되었다.⁴⁵⁾ 기록에 등장하지 않은 것으로 미루어 제주지역 역시 기사양전에서는 빠졌던 것 같다.

이에 조선 건국 이후 태종 5년(1405년)에는 다시 남부 6도를 양전했고, 태종 13년(1413년)에는 동·서 양계 지역의 토지도 측량했다. 전국적 상황에 맞춰 제주 지역도 이때 양전을 실시했다. 명분은 제주지역 역시 왕토(王土)임에도 불구하고

牧守, 其鄉中諸事, 固當依他例, 京在所專掌料理, 而其州族姓稱爲左右都知管, 至造印信, 役使良民, 非徒有違於例, 民實受弊 請革都知管, 收其印信, 減其奉足之半, 鄉中諸事, 依他例京在所考察 千戶百戶等職, 沿邊各官 通例, 請仍其舊 奉足亦減其半, 有闕勿補”從之).

44) 조선 초기 과전법에 대해서는 다음의 책을 참고할 수 있다.

金泰永, 1983, 『朝鮮前期 土地制度史研究』, 지식산업사.

李景植, 1986, 『朝鮮前期 土地制度研究』, 일조각.

45) 金泰永, 2003, 「토지제도와 농업」, 『한국사』 24, 탐구당.

전제(田制)가 서 있지 않은 까닭에 토호(土豪)의 수탈이 극심하다⁴⁶⁾는 논리였다.

하지만 이때의 양전은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던 모양이다. 6년 뒤인 세종 1년(1419년)에 다시 양전 문제가 거론되었다. “토지가 척박하고 백성은 조밀하여, 농사와 누에치기를 힘쓰지 않고, 수륙(水陸)의 소산으로써 장사하여, 생계를 삼고 있으므로, 밭의 조세를 받을 것이 없다⁴⁷⁾”라며 반대 의견이 강하게 개진되었음에도, 전라도 관찰사는 “제주는 옛적에 탐라국(耽羅國)이라 일컬어, 신라국과 함께 건국하였으니, 어찌 세납 받는 법이 없이 능히 나라를 다스렸을 것입니까⁴⁸⁾”라며 양전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논쟁 끝에 결국 그 의견이 받아들여져 양전 결정이 이뤄졌다. 그리고는 같은 해 9월 6일 양전은 시작되었다.⁴⁹⁾ 이로써 과전법 성립 28년 만에 전국적으로 동일한 토지제도가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획일적 잣대는 곧바로 문제를 일으켰다. 척박한 제주의 토지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래서 7년 뒤인 세종 8년(1426년) “제주(濟州)의 전조(田租)는 육지의 전지(田地) 예보다 반을 감하여 수납하라”⁵⁰⁾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그리고 이 규정은 후에 『경국대전』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명문화되었다.⁵¹⁾ 이러한 국가의 특별배려는 제주의 자연조건에서 기인했다. 즉 지표 거의가 돌로 덮여 있어 深耕과 김매기가 어려웠고 土性이 찰지지 못해 과종 후에는 牛馬를 가지고 踏田을 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⁵²⁾

그리고도 다시 세종 19년(1437년)에 전세를 경감하는 조치가 내려졌다. “제주(濟州)의 토지는 등급을 나누지 아니하고” 수세한다는 결정이었다. 그 결과 “옛날 10분의 1을 받는 법과 비슷해지며” “조선 개국 초기의 수세하던 수량보다 많이 경감”되었다.⁵³⁾

세종 21년(1439년)에도 “제주(濟州)에는 공법(貢法)을 쓰지 말고 구례(舊例)에

46) 『태종실록』 권26, 태종 13년(1413년) 7월 12일 己丑 (量濟州田 濟州雖海島, 莫非王土, 不立田制, 故土豪妄稱父祖田, 廣占膏腴).

47) 『세종실록』 권4, 세종 1년(1419년) 7월 13일 丙辰 (濟州土瘠民稠, 不事農桑, 以水陸所產, 商販爲生, 故不可以收田租).

48) 앞과 같음.

49) 『세종실록』 권5, 세종 1년(1419년) 9월 6일 戊申 (量田于濟州).

50) 『세종실록』 권33, 세종 8년(1426년) 7월 8일 己亥 (濟州田租, 於陸地田地例, 減半收之).

51) 『경국대전』 권2, 戶典, 收稅.

52) 권인혁·김동진, 1998, 「조선후기 제주지역의 수취체제와 주민의 경제생활」, 『담라문화』 19호, 181쪽.

53) 『세종실록』 권78, 세종 19년(1437년) 7월 9일 丁酉 (濟州之田, 無分等第 …如此則比古者什一之法與國初收稅之數, 蓋又太輕矣).

의하여 손실 답험(損失踏驗)의 법을 쓰자”는 건의가 올라갔고 결국 그렇게 결정되었다.⁵⁴⁾

그런 과정을 겪다가 마침내 성종 24년(1493년)에는 양전 포기의 조치가 내려진다. 역시 문제는 토질이였다. “본주(本州)는 사석(沙石)에 흙이 쌓여서 토맥(土脈)이 부허(浮虛)하여 매년 풍년과 흉년이 많이 다르므로, 공법(貢法)을 행할 수 없으니, 양전(量田)을 하지 말기를 청합니다”⁵⁵⁾라는 요구를 왕이 수용했던 것이다.⁵⁶⁾

조선 건국과 함께 경제면에서도 강력한 중앙집권을 기획했던 정부는 결국 제주에서의 전략을 수정할 수밖에 없었다. 더 이상 제주 지역에서의 양전은 큰 의미가 없었기 때문이다. 운송비 대비 수확량을 고려한다면 제주지역의 전세를 서울까지 옮길 이유가 없었다. 지방정부의 경비로 충당하면 그만이었다. 다시 말해 本島에의 잉류(仍留)로 그쳤던 것이다.⁵⁷⁾

전세 수취 규정의 마련, 시행, 수정 등의 기사는 주로 세종 대에 집중적으로 등장한다. 건국 후 제주지역 경제 장악을 위한 정부의 시도가 집중되었던 시기임을 의미한다. 그러나 결과는 계속적인 후퇴였다. 척박한 제주의 토질 때문이었다. 어쨌거나 여기서 주목할 점은 세종년간이라는 점이다. 정치면에서도 세종 대에 제주 지역이 중앙정부에 완전히 장악됨을 보았다. 경제는 정치와 맞물려 돌아감이 당연하다. 세종 대에 토지 제도와 관련해서 빈번하게 등장하는 기사 역시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러나 여러 시행착오 끝에 내린 결론은 사실상 전세의 포기였다. 수취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지방정부의 비용 마련 정도로 끝났을 뿐이다. 그렇게 중앙정부의 제주 전세에 대한 관심은 멀어져 갔다.

다음으로 租·庸·調 세법의 두 번째 구성 요소인 신역(身役)도 세종 대에 체계화하였다. “도내에 있는 군정(軍丁)들이 군적(軍籍)이 다 없어서, 빙거하여 상고하기가 어려우니, 농한기를 이용하여 군적을 작성하도록 청합니다”라고 전라도

54) 『세종실록』 권86, 세종 21년(1439년)8월 15일 辛卯 (請於濟州勿用貢法, 依舊例用損實踏驗之法 從之).

55) 『성종실록』 권283, 성종 24년(1493년) 10월 6일 丁卯 (本州沙石戴土, 土脈浮虛, 每年豐歉頓殊, 不可行貢法, 請勿量田).

56) 『성종실록』 권283, 성종 24년(1493년) 10월 6일 丁卯 (勿量田).

57) 『萬機要覽』 財用篇 收稅 (全屬本島 添作元會).

병마도절제사가 제주도 안무사의 말에 의거하여 보고하니 그렇게 결정이 되었다.⁵⁸⁾ 역시 세종 대의 일이다. 이때부터 군역 수탈이 제도화되었다는 의미다.

하지만 조선 정부가 무엇보다 관심을 보인 분야는 공납(貢納)과 진상(進上)이었다. 공납은 租·庸·調 세법을 이루는 하나의 구성요소다. 지방의 특산물을 왕조의 민인(民人)이 납부하는 것이다. 반면 진상은 본래 민인의 세금이 아니었다. 진상은 지방관이 임금에게 바치던 예물일 뿐이었다. 하지만 명칭과 형식에서만 차이가 있었을 뿐, 민인의 입장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다. 진상 역시 지방관이 지방의 민인에게서 징수하여 왕에게 올려 보내는 방식을 취했다. 그러니 사실상 공납과 구별하는 게 민인의 입장에서는 별다른 의미가 없었다.

제주지역의 진상 공물로는 말(馬), 해산물, 꿀, 약재가 핵심이었다. 그중에서도 첫 번째는 말이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조선 건국 직후부터 말(馬) 관련 기사가 빈번히 등장한다. 그것은 중앙정부의 주된 관심이 말(馬)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말(馬)관련 기사가 『태조실록』 태조 3년(1394년) 7월부터 나온다. 『조선왕조실록』 제주 관련 기사 중에 세 번째 기사가 그것이다.⁵⁹⁾ 그만큼 중앙정부의 관심이 말(馬)에 집중되어 있었음을 말해준다.

제주도 사람 고봉례(高鳳禮) 등이 말 1백 필을 바치니, 쌀 1백 섬을 하사하였다.⁶⁰⁾

고려말부터 중앙정부와 연계를 가졌던 고봉례가 나온다. 그는 이미 정세의 변화를 읽었다. 제주 토호의 힘으로 중앙권력과 맞서는 것은 이제 불가능했다. 변화된 상황을 인정하고 빠르게 중앙정부와 결탁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었다. 그래서 먼저 자진하여 말 1백 필을 바쳤다. 그러자 중앙정부는 토호 회유책으로 쌀 1백 섬을 하사했다. 이것은 서로 간에 정치적 권력관계를 다지는 행위이기도 했지만, 경제적인 교환의 의미도 있었다. 제주는 말을 팔아 생계를 유지해야만 했기 때문에 중앙정부도 말(馬)에 대한 대가를 식량으로 지급했다.

58) 『세종실록』 권13, 세종 3년(1421년) 8월 5일 乙未 (羅道兵馬都節制使據濟州都按撫使呈啓: 道內軍丁 竝無軍籍 難以憑考 請以農隙成軍籍, 從之).

59) 첫 기사는 교수관 파견, 두 번째 기사는 관리 파견 내용, 세 번째 기사가 바로 말(馬)관련 내용이다.

60) 『태조실록』 권6, 태조 3년(1394년) 7월 7일 甲辰 (濟州人高鳳禮等來獻馬百匹, 賜米百斛).

물론 그것이 제주민 전체의 경제를 책임지는 조치는 아니었다. 어디까지나 토호 회유책일 뿐이었다. 그래서 중앙정부는 더하여 고봉례에게 관직을 내려줬다.

고봉례(高鳳禮)로 우군 동지총제(右軍同知摠制)를 삼았다.⁶¹⁾

이렇게 하여 제주지역의 반발을 무마하고 체제내화 시킨 뒤, 제주지역 장악에 자신감이 생긴 조선정부는 바로 다음 해인 태종 8년(1408년)부터 제주의 말(馬)을 체계적으로 통제, 수탈하기 시작했다. 말의 수취를 공식적으로 제도화했던 것이다.⁶²⁾

처음으로 제주(濟州)의 공부(貢賦)를 정하였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제주(濟州)가 바다를 격(隔)해 있어 민호(民戶)의 공부(貢賦)를 지금까지 정하지 못하였으니, 대호(大戶)·중호(中戶)·소호(小戶)를 분간(分揀)하여 그 토산(土産)인 마필(馬匹)로 하되, 대호(大戶)는 대마(大馬) 한 필(匹), 중호(中戶)는 중마(中馬) 한 필(匹), 소호(小戶)는 5호(戶)가 아울러 중마(中馬) 한 필(匹)을 내게 하여, 암수(雌雄)를 물론하고 탈 만한 마필을 가려서 공부(貢賦)하게 하고, 기축년 봄부터 모두 육지에 내보내게 하소서.”⁶³⁾

첫 공부(貢賦) 규정의 내용이 역시 말(馬)이다. 토지와 균역에 비해 제도화한 것이 시간적으로도 빠르다. 토지와 균역에 대한 규정은 세종 대에 와서야 체계화되었음을 앞에서 보았다. 그런데 말 공납과 관련된 규정은 태종 8년에 이미 완성되었다.

제주의 공납 품목으로는 말(馬) 이외에도 전복을 비롯한 해산물과 각종 제사에 쓰이는 굴류, 그리고 약재류가 있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말이 핵심이었음은 공납의 순서 매김에서도 알 수 있다. 가장 먼저 공납 규정에 올라갔던 품목이

61) 『태종실록』 권13, 태종 7년(1407년) 5월 8일 辛酉 (高鳳禮右軍同知摠制).

62) 물론 그 이보다 빠른 시기인 태조 7년(1398년) “해마다 말 100마리와 소 100마리를 바치게 했다”라는 기사가 나오긴 한다. 그리고 또 지역 토호가 말린 말고기 포와 좋은 말들을 바친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제도로서 공부(貢賦)를 정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라고 했다.

63) 『태종실록』 권16, 태종 8년(1408년) 9월 12일 丁巳 (初定濟州貢賦. 議政府啓: 濟州隔海, 民戶貢賦, 至今未定. 乞大中小戶分揀, 以其土産馬匹, 大戶大馬一匹, 中戶中馬一匹, 小戶五并中馬一匹. 勿論雌雄, 擇其可騎馬匹爲賦, 自己丑年春節, 並令出陸).

말(馬)이다. 이것은 역시 말(馬) 경제 장악이 제주지역 통치의 핵심이자 목적임을 보여준다.

그에 따라 공물의 운송체계도 확립해 놓았다. 최소한 세종 7년(1425년) 이전에는 마련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병조에서 아뢰기를 “제주에 공물(貢物)을 운반하는 배가 매년 3척이 내왕하는데, 한 척마다 영선 천호(領船千戶) 한 사람, 압령 천호(狎領千戶) 한 사람, 두목(頭目) 한 사람, 사관(射官) 네 사람이고, 격군(格軍)은 큰 배에 43명, 중간 배에 37명, 작은 배에 34명입니다”라며 그들을 공을 치하고 상 줄 것을 청하는 기사⁶⁴⁾가 이를 말해준다.

이상에서 살핀 것과 같이 건국 후 조선 정부는 토지세보다는 공납과 진상을 통해 제주 경제를 장악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관심을 가졌던 대상은 말(馬)이었다. 말은 제주민에게 있어서 생존권을 담보하는 재산이었고, 조선 정부에서도 가장 욕심을 냈던 물품이었다.

그런 만큼 정부는 말(馬)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다.⁶⁵⁾ 태종 7년(1407년) 이전에 모든 말을 관에 신고하여 장적(帳籍)을 만들게 했을 정도였다.⁶⁶⁾ 이제 말(馬)은 개인의 사적 재산 이전에 국가의 통제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관에 신고하지 않고서는 개인의 말을 사고 팔 수도 없었다. 이와 같은 조치는 과거 말(馬)을 키우고 바다를 건너가 말을 팔아 식량을 구해 오던 제주사람들에게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로 다가오게 되었다.

결국 조선의 중앙정부는 건국과 함께 제주지방의 경제 장악에 나섰고 세종년간을 넘어가면서 그 강도는 심화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결국 제주민에 대한 수탈 강화로 이어졌으며 그 수탈은 구체적으로 과중한 역(役) 부과와 진상 공물의 과도한 부과로 나타났다. 과중한 역과 진상 공물 그리고 말(馬)경제의 붕괴는 결국 제주민의 출륙유량을 재축했던 구체적 배경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물론 중앙정부의 제주지방 장악만이 출륙유량의 배경이 되었던 것은 아니다.

64) 『세종실록』 권29, 세종 7년(1425년) 7월 15일 壬午 (兵曹啓: “濟州貢船每年三隻來往, 每一隻領船千戶一、押領千戶一、頭目一、射官四、格軍大船四十三名、中船三十七名、小船三十四名、寄命水上, 涉海往還, 亦可論功 請貢).

65) 조선 정부가 이처럼 제주 말에 대해 과도한 집착을 보인 데에는 명의 압박도 중요한 요인이었던 듯하다. 명은 조선에 대해 강압적으로 말 교역을 요구했다. 그 교역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조선 초 명과의 교역으로 방출한 말은 56,025필이었다.

66) 『태종실록』 권14, 태종 7년(1407년) 8월 11일 壬辰 (東西北面牛馬成籍, 已有著令).

다음에서 보여지 듯 자연 환경적 요소 역시 함께 고려해야만 한다.

2. 제주유민 발생의 자연 환경적 배경

1) 토지 척박 요인

유민에 관심을 둔 선행의 연구들은 유민 발생이 전근대사회의 보편적 현상이나 그 발생 원인은 시기나 지역 특성에 따라 모두 다르다고 진단하고 있다.⁶⁷⁾ 그리고 그것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역사적 의미도 시대에 따라 다르다고 했다.⁶⁸⁾

조선시대 제주유민의 경우도 그러하다. 유민 발생의 원인을 하나로 단정할 수도 없고 또 여러 요인 중에 시기별로 특별히 강조되는 게 있다. 복합적 요인이 작용하되 시대를 초월해서 작용하는 요인이 있는가 하면 특별히 어느 시점에서만 크게 작용했던 요인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크게 두 가지 배경으로 나누어 살핀다. 인간의 의지와 무관하게 작용한 자연 환경적 요인과 사회활동 과정에서 조성되는 사회구조적 요인이 그것이다.

하지만 자연 환경적 요인이라고 해서 모두 동일한 것은 아니다. 브로델이 『펠리페 2세 시대의 지중해와 지중해 세계』에서 밝히 모델을 따라 설명하자면 ‘거의 움직이지 않는 역사’가 있고, 또 그 역사 위로 ‘완만한 리듬을 가진 역사’가 있다.

제주유민의 발생 원인에서 ‘토지 척박’ 요인은 바로 거의 움직이지 않는 역사에 해당할 것이다. 중세 제주에 관한 사료 속에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구절이 ‘제주의 토질 척박’이다. 이것은 비단 조선시대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기록상으로는 고려 문종 12년(1058년)부터 나온다. 탐라국 시대에 해상교역 기록도 근본적으로는 토지 척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게다가 이 요인은 현대사회에 들어와 화학비료가 시비되기 전까지는 해결되지 않았던 결정적 제한 요인이었다.

67) 오창훈, 앞의 논문, 18쪽; 변주승, 1992, 41쪽; 변주승, 1995, 1쪽

68) 정형지, 앞의 논문, 185쪽.

이는 한반도 여타 지역과 다르다. 인간이 만든 조선의 중세경제 질서는 한반도 여타 지역과 유사했을지라도 자연 환경적 측면, 그 중에서도 제주의 토질은 사회구조의 동일함과는 무관했던 것이다. 화산섬의 토양은 화산회토(火山灰土)가 대부분이어서 자갈 함량이 많고 경작토의 깊이도 얇다.⁶⁹⁾

선행 연구에서도 이 점을 지적하고 있다. 韓榮國(1981)과 김나영(2008)은 1601년의 제주 상황을 담은 『南槎錄』⁷⁰⁾의 기사 3건을 인용했다. 그런데 그 3건의 기사 중 2건은 김상헌이 쓴 것이 아니라 이전에 있던 기록을 김상헌이 인용한 것이다. 그러니 김상헌이 제주에 왔던 1601년보다 이른 시기의 기록 즉 조선전기의 기록이라 할 수 있다. 그러니 이들 기록은 제주유민이 처음 발생하던 15세기의 상황을 반영한 사료라고 할 수 있다. 그 기록은 먼저 『地誌』⁷¹⁾에 실려 있는 내용이다.

땅에는 바위와 돌이 많고 흙이 덮인 것이 몇 치(寸)에 불과하다. 흙의 성질은 푸석하고 건조하여 밭을 개간하려면 반드시 소나 말을 몰아서 밟아 쥐야 한다. 무명, 삼, 모시가 나지 않아 의식(衣食)이 모두 부족하다. 오직 해물을 캐서 그것으로 생업을 꾸려간다.

다음은 충암 김정(金淨)의 『濟州風土錄』⁷²⁾ 속의 내용을 옮긴 것이다.

3읍은 모두 한라산 기슭에 있어서 평지는 절반도 못되며 밭을 가는 것이 마치 물고기의 배를 가르는 것과 같다.

김상헌 자신이 관찰한 내용은 “농기구가 매우 작아 어린애 장난감 같았다. 그 이유를 물으니 ‘흙을 몇 치(寸)만 파도 모두 바위와 돌입니다. 그 때문에 깊이 팔수가 없습니다’한다”라는 기록이다.

3건의 기록 모두 유사한 내용이다. 열악한 토지환경으로 인한 생존의 어려움

69) 고광민, 2004, 『제주도의 생산기술과 민속』, 대원사, 15쪽.

70) 『南槎錄』은 청음 김상헌이 1601년 제주에 안무어사로 오고 가면서 남긴 기록이다. 1602년에 저술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홍기표 역주, 2008, 『南槎錄』, 제주문화원의 것을 활용한다.

71) 『地誌』는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인지 밝혀져 있지 않다. 『新增東國輿地勝覽』(1530)과 『南槎錄』(1602) 사이의 시기에 만들어진 제주의 『地誌』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다.

72) 『濟州風土錄』은 기묘사화로 제주에 유배되었던 충암(冲庵) 김정(金淨)의 1520년 기록이다.

을 전하고 있다. 『地誌』와 『濟州風土錄』의 두 기록은 조선전기의 것이고, 김상헌의 기록은 1601년 상황 즉 조선중기의 기록이지만 결과적으로는 내용은 같다. 토양 문제는 ‘거의 움직이지 않는 역사’ 요소이기 때문이다.

『조선왕조실록』에도 유사한 기사들이 있다.⁷³⁾ 그런데 『조선왕조실록』에는 단지 토지 척박만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출륙 유량의 원인이었음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기사들도 등장한다. 성종 대와 중종 대의 기록이다.

제주는 토지가 척박(瘠薄)하고 산업(産業)이 넉넉지 못하여, 전라도와 경상도 지방에 도망하여⁷⁴⁾

제주(濟州)는 땅이 좁고 사람은 많은데다가, 전토(田土)가 척박(瘠薄)하여 살아갈 수가 없으므로, 떠돌아다니며 사는 자가 매우 많아서⁷⁵⁾

제주는 토질이 척박해서 백성들이 살기 싫어하여 이주해 나오는 자가 많고⁷⁶⁾

모든 시기를 관철하는 장기지속의 토지 척박 요인이 특별히 성종, 중종 대의 기록에만 등장한다는 것은, 이 시기 유량민 현상이 심각한 사회문제였음을 말해 주고 있다. 이렇게 장기지속의 요인은 가장 밑바닥에서 거의 변하지 않는 요소로 느리게 작용하다가 사회구조 변동이나 특정한 사건이 불거질 때면 변화의 기초 동인으로 작용한다. 전(前)근대 제주사회 어느 시기에나 잠재해 있던 토지 척박 요인이 성종, 중종 대의 여러 사회모순과 결합하면서 출륙 유량의 기초 요인으로 작동했던 것이다.

그러니 토지 척박 요인만을 단독으로 내세워 출륙 유량의 원인이라 할 수는

73) 『세종실록』 권5, 세종 1년(1419년) 9월 11일 癸丑 (제주의 토지는 본래 메말라서 농사짓는 사람이 토지에서 부지런히 일하여, 애쓰고 힘써서 그 공력을 백 배나 들여도 항상 한 해 동안의 양식이 모자랄까 걱정하여, 농업을 하지 아니하고 상업에만 힘쓰는 자가 매우 많습니다 : 濟州土地磽薄, 農人之家, 服勤南畝, 艱難辛苦, 百倍其功, 而常有卒歲無食之嘆。因此, 不事農業, 而務行商賈者頗多; 『세종실록』 권36, 세종 9년(1427년) 6월 10일 丁卯 (제주는 토지가 본래 모두 모래와 돌이어서 농리(農利)가 풍족하지 못하므로 세공민의 생계가 진실로 걱정이 되는데: 濟州土地, 本皆沙石, 農利不饒, 小民之生, 誠爲可慮) 등.

74) 『성종실록』 권178, 성종 16년(1485년) 윤4월 11일 辛卯 (濟州土地瘠薄, 産業不裕, 逃散全羅, 慶尙地面).

75) 『성종실록』 권178, 성종 16년(1485년) 윤4월 19일 己亥 (濟州土窄人多, 加以田土瘠薄, 不能聊生, 流寓者甚多).

76) 『중종실록』 권92, 중종 35년(1540년) 1월 10일 癸卯 (濟州地薄, 民不肯居, 流出者刷還甚多).

없다. 이게 결정적 요인이라면 모든 시기에 걸쳐 출륙 유량이 일어났어야 한다. 항상 존재하는 요인이기에 토지 척박 요인은 출륙 유량의 결정적 요인이라기보다는 잠재적, 심층적 요인이라 하겠다.

그러하기에 제주의 척박한 토지는 브로델 모델의 지리적 시간이 적용되는 요인, 장기지속의 역사가 적용되는 요인이라고 하겠다. “인간을 에워싸고 있는 주위의 환경으로서 변화가 느리며 계속 반복되고 끊임없이 다시 시작하는 주기(週期)들로 이루어진 역사”⁷⁷⁾ 요인이며 “거의 시간 밖에 위치하며 생명이 없는 사물들과 접하고 있는 역사”⁷⁸⁾ 요인인 것이다.

2) 자연재해 요인

자연재해 역시 전(前)근대시대 여러 시점에서 발생하여 사회문제가 되었다. 그런 만큼 이 요인도 출륙 유량의 한 배경으로 작용했다. 장혜련(2006)은 출륙 유량의 원인으로 자연재해를 한 항목을 할애하여 설명했고 조성운(2005)과 김나영(2008)은 간단히 언급했다.

그러나 장혜련의 분석은 조금 주의를 가지고 읽어야 한다. 그는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난 제주지역의 자연재해 기록을 조사하여 표로 만들어 놓았다.⁷⁹⁾ 이 표에 의하면 출륙 유민이 대거 발생하는 성종~중종 무렵에는 오히려 자연재해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 성종 때 가뭄 한 번이 그것이다. 그보다는 다른 시기, 특히 소빙기⁸⁰⁾라고도 불리는 17세기인 효종, 현종시기에 자연재해가 집중되고 있다. 이시기에는 8번의 자연재해가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도 소빙기라는 17세기는 오히려 출륙 유민 현상이 잦아들고 있었다. 그러므로 자연재해 요인을 출륙 유량의 원인으로 내세우려면 다른 요인과 함께 고려하며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77) Fernand Braudel, 1949, (Translated by Sian Reynolds, 1992) *THE MEDITERRANEAN: and the Mediterranean World in the Age of Philip II*, New York: HarperCollinsPublishers. preface to the First Edition, p.xiv.

78) Ibid.

79) 장혜련, 앞의 논문, 16쪽.

80) 소빙기설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나종일, 1992, 「17세기 위기론과 한국사」, 『세계사를 보는 시각과 방법』, 창작과 비평사.

이태진, 「小氷期 천재변이 연구와 『朝鮮王朝實錄』-global history의 한 章」, 역사학회, 『歷史學報』 제149집, 1996.

박성래·소광섭·김연옥, 1996, 「이태진교수의 ‘소빙기 연구’에 관한 논의」, 역사학회, 『歷史學報』 제149집.

장혜련의 고찰과는 달리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성종~중종 무렵에 자연재해 때문에 출륙 유랑하는 기사가 나온다. 물론 17세기만큼의 자연재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성종 이전 시기의 기사에 비해서는 성종, 중종 때의 자연재해 기사가 많으며 구체적으로 그 때문에 출륙 유랑했다는 기록도 찾을 수 있다. 이는 앞 시기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내용이다.

중종 15년(1520년) 10월 18일 기사에는 “여역(厲役)이 크게 돌아 사람과 가축이 많이 죽고, 이뿐만 아니라 흉년이 매우 심하게 들어서 잇따라 사람이 죽어가므로, 정의(旌義)·대정(大靜) 같은 데는 인가가 다 비었다 하니”⁸¹⁾라는 대목이 나온다. 전염병과 흉년이 문제가 되고 있고, 그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한다. 물론 이 기사는 출륙 유랑이 아니라 사망으로 인한 인구 감소를 다룬 것이다. 하지만 이 역병과 흉년은 사망뿐만 아니라 출륙 유랑에도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같은 기사에 등장하는 특진관(特進官) 김석철(金錫哲)이란 사람의 입을 통해 당시의 상황을 짚어 보자.

신이 대정 현감이었을 때에는 인물이 매우 번성하였었는데 뒤에 제주 목사가 되어서 보니, 대정은 인물이 비어서 관노비(官奴婢)가 10명밖에 안 되어 신이 순행할 때에 지대(支待)할 수 없으므로 다 고을 안의 백성으로 관역(官役)을 맡게 하기에, 신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여 금지하였습니다. 이제 들건대 세 고을이 다 비었다 하니⁸²⁾

김석철은 제주와 인연이 많았던 모양이다. 대정현감과 제주목사를 재임했다고 한다. 그런데 그의 대정현감 재임 시기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나이와 관직 진출을 통해 추측컨대 성종 21년(1490년) 무렵으로만 짐작한다.⁸³⁾ 위 기사에 의하면 그 시절에는 대정현에 인물이 번성했다고 한다. 15세기 말까지만 해도 상황이 나쁘지 않았던 모양이다. 그런데 그의 제주목사 재임 시기⁸⁴⁾인 중종 6년(1511년)~

81) 『중종실록』 권40, 중종 15년(1520년) 10월 18일 壬寅 (厲疫大起, 人畜多死. 非徒此也, 年凶太甚, 死者相枕, 如旌義、大靜, 人戶皆空云).

82) 『중종실록』 권40, 중종 15년(1520년) 10월 18일 壬寅 (臣爲大靜縣監時, 人物至爲繁庶, 而後爲濟州牧使而見之, 則大靜人物空虛, 官奴婢不過十名. 臣爲巡行時, 無以支待, 皆以縣內百姓, 使執官役, 臣以爲不可而禁之矣. 今聞三邑皆爲空虛).

8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4, 719쪽.

84) 제주시, 2005, 『朝鮮王朝實錄을 통해 본 濟州牧使』, 347쪽.

중종 8년(1513년) 사이에는 대정현에 사람이 없어서 고작 관노비가 10명 수준이 었다는 것이다. 그러다가 발언을 하는 시점인 중종 15년(1520년)에는 아예 제주 3읍이 모두 비었다고 한다. 이는 15세기 말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중종 재위 기인 16세기 초반 즉 1511년~1520년 무렵에 제주에 심각한 전염병과 자연재해가 발생했음을 말해준다.

중종 대에는 계속해서 자연재해 기사가 이어진다. 중종 37년(1542년) 3월 7일 기사에도 “제주도의 세 고을은 토지가 메말라서 평시에도 백성들은 먹고 살기 어려운데 지난해의 큰 가뭄 때문에”⁸⁵⁾ 라는 가뭄 관련 내용이 나온다.

하지만 성종 4년(1473년) 3월 28일 기사를 보면 성종 대인 15세기 후반에도 흉년 때문에 출륙 유랑이 발생했음⁸⁶⁾을 알 수 있다.

제주(濟州)는 바다로 둘러 있어 사면에서 적을 받게 되므로 방어가 가장 긴요한 데, 요즈음 흉년으로 말미암아 군민(軍民)이 유산(流散)하여, 지금 전라도의 연변(沿邊) 여러 고을로 옮겨 사는 자가 많습시다.⁸⁷⁾

이 기사 이후의 중종 대와 명종 대에도 자연재해로 인한 출륙 유랑 기사가 이어진다. 이는 앞의 시기에서 보기 드문 현상으로 특히 16세기 중종 무렵에 자연재해가 심했음을, 그리고 중종 무렵의 출륙 유랑에는 자연재해가 큰 원인이 되었음을 말해 준다. 다음은 중종·명종 대의 기사들이다.

근년에 와서 제주(濟州)에는 흉년이 거듭되고 백성들이 흩어져 떠나고 있습니다.⁸⁸⁾

정축년·무인년 무렵에 제주의 연사가 흉년들었고, 또한 바다가 험악한데도 공상(貢上)이 여전하기 때문에 백성이 유랑했었으나⁸⁹⁾

85) 『중종실록』 권97, 중종 37년(1542년) 3월 7일 丁亥 (濟州三邑, 土地瘠薄, 雖平歲, 民猶艱食, 加以前年大旱).

86) 이는 세종 15년 윤8월 9일 기사를 제외하면 자연재해로 인한 출륙 유랑기사로서는 첫 기록이다.

87) 『성종실록』 권28, 성종 4년(1473년) 3월 28일 戊午 (濟州環海, 四面受敵, 防禦最緊, 而近因年荒, 軍民流散, 今於全羅道沿邊諸邑, 移寓者甚多).

88) 『중종실록』 권32, 중종 13년(1518년) 2월 6일 乙亥 (近年濟州, 連年凶荒, 人物流移).

89) 『중종실록』 권45, 중종 17년(1522년) 6월 26일 辛丑 (濟州年運凶荒, 且海惡而貢獻如前, 故百姓流離也).

제주 선로사(濟州宣勞使)인 홍문관 부교리 윤의중(尹毅中)이…“해마다 흉년이 들어 백성과 물자가 모두 흩어지니”⁹⁰⁾

앞서 유민 발생의 원인은 시대와 지역적 특성에 따라 다르다고 밝혔다. 제주 유민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16세기 중종 이후에는 자연재해가 큰 요인이 되었던 것 같다. 물론 출륙 유량은 단일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현상이 아니다. 앞서 보았던 장기지속의 요소, 거의 움직이지 않는 역사 요소로서 토질 척박이 이미 바탕에 깔려 있었다. 그 바탕 위에서 16세기의 빈번한 자연재해가 유민 현상을 촉발시킨 것으로 보인다.

자연재해가 빈발했다고 해도 이것이 토지 척박 요인처럼 언제나 밑바닥에 기본으로 깔려 있던 요인은 아니었다. 15세기, 16세기, 17세기의 자연재해가 각각 달랐다. 강도도 달랐고 사회에 끼친 영향도 조금씩은 달랐다. 척박한 토지 요인처럼 단절 없이 이어졌던 요인이 아니라 분절을 가지고 간헐적으로 이어졌던 요인이다. 그러니 이 요인은 장기지속의 요인이 아니다. 중기지속, 국면(공중튀르)적 요소, ‘완만한 리듬을 가진 역사’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자연재해 역시 유민 발생의 결정적 요인은 아니었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자연재해가 더 심했던 시기는 소위 소빙기라 일컫는 17세기였다. 근데 그때는 오히려 유민 현상이 잦아들었다. 자연재해가 유민 발생의 결정적 요인이라면 15세기보다 17세기에 유민 발생이 더 빈번했어야 한다. 그러나 사실은 그 반대다. 때문에 자연재해는 유민 발생의 한 요인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결정적 요인이라 말할 수는 없다.

3. 제주유민 발생의 사회구조적 배경

90) 『명종실록』 권19, 명종 10년(1555년) 10월 12일 癸酉 (濟州宣勞使弘文館副校理尹毅中… 連年凶荒, 民物流亡殆盡).

1) 과다 수취 요인

척박한 토지와 자연재해 등의 자연환경 요소만이 유민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유민 발생은 그 사회의 정치적·경제적 여러 모순 속에서 국가가 이를 통제할 수 없을 때 비롯된다.⁹¹⁾ 국가권력의 수탈은 전(前)근대사회에 항상 존재했던 초역사적 현상이라고도 한다.⁹²⁾

제주유민을 다뤘던 선행 연구들도 이 점은 빠지지 않고 지적했다. 韓榮國(1981: 811쪽)과 박찬식(2004: 137쪽)과 김나영(2008: 23쪽)은 “조선왕조의 집권적 지배체제가 확립됨에 따라”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고, 지방관이 공물 진상과 노역 징발을 과다하게 책정 수취하여 출륙을 유도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 분석은 타당해 보인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과거와 비교하여 어느 정도 수탈이 심해졌는지는 밝히지 못하고 있다. 사료 부족이 원인일 수 있다. 특히 출륙 유민이 대량 발생하던 조선전기의 사료에는 그 수탈의 정도를 짐작케 하는 기사를 찾기가 어렵다.

그러다보니 연구자들은 대부분 조선 중·후기의 사료⁹³⁾를 가지고 수탈 강화를 논증했다. 대부분의 선행 연구가 활용한 자료는 『南槎錄』이다. 하지만 앞서 소개했듯이 『南槎錄』은 1601년의 제주 상황을 담은 기록이다. 그러나 출륙 유량이 본격화된 것은 성종 대의 일로써 『南槎錄』보다 120~130년 앞선 시기이다. 15세기 사건을 17세기 사료를 가지고 분석을 한 것이다. 심지어 19세기 제주민란의 원인이 되었던 수탈 현상을 가지고 조선전기 유민 현상을 설명하는 경우도 있었다.

물론 이것은 조선전기와 조선후기가 모두 비슷한 정도로 수탈이 이뤄졌을 것이라는 가정 아래서 분석한 것이다. 그렇게 가정 한다면 조선 중·후기의 사료를 활용한 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전근대사회에서는 국가권력에 의한 수탈이 초역사적 현상이었을 만큼 항상적이기도 했기에 그러한 가정은 가능하며 그런 만큼 조선 중·후기의 기록도 제한적이거나 신뢰할 만하다.

91) 오창훈, 앞의 논문, 1쪽.

92) 배향섭, 앞의 논문, 10쪽.

93)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이를 위해 동원한 사료는 모두 조선 중·후기 사료인 『南槎錄』(김상헌, 1601), 『濟州風土記』(李健, 1629), 『耽羅志』(이원진, 1653), 『南槎日錄』(李增, 1679), 『南宦博物』(이형상, 1703), 그 외 18세기 사료인 『제주대정정의읍지』, 19세기 전반 자료인 『耽羅事例』, 19세기 중반 자료인 『耽營事例』 등이 있다.

물론 과도한 수취가 전근대 사회의 보편적 현상이었다고 해도 국면마다 다른 특성은 있었을 것이다. 국면마다 수취의 강도도 다르고 사회에 끼친 영향도 다르다. 그러므로 국면(콩조뛰르)마다 어느 정도는 차별적인 수탈이 전개되긴 했다.

그러므로 과다 수취 요인은 전(前)근대 시대의 보편적 현상이면서도 국면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작용했던 완만한 리듬의 요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그게 아니라 거의 변하지 않는 요인이었다면 제주유민 현상도 15~17세기만이 아니라 전(前)근대 시대 내내 발생했어야 한다. 권력에 의한 수탈은 ‘척박한 토지’처럼 장기지속의 요인이 아니다. 시대에 따라 수탈의 강도는 달랐다. ‘거의 변하지 않는 역사’ 요인이 아니라 중기지속의 요인으로 봐야 한다.

선행 연구 중 수탈 강화를 입증하기 위해 동원한 논리로 ‘2중 수취론(장혜련, 2006)’과 ‘왜구로 인한 과다 균역론’(박찬식, 2004; 장혜련, 2006)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먼저 2중 수취론의 핵심은 이렇다. 조선이 건국되면서 조선의 중앙정부와 제주지역의 토호가 이중으로 수탈을 했기 때문에 제주민의 고통은 심화되었고, 그것이 출륙 유량을 촉발시켰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고려말 몽골 지배기의 제주사회는 3중 수탈 체제였다.⁹⁴⁾ 몽골의 수탈, 고려 중앙정부의 수탈, 제주지역 토호의 수탈이 그것이다. 이처럼 오히려 조선전기보다 고려말 시기가 더 심한 수탈이 자행되었던 구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때는 출륙 유민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다. 게다가 II-1-1) ‘조선정부의 제주 정치 장악’에서 봤던 것처럼 토호의 착취는 조선 세종 무렵이면 확연하게 약화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2중 수취론’을 가지고 조선전기 제주유민 현상을 설명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하고 봐야 한다. 물론 2중 수취론이 무용하다는 말은 아니다. 다만 그 요인만을 일방적으로 강조할 때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미다.

왜구의 빈번한 침범과 그에 따른 제주지역 균역의 강화로 인해 제주민이 곤궁에 빠져 출륙 유량했다는 논리도 주의를 요한다. 왜구 침범이 심했던 시기와 출륙 제주유민 대량 발생 시기가 서로 조응하지 않는다. 소위 ‘전기왜구’라고 하는 1350년 경인왜구 시기는 고려말이다. 이때 제주에서 출륙 유민현상이 있었다는 기록은 없다. 또한 ‘후기왜구’는 조선 명종 때의 일이다. 반면 사료에 등장하는

94) 김일우, 2000, 『高麗時代 耽羅史 研究』, 신서원, 340쪽.

출륙 제주유민 현상은 그보다 앞선 성종 때부터 본격화되었다.

이런 몇몇의 제한성을 주의하며 읽는다면 선행 연구에서 제시한 제주유민 발생의 과다 수취 요인은 충분히 귀 기울일 만하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과다 수취 요인을 역(役)과 진상·공물로 나누어 더욱 세밀히 분석하되, 선행 연구의 성과를 충분히 계승하며 필요에 따라 요약 소개도 곁들일 것이다.

(1) 과도한 역(役) 부담

역(役)은 국가에서 민의 노동력을 징발하는 것을 말한다. 그 역은 일시적인 요역과 항구적인 국역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국역은 신역(身役)인데 신역은 다시 균역과 직역(곧 定役)으로 나눌 수 있다.⁹⁵⁾

조선시대 제주사람들은 많은 역(役)을 감당해야만 했다. 잦은 왜구의 침입으로 인해 균역은 타 지역에 비해 매우 고달팠다. 이들이 저야 했던 균역의 부담은 타 지역에는 존재하지 않고 제주에만 존재했다는 여정(女丁) 즉 여성에게 균역을 지웠던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증명된다.

여정에 대한 기록은 김상헌의 1602년 기록인 『남사록』에 처음 등장하며 숙종 때 기록인 이증(李增)의 『남사일록』에서도 확인 된다. 이들 기록은 제주유민이 처음 발생했던 15세기보다는 늦은 때의 기록이긴 하나 중세 제주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전제를 한다면, 15세기 제주의 균역 부담을 살필 때 충분히 활용할 만하다.

본주의 성안의 남정은 500이고, 여정은 800이다.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제주의 말이다. 대개 남정이 매우 귀하여 만약 사변을 만나 성을 지키게 되면 민가의 건강한 부녀자를 골라 성위에다 내다 세워 여정이라 했는데 3음이 모두 그렇게 한다.⁹⁶⁾

타 지역에 존재하지 않았던 여성 균역이 제주의 과도한 균역 부담을 상징한다고는 하지만, 사실 균역보다 더 큰 부담이었던 것은 직역(定役)이었다. 균역이 제주민의 삶을 짓눌렀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시대 제주에서 가장 힘든 역을 상징하

95) 李載薰, 2003, 「국가재정」,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24, 탐구당, 480쪽.

96) 김상헌, 1602, 『남사록』 권1, 9월 22일 丙子.

는 소위 ‘6고역’에 균역이 포함되지 않았었다. 아병(牙兵)이 6고역에 들어간 것은 19세기의 일이다.⁹⁷⁾

이것은 조선전기에 균역보다 더한 정역이 있었다는 말이다. 그것은 앞서 말한 6고역으로 상징된다. 6고역은 시대에 따라 변동이 있었으나 대체적으로 목자(牧子) · 답한(答漢) · 선격(船格) · 과직(果直) · 잠녀(潛女) · 포작(鮑作)을 지칭하였다. 그러나 18세기 후반에 이르러서는 목자 · 포작 · 지장(紙匠) · 유군(遺軍) · 답한 · 선격을, 19세기 전반에는 아병(牙兵) · 목자 · 방군(防軍) · 과직 · 선격 · 답한, 혹은 포작 · 답한 · 목자 · 방군 · 선격 · 아병을 지칭하였다.⁹⁸⁾

여성까지 담당해야했던 균역보다 더 고통스러운 정역들이 존재했던 제주도였기에 제주사람들의 역(役) 부담은 실로 타 지역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였다. 그래서 ‘1인 10역’을 감당해야 했다는 말도 전한다.⁹⁹⁾ 물론 이것은 과장이거나 문학적 수사일 수는 있다. 하지만 다음의 기록을 보면 제주도의 역 부담이 타 지역보다 훨씬 심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본도(本島)의 세 고을은 가난하여 의지할 바가 없고 역(役)이 다른 곳의 배나 되어, 심지어는 부모(父母)를 팔고 처자(妻子)를 팔며, 자기 자신이 품을 살고 동생을 파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는데, 팔린 자가 모두 58명이 되었습니다.¹⁰⁰⁾

물론 제주유민이 처음 발생하던 15세기를 한참 지난 1702년의 기록이긴 하다. 그러나 사회변동 폭이 크지 않다는 중세적 상황을 감안하다면 제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이다. 과도한 역 때문에 부모처자를 팔고 동생을 팔아야 할 지경이었다. 그 부담을 위 자료는 명확하게 ‘役倍他處’ 즉 ‘타 지역의 두 배’가 된다고 했다.

이처럼 과도한 역 부담 때문에 제주민은 섬을 떠나 출륙유랑할 수밖에 없었다. 이를 직접 보여주는 기록도 있다.

97) 6고역(六苦役)은 조선시대 제주 지역에서 가장 감당하기 힘든 여섯 가지 직역을 총칭해서 부르는 말이다. (김동진, 「18·19세기 答漢의 신분적 지위와 그 변동」, 『역사민속학』 3, 1993, 61~62쪽; 양진석, 「18·19세기 제주의 收取制度和 特徵」, 『탐라문화』 24, 2004, 120쪽 참조).

98) 앞과 같음.

99) 李衡祥, 1704, 『南宦博物』 誌貢 (一人常兼十役).

100) 『속중실록』 권37, 숙종 28년(1702년) 7월 12일 辛酉 (本島三邑, 貧殘無依, 役倍他處, 甚至賣父母鬻妻子, 雇當身賣同生之境, 賣鬻者都合爲五十八名).

제주(濟州) 사람들이 役을 피(避)하여 하삼도(下三道)의 연해(沿海) 여러 고을에 와서 우거(寓居)하는데¹⁰¹⁾

위 기사는 처음 제주유민 현상이 본격적으로 사회 문제가 되었던 성종년간의 기록이다. 이 기록은 제주 지역에 가해졌던 과도한 역(役) 부담이 출륙 유랑의 직접적 요인 중의 하나였음을 명징하게 보여주고 있다.

(2) 과도한 진상 · 공물 부담

앞서 살핀 과도한 역의 부담은 사실 균역을 제외하면 대부분 진상과 공물 마련을 위한 직역(定役)의 부담이다. 6고역으로 대표되던 직역이 바로 그것이다. 때문에 사실상 역의 부담과 진상 공물 부담은 한 맥락 속에 있는 부담이긴 하다. 그러나 의미의 차이가 있기에 구별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공납은 租·庸·調 세법의 구성요소 중 하나다. 지방의 특산물을 지방민이 세금으로 납부하는 것이다. 반면 진상은 본래 민인의 세금이 아니라 지방관이 임금에게 바치던 예물일 뿐이었다. 이처럼 다른 명분으로 만들어진 것이긴 하지만 백성의 입장에서는 매 한가지였다. 지방관의 몫인 진상 역시 지방관 개인이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에게서 징수하여 왕에게 올려 보냈기 때문이다. 때문에 민의 입장에서는 공납과 진상을 구별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다.

그런 까닭으로 여기서는 진상과 공납의 부담을 몽땅그려 함께 다루고자 한다. 과도한 공납과 진상의 부담이 제주유민 발생의 또 하나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유민을 발생시킨 진상 · 공납도 크게 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국가 제도에 의한 공식적 수취와 지방관의 자의적 수취가 그것이다.

『조선왕조실록』에는 과다 수취로 인한 유민 발생을 명시한 기사들이 몇 있다. 기사의 시점과 수취 명목을 고찰하여 어느 시기의 수취가 그리고 어떤 종류의 수취가 제주민을 바다로 내몰았는지를 살펴본다. 또한 국가의 제도적 수취였는지, 지방관의 자의에 의한 수취였는지도 함께 고찰한다.

먼저 『조선왕조실록』의 기록 속에서 과도한 진상이 출륙 유랑의 원인이 되

101) 『성종실록』 권85, 성종 8년(1477년) 10월 16일 庚戌 (濟州人避役來寓下道沿海諸邑).

있음을 보여주는 기사를 소개한다.

제주의 일은 조정이 늦게 들어서 이제는 구제할 수 없으나, 신 등도 염려되므로 다시 그 폐해를 알아보아서 아뢰려고 하였습니다. 듣건대 그곳 사람들은 바다에서 나는 것으로 살아가는데 진상(進上)하는 수량이 많으므로 백성이 지탱하지 못하고 도산한다 하니¹⁰²⁾

많은 양의 진상으로 인해 제주사람들이 도산함을 전하고 있다. 이것이 직접 출륙 유량으로 이어졌다고 기록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중종 대에 출륙 유량이 많았던 점을 생각한다면, 과도한 진상이 유민 발생의 큰 원인이 되었음은 짐작할 수 있다. 1년 뒤의 다음 기사도 과도한 공납의 부담을 전한다.

본주(本州)는 민호(民戶)가 사망하면 공채(公債)의 독촉이 친족과 절린(切隣)에게 미칩니다. 그래서 모두들 떠나 흩어져 받은 폐허가 된 실정이니, 공물(貢物)을 건감 시켜 주소서.¹⁰³⁾

제주 목사 이운(李耘)이 올린 글 내용이다. 사망한 자의 공물 부담이 이웃과 친족에게 전가되어 사람들이 유랑하고 마을의 반은 폐허가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공물 부담을 줄여달라고 계를 올렸다. 이것을 보면 지방관의 자의적 수탈 이전에 국가의 공식적 공물 부과 자체가 많았음을 알 수 있다. 국가의 수취량 책정이 이미 제주민이 감당할 규모를 넘어서 있었던 것이다. 앞서 역의 부담을 살필 때 타 지역에 비해 두 배 이상이 되었음을 보았는데, 공물 부담 역시 마찬가지였다.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부과한 양이 이미 제주민이 감당할 수준을 넘어서 있었다.

게다가 중종 대는 앞서 보았던 것처럼 자연재해가 많았던 때였다. 자연재해에 수탈까지 겹치니 유민 발생은 더욱 빈발할 수밖에 없었다. 다음의 기사 안에는 그 두 가지 요인이 모두 등장한다.

102) 『중종실록』 권40, 중종 15년(1520년) 10월 18일 壬寅 (濟州之事, 朝廷晚聞, 今則不可救也。 臣等亦以爲慮, 將更聞其弊而欲啓耳。 聞其處之人, 以海產爲生利, 而進上數多, 故民不能支而逃散).

103) 『중종실록』 권41, 중종16년(1521년) 3월 10일 壬戌 (本州死亡民戶公債之督, 及於族隣, 竝皆離散, 半爲丘墟, 請蠲減貢物).

정축년·무인년 무렵에 제주의 연사가 흉년들었고, 또한 바다가 험악한데도 공상(貢上)이 여전하기 때문에 백성이 유랑했었으나¹⁰⁴⁾

출륙 유랑의 원인이 흉년과 함께 공상(貢上) 즉 공납과 진상에 있음을 밝히고 있다.

국가의 제도적 수취 외에 출륙 유랑을 더욱 촉발했던 것은 지방관의 자의적 수취였다. 다음의 두 기사는 지방관의 자의적 수탈과 유민 발생과의 관계를 보여 준다.

제주 목사 장림(張琳)이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어 진상(進上)을 빙자하여 민간의 좋은 말을 다 빼앗았으며, 농사철을 당하여 도로를 수리한다는 핑계로 민간을 침노하여 부역시켰으며, 또 우물가에 백성이 치전(治田)하는 자가 있었는데, 우물 가까이 밭을 만들 수 없다 하고 곡식을 다 베어버렸습니다……이로 말미암아 주민들이 실농(失農)하여 먹고 살 수가 없어서 내지(內地)로 유이(流移)한다고 합니다.¹⁰⁵⁾

대간이 아된 말이다. 제주 목사 장림이 진상을 빙자하여 수탈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브로델의 모델에 따른다면 단기지속 즉 개별 사건에 해당한다. 사실 장림 목사라는 구체적 개인은 역사 속에서 브로델이 말한 ‘먼지’일 수 있다.

굳이 장림 목사가 아닌 다른 목사라 하더라도 구조는 그러한 수탈을 사실상 보장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제주도는 변경 지대이고 바다로 격리된 섬 지역이다. 이것은 브로델이 말한 지리적 시간과 관련된 조건이다. 거의 변하지 않는 장기지속의 역사인 것이다. 서울과 멀리 떨어진 섬, 변경 지대였기에 굳이 장림이라는 목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지방관이 쉽게 수탈할 수 있는 지리적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섬이다.

또한 제주도는 왜구의 침범이 잦았기 때문에 주로 무관을 지방 수령으로 파견했던 지역이다. 무관 수령의 파견은 하나의 콩종튀르 즉 중기지속의 추세라고 할

104) 『중종실록』 권45, 중종 17년(1522년) 6월 26일 辛丑 (濟州年運凶荒, 且海惡而貢獻如前, 故百姓流離也).

105) 『중종실록』 권12, 중종 5년(1510년) 11월 21일 癸酉 (濟州牧使張琳, 赴任未幾, 依憑進上, 奪盡民間良馬, 當農月, 托以修治道路, 侵役民間. 且井邊民有治田者, 以爲不可近井作田, 盡艾禾穀…由是州民失農, 不能資食, 流移內地).

수 있다. 민본의 유교 이념에 충실하지 못한 무관들이라 수탈은 문관이 파견된 다른 지역보다 심했다. 비단 장립 목사라는 개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것이다.

즉 서울과 떨어진 섬이라는 장기지속, 무관 파견이라는 중기지속 위에 장립 목사의 비행이라는 단기지속 즉 개별 사건이 겹치며 제주민에 대한 수탈은 진행되었던 것이다.¹⁰⁶⁾

이것은 국가의 공적 수취의 범위를 넘어선 사적인 수탈이다. 때문에 제주목사의 자질에 관한 논의가 조정에서 여러 번 나왔다. 명종년간의 다음 기사도 지방관의 사적 수탈이 유민 발생을 초래한 경우다.

항차 근래에는 제주 목사를 전연 적임자를 가리지 않고 탐오한 자에게 말기므로 침학(侵虐)을 극도로 하기 때문에 백성들이 원망하기를 ‘차라리 왜놈에게 죽겠다’고 한답니다. 이로 본다면 백성들의 곤궁과 고통을 알 만합니다. 대정현(大靜縣) 등의 고을은 현재 남아 있는 백성이 50~60여 호(戶)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¹⁰⁷⁾

지방관의 자의적 수탈이 극심했음을 보여준다. ‘차라리 왜적에게 죽겠다’라고 할 정도였다. 그 결과 제주민이 유랑의 길로 나서 대정현의 경우 50~60호밖에 남지 않았다고 한다.

제주의 지방관으로 주로 무관을 파견한 것은 나름의 이유가 있었으나 조정에서도 이것을 문제로 여기긴 했다. “평소에 방어(防禦) 때문에 으레 무신(武臣)을 보낸”¹⁰⁸⁾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그것이 사단이 되었다. 문신들의 편견인지 모르겠지만 무관 목사들이라 문관보다 탐학과 혹독한 형장을 자행한다는 것이다.¹⁰⁹⁾ 그게 문제가 되어 선조 33년(1600년)에 왕이 “방어가 긴요한 곳에 번번이 문관을 보낼 수는 없더라도 이따금 문관을 차견하여 보내라”¹¹⁰⁾라는 명령을 내릴 정도였

106) 브로델의 장기지속의 시간은 자연, 사회구성체, 심성에 해당하는 구조와 관련된 시간이며, 중기지속은 흔히 경제적 주기변동과 관련된 쿵중튀르의 시간 그리고 단기지속은 주로 정치적 행위와 관련된 사건사를 말한다. 이 점을 염두에 둔다면 15~17세기 제주 유민 연구에서는 무관 지방관 파견이라는 일련의 정치적 결정이 중기지속적 차원에 거꾸로 영향을 미치는 특이한 경우가 된다. 결국 층위 간 상호관계를 확인하면 서도, 브로델의 구상과는 다르게 아래 차원에서 위 차원으로서의 영향이 아니라, 위 차원에서 아래 차원으로서의 영향과 상호결속을 보여준다.

107) 『명종실록』 권18, 명종 10년(1555년) 1월 11일 丁未 (況且近來, 濟州牧使, 專不擇人, 付之於貪黷之手, 極其侵虐, 故其民怨之曰: ‘寧死於倭奴’ 云。 以此見之, 民生之困苦, 可知矣。 至於大靜等縣, 見存民不過五六十餘戶云)。

108) 『선조실록』 권140, 선조 34년(1601년) 8월 3일 戊辰 (平時每爲防禦之故, 例遣武臣)。

109) 『선조실록』 권140, 선조 34년(1601년) 8월 3일 戊辰 (例遣武臣, 刑杖常酷。 其地之民, 困於侵虐)。

다.

그러나 그 관행은 쉽게 고쳐지지 않았다. 거의 50년이 지난 인조 26년(1648년)에도 “제주 목사(濟州牧使)를 매양 무인으로 차임하여 보내기 때문에 백성들이 매우 고통스럽게 여기고 있으니, 의당 문관을 기용해야 합니다”¹¹¹⁾라는 건의가 올라가고 있었다. 더하여 세기가 바뀐 18세기 정조 즉위년(1776년)에도 문관과 무관을 번갈아 차임하길 청하는 장계¹¹²⁾가 등장한다. 그만큼 무관 목사 파견은 탐학과 과다 수취의 대명사가 되었던 모양이다.

과다 수취와 관련된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과다 수취로 인해 제주사람들이 출륙 유랑했음을 보여주는 기사는 종종 대에 가장 많이 나온다. 기록만으로 본다면 종종 때가 가장 수탈이 심했던 시기임을 알게 된다.

출륙유랑이 처음 발생했던 15세기에서는 한참 지난 뒤의 기록이긴 하지만 1602년 김상헌의 『남사록』은 제주도 사람들이 저야 했던 공납의 부담을 보다 생생하게 전하고 있다.

고을의 풍속이 처첩을 아울러 둔 자가 많은데, 포작배들은 홀아비로 살다 늙어 죽는 자가 많다. 그 이유를 물으니, “본주(本州)가 공물로 바쳐야 할 전복의 수량이 매우 많고, 관리들이 공무를 빙자하여 사리를 도모하는 것이 또한 몇 배나 됩니다. 포작배들은 그 고역을 견디지 못하여 유망하거나 익사하여 열에 두셋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공물을 거두는 것이 옛날보다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자신은 오래도록 바다에 있고, 그 처는 오래도록 감옥에 갇혀서 원한을 품고 고통을 감내하는 실상이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이웃에 과부가 있다 해도 오히려 걸인 행세를 하다가 죽을지언정 포작인의 아내가 되려고는 하지 않습니다”라고 한다.¹¹³⁾

앞서 종종 때의 기록은 말(馬) 수탈에 대한 기사였다. 그런데 1602년 기록에서는 특히 전복 진상이 큰 고통이었음을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또

110) 『선조실록』 권128, 선조 33년(1600년) 8월 11일 辛巳 (防繁之地, 雖不可每遣文官, 有時差文官).

111) 『인조실록』 권49, 인조 26년(1648년) 10월 3일 甲午 (濟州牧使每以武人差遣, 民甚苦之, 宜用文官).

112) 『정조실록』 권1, 정조 즉위년(1776년) 5월 20일 庚寅 (本州牧使文武輪差之請, 隨時量宜, 毋令專差也).

113) 김상헌, 1602, 『남사록』, 권1, 1601년 9월 22일 丙辰.

한 수탈은 국가적 수탈과 지방관의 자의적 수탈이 병행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제주사람들이 유망의 길로 나설 수밖에 없었음을 말해준다. 그 결과 포작역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결혼도 못할 정도의 기피 대상이 되고 있을 정도였다.

그리고 위 기록에 붙여 전복 진상의 종류와 수량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본주(本州-제주목을 말함: 역자 주)의 공안(貢案)은 해마다 별진상이 추복 3,030첩, 조복 250첩, 인복 910주지, 오징어 680첩이다. 사재감에 바치는 공물로는 대회전복 500첩, 중회전복 700첩이다. 대정(大靜)현은 대회전복 500첩, 중회전복 250첩이다. 정의(旌義)현은 대회전복 500첩, 중회전복 195첩이다. 이는 모두 삼읍의 포작에게서 거두어들이는 것인데, 그 밖에 미역과 수령이 봉송하는 수량은 별도로. 온 섬의 물력이 이 때문에 거의 없어진다.¹¹⁴⁾

『남사록』에는 전복 이외에도 굴 진상과 관련된 기록도 구체적으로 남아 있다. 봉진하던 굴의 종류와 수량이 자세히 소개된다.

제주목의 1년 24회 봉진(封進)하는 수와 진공(進貢)하는 수: 유자 960, 감자 29,470, 금굴 1,420, 유감2,800, 동정굴 3,040, 산굴 540, 청굴 530, 당유자는 결실의 많고 적음에 따라 바친다. 장원서에 바치는 것은 세전에 유자 280, 감자 500, 금굴 1,000, 유감 700, 동정굴 2,000이고 세후에 감자 500, 산굴 500, 청굴 2,000이다. 대정현은 유자 180, 감자 530, 금굴 500, 유감 400, 동정굴 750, 청굴 50이다. 정의현은 유자 175, 감자 525, 금굴 500, 유감 390, 동정굴 740, 청굴 750이다. 진상 외에 더 거두는 수량과 수령들이 개별적으로 거두는 것은 별도로 한다. 진공의 수가 이렇게 많은데 혹시 결실의 수량이 부족할 때에는 매년 7~8월 목사군관이 촌가를 순시하며 굴유가 있는 곳에 붓으로 하나하나 점을 찍어 장부에 기록해 둔다. 가을이 되어 굴유가 익는 날이며 장부와 대조하며 거두어들인다. 비바람에 손상을 입었든가 까마귀나 참새가 쪼아 먹은 것이 있으면 집주인에게 그 나머지를 징수하고, 만약 징수할 수 없으면 장부에 적힌 대로 바치도록 한다. 이 때문에 민가에서는 굴유를 독약과 같이

114) 앞과 같음.

보고 마땅히 심고 가꾸지 아니한다. 굴유 나무가 있는 자 또한 많이 잘라버려 관가에서 문책하는 근심을 모면한다고 한다.¹¹⁵⁾

제주사람들이 바쳐야 했던 진상물 중 굴 종류를 아주 상세히 기록해 놓았다. 그런데 그 굴을 수탈하는 장면이 인상적이다. 관리들이 촌가를 돌아다니며 굴의 수를 직접 세고 표시를 했다. 자연 손실분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일일 터인데, 그 손실분마저 모두 징수해 갔다. 물론 과도한 굴 진상 때문에 출륙유량 했다고 직접적으로 적시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 부담이 매우 컸음은 능히 짐작할 수 있다.

이처럼 『남사록』은 제주유민이 처음 발생하던 15세기의 기록은 아니지만 『조선왕조실록』의 기록과는 달리 진상의 폐해를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제주지역에 내려진 진상 공물의 부담이 직접적으로 제주민의 출륙유량을 자극했음은 생각할 수 있겠다.

수탈은 전근대사회에 항상적으로 존재했던 요소였다. 하지만 수탈의 강도는 시기마다 달랐다. 그렇기에 15세기 수탈과 16세기 수탈은 장기지속적 요인이 아니라 중기지속 즉 국면(쿵중튀르)적 요소라고 하겠다. 특히 16세기 중종 대에 유민 발생이 많았던 것은 앞의 장기지속으로서의 토지 척박 요인에 중기지속의 자연재해, 수탈 심화 요인이 겹쳐서 작용했기 때문으로 생각할 수 있겠다.

2) 경제변동에 따른 요인

(1) 조선전기 제주 경제구조의 변화

자연환경적 요소 그리고 관의 수탈 외에 경제 위기 역시 사람들을 자기 땅에서 떠나게 한다. 여기서는 먼저 조선전기 제주 경제구조를 살피고 그 경제구조의 변동으로 인한 산업기반의 붕괴를 고찰한다.

기존의 조선전기 경제사는 토지제도와 수취체제 연구가 주류를 이뤘다. 토지와 농민을 기반으로 중세 권력이 유지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서 보았던 것처럼 제주지역의 경우는 많이 다르다. 낮은 토지 생산성 때문에 농업은 부차적이었

115) 김상헌, 1602, 『남사록』, 1601년 10월 23일 丁亥.

다.

농업이 부차적이었던 만큼 토지제도에 관한 연구도 드물다. 주된 생업이 아니었기에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한 것은 당연하다. 그나마 축적된 것이 수취와 관련된 연구이며 그 중에서도 진상 공물 연구가 주종을 이룬다.¹¹⁶⁾

농업이 주된 경제 토대가 아니었다면 다른 방편으로 생계를 도모했을 것이다. 농업이 아닌 해상교역이 그 역할을 담당했다고 흔히 언급된다. 하지만 구체적인 연구는 많지 않고 선언적으로 말해지는 수준이다. 해상왕국 탐라가 쇠퇴한 것도 유교문화의 유입¹¹⁷⁾ 즉 조선의 농본주의 정책 때문이라고 말해지기도 한다. 하지만 구체적인 분석은 드물다. 그러기에 그 주장이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갖는지도 의문이다.

그럼에도 어쨌거나 농업의 위상이 부차적이었다는 주장은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 중앙집권을 강화했던 조선정부가 제주의 척박한 토질을 인식하고는 양전을 포기했던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그 만큼 제주경제에서 농업의 비중은 육지와 달리 높지 않았음이 확실해 보인다.

농업이 주가 아니었다면 조선시대 제주의 주된 산업기반이 무엇이었는지 즉 제주사람들 대다수가 어떤 수단으로 먹고 살았는지를 밝히는 것은 중요하다. 또한 그것을 정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주된 산업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살피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 더불어 산업기반의 변화를 초래한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영향은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고찰하는 것 역시 이 시대 제주의 경제상황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를 밝히기 위해 『조선왕조실록』에서 제주의 생업을 설명하는 기사를 대부분 뽑아냈다. 그리고 그것을 시기 순으로 나열하여 생업수단의 변화를 살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고대 탐라국 시기의 생업수단부터 추적할 필요가 있다.

116) 제주지역의 수취체제, 진상을 다룬 연구물로는 다음의 논문들을 참고할 수 있다. 하지만 조선전기를 다룬 연구는 드물고 대부분 조선후기를 대상으로 한 연구물들이다.

박찬식, 1996, 「19세기 濟州지역 進上의 실태」, 탐라문화연구소, 『탐라문화』 제16호.

권인혁·김동전, 1998, 「조선후기 제주지역의 수취체제와 주민의 경제생활」, 탐라문화연구소, 『탐라문화』 19호.

박찬식, 2000, 「『탐라순력도』에 보이는 제주진상의 실태」, 탐라순력도연구회, 『탐라순력도연구논총』, 제주시.

나가모리 미쯔노부(長森美信), 2003, 「조선후기 제주 進上物 조달과 수송」, 탐라문화연구소, 『탐라문화』 23호.

양진석, 2004, 「18·19세기 제주의 收取制度和 特徵」, 탐라문화연구소, 『탐라문화』 24.

117) 송성대, 1997, 『문화의 원류와 그 이해』, 파피루스, 274쪽.

전(前)근대사회 경제구조의 변화는 근대사회만큼 크지 않았기 때문에 가급적 오래 전 시간부터 살펴보는 게 의미가 있다. 탐라국은 기원 전후에 출현한 것으로 추정한다. 탐라국의 생업에 관한 내용은 다음의 기록에서 엿볼 수 있다.

배를 타고 왕래하며 中韓에서 무역한다.¹¹⁸⁾

오래 전 탐라국 시대부터 제주섬 사람들은 배를 타고 나가 외부 세계와 교역을 통해 생존을 도모할 수밖에 없었다. 여러 고고학적 성과가 이를 증명하는데¹¹⁹⁾ 특히 이때의 해양교역은 1928년 제주시 산지항 축조 공사 당시 발견된 漢나라 시대 貨幣 유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¹²⁰⁾ 하지만 거기에는 왜 해양으로 나가야 했는지, 그리고 어떤 품목을 가지고 가서 교역했는지는 나타나 있지 않다.

그 다음 찾을 수 있는 기록은 고려초기의 생업수단을 보여주는 기사다. 고려시대 正史라 할 수 있는 『고려사』에는 다음의 기록이 나온다. 고려 문종 12년(1058년)의 기사다.

탐라는 지질이 척박하고 백성들이 가난하여, 고기잡이와 배타는 것으로 생계를 도모하고 있습니다.¹²¹⁾

이 기록에는 해양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나온다. 제주도는 한반도의 상식과는 다르게 농업이 주된 산업기반이 아니었다. 지질이 척박했기 때문이다. 고기잡이와 배타는 것, 다시 말해 해산물 채취와 채취한 해산물의 해상교역으로 먹고 살았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러한 산업구조는 조선시대로도 이어졌다. 취약한 토지생산성은 사회변화와 무관하게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 해상으로 진출하고 교역을 하며 살 수밖에 없었던 역사는 상당히 길다. 거의 변하지

118) 『三國志』 魏書 東夷傳 韓條 州胡(乘船往來 市買中韓). 이 기사의 대상인 州胡는 제주도가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여러 선학들이 제주도로 비정하여 검토하고 있기에 필자도 그를 따랐다. 자세한 내용은 고창석 편, 1995, 『耽羅國史料集』, 신아문화사, 238쪽 참고.

119)李清圭, 1995, 『濟州島 考古學 研究』, 學研文化社.

120) 秦榮一, 1994, 「古代耽羅의 交易과 ‘國’形成考」, 濟州島史研究會, 『濟州島史研究』 제3집, 15쪽.

121) 『고려사』 권8 세가, 고려 문종 12년(1058년) 8월 乙巳(耽羅 地瘠民貧 惟以海產 乘木道 經紀謀生).

않는 역사인 셈이다.

페르낭 브로델의 『필립 2세 시대의 지중해와 지중해 세계』 서문에 나오는 ‘지리적 시간’이 여기에 적용될 수 있다. 자연환경 조건으로 인한 장기지속의 역사이다.

제주민의 생업수단과 관련해서 『조선왕조실록』에는 세종 대에 가장 많은 기사가 나온다. 조금 장황한 면이 없지 않지만 작은 변화라도 세밀히 살피기 위해 검토한 모든 기록을 인용한다. 먼저 세종 1년(1419년)의 기록이다.

㉠ 제주의 토지는 본래 메말라서 농사짓는 사람이 토지에서 부지런히 일하여, 애쓰고 힘써서 그 공력을 백배나 들여도 항상 한 해 동안의 양식이 모자랄까 걱정하여, 농업을 하지 아니하고 상업에만 힘쓰는 자가 매우 많습니다.¹²²⁾

척박한 토지 조건 때문에 농업을 하지 않고 상업으로 살아간다는 이야기다. 당시 제주민의 경제기반은 농업이 아니라 상업이었다. 다음엔 세종7년(1425년) 기사다.

㉡ 제주 사람들은 말을 팔아서 입고 먹는 자본을 삼는 까닭으로¹²³⁾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상업 교역의 품목이 처음 나온다. 말(馬)이다. 고가이면 서도 생필품인 말을 팔아먹고 살았음을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다.

같은 해 기사이며 유사한 내용이지만 다음도 인용한다.

㉢ 도내 제주(濟州)는 사람은 많고 땅은 비좁아서, 가난한 사람은 모두 말을 사서 생계를 마련합니다.¹²⁴⁾

역시 여기서도 말(馬)을 사고팔아 생존했음을 말하고 있다. 다만 특징적인 것

122) 『세종실록』 권5, 세종 1년(1419년) 9월 11일 癸丑 (然濟州土地磽薄, 農人之家, 服勤南畝, 艱難辛苦, 百倍其功, 而常有卒歲無食之嘆。因此, 不事農業, 而務行商賈者頗多).

123) 『세종실록』 권28, 세종 7년(1425년) 4월 2일 辛丑 (濟州之人, 市馬以爲衣食之資).

124) 『세종실록』 권29, 세종 7년(1425년) 9월 4일 庚子 (道內濟州人多地窄單寒, 人民皆以買馬資生).

은 가난한 사람들도 그랬다는 점이다. 말의 가격이 비싸긴 했지만 오히려 그랬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도 말(馬) 교역에 명줄을 걸고 있었음이 드러난다.

다음은 2년 뒤인 세종 9년(1427년) 기사이다.

㉔ 제주는 토지가 본래 모두 모래와 돌이어서 농리(農利)가 풍족하지 못하므로 세국민의 생계가 진실로 걱정이 되는데 (중략) 제주는 땅은 좁은데 축산은 번성합니다.¹²⁵⁾

토지문제, 농업 경영의 어려움을 말하고 있으며, 농업보다 축산업이 번성하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다. 물론 축산업의 핵심은 말 사육일 것이다. 그리고 축산의 목적은 자가소비가 아니라 교역일 가능성이 크다. 다시 1년 뒤인 세종 10년(1428년)에도 말(馬) 교역 경제가 사실상 유일한 산업임을 말하고 있다. 다음의 기록이다.

㉕ 섬 안에 땅은 좁고 사람은 많은데, 목장(牧場)이 절반이 넘어 소와 말이 짓밟기 때문에 벼농사에 손해가 많습니다. 거민(居民)들은 오로지 말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고 있사온데¹²⁶⁾

“專以賣馬爲生” 즉 전적으로 말을 팔아 생계를 꾸려가고 있다는 표현이 주목을 끈다.

세종 즉위 10년 만에 벌써 제주민의 생업 관련 기사가 5회 등장했다. 실록에 이런 기사 등장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일상의 평범한 사안까지 실록에 기록되진 않는다. 무언가 사회적 이슈가 되었을 때 관련 기록이 실록에 남는다.

세종 즉위 후 10년 안에 관련 기사가 5회 등장했다는 것은 그 무렵 제주지역 경제구조에 커다란 변동이 일어났음을 의미한다. 즉 말(馬)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던 제주의 경제구조에 뭔가 균열이 생겼다는 뜻이다. 건국 직후부터 시도된 말

125) 『세종실록』 권36, 세종 9년(1427년) 6월 10일 丁卯 (濟州土地, 本皆沙石, 農利不饒, 小民之生, 誠爲可慮(중략)濟州土地窄, 而畜産繁).

126) 『세종실록』 권39, 세종 10년(1428년) 1월 6일 己丑 (島內地窄人多, 牧場過半, 因牛馬踐蹂, 禾稼多損, 居民專以賣馬爲生).

(馬)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통제, 이것이 제주의 말(馬)교역 경제에 커다란 충격을 주고 있었다고 짐작할 수 있겠다. 국가 소유의 말(馬)뿐만이 아니라 민간의 말도 모두 국가에 등록하여 통제를 받았기 때문이다.

다시 6년 뒤 다음의 기사는 주의 깊게 봐야 한다.

㉔ 제주(濟州)는 땅이 좁고 인구는 많아, 생활이 간고(艱苦)하여, 소와 말을 도살하여 생계의 바탕으로 삼는 자가 자못 많고, 장사치들이 왕래하면서 우·마피(牛馬皮)를 무역하여 생활을 이어가는 자도 또한 많사옵니다.¹²⁷⁾

앞의 기사 내용과 유사하면서도 다른 점이 눈에 띈다. ‘말을 팔아 생계’를 꾸리는 것이 아니라 ‘우·마피(牛馬皮)를 무역하여’ 생계를 이어갔다는 점이다. 우마피 교역을 위해서는 먼저 우마 도살을 해야 했다. 도살 자체는 목적이 아니다. 우마피 교역이 목적이다. 우마피 교역을 위해 도살했던 것이다.

‘말을 팔아 생계’를 이어가던 사람들에게 뭔가 문제가 생겨 ‘우마피 교역’쪽으로 바뀌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문제 발생은 아마도 말 교역 통제일 것이다. 그러나 교역 없이는 제주사람들이 살아갈 방도가 없었다. 그렇다면 교역을 쉽게 하는 방법 즉 관의 통제를 피하면서 교역하는 방법은 교역물품의 부피를 줄이고 간편화하는 것이다. 우마가 아니라 우마피라면 가능하다. 부피가 줄고 취급이 쉬우면서도 역시 고가이며 수요가 많은 물품이었다. 우마피 교역은 정부의 말(馬) 교역 통제에 대한 제주사람들의 대응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또다시 제주사람들이 애써 찾은 활로마저 차단했다. 우마피 교역자들을 우마적(牛馬賊)으로 규정하며 처벌을 시작했다. 세종 16년(1434년)년부터 시작되어 2년간 조정의 논의를 달렸던 소위 ‘우마적(牛馬賊) 사건’은 제주사회를 엄청난 혼란으로 몰아넣었다. 말을 밀도살하고 그 부산물들을 팔았다가 관의 단속에 걸린 제주도민들은 평안도까지 강제 이주를 당했다.

이제 그동안 제주경제를 지탱하던 말(馬) 자유 교역은 쇠퇴기로 들어설 수밖에 없었다. 그러기에 우마적 사건은 단순 절도사건이 아니었다. 이는 제주도민의

127) 『세종실록』 권64, 세종 16년(1434년) 6월 14일 己未 (濟州地窄人多, 生理艱苦, 盜殺牛馬資生者頗多; 商賈來往, 貿易牛馬皮, 以資其生者亦多).

생업기반, 경제기반의 붕괴를 의미하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물론 이문이 많이 남는 장사였기에 여전히 밀(密)교역이 이뤄지긴 했다. 하지만 그것은 위험을 감수해야만 하는 어려운 일이었다. 그래서인가 밀교역에는 권력을 가진 지방관들이 관련된 사건이 많았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조금 더 상세히 다룬다.

말(馬)교역에 대한 강력한 통제가 이뤄진 때문인지 다음에 이어지는 생업 관련 기사는 말(馬)이 아니라 미역에 대한 이야기다. 우마적 사건이 발생한 뒤 10여 년이 지난 세종 29년(1447년)의 기사다.

⊙ 미역은 다른 나라에는 없는 것으로서 오직 우리나라에만 곳곳에 다 있사온데, 제주(濟州)에서 나는 것이 더욱 많아서, 토민(土民)이 쌓아 놓고 부자가 되며, 장삿배가 왕래하면서 매매하는 것이 모두 이것이옵니다.¹²⁸⁾

이제 제주민으로서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은 미역 거래였다. 말(馬)은 아니었지만 역시 장삿배를 타고 육지에 나가 팔고 와야만 했다. 여전히 해상교역이 주된 생업 수단이었다. 품목만 바뀌었을 뿐 장기지속의 지리적 시간은 계속 이어졌다.

제주의 생업 관련 기사로 『조선왕조실록』에 등장하는 것은 세종 대가 처음이다. 그런데 그 세종 대에만 무려 7회 등장한다. 이것은 세종 대의 제주사회에 뭔가 큰 변동이 있었음을 암시한다. 정치면에서도 토호권력의 몰락이 있었음을 앞에서 보았다. 경제면에서 양전으로 제주사회를 옥죄었던 것도 세종 때였다. 결국 말(馬) 자유교역 경제 붕괴도 세종 때부터 본격화된 것으로 짐작된다. 물론 모든 민마(民馬)에 대해서 장적을 만들며 통제를 가했던 건 태종 때였다. 하지만 태종 이래 축적된 불만과 모순이 터져 나와 그것이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했던 건 세종 때로 보인다. 세종 대에 관련 기록이 집중되기 때문이다.

다시 11년이 지난 세조 4년(1458년)에도 생업 관련 기사가 등장한다.

⊙ 제주는 토지가 척박(瘠薄)하여 왕래하고 판매(販賣)하는 것을 모두 전라도에

128) 『세종실록』 권117, 세종 29년(1447년) 9월 23일 壬子 (夫藿者, 他國之所無, 獨於東方, 處處皆有之 濟州所產尤繁 土民之居積致富, 商船之往來販鬻, 皆用此也).

의뢰합니다.¹²⁹⁾

다시 반복되는 토지 척박 이야기다. 브로텔의 지리적 시간, 장기지속의 역사를 보여준다. 이처럼 자연환경에 의한 규정력은 거의 변하지 않고 이어졌다. 토지문제 때문에 농업으로서는 자급이 안 되었고, 전라도에 가서 매매하여 식량을 구입해 온다는 이야기다. 해양교역의 장기지속 역사다. 다만 무엇을 교역 물품으로 가지고 갔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어쨌거나 농업이 불리한 조건에서 생존을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일은 해상교역일 수밖에 없었다.

다시 27년이 지난 성종 16년(1485년) 기사에도 제주민의 생업 관련 이야기가 나온다. 하지만 이는 이미 제주를 떠나 남해안에서 유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다.

㉘ 해물(海物)을 채취하는 것을 일삼아, 이것을 판매하여 생활해 나가는데¹³⁰⁾

라는 기록이다. 비록 섬을 떠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이긴 하나, 역시 이들도 해산물 채취와 그것의 교역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성종 21년(1490년) 제주의 산업구조를 짐작케 하는 기사가 또 나온다.

㉙ 세 고을이 본래 토지가 메말라서 백성이 먹고 살 식량이 모자라므로, 온전히 장사에 의지하여 먹고 사는데¹³¹⁾

같은 이야기가 반복된다. 농업으로는 살 수가 없는 경제구조이며 “生利專賴興販” 즉 오로지 장사에 의지해서만 살아갈 수 있다는 내용이다. 제주의 산업구조는 농업중심이 아니라 해상교역 중심이었음이 다시 한 번 확인된다.

3년 뒤 성종 24년(1493년) 다시 눈 여겨 볼 기사가 나온다.

㉚ 세 고을 수령의 공궤(供饋)하는 쌀은 단지 물고기와 미역을 가지고 육지에서

129) 『세조실록』 권11, 세조 4년(1458년) 2월7일 丙申 (濟州壤地瘠薄, 往來販賣, 皆賴全羅).

130) 『성종실록』 권178, 성종 16년(1485년) 윤4월 11일 辛卯 (專事採海, 鬻販資生).

131) 『성종실록』 권247, 성종 21년(1490년) 11월 5일 癸未 (三縣本土瘠, 民不能粒食, 生利專賴興販).

바꾸어야 겨우 채울 수 있으며, 민간에서는 오직 말(馬)을 파는 것으로 생업을 삼고 보리·기장(稷)·산채(山菜)·해채(海菜)로 보충합니다.¹³²⁾

우선 공통점은 해상교역인 점이다. 이는 누차 이어온 설명이다. 다만 여기서는 권력층과 민간의 교역품 구별이 이뤄지고 있다. 수령 등 권력층은 명분적으로 합법적인 존재이다. 그러니 합법적 물품인 해산물 즉 물고기와 미역을 가지고 나갔다. 반면 민간에서는 다시 말(馬)이 주된 교역품으로 소개되고 있다. 말(馬)교역이 완전히 사라졌던 것은 아니다. 자유교역은 금지를 당했지만 제한적 교역은 계속 있었다. 다만 조건이 까다롭고 규제가 많았을 뿐이다. 관(官) 허가 속의 제한된 교역과 몰래 하는 밀교역이 여전히 민간의 생업으로 존재했다. 여기서는 아마도 그런 상황을 묘사한 것 같다.

그리고 농산물이 등장하는 점도 이채롭다. 보리, 기장, 산채 등이다. 하지만 이것은 주가 아니라 기록 그대로 보충재였다. 그동안 농산물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물론 농산물 생산이 없었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았던 건 아닐 것이다. 중세 농본국가 입장에서 농업생산은 기본적인 사실로 간주했으므로 특별하게 자주 언급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다. 『세종실록지리지』에는 제주도의 산물로 밭벼, 기장, 피, 콩, 메밀, 밀보리 등¹³³⁾을 들고 있다. 『세종실록지리지』에 실린 제주의 작물은 비슷한 시기에 나온 『農事直說』의 편찬과 관련된다. 『農事直說』은 風土不同의 문제 즉 각 지역마다 토질과 풍토가 다르므로 인해 생기는 문제에 대처하고자 세종이 각 지방 수령에게 명령하여 제작한 책이다. 지방 촌로에게 직접 물어 지방 실정에 맞는 작물과 재배법을 조사 보고하게 한 뒤 제작한 책이며 그 결과가 『세종실록지리지』에 실려 있다. 이는 중앙정부에서 각 지방마다 적합한 작물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농업생산력을 높이려고 했던 조치였다. 이때의 조사는 매우 구체적이라 토지의 등급을 비옥도에 따라 구분하여 기록하기도 했다.¹³⁴⁾

또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도 산도(山稻), 기장, 피, 조, 콩, 팥, 메밀, 보리,

132) 『성종실록』 권281, 성종 24년(1493년) 8월 5일 丁卯 (三邑守令供饋之米, 只將魚藿, 陸地質遷, 方能僅足。民間則專以鬻馬爲生, 麥、稷、山海菜補之).

133) 『세종실록지리지』 세종지리지, 전라도, 제주목 .

134) 김용섭, 2000, 『韓國中世農業史研究』, 지식산업사, 413~453쪽.

밀 등¹³⁵⁾을 언급하고 있다. 농업 생산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단지 그것이 제주의 산업기반, 생계 해결 수단이 되지 못했고, 보조 역할을 수행했을 뿐이었다. 성종 때의 제주 생업 관련 기사는 3회로 세종 대에 비하면 크게 줄어들었다. 세종 때의 격렬했던 경제구조 변동이 성종 대에 들어와 상당히 자리잡아갔다는 의미다.

16세기로 넘어와 중종 5년(1510년)에 다시 유사한 기록이 등장한다.

㉔ 제주는 바다 밖의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땅으로서, 그 백성이 어리석고 간사하여 놀라서 이반하기가 쉬우며, 농업에는 힘을 쓰지 않고 오로지 장사만 일삼고 있으므로¹³⁶⁾

대사간 최숙생(崔淑生)의 말이다. 조선 유교 지식인의 가치관이 드러난다. 농업은 本이고 상업은 末이다. 그런데도 제주사람들은 농업에는 힘쓰지 않고 오로지 장사에만 매달리고 있다. 그러니 ‘어리석고 간사하여 이반하기 쉬운’사람들로 보였다. 앞의 기사와 달라진 건 제주의 척박한 농업환경에 대한 이해는 사라지고 농본주의 유교 지식인의 편견만 드러난다. 어쨌거나 중종 대에 와서도 제주의 경제기반은 상업임을 알 수 있다. 다만 교역의 물품이 드러나지 않아 아쉽다.

임진왜란 이전의 마지막 기록으로 여겨지는 것은 중종 37년(1542년) 기사다.

㉕ 그곳은 농장(農場)이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백성들이 오로지 해산물 채취(業)으로 하고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¹³⁷⁾

마지막 기록에 와서는 다시 처음 기록으로 돌아가는 것 같다. 농업의 어려움 그리고 그 대안으로 해산물 채취가 소개된다. 물론 채취한 해산물은 다시 교역 품목이 되었을 것이다. 중종 대에는 관련 기사가 단지 2회 등장한다.

지금까지 살핀 15~16세기 제주의 경제기반 기사를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135) 『신증동국여지승람』 권38, 전라도, 제주목, 토산조.

136) 『중종실록』 권12, 중종 5년(1510년) 11월 24일 丙子 (濟州乃海外絶遠之地, 其民愚而詐, 易以驚叛, 不務農業, 專事商賈).

137) 『중종실록』 권98, 중종 37년(1542년) 6월 13일 壬辰 (彼地農場不豊, 故人民專以海錯爲業, 而不事耕耘).

<표 1> 『조선왕조실록』에 등장하는 제주의 주산업

| 시기 \ 산업 | 세종 (재위기간 32년) | 세조 (재위기간 13년) | 성종 (재위기간 25년) | 중종 (재위기간 38년) |
|---------|------------------|------------------|------------------|------------------|
| 말(馬)교역 | ㉠ ㉡ ㉢ ㉣ ㉤ | | ㉦ | |
| 해산물 교역 | ㉧ | | ㉨ | ㉩ |
| 일반 교역 | ㉪ | ㉫ | ㉬ ㉭ | ㉮ |

* ㉩은 말(馬)교역, 해산물 교역 두 곳에 표기했다. 그래서 실제 성종 대의 기록은 3회이지만 4회인 것처럼 보인다.

위 <표 1>을 보면 세종 대에 기사가 집중됨을 우선 알게 된다. 세종의 재위기간이 길어서 많은 기사가 나온 것은 아니다. 오히려 중종 재위기간은 세종보다 6년 더 길다. 그럼에도 중종 때의 관련 기사는 2회에 불과하다.

『조선왕조실록』에 기록이 실렸다는 것은 그만큼 그것이 사회적 이슈가 되었기 때문이다. 제주사람들의 주된 생업 기반에 관한 기록이 세종 대에 7회 등장한다는 것은 그 무렵 제주의 경제구조에 뭔가 큰 변동이 생겼음을 의미한다. 7회의 기사 중 가장 많은 것은 말(馬)교역 관련으로 모두 5회가 나온다. 그리고 해산물 교역 관련 1회, 일반 교역 관련 기사가 1회 등장한다. 말(馬) 관련 생업 기사가 압도적이다. 이것은 세종 때까지만 해도 제주사람들의 주된 생업수단이 목마와 말 교역이었음을 강하게 암시한다. 그런데 여기에 변동이 생겼던 것이다. 그 때문에 실록에 무려 5회의 기록이 실렸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살핀 『고려사』 고려 문종 12년(1058년)의 기록에서 제주의 주된 산업이 해산물 채취와 그것의 교역임을 보았다. 미루어 생각하건데 고대 탐라국 이래 고려전기까지는 해산물 교역이 제주의 주된 산업이었을 것이다.

그러다가 목마와 말(馬)교역으로 주산업이 전환된 것은 고려말 원 지배기를 거치면서부터였다. 이것이 조선 세종 때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세종 17년(1435년) 소위 ‘우마적(牛馬賊) 사건’ 이후부터는 말(馬)교역 관련 기사가 거의 사라진다. 성종 때 한 번 등장할 뿐이다.

대신 해산물 교역 기사가 다시 나타난다. 그 외에 특정한 품목을 명시하지 않은 채 그냥 해상 교역만을 말하는 경우가 있다. 해산물 관련 기사의 빈도는 높지

않다. 그러나 전 기간에 걸쳐 고루 나타난다. 이것은 해산물 교역이 조선시대에 와서도 오래도록 지속되었으며 말(馬)교역만큼 중요하진 않았지만 부차적이거나 제주의 주된 산업기반이었음을 말해준다.

말(馬)교역이 국가의 강한 통제 아래 들어가게 되면서 세종 17년(1435년)을 기점으로 다시 해산물 교역으로 주산업이 바뀌어갔던 것 같다. 고대 탐라국과 고려전기의 경제구조와 닮아 갔던 것이다. 페르낭 브로델의 모델에 따른다면 해산물 해상교역은 장기지속의 역사이며, 원 지배기 이후부터 조선 세종까지의 말(馬)교역은 중기지속의 역사이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우마적 사건은 단기지속의 역사라고 정리할 수 있다.

단순하게 도식적으로 정리하면 제주의 산업기반은 해산물 교역에서 말(馬)교역으로 그리고 다시 해산물 교역으로 바뀌어갔다고 말할 수 있겠다. 물론 말 교역 시대에도 해산물은 부차적 품목으로써 지속적인 거래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경제 규모면에서 볼 때 해산물 교역보다는 말(馬)교역이 훨씬 컸다. 때문에 조선 전기 제주경제의 번성기는 말(馬)의 자유교역이 활발했던 세종 이전까지의 시기로 짐작된다. 말(馬)은 가격이 높으면서도 생활필수품이었기 때문에 그 자체의 경제 규모가 클 수밖에 없었다.

물론 농업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항상적으로 농업은 부차적 지위에서 보충재로서의 역할을 했다.

(2) 조선전기 제주 산업기반의 붕괴

지금까지 살핀 제주유민의 발생 요인은 다음과 같다. 우선 가장 밑바닥에 깔린 장기지속의 요소는 척박한 토지 요인이었다. 그 심층의 바로 위에서 국면적으로 작용했던 게 자연재해 요인과 과다 수취 요인이다. 특히 16세기 중종 대에는 과도한 수취와 자연재해 기사가 빈번하게 등장하면서 이를 증명했다. 과다 수취와 자연재해는 항상적 요인이면서도 국면마다 그 강도가 달랐다. 때문에 중기지속의 요인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살핀 3가지 요인 즉 토지 척박, 자연재해, 과다 수취만으로는 유민 발생 현상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자연재해는 오

히려 17세기 소빙기 때가 더 심각했다. 『조선왕조실록』의 17세기 제주 관련 기사를 보면 기근과 자연재해 기록이 넘친다. 그리고 19세기 세도정치기에는 전국적인 수탈이 극에 달했다. 그러나 이때는 출륙 유민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다. 위의 3가지 요인이 주된 요인이었다면 17~19세기에는 더 심한 출륙 유량이 이어져야 했다. 그러나 실재는 그렇지 않았다.

그러하기에 15, 16세기 제주의 출륙 유민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다른 요인을 더 찾아 봐야만 한다. 토지 척박, 자연재해, 과다 수취는 어쩌면 항상적 요인이다. 장기지속과 중기지속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전근대사회의 일상적 현상이었다. 그렇다면 일상적이지 않은, 15, 16세기 유민 현상만을 설명할 또 다른 요인, 특별한 국면은 무엇이었을까?

산업구조의 변화를 고찰하면 그 요인을 찾을 수 있다. 15세기 제주의 주력 산업이 무엇이었는데, 그리고 그 산업에 어떠한 변화가 생겼는지를 살피는 것이다. 결론부터 얘기한다면 그것은 말(馬) 사교역 금지에 따른 제주 경제의 기반 붕괴였다. 이것은 앞서의 토지 척박, 자연재해, 과다 수취와 같은 항상적 요인이 아니다. 15세기에만 특징적으로 나타났던 요인이다. 그러므로 이 요인을 언급해야 15~17세기의 출륙 제주유민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앞서 조선전기 제주 경제구조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말(馬) 교역이 차지하는 위상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살폈다. 고려말 원 지배기 이후로 제주민에게 말(馬)경제는 생존을 담보하는 결정적 경제 수단이었다. 그런 만큼 상당한 정도의 부가 말(馬)경제에 담겨 있었다. 하지만 조선 건국 후 상황은 많이 달라졌다. 조선 정부가 변방의 부를 그대로 두지 않았다. 조선 정부는 국가 안의 모든 말을 중앙정부의 통제에 두고자 사마(私馬)에 대해서도 관에 신고하여 장적을 만들게 법령화하였다.¹³⁸⁾ 또한 제주 말(馬) 교역에 대한 통제를 시작했다.

그러나 건국 초 지방의 경제를 완벽하게 장악하지 못했던 정부는 교역 통제에 대한 제주민의 반발에 한발 물러섰다. 다음은 그런 상황을 짐작케 하는 태종 때의 기사다.

제주(濟州) 사람이 육지에 나와서 사마(私馬)를 파는 것을 금하지 말도록 명하였

138) 『태종실록』 권14, 태종 7년(1407년) 8월 11일 壬辰.

다.¹³⁹⁾

건국 초인 태종 5년(1405년) 사마(私馬)의 자유교역을 금지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이것은 뒤집어 해석하면 얼마 전까지는 금지했다는 의미다. 그 금지조치가 제주민의 반발을 초래하자, 잠깐 자유교역을 허용하는 제스처를 썼던 것이다. 물론 이때의 자유교역 허가조치는 제한적인 허용이었을 뿐이다. 이는 뒤에 이어졌던 여러 가지 교역 제한을 보면 알 수 있다.

유화 국면은 태종 대까지는 지속되었다. 중앙정부의 제주 말(馬) 교역 통제가 제주지역 경제 위기와 민심 이반을 초래했기 때문이다. 민심 이반을 겪은 조선 정부는 어쩔 수 없이 의정부의 건의 형식을 빌려 제한적 자유교역 허용했다. 다음의 기사는 태종 9년(1409년) 제주 말(馬) 반출과 관련된 의정부의 건의 내용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규모가 제법 컸다.

“제주(濟州)의 자제(子弟)로서 시위(侍衛)를 자원(自願)하는 자는 서울에 오는 것을 허락하고, 그 민간(民間)의 마필(馬匹)은 탈 만한 것을 가려서 2천 필을 한도로 하여 육지(陸地)로 내오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¹⁴⁰⁾

한꺼번에 사마(私馬) 2천 필을 육지에 내보내 매매케 했던 것이다. 규모가 이렇게 컸던 것은 그동안 제주 말(馬) 자유교역 금지조치의 후과가 컸기 때문으로 보인다. 제주경제의 기반이 크게 흔들려 제주민의 반발이 거세었던 것 같다. 태종때까지만 해도 제주 토관 세력의 영향력이 작지 않았던 시기다. 2천 필 말의 반출 결정은 건국 초기 민심 이반을 우려했던 중앙정부의 특별 조치였을 것이다.

이 기사를 다르게 해석하여 정부가 제주의 사마(私馬) 2천 필을 강제 징발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문맥으로 보면 그것은 아닌 것 같다. 제주 토호의 자제들에게 혜택을 베풀면서 이뤄진 조치였다. 이 점을 감안한다면 사마(私馬) 반출 역시 제주민 회유책의 일환으로 보인다.

139) 『태종실록』 권9, 태종 5년(1405년) 4월 14일 己卯 (命勿禁濟州人出賣私馬).

140) 『태종실록』 권18, 태종 9년(1409년) 12월 14일 辛亥 (“濟州子弟自願侍衛者, 許令來京; 其民間馬匹, 擇可騎者, 限二千匹出陸” 從之).

그러나 이러한 회유책은 그다지 오래 가지 않았다. 세종 대에 들어서면 상황은 크게 달라진다. 세종 대의 다음 기사들은 조선전기 제주민의 말(馬)교역 경계가 어떻게 붕괴되어 갔는지를 보여준다.

㉞ 제주(濟州)는 사람은 많고 땅은 비좁아서, 가난한 사람은 모두 말을 사서 생계를 마련합니다. 근래에 수교(受敎)에 의하여 2살 된 말은 육지에 내다 팔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¹⁴¹⁾

㉟ 섬 안에 땅은 좁고 사람은 많은데, 목장(牧場)이 절반이 넘어 소와 말이 짓밟기 때문에 벼농사에 손해가 많습니다. 거민(居民)들은 오로지 말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고 있사온데 요사이 암말을 육지로 내보내는 것을 금지하기 때문에¹⁴²⁾

㊱ 공사간 목장들에 품질 좋은 상마는 ‘부(父)’라는 낙인을 찍어서 육지로 나가는 것을 허락치 아니함은 이미 전에 입법하였으나¹⁴³⁾

제주민의 주된 생업 기반인 말(馬)교역이 금지 당했음을 볼 수 있다. 세종 7년(1425년)부터 『세종실록』 세종 15년(1433년) 까지 8년 사이에 벌써 이런 기사가 3회 등장한다. 태종 때와는 확연히 달라졌다. 위 기사에 近因(‘근래에’ 혹은 ‘요사이’로 번역)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으로 봐서 세종 대에 말(馬) 자유교역 금지가 본격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더 이상 제주 지방민의 눈치를 보지 않으려는 기세였다.

사교역이 허락되긴 했지만 정부의 철저한 감독 하에서 이뤄지는 제한적 교역 체제¹⁴⁴⁾가 되었다. 2살 된 말의 도외 유통 금지(㉞), 암말의 도외 반출 금지(㉟), 父자 낙인 말(馬) 육지 매매 금지(㊱) 등 다양한 제한 조치가 취해졌다. 그리하여 정부의 통제 속에 市자 낙인을 받아야만 육지와의 교역이 가능해졌다.¹⁴⁵⁾ “표가

141) 『세종실록』 권29, 세종 7년(1425년) 9월 4일 更子 (濟州人多地窄單寒, 人民皆以買馬資生 近因受敎, 禁二歲馬出陸放賣).

142) 『세종실록』 권39, 세종 10년(1428년) 1월 6일 己丑 (島內地窄人多, 牧場過半, 因牛馬踐蹂, 禾稼多損 居民專以賣馬爲生 居民專以賣馬爲生, 近因雌馬出陸之禁).

143) 『세종실록』 권61, 세종 15년(1433년) 9월 9일 戊子 (公私屯品好牡馬, 以父字烙印, 不許出陸, 已曾立法).

144) 자유교역을 금지함으로써 제주민의 강한 저항을 불러 일으켰던 사건으로는 1932년 제주해녀항일운동을 들 수 있다. 그만큼 교역으로 살아가는 제주민의 입장에서 자유교역 금지는 생존권이 달린 긴박한 문제였다. 해녀항일운동에 대해서는 박찬식, 1995, 「濟州海女の 抗日運動」, 『濟州海女抗日鬪爭實錄』 참고.

없는 가족을 사사로이 매매하는 자”¹⁴⁶)도 처벌을 받았다. 즉 생물 말(馬)만이 아니라 말가족 매매까지 모두 정부의 통제를 받았던 것이다.

건국 직후와 달리 안정기에 들어선 세종 대 이후로 국가는 제주 말(馬)경제를 완전히 장악 통제하기 시작했다. 앞서 보았듯이 세종 대에 들어와 제주 토호세력의 영향력도 결정적으로 약화되었다. 양전을 통한 과전법 적용을 시도했던 것도 세종 시기다. 세종 시기 제주사회는 커다란 변동을 겪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했던 것이 바로 말(馬) 사교역 금지였다. 이는 제주경제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조치였기 때문이다.

세종 때 체계화된 말(馬) 교역 통제는 세조 때가 되면서 더욱 강화되었다. 세조 7년(1461년) 병조에서는 “청컨대 지금부터 상인으로서 내왕하는 자를 제포(諸浦)의 만호(萬戶)·수령(守令) 및 제주 안무사(濟州安撫使)로 하여금 엄하게 검찰(檢察)을 더하게 하여, 전과 같이 가져가는 자는 죄를 논하고 말은 속공(屬公)하며, 법을 세우기 전에 가져간 사람도 아울러 핵문하여 추론(推論)하게 하소서”¹⁴⁷)라고 아뢰자 왕이 이를 허락했다. 원문의 “嚴加檢察”라는 말 그대로 세조년간에 와서는 감독 통제가 더욱 강화되었다.

그 과정에서 정부의 정책을 빙자하여 사익을 취하는 지방관도 등장했다. 성종 20년(1489년) “제주(濟州)의 관리(官吏)들이 진상(進上)을 빙자하여, 개인이 기르는 말[私屯之馬]의 매매(買賣)를 허락하지 아니하고, 오직 세가(勢家)에만 팔도록 허락하며 또 싼 값[賤價]으로 강제로 아마(兒馬)를 사들이니, 진실로 온당치 못합니다”¹⁴⁸)라는 사복시제조(司僕寺提調)의 글이 올라간다.

세종 이후 지속적으로 이어졌던 제주 말(馬) 사교역 금지는 제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했다. 이에 생존이 급해진 제주민은 여러 차례 밀교역¹⁴⁹)을 시도했다. 그에 따라 정부의 대응도 계속 강화되어만 갔다. 그 과정에서 이뤄졌던 밀도살과

145) 『성종실록』 권14, 성종 3년(1472년) 1월 30일 丁卯 (舊例, 濟州興利人, 交易馬匹, 牧官必考文案, 烙市字印, 許令出陸).

146) 『세종실록』 권61, 세종 15년(1433년) 9월 9일 戊子 (如以無標皮, 私相買賣者).

147) 『세조실록』 권25, 세조 7년(1461년) 7월 27일 乙丑 (請自今商人來往者, 令諸浦萬戶守令及濟州按撫使嚴加檢察, 如前帶去者論罪, 馬匹屬公法前帶去人并嚴追論).

148) 『성종실록』 권232, 성종 20년(1489년) 9월 10일 乙丑 (濟州官吏憑托進上, 私屯之馬不許買賣, 惟於勢家許賣, 又以賤價抑買兒馬, 誠爲未便).

149) 서귀포시 안덕면 대평리 당개 포구가 말(馬) 밀교역에 이용되었던 포구라는 연구도 있다(고용희, 2006, 『바다에서 본 탐라의 역사』, 각, 118쪽). 하지만 『예종실록』 권3, 예종 1년(1469년) 2월 29일 甲寅條에는 함덕포(咸德浦)와 근천포(近川浦)가 말(馬) 밀교역에 이용되었다고 나와 있다.

말교역을 정부는 ‘우마적(牛馬賊) 사건’¹⁵⁰⁾이라고 규정하며 관련자 650명~800명을 평안도로 강제 이주시키는 등 강한 제재조치로 억압했다.

‘우마적 사건’은 조금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말(馬) 자유교역 통제와 관련된 기사는 세종 7년, 세종 10년, 세종 15년에 있었다. 이것은 세종 15년 이전에 제주의 말(馬)교역이 정부의 강한 통제 밑으로 들어갔으며, 그런 만큼 제주민의 경제기반은 붕괴되어갔다는 의미다. 생업 기반이 무너져 생계 위협을 느끼게 된 제주사람들은 이제 다른 방식으로 활로를 찾았다. 생물(生物)로써의 말(馬)이 아니라 도살 후 가공품으로써의 말을 교역했던 것이다. 건육포¹⁵¹⁾, 말 힘줄, 말총 등 여러 품목이 있었는데 그 중 가장 상품성을 가졌던 것은 가죽¹⁵²⁾이었다. 가죽 교역과 관련된 기사가 등장하는 것은 바로 다음 해인 세종 16년(1434년)이다.

제주(濟州)는 땅이 좁고 인구는 많아, 생활이 간고(艱苦)하여, 소와 말을 도살하여 생계의 바탕으로 삼는 자가 자못 많고, 장사치들이 왕래하면서 우·마피(牛馬皮)를 무역하여 생활을 이어가는 자도 또한 많사옵니다.¹⁵³⁾

이제 우마 도살로 생계를 꾸려가는 제주민이 많다는 기록이다. 그러나 이 도살은 도살 자체를 위한 게 아니었다. 교역을 위한 도살이었다. 생물로써의 말 교역이 불편해지자 그 난관을 해소하기 위해 취한 조치가 도살이었다. 부피가 작고 운반이 편리하며 취급이 간단한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도살이 필수적 절차였다. 생물이 아닌 우마피라면 관의 통제를 피하기가 쉬웠다. 이제 교역물은 우마가 아니라 우마피였다. 그래도 가격은 여전히 고가였으며 수요 또한 많았다. 우마피 교역은 정부의 말(馬)교역 통제에 대한 제주사람들의 응전이었다.

그러나 조선정부는 이에 더욱 강경하게 대처했다. 정부의 통제 정책을 피해나 가던 제주사람들을 그대로 놔두지는 않았다. 조선정부는 우마피 교역자들을 우마

150) 소위 ‘우마적’과 관련된 기사는 『세종실록』 권67, 세종 17년(1435년)에 여러 차례 등장한다.

151) 말고기 건육포의 상품성에 대해서는 『세종실록』 권116 세종29년 윤4월 14일과 16일 기사를 통해 엿볼 수 있다.

152) 말가죽의 상품성에 대해서는 『세종실록』 권31, 세종 8년(1426년) 1월 26일辛酉 기사를 통해 엿볼 수 있다.

153) 『세종실록』 권64, 세종 16년(1434년) 6월 14일 己未 (濟州地窄人多, 生理艱苦, 盜殺牛馬資生者頗多; 商賈來往, 貿易牛馬皮, 以資其生者亦多).

적(牛馬賊)으로 규정하며 처벌을 시작했다. 처벌은 평안도 강제 이주였다. 세종 17년(1435년) 1월 강제 이주 대상자로 처음 파악된 숫자는 650명으로 보고되었다.¹⁵⁴⁾ 하지만 다음해 이주 조치의 결과를 논하는 자리에서는 800명가량¹⁵⁵⁾ 되었던 것으로 나온다.¹⁵⁶⁾

그런데 그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다. 정부 안에서도 논란이 많았던 것이다. 강력한 처벌을 주장하며 강제 이주 조치를 주도했던 세력은 말(馬) 관리의 책임 부서인 병조 사복시(司僕寺)였다. 반면 왕과 많은 대신들은 이에 의문을 제기했다. 『세종실록』 세종 17년(1435년) 3월 12일자에 실린 조정 회의 장면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처음 사복시에서 계달하기를, ‘제주(濟州)에 우마적(牛馬賊)이 성행하여 목장의 말이 번식하지 못하고 있으니, 마땅히 사람을 보내어 이를 조사 색출하여, 회령(會寧)·여연(閔延) 등지로 이들을 이주시켜 변읍(邊邑)이나 채우게 하소서 하니, 여러 대신들과 의논한 결과 모두 불가하다고 하는데도, 사복시에서 이를 재삼 계청하기에, 사복 소윤(司僕少尹) 조순생(趙順生)을 파견하여 도둑을 색출하게 하였더니¹⁵⁷⁾

강제이주를 주도한 세력이 먼저 나온다. 사복시이다. 그리고 그들의 의도도 소개된다. 말 번식이다. 그러나 여러 대신들이 우마적 색출, 강제 이주에 대해 ‘모두 불가’하다고 반대했다. 그럼에도 사복시의 거듭된 주장으로 결국 사복시의 소윤 조순생(趙順生)을 파견하여 우마적을 색출케 했다.

그러나 왕은 계속 의문을 제기했다.

내가 듣기에는 말도둑이 거의 천 명에 달한다 하나, 이는 다름이 아니라, 본주의 사람들이 그 토풍(土風)에 젖어서 자기의 우마를 잡아 제사하고 그 고기를 먹은 자까지도 모두 색출에 걸렸다는데, 이것이 사실인가¹⁵⁸⁾

154) 『세종실록』 권67, 세종 17년(1435년) 1월 14일 丙戌 (今自濟州移置平安道盜殺牛馬者, 幾至六百五十餘).

155) 『세종실록』 권72, 세종 18년(1436년) 6월 20일 乙卯 (令趙順生推刷出陸, 其數至八百).

156) 남도영은 이때 평안도로 강제 이송되었던 인구를 가족까지 포함하면 3천 명 정도 되었을 것으로 추산했다.(남도영, 1975, 98쪽).

157) 『세종실록』 권67, 세종 17년(1435년) 3월 12일 甲申 (濟州牛馬賊興行, 牧馬不蕃, 宜差人刷出, 徙于會寧、閔延, 以實邊塞 議諸大臣, 皆曰: 不可, 司僕再三啓請, 爰遣司僕少尹趙順生, 刷出賊人).

158) 『세종실록』 권67, 세종 17년(1435년) 3월 12일 甲申 (予聞馬賊幾至千數 無他, 本州人狃於土風, 殺自己

왕이 제기한 문제는 두 가지였다. 우선 우마적이 1천 명에 달한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 당시 6만 인구 중에 1천 명이 우마적이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대목이다. 우마적이 아니라 우마적으로 규정된 우마 밀도살, 밀교역 관련자들일 것으로 추정된다. 말(馬)교역이 제주의 주된 경제기반이었음을 고려할 때, 도둑 1천 명은 의문스럽지만 말(馬)경제 관련자 1천 명은 납득이 된다.

그리고 우마 도살이 제사용의 관습적 도살이 아니냐며 왕은 두 번째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조정의 논의는 조사관을 파견하여 다시 조사하자는 쪽으로 흘러갔다. 하지만 사복시는 강하게 반발했다. 사복시제조(司僕寺提調) 정연(鄭淵)은

따로 조관을 보낸다면 도리어 소요스런 폐단이 생길 것입니다.……토호(土豪)들이 백성을 많이 점유하여 부리고 있다 하옵는데, 이제 이들이 조사 색출을 당하면 반드시 이를 꺼려할 것이며, 고기를 먹은 자까지 모두 조사 색출에 일괄 포함되었다는 말은 아직 믿을 수 없는 것으로서, 조순생이 어찌 함부로 이같이 끌어냈을 리 있겠습니까.¹⁵⁹⁾

라며 사복시에서 먼저 파견했던 조순생의 보고가 정확한 것이라 강변했다. 그러니 재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였다. 근데 여기서 눈길을 끄는 대목이 있다. 이제 다시 조사관을 파견하여 재조사한다면 토호들이 반발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때까지도 토호들의 영향력이 작지 않았으며 또한 제주의 토호들이 우마적 사건과 어떻게든 연관이 있었다는 의미다. 사실 말(馬) 밀교역 관계자 중에는 제주의 토호들도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많은 말을 보유했을 그들은 그 말들을 육지에 내다 팔아 부를 축적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조선정부의 통제를 받게 되면서 판로가 막혀 버렸다. 위기에 처한 그들로서는 달리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 아랫사람을 시켜 몰래 육지로 반출하며 밀교역을 시도했을 수도 있다. 이 상황에서 조선 정부 사복시 관리 조

牛馬, 祭而食肉者, 竝皆被刷, 未知實否).

159) 『세종실록』 권67, 세종 17년(1435년) 3월 12일 甲申 (鄭淵曰 “別遣朝官, 反生搔擾之弊……土豪多占百姓役使, 今當刷出, 必生厭憚, 其曰食肉者竝被推刷, 未足信也。 順生亦豈如此妄刷乎”).

순생이 파견되어 와서 제주사람들을 북변으로 강제 이주시켰다. 그리고 이것으로 상황은 일단락되려 했다. 하지만 왕과 대신들이 여기에 이의를 제기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다시 조사관을 보낼까 말까 하는 논의가 일었다. 그러나 만약 조사관을 다시 보내 재조사하게 된다면 제주 토호들과의 마찰이 불가피했을 것이다. 그러기에 사복시 제조 정연은 여기서 마무리하자고 제안하고 있었다.

선행 연구들은 대부분 이 사건을 단순한 도적 사건으로 다루고 있다.¹⁶⁰⁾ 사료에 기록된 글자 그대로 해석하여 ‘몰래 산골짜기로 모여들어 마소를 훔쳐다가 잡으면서 제멋대로 행동하는 막된 무리’로 파악했다. 물론 조선정부에서 볼 때는 그 말도 맞다. 어차피 사마(私馬)마저도 정부의 허가 속에서만 도살하고 팔 수 있었으니, 그것을 어긴 자는 범죄자일 수밖에 없었다. 뿐만 아니라 실제 남의 말을 훔쳐 도살하고 팔기도 했을 것이다.

그러나 범죄자가 되기까지의 과정도 함께 살펴야 그들의 성격을 정확히 규정 지을 수 있다. 변주승(1995)은 ‘일정한 생업기반을 갖지 못한 유민들은 극심한 재난을 만나면 살길을 찾아 유리걸식하거나 일부는 호구지책의 한 방편으로 도적이 되기도 한다’라고 했다.¹⁶¹⁾ 정형지(1996)도 ‘유랑 이후의 행로는 굶어 죽거나 거지·빈민·도적이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했다. 이들은 당시 사회의 구조적 모순의 담지자였기 때문이다.¹⁶²⁾

이들의 주장을 제주 우마적 사건에 비추어 보면, 사건의 본질을 짐작할 수 있게 된다. 이 사건은 갑작스럽게 나타났던 현상이 아니다. 또한 이들은 단순한 도적도 아니었다. 이미 생존 기반을 상실한 상태로 사실상의 유민 상태가 되었을 때 등장했던 것이다. 그러기에 우마적은 당시 사회적 모순 속에서 제주민들의 자연스러운 귀결이기도 했다.

당시 정부 관리들도 우마적 발생 원인에 대해 나름의 진단을 내렸다. 참찬 조계생(趙啓生)은 “제주 사람들이 마소를 도둑질하여 그 생계로 한 것은, 오로지 땅이 비좁고 백성이 조밀해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서이며, 향산(恒産)이 없는

160) 우마적에 대한 연구로는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金泰能, 1964, 「濟州의 牛馬賊 小考」, 『제주도』 14호.

南都泳, 1975, 「鮮初의 牛馬盜賊」, 『東國大學校大學院論文集』 14.

161) 변주승, 1995, 「18세기 流民의 실태와 그 성격」, 『全州史學』 제3집, 7쪽.

162) 정형지, 1996, 「19세기 전반 유민에 관한 연구」, 『국사관논총』 제72집, 185쪽.

까닭입니다”¹⁶³)라고 발언했다. 조선정부의 과오까지 말하진 못했지만 우마적이 생계형 도둑임은 인정했다.

그러나 우마적의 본질이 말(馬)교역 차단으로 인해 생긴 난민이라는 사실은 언급하지 못했다. 하지만 다음의 기록은 말(馬)교역과 우마적이 한 맥락에 있는 사건임을 보여준다.

또 제주의 상인(商人)이 산 말은, 절제사(節制使)가 교역 문권(交易文券)을 상고해서 시자인(市字印)을 낙인(烙印)하고, 제포(諸浦)의 감고들이 시자(市字)의 유무(有無)를 고찰하여 육지로 나가는 것을 허락하니, 신은 원컨대 이제부터 전라도·경상도의 모든 연해(沿海)에 있는 역리(驛吏)들에게 시자(市字)가 없는 말을 얻은 자는 관(官)에 고발하도록 허락하여, 그 말 주인을 엄히 징계하시고, 인하여 그 말을 고발한 자에게 주시면, 말도둑[馬賊]은 날로 줄고, 역리(驛吏)도 또한 실(實)하여질 것입니다.¹⁶⁴

市자 印이 찍힌 말들만 교역케 하고, 나머지는 금지케 해야 말도둑(馬賊)이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이다. 市자 印이 찍힌 말들만 교역케 한다는 것은 말(馬) 자유교역을 금지한다는 이야기다. 이것은 곧 자유교역을 행하는 자들은 결국 말도둑(馬賊)과 관련이 있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말도둑의 실체는 바로 제주마 자유교역자와 그 관련자들임을 의미했다.

성종 대에 들어서 경국대전 체제가 준비되어가자 법 집행은 더욱 엄해졌다. 말(馬) 교역은 이제 거주지 강제 이전 정도가 아니라 극형까지 감수해야만 했다. 다음의 성종 4년(1473년) 기사가 이를 보여준다.

제주(濟州)의 죄수 사노(私奴) 성의(性義)·문면산(文面山)·김원민(金元民)·덕명(德命)·송석송(宋石松)·송자산(宋自山)이 마소를 훔쳐서 죽인 죄는, 수교(受教)에 의하여 참대시(斬待時)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¹⁶⁵

163) 『세종실록』 권72, 세종 18년(1436년) 6월 23일 戊午 (濟州之人, 盜殺牛馬, 以資其生者, 專是地窄民稠, 不得耕種, 無恒產故也).

164) 『예종실록』 권3, 예종 1년(1469년) 2월 29일 甲寅 (且濟州商人所買馬, 節制使考交易文券, 烙市字印, 諸浦監考, 考市字有無, 方許出陸。 臣願自今, 全羅、慶尙道沿海諸驛吏, 得無市字馬者, 許令告官, 痛懲馬主, 仍以馬給告者, 則馬賊日減, 驛吏亦實矣).

165) 『성종실록』 권35, 성종 4년(1473년) 10월 22일 庚辰 (濟州囚私奴性義、文面山、金元民、德命、宋石

물론 위 기사에서 교역이 직접 언급되진 않았다. 다만 ‘마소를 훔쳐서 죽인 죄’라고만 했다. 하지만 밀도살의 목적 자체가 밀교역을 위한 것임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생존 위기에 몰린 제주민들이 말을 훔쳐 도살하여 먹기도 했다. 그러나 그보다는 교역용이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는 앞서 보았던 세종 16년(1434년)의 “생활이 간고(艱苦)하여, 소와 말을 도살하여 생계의 바탕으로 삼는 자가 자못 많고, 장사치들이 왕래하면서 우·마피(牛馬皮)를 무역하여 생활을 이어가는 자도 또한 많사옵니다”¹⁶⁶⁾라는 기록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우마적 처형으로 제주민의 말 교역 경제는 극도로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이는 제주 기간산업의 붕괴를 의미했다. 세종 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한 제주의 말(馬)교역 경제는 성종 대에 와서 『경국대전』으로 법제화 단계에까지 이르게 되면서 사실상 황폐화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은 제주 경제구조의 커다란 변화로써 제주민의 출륙 유량을 재축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후 정부 안에서도 이 조치의 폐단을 지적하는 사례가 나타났다. 물론 이들의 관심이 제주민의 민생 안정에 있었던 건 아니다. 정부의 말(馬) 통제로 인해 말의 개체 수가 줄어들자, 이에 대한 해결책 모색의 일환이었을 뿐이다. 말의 사교역이 허용되어야 민간의 말이 많아질 것은 당연한 이치다. 판로가 막힌 상태에서 생산이 활성화될 까닭은 없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관료들 안에서도 어떻게든 제주 말(馬)을 밖으로 나올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논의가 나왔다. 그리고 왕도 이에 관심을 보였다. 그러나 약간의 융통성을 보였을 뿐 본질적인 변화를 가져오진 않았다. 중종 17년(1522년) 2월 10일 조정 회의에서 홍숙(洪淑)이 “바라건대 내보낼 수 있도록 길을 개정한다면 민간의 말이 또한 많아질 것입니다”라고 건의하자, 왕이 “일체로 금지할 것은 없다(不可一切禁止也)”며 융통성을 보였다. 제주의 말(馬) 개체 수가 줄어들자 이를 늘리기 위한 방책으로 국가의 통제를 완화하고 민간의 자율성을 높여 해결하고자 했던 것이다.

松、宋自山盜殺牛馬罪，依受教，斬待時 從之。

166) 『세종실록』 권64, 세종 16년(1434년) 6월 14일 己未 (濟州地窄人多, 生理艱苦, 盜殺牛馬資生者頗多; 商賈來往, 貿易牛馬皮, 以資其生者亦多).

하지만 계맹이 중국의 예를 들며 “바라건대 제주의 말(馬) 사교역을 금지하지 말도록 하소서(請勿禁濟州私貿之馬)”라고 다시 건의하자, 왕은 끝내 “윤허하지 않았다(不允).”¹⁶⁷⁾ 말의 개체 수를 늘리는 것은 좋지만, 그것이 곧바로 私貿之馬 곧 제주 말(馬)의 자유교역을 허용하는 단계까지는 허용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던 것이다. 왕이 바란 것은 말의 증식이었을 뿐, 말에 대한 통제권 포기는 아니었다.

이렇게 해서 결국 조선전기 제주의 경제구조는 커다란 변화를 겪었다. 고려말 원 지배기 이후부터 형성되어 약 150년간 양 중기지속으로 이어지던 제주의 말(馬)교역 경제는 이런 과정을 거치며 쇠퇴기를 맞았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다시 15~17세기 동안 지속되는 중기지속의 출륙 유량 현상의 한 원인이 되었다. 출륙 유량은 변화된 경제현실에 대한 제주민의 대응이었다. 무기력하게 굶어 죽기보다는 목숨을 담보로 모험에 나섰던 것이다.

결국 15세기 이후 지속된 제주민 출륙 유량의 배경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겠다. 우선 가장 밑바닥에는 척박한 토지라는 장기지속의 배경이 깔려 있었다. 거기에 자연재해와 과도한 수취가 중기지속으로 유민 발생을 유도했다.

하지만 위의 3가지 요인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하다. 이 유민이 특정 시기 즉 15~17세기에 발생했던 것은 또 다른 특정 원인이 있었기 때문이다. 고려말 원 지배기 이후 중기지속으로 이어오던 말(馬) 사교역이 15세기에 금지를 당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말(馬)교역 통제에 따른 제주경제의 기반 붕괴가 15~17세기 유민 발생의 또 하나의 요인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167) 『중종실록』 권44, 중종 17년(1522년) 2월 10일 丁亥.

Ⅲ. 제주유민의 발생 · 격감 및 생활

지금까지는 조선 건국 이후 중앙정부가 제주지역을 장악해 수취체제를 강화해 왔던 모습을 보았다. 이것은 곧바로 제주민 출륙유량의 배경이 되었다. Ⅲ장에서는 본격적으로 출륙 유량민 즉 제주유민을 살핀다.

먼저 이들의 명칭부터 고찰한다. 기록 속에 등장하는 이들 제주유민들은 크게 ‘두무악(頭無岳)’계 명칭과 ‘포작(鮑作)’계 명칭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조선왕조실록』에는 두무악계 명칭이 먼저 등장하는데, 성종 8년(1477년)¹⁶⁸부터 시작하여 총 11건의 기사에서 나타난다.¹⁶⁹ 반면 포작계 명칭은 앞의 두무악계 명칭보다 6년 늦은 성종 14년(1483년)¹⁷⁰부터 등장하여 총 61건의 기사에서 나타나는데 두무악계 명칭에 비해 보다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다.

한편 충무공 이순신의 일기나 장계에 기록된 명칭도 대부분 포작(鮑作)계다. 하지만 韓榮國(1981)의 연구에서 활용한 17, 18세기 『경상도 울산부 호적대장』에서는 대부분 두무악계 명칭이다. 여기에는 다양한 漢字의 두무악계 명칭이 등장한다.

여기서는 우선 각 명칭의 의미를 살피고, 그 명칭 사이의 관계를 밝힌다.

1. 제주유민의 명칭

1) 두무악(頭無岳)계 명칭

『조선왕조실록』에 등장하는 두무악계 명칭으로는 두무악(頭無岳), 두무악(豆毛岳), 두독야지(頭禿也只), 두독야지(豆禿也只)가 있다. 두무악계 명칭의 유래에 대해서는 다음의 기사가 잘 설명해 주고 있다.

168) 『성종실록』 권83, 성종 8년(1477년) 8월 5일 己亥 (濟州豆禿也只稱名人).

169) 『세종실록지리지』에도 ‘두무악(頭無岳)’이 등장하나 이는 출륙 유민과 관계없이 ‘한라산’을 뜻하는 말로 제외했다.

170) 『성종실록』 권161, 성종 14년(1483년) 12월 6일 乙丑 (鮑作人等自濟州而來).

연해(沿海)에는 두무악(頭無岳)이 매우 많은데, 제주(濟州)의 한라산(漢拿山)을 혹 두무악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세속에서 제주 사람을 두무악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혹은 두독야지(頭禿也只)라고 쓰기도 합니다.¹⁷¹⁾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두무악(頭無岳)이라는 말의 유래이다. 본래 제주의 한라산을 두무악(頭無岳)이라 했다고 한다. 그것이 제주사람들을 뜻하는 말이 되어 두무악(頭無岳) 혹은 두독야지(頭禿也只)가 곧 제주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되었다는 것이다.

한라산을 왜 두무악(頭無岳)이라 불렀는지를 설명해주는 기록도 있다. 이 설명은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 나와 있다.

한라산(漢拏山)은 주 남쪽 20리에 있는 진산(鎭山)이다. 한라(漢拏)라고 말하는 것은 운한(雲漢: 은하수)을 나인(拏引: 끌어당김)할만 하기 때문이다. 혹은 두무악(頭無岳)이라 하니 봉우리마다 평평하기 때문이요, 혹은 원산(圓山)이라고 하니 높고 둥글기 때문이다.¹⁷²⁾

한라산 봉우리가 평평하고 둥글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래서 머리 ‘頭’자와 없음을 ‘無’자를 썼다는 이야기다. 그리고 岳은 글자 뜻 그대로 산, 오름을 뜻한다. 즉 분화구가 패어 머리가 없이 둥글하고 평평하다는 뜻을 나타내려고 두무악(頭無岳)이라 이름 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면 ‘두독야지(頭禿也只)’도 설명이 된다. 머리 ‘頭’자와 대머리 혹은 민둥산을 뜻하는 ‘禿’자를 쓴 것이다. 봉우리가 평평하고 둥근 산을 의미하는 한자 조어다. 頭禿에서의 禿은 혼독자의 결합 표기로 ‘머리 민 오름’¹⁷³⁾ 즉 ‘민둥산’을 뜻하기에 頭無岳과 마찬가지로 의미를 가진다.

그리고 두독야지(頭禿也只)의 뒷부분 야지(也只)는 앞 음으로부터의 음조에 의해 변화한 것으로 본래는 ‘아기’라는 의미로 추정한다.¹⁷⁴⁾ 그렇다면 두독야지는

171) 『성종실록』 권262, 성종 23년(1492년) 2월 8일 己酉 (沿海頭無岳甚多, 濟州 漢拿山(漢拏山) 或名頭無岳, 故俗稱濟州人爲頭無岳, 或書頭禿也只).

172) 『新增東國輿地勝覽』 권38 전라도 제주목 산천조.

173) 오창명, 1998, 『제주도 오름과 마을 이름』, 제주대학교 출판부, 48쪽.

‘한라산 아이’, ‘한라산 사람’이란 뜻이 된다.

그러나 이것은 불완전한 설명이다. 한자 표기 이전에 민간의 고유 명칭이 먼저 있었다. 위 기록에 등장하는 설명은 민간 고유어를 한자로 표기하면서 의미를 갖다 붙인 것에 불과하다. 고유어를 한자로 표기하면서 고유어의 소리와 뜻을 살렸던 것이다. 특히 인명·지명을 기록할 때는 한자를 빌려 쓸 수밖에 없었다.¹⁷⁵⁾

한자를 빌려 쓸 때도 일정한 원칙이 있다. 우리말을 표기하면서 한자가 가지고 있는 음을 빌려 쓴 한자를 음차자(音借字)라고 한다. 음차자(音借字)는 다시 들로 나눌 수 있는데 음을 빌려 쓰되 한자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뜻도 살려서 쓴 글자를 음독자(音讀字)라 하며, 반면 한자의 뜻은 무시하고 소리만을 빌려 쓴 글자를 음가자(音假字)라고 한다.¹⁷⁶⁾

여기서 頭無는 본래의 이름인 고유어 ‘두무’ 혹은 ‘두모’를 한자로 표기하면서 소리를 빌리되 그 안에 뜻도 담은 음독자(音讀字) 표기다. 고유어 ‘두무’ 혹은 ‘두모’를 어쩔 수 없이 한자로 표기하면서도 이왕이면 한자가 가진 뜻으로 의미까지 전달할 수 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고유어 ‘두무’ 혹은 ‘두모’는 무슨 뜻일까? ‘둥글다’를 의미한다는 견해¹⁷⁷⁾와 물을 담아 두는 큰 그릇 ‘두멍’을 뜻한다는 견해가 있다.¹⁷⁸⁾ 즉 한라산의 고유 이름 ‘두무’ 혹은 ‘두모’는 그것은 둥글다는 뜻이거나 혹은 두멍처럼 생겼다고 해서 이름이 그렇게 지어졌다는 설명이다. 그러니까 머리(頭)가 없다(無)라는 한자어 ‘頭無’ 이전에, 둥글다 혹은 두멍의 의미인 ‘두무’ 혹은 ‘두모’가 먼저 있었고, 민간에서는 한라산을 그렇게 불렀다. 이 ‘두무’ 혹은 ‘두모’를 표기하기 위해 동일한 한자가 그나마 의미가 통할 수 있는 ‘頭無’였던 것이다.

반면 이것의 다른 한자 표기인 ‘豆毛’는 경우가 다르다. 소리는 비슷한데 뜻은 통하지 않는다. 소리만 빌려 쓴 음가자(音假字) 표기다. 어차피 중요한 건 뜻이 아니었다. 민간에서 하는 소리를 그냥 한자로 받아 적었을 뿐이다. 그러니 ‘콩’

174) 다카하시 기미야키(高橋公明), 1989, 「中世東亞細亞海域에서의 海民과 交流」,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탐라문화』 제8호, 117쪽.

175) 오창명, 1997, 「地名의 借字 表記에 대한 解讀」,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탐라문화』 제17호, 50쪽.

176) 오창명, 1998, 『제주도 이름과 마을 이름』, 제주대학교 출판부, 6쪽.

177) 남영우, 1996, 「古地名 ‘두모’ 研究」, 『地理教育論集』 제36호, 124쪽.

178) 오창명, 1998, 『제주도 이름과 마을 이름』, 제주대학교 출판부, 48쪽.

과 ‘털’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소리 그대로인 ‘두모’만이 기록으로 남은 것이다.

사실상 소리를 받아 적은 것이었기에, 한자 기록은 다양하게 나오게 된다. 『경상도 울산부 호적대장』 등에 豆毛岳, 頭毛惡, 頭無惡, 豆毛惡 豆無惡 등의 이름이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또한 우리말 한자 표기 방법 중에 앞의 음차자와 달리 뜻을 빌려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훈차자(訓借字)라 한다. 그 훈차자는 다시 둘로 나뉜다. 한자가 가지고 있는 원래 뜻을 살린 훈독자(訓讀字)와 뜻은 무시하고 우리말 소리만을 표기하기 위해 쓴 훈가자(訓假字)가 그것이다.

頭禿도 훈독자의 결합 표기로 보면 ‘머리 민오름’의 뜻이지만, 음가자와 훈가자의 결합으로 보면 ‘두피>두미’의 한자 차용 표기로 볼 수 있다.¹⁷⁹⁾ 頭가 음차자 이기에 언제든지 豆로 바뀔 수가 있다. 禿은 훈가자로 생각된다. 그러니 頭禿(두피)가 豆禿(두피)로도 표기되는 것이다.

정리해서 말한다면 본래 한라산을 뜻하는 고유어 두무·두모·두미를 한자로 표기하면서 여러 頭無류의 명칭이 나왔고, 그 명칭들은 모두 한라산이라는 의미로 제주사람들을 상징하여 그렇게 불렸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조선왕조실록』에는 두무악계 명칭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등장했을까? 제주유민을 일컫는 명칭으로 ‘두독야지(豆禿也只)’가 제일 먼저 등장한다.

지금 어느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도내의 사천(泗川)과 고성(固城)·진주(晉州) 지방에, 「제주(濟州)의 두독야지(豆禿也只)」라고 이름을 칭하는 사람이, 처음에는 2, 3척의 배를 가지고 출래(出來)하더니, 이제는 변하여 32척이 되었으며¹⁸⁰⁾

이 豆禿也只 명칭은 성종 대 기록에 총 3회 등장하며, 頭禿也只是 1회 등장한다. 앞서 명칭의 의미에서 살폈듯이 豆禿也只와 頭禿也只是 같은 이름이다. 뜻이 아니라 본래 소리에서 유래한 명칭이기 때문이다.

179) 오창명, 앞과 같음.

180) 『성종실록』 권83, 성종 8년(1477년) 8월 5일 己亥 (今有人來言 道內泗川、固城、晉州地面, 濟州豆禿也只稱名人, 初將二三船出來, 今轉爲三十二隻).

그런데 대부분의 기존 연구자들은 두무악계 명칭 중에 ‘두독야지(豆秃也只)’를 ‘두독야(豆秃也)’, ‘두독야지(豆秃也只)’, ‘두독(頭秃)’ 이렇게 3종류로 소개했다.¹⁸¹⁾ 하지만 본 연구는 다르게 생각한다. 하나의 명칭일 뿐이다. 선행 연구자들의 견해는 인터넷 조선왕조실록 홈페이지(<http://sillok.history.go.kr>)에 실린 오역에서 기인한 게 아닌가 싶다. 거기에서는 성종 8년(1477년) 8월 5일 기사의 ‘濟州豆秃也只稱名人’를 ‘濟州의 豆秃也라고만 이름을 칭하는 사람이’라고 번역했다. ‘只’를 어조사 ‘라고만’이라고 번역한 것이다. 그래서 명칭을 ‘豆秃也’라고 했다. ‘只’를 어조사로 볼 게 아니라 ‘두독야지’라는 고유명사 안에 포함시켜야 한다. 원문에는 분명히 豆秃也只라고 되어 있으며 다른 기사에서도 모두 ‘두독야지’로 나온다.

‘頭秃’이라는 명칭도 오역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한다. 위의 홈페이지에 실린 성종 23년(1492년) 2월 8일 기사의 ‘或書頭秃也只, 國家疑水賊必此輩所爲’를 ‘혹은 두독(頭秃)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다만 국가(國家)에서 수적(水賊)은 이 무리들의 소행이 아닌가 의심’으로 번역했다. 여기서도 분명히 원문에는 ‘頭秃也只’라고 나와 있다. 그런데도 ‘也’는 ‘이라고’로, ‘只’는 다음 문장 앞에 억지로 갖다 붙여 ‘다만’이라고 번역했다. 원문을 보면 모두다 豆秃也只 혹은 頭秃也只다.¹⁸²⁾ 한자 표기만 다를 뿐 소리는 모두 같다. 이것은 본디 한자 뜻을 가진 이름이 아니라 제주사람을 뜻하는 고유어를 ‘두독야지’를 한자로 기록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일 뿐이다. 그리고 본 발음은 ‘두독야지’가 아니라 ‘두피야지’ 혹은 ‘두피야지’, ‘두피야기’에 가까웠을 것으로 판단된다.

2) 포작(鮑作)계 명칭

『조선왕조실록』에서 제주유민을 뜻하는 말로 두무악계 명칭보다 훨씬 더 많이 등장하는 것은 포작계 명칭이다.

鮑作 역시 한자 차용 표기이다. 한자어 鮑作이 존재하기 전에 고유어가 먼저 존재했다. 그 고유어는 ‘보재기’다. 보재기는 바닷물 속에 들어가서 전복·조개·미역 등 해산물을 채취하던 사람인 ‘보자기’의 제주방언이다.¹⁸³⁾ 한자로 기록해야

181) 장혜련, 2006, 「조선중기 제주유민의 발생과 대책」, 제주대학교 석사논문; 김나영, 2008, 「조선후기 제주지역 포작의 존재양태」, 제주대학교탐라문화연구소, 『탐라문화』 32호.

182) 『성종실록』 권86, 성종 8년(1477년) 11월 21일 甲申 (近年濟州三邑人民自稱 ‘豆秃也只’) ; 『성종실록』 권235, 성종 20년(1489년) 12월 10일 癸巳 (請於諸浦, 依豆秃也只船體制造輕船).

하는 조선의 지식인이 제주 바닷가에서 작업하던 사람들의 호칭 소리를 듣고, 원음에 가까우면서도 뜻을 담을 수 있는 글자를 만든 게 한자어 鮑作이다.

鮑는 ‘보’에 가까운 발음이면서 전복, 절인 어물 등의 뜻을 나타낸다. 作은 역시 ‘자’에 가까운 발음이면서도 노동의 뜻을 가진다. 이런 과정을 거쳐 탄생한 조어가 ‘鮑作’이다. 그러나 이 역시 소리가 우선이었지 뜻이 앞섰던 것은 아니다. 본디 바다 사람들이 부르던 소리를 한자로 표기했을 뿐이다. 그러니 『조선왕조실록』에는 그나마 뜻을 살린다고 만든 ‘바닷가 浦(포)’자의 ‘浦作’도 등장한다. 전복이라는 뜻의 한자어 ‘鰓(복)’을 애써 넣어 만든 ‘鰓作’도 나온다. 그러기에 鮑作을 鮑作의 오기¹⁸⁴⁾라고 말할 필요는 없다. 한자 차용에 따른 표기이기 때문이다.

포작을 일컫는 용어 중 하나가 포작간(鮑作干)인데, 이 포작간(鮑作干)의 ‘干’은 신량역천(身良役賤)의 신분을 뜻한다.¹⁸⁵⁾ 이는 제주유민의 신분 상황을 말해 준다. 양인이면서도 사실상 천인 대접을 받던 사람들이었다. 포작한(鮑作漢)의 ‘漢’도 ‘干’과 유사한 신분을 칭하는 용어로 짐작된다. 조선시대 제주에 답한(番漢)이라는 직역이 있었다. 이 답한(番漢) 직역을 지었던 사람들의 신분도 천인과 일부 양인이었다.¹⁸⁶⁾ 이로 미루어 鮑作漢과 鮑作干은 사실상 같은 존재에 대한 신분적 기록인 것으로 보인다. 身良役賤의 ‘干’은 발음상 ‘간’이 아니라 ‘한’이라는 견해¹⁸⁷⁾를 고려한다면 이 점은 더욱 명확해진다.

정리한다면 포작(鮑作)계 명칭의 어원은 ‘보재기’이며, 이들은 바다에서 전복 등 해산물을 채취하던 사람들이다.

그런데 김나영(2008)은 이들을 포작 업을 하면서 진상의 역을 담당하는 사람이라고 의미를 규정했다.¹⁸⁸⁾ 그러나 역 부담에 대해서는 단정하기 어렵다. 干이 본래 국가로부터 역이 주어진 사람의 명칭¹⁸⁹⁾이라고 다카하시 기미야키(高橋公

183) 김찬흡·고창석 등 옮김, 2002, 『역주 탐라지』, 푸른역사, 155쪽.

184) 김나영, 2008, 「조선후기 제주지역 포작의 존재양태」, 제주대학교탐라문화연구소, 『탐라문화』 32호, 10쪽.

185) 劉承源, 2003, 「양인」,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25, 탐구당, 180쪽.

186) 金東柱, 1993, 「18·19세기 番漢의 신분적 지위와 그 변동」, 『역사민속학』 3호.

187) 다카하시 기미야키(高橋公明), 1989, 「中世東亞細亞海域에서의 海民과 交流」,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탐라문화』 제8호, 120쪽.

188) 김나영, 앞의 논문, 12쪽.

189) 다카하시 기미야키(高橋公明), 앞과 같음.

明)는 말하지만 그 역시 포작간(鮑作干)이 국가로부터 역을 부여받은 사람인지는 명확치 않다고 했으며, 실제로는 국가가 그들을 부역에 편성하고 있지 않았다¹⁹⁰⁾고 말한다.

물론 김나영이 분석 대상으로 삼고자 했던 조선후기 제주 거주 포작인들은 국가의 역을 진 사람들이긴 했다. 그러나 조선전기 출륙하여 남해 바닷가를 유랑하던 제주유민은 국가로부터의 정식 역을 지지는 않았다.¹⁹¹⁾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발생함을 볼 수 있다. 김나영이 분석하고자 했던 포작과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포작이 다르다는 점이다. 김나영이 분석하는 포작은 직능과 역의 이름이다. 반면 본 연구에서 고찰하는 포작은 그 직능보다는 출륙 제주 유랑민 그 자체를 말한다. 물론 직능에서 나온 이름이긴 하다. 그러나 직능보다는 출륙 제주유민이라는 정체성에 강조점을 둔다.

이 둘은 이름만 동일할 뿐 가리키는 대상은 다르다. 유랑민과 정착민의 차이이다. 국가의 느슨한 통제 아래 있던 사람들과 국가의 강한 통제에 있던 사람들은 분명 다르다. 전자는 조선시대 출륙 제주유민에 대한 대명사로서 두무악계 명칭으로 불리던 사람들과 사실상 동일한 존재이다. 반면 후자의 포작은 제주섬을 떠나지 못하고 국가의 통제 아래 힘든 역을 담당했던 사람들을 말한다.

물론 김나영의 지적처럼 출륙 유민들 중에는 포작도 있고 포작 아닌 사람들도 있었다.¹⁹²⁾ 출륙 시점에서는 포작 아닌 사람들도 많았을 것이다. 그러나 일단 출륙하여 남해안 유랑민이 된 다음에는 포작업 외에 달리 생계 수단을 찾기는 어려웠다. 그러니 대부분의 출륙 유랑민들은 점차 포작일을 하고 자연스럽게 포작으로 불리게 되었을 것이다. 직능으로서는 포작이 맞다. 그러나 역을 진 존재로서의 포작은 아니다.

그런데 김나영은 이 둘을 구분하지 않고 논의를 전개했다. 그러다 보니 포작과 두무악을 다른 존재로 파악했다. 하지만 조선전기 『조선왕조실록』 속의 포작은 포작업을 하는 출륙 유랑민에 대한 대명사로서 사실상 두무악과 동일한 존재

190) 다카하시 기미야키(高橋公明), 앞과 같음.

191) “도망하여 흩어져서 거취가 일정함이 없으며”(『성종실록』 권178, 성종 16년(1485년) 윤4월 19일 己亥)나 “수령들이 고의로 호적에 편입시켜 백성을 만들지 않는다”(『성종실록』 권178, 성종 16년(1485년) 윤4월 11일 辛卯)는 기록을 보면 그들이 국가의 정식 역을 지지 않은 아웃사이더임을 알 수 있다.

192) 『성종실록』 권161, 성종 14년(1483년) 12월 6일 乙丑(‘鮑作人等自濟州而來’); 『중종실록』 권45, 중종 17년(1522년) 6월 26일 辛丑(濟州人雖非鮑作干, 流移者亦多有之).

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이 타고 다녔던 배(船)를 통해서도 그들이 동일 존재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이들이 이용했던 배로 『조선왕조실록』에 등장하는 것은 두독야지선¹⁹³⁾, 제주선¹⁹⁴⁾, 포작선¹⁹⁵⁾, 두무악선¹⁹⁶⁾ 등이 있다. 이 배가 서로 다른 배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당시 조선술을 고려할 때 제주에서 그렇게 다양한 종류의 배를 만들지는 않았을 것이다. 4가지의 이름 중 두독야지선, 제주선, 두무악선은 각각 1회씩 등장하는 반면, 포작선은 7회로 가장 많이 기록에 남아 있다. 보편적으로 쓰인 용어가 포작선일 뿐, 이들이 각각 다른 배는 아닐 것이다.

한편 장혜련(2006)의 견해도 본 연구와 유사하다. 제주유민의 발생 당시 그들에 대한 호칭은 ‘두모악’ ‘두독야지’ ‘포작간’으로 칭해졌으나 후대로 내려오면서 포작간이라는 명칭이 『조선왕조실록』에 자주 등장하고, 제주유민에 대한 일반적인 호칭으로 자리 잡았다고 했다. 제주유민 대부분이 전복과 고기 등을 잡아 생활하였기 때문에 포작간이라는 호칭이 일반화 되었을 것이라는 게 그의 추정이다.¹⁹⁷⁾

그렇다면 이제는 『조선왕조실록』에 등장하는 이들 명칭의 빈도와 시기를 통해 점검해 보자. 다음의 <표-2>와 <표-3>은 각각 두무악계 명칭과 포작계 명칭이 등장하는 시기와 빈도를 보여준다.

<표-2> 『조선왕조실록』 속의 두무악계 명칭 기사 횟수¹⁹⁸⁾

| 명칭 \ 시기 | 성종 | 중종 | 선조 | 합계 |
|------------|----|----|----|----|
| 두무악(頭無岳) | 2 | 3 | | 5 |
| 두독야지(豆禿也只) | 3 | | | 3 |
| 두독야지(頭禿也只) | 1 | | | 1 |
| 두모악(豆毛岳) | | | 2 | 2 |
| 합계 | 6 | 3 | 2 | 11 |

193) 『성종실록』 권235, 성종 20년(1489년) 12월 10일 癸巳.

194) 『성종실록』 권252, 성종 22년(1491년) 4월 11일 丙辰.

195) 『연산군일기』 권23, 연산군 3년(1497년) 5월 29일 庚午기사 외 8건.

196) 『중종실록』 권12, 중종5년(1510년) 8월 20일 癸卯.

197) 장혜련, 2006, 「조선중기 제주유민의 발생과 대책」, 제주대학교 석사논문 35쪽.

198) 성종 23년 2월 8일 기사에는 두무악(頭無岳)과 두독야지(頭禿也只)가 둘 다 나와 양쪽에 표기함.

성종 대에 가장 많아 6회 등장하며, 중종 때 3회 그리고 한동안 보이지 않다가 86년 지난 선조 대에 2회 등장한다. 다음 <표-3>과의 비교 결과 우선 두무악계 명칭은 초기에 조금 쓰였으며 반면 포작계 명칭은 전(全)기간에 걸쳐 두루 쓰였음을 보게 된다. 게다가 포작계 명칭이 중종 대에 20회, 선조 대에 16회 등장했음은 시간이 흐를수록 포작계 명칭이 출륙 제주유민에 대한 일반적인 명칭으로 변화하였음을 말해준다.

<표-3> 『조선왕조실록』 속의 포작계 명칭 기사 횟수¹⁹⁹⁾

| 명칭 \ 시기 | 성종 | 연산군 | 중종 | 명종 | 선조 | 광해군 | 합계 |
|-------------|----|-----|----|----|----|-----|----|
| 포작인(鮑作人) | 6 | 1 | 4 | 1 | 8 | 1 | 21 |
| 포작간(鮑作干) | 2 | | 8 | 4 | 5 | | 19 |
| 포작한(鮑作漢) | | | 2 | | 1 | 1 | 4 |
| 복작간(馘作干) | 1 | 1 | | | | | 2 |
| 포작배(鮑作輩) | | | | | 1 | | 1 |
| 기타(鮑作船, 鮑作) | | 3 | 6 | | 1 | 1 | 11 |
| 합계 | 9 | 5 | 20 | 5 | 16 | 3 | 58 |

그러나 한영국(1981)이 분석한 17, 18세기 『경산도 울산부 호적대장』에서는 대부분 두무악계 명칭으로만 기록됨을 볼 수 있다. 그러니 시간이 지나면서 모두 포작계 명칭으로 수렴되었던 것은 아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두무악계 명칭도 출륙 제주유민이 소멸할 때까지 사라지는 않았다. 다만 『조선왕조실록』 기록 속에서 등장하지 않았을 뿐이다.

정리하자면 이렇다. 출륙 제주유민을 가리키는 명칭은 두 종류가 있었다. 그 중 두무악계 명칭은 출륙 제주유민을 가리키는 보편적 의미다. 반면 포작계 명칭은 본래 전복 등 해산물을 채취하던 제주사람을 일컫는 말이었다가, 차츰 출륙 제주유민을 가리키는 말로 일반화되어 갔다. 이는 해산물 채취 외에 해양유민이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없었기에 사실상 제주유민을 대표하는 포작업이 이들의 보편적 직업이 되었고, 그래서 결국 ‘포작’은 제주유민의 일반적 명칭이 되었다.

199) 김나영의 앞의 논문 8쪽의 표를 재편집. 본 논문의 관심 시기가 임진왜란 무렵까지이므로 숙종과 정조 대의 기록 3회는 제외했다. 그래서 총 61건 중 58건만 표기함.

이 연구에서 주목하는 대상은 출륙 유랑하던 제주민 전체이기에 굳이 포작계와 두무악계의 명칭을 분리해서 사용하지 않는다. 용어의 본래 의미에 구애받지 않고, 인용하는 사료에 기록된 그대로 때론 포작으로 때론 두무악계 명칭으로 사용한다.

물론 이들 유민은 발생 초기의 유민만을 말하는 게 아니다. 약 2세기의 기간에 걸쳐 현지화하면서 나타난 2세, 3세, 4세, 5세 등의 후손들과 한반도 해안 지역민으로서 제주유민과 섞인 현지인을 포함하는 말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현지화하였기에 『조선왕조실록』에는 제주 출신인임을 명시하지 않은 채 ‘충청도 포작인’²⁰⁰⁾ 등의 표현이 등장한다.

하지만 “이 무리들은 본래 제주 사람들입니다”²⁰¹⁾라는 기록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본래 출발은 제주 출신 유랑민임이 분명하다. 다만 “평민들도 간혹 저들 가운데 투신하여 한 무리가 되기도 합니다”²⁰²⁾라는 기록에서 보듯이 시간이 흐르면서 한반도 해안 지방 사람들 중 일부가 이들에게 가담하면서 순수 제주 출신 자들로만 구성된 것은 아님을 말해 준다. 물론 이들의 현지화는 쉽게 이뤄진 것은 아니었다. 현지인들의 배타적 시선은 이들의 현지화를 어렵게 했다.

현지인들과 섞이는 과정 중에 현지인들 중 일부가 제주 포작인의 해양 경제행위를 따라하며 포작인의 범위는 넓어졌을 것이다. 그러니 포작인은 제주 출신만이 아니라 그들과 섞이거나 교류하며 유사한 생활을 했던 사람들을 아우르는 말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포작의 존재는 제주 출신 유랑민에서부터 비롯되었으며 출륙 제주민의 숫자 역시 적은 게 아니었기에 포작인의 주류를 이룬 것은 아무래도 현지화한 제주 출신자들인 것으로 보인다.

2. 제주유민의 발생 및 격감 시점

200) 『중종실록』 권48, 중종 18년(1523년) 7월 28일 甲午.

201) 『성종실록』 권178, 성종 16년(1485년) 윤4월 11일 辛卯 (此輩本濟州人也).

202) 『성종실록』 권178, 성종 16년(1485년) 윤4월 11일 辛卯 (齊民亦或投彼中作儻).

1) 제주유민의 발생 시점

선행 연구들은 대부분 제주유민의 발생 시점을 성종 무렵으로 추정했다. 『성종실록』 성종 8년(1477년) 8월 5일 기사에 두독야지(豆禿也只)가 처음으로 등장하기 때문이다.

경상도 관찰사(慶尙道觀察使)와 좌·우도 병마절도사(左右道兵馬節度使), 수군절도사(水軍節度使)에게 유시하기를,

“지금 어느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도내의 사천(泗川)과 고성(固城)·진주(晉州) 지방에, 「제주(濟州)의 두독야지(豆禿也只)」라고 이름을 칭하는 사람이, 처음에는 2, 3척의 배를 가지고 출래(出來)하더니, 이제는 변하여 32척이 되었으며, 강기슭에 의지하여 집을 지었는데, 의복은 왜인과 같으나, 언어는 왜말도 아니고 한어(漢語)도 아니며, 선체(船體)는 왜인의 배보다 더욱 견실하고, 빠르기는 이보다 지나치는데, 항상 고기를 낚고 미역을 따는 것으로 업(業)을 삼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현(郡縣)에서도 役을 시키지 못하여, 근처에 사는 백성들이 모두 생각하기를, 우리나라 사람을 약탈하는 자가 이 무리들인지 의심스럽습니다’고 하였다.……놀라고 소요함이 없게 하라”하였다.²⁰³⁾

제주의 출륙 유민에 대해 비교적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우선 ‘두독야지’라는 호칭이 나온다. 다음으로 규모가 소개되고, 그들의 주거 형태가 나온다. 의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언어도 언급된다. 그들이 타고 다니는 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들의 생업수단까지 소개된다. 짧지만 이들에 대한 총체적인 언급이다. 이렇게 자세히 소개된 것은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이제 제주유민 현상이 본격적으로 주요 사회문제로 부각되었음을 말하는 것이다.

때문에 이것이 첫 기록이라고 해도 그것이 그대로 발생 시점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성종 8년(1477년) 위 기사의 발언 주체는 국왕이다. 국왕의 유시 내용에 제주유민이 등장했다. 그것도 아주 총체적으로 이들의 정체에 대해 언급하고

203) 『성종실록』 권83, 성종 8년(1477년) 8월 5일 己亥 (諭慶尙道觀察使、左右道兵馬節度使、水軍節度使曰: “今有人來言: ‘道內泗川、固城、晉州地面, 濟州豆禿也只稱名人, 初將二三船出來, 今轉爲三十二隻, 依岸爲廬, 衣服混於倭人, 言語非倭非漢, 船體視倭尤牢實, 而迅疾則過之, 恒以釣魚採藿爲業。郡縣亦不能役, 近處居民皆以爲掠我國人者疑是此徒……亦毋令驚擾”).

있다. 국왕까지 그 정도의 깊이로 파악하여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제주유민 현상이 보편화된 상황임을 짐작케 한다. 그렇다면 발생은 그보다 앞선 시점이라야 한다. 이를 보여주는 기사가 있다.

제주(濟州)의 3읍(邑)은 본래 탐라(耽羅)의 유종(遺種)인데, 대개 성화(聖化)가 외방(外方)에 미치지 않는다고 하여 의(義)를 사모(思慕)하여 정성(精誠)을 바쳐 왔으므로 우리의 판적(版籍)에 넣었던 것입니다. 정해년(1467년, 세조13년)부터 진주(晉州)·사천(泗川)·고성(固城)·흥양(興陽)에 와서 우거(寓居)하는 자가 3백여 구(口)에 이르고, 그 밖에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²⁰⁴⁾

언제부터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정해년 곧 세조 13년(1467년)부터 진주, 사천, 고성, 흥양에 와서 살고 있다고 했다. 그렇다면 앞의 기사 성종 8년(1477년)보다 10년이 앞선다. 10년 앞선 세조 13년(1467년)부터 제주유민들이 남해안에 거주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 역시 발생 시점으로 보기는 어렵다. 정부 관료들이 파악한 시점일 뿐이다. 실제 발생 시점은 그보다 앞선 시기로 봐야 한다. 제주유민이 발생하자마자 정부 관료들이 파악한다는 것은 어려운 가정이다. 해양유민이 발생하고 이것이 사회문제가 된 이후라야 관심을 가졌을 것이다. 해양유민의 발생, 이것의 사회문제화 그리고 더 지나서 정부 관료들의 인지까지의 과정은 적지 않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결국 제주유민의 발생 시점은 세조 13년(1467년)보다 수십 년 앞선 시점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본 연구가 주목하는 시점은 세종 대이다. 제주의 토관세력이 실질적으로 권력을 상실한 것도 세종 대였음을 앞에서 살폈다. 또한 말(馬) 사교역 금지 기사가 가장 많은 시점도 세종 대였다. 그때부터 제주경제의 기반이 붕괴되기 시작했을 것이고 그에 따라 출륙 유랑도 시작되었을 것이다. 『세종실록』에 이미 제주민의 출륙 기사가 5회 등장한다.²⁰⁵⁾ 세종 11년(1429년)부터 세종 16년(1434년) 사이의

204) 『세종실록』 권85, 성종 8년(1477년) 10월 25일 己未 (濟州三邑, 本是耽羅遺種, 蓋以聖化無外, 慕義投誠, 入于版籍. 自丁亥年來寓晉州, 泗川, 固城, 興陽者, 至三百餘口, 其他亦可知也).

205) 세종 11년 8월 26일, 세종 12년 12월 2일, 세종 13년 7월 7일, 세종 15년 윤8월 9일, 세종 16년 6월 19일의 기록이 그것이다.

출륙 기록이다. 물론 여기서는 ‘포작인’ 혹은 ‘두무악’이라는 이름으로 명시되지는 않았다. 아직 심각한 사회문제로까지는 비화하지 않은, 초기 발생 시기라고 추정된다.

그런데 세종 16년(1434년) 우마적 사건 이후 다음해 시행된 우마적의 평안도 강제 이주라는 강경 조치는 출륙 유량을 재축했을 것이다. 작은 수치이지만 이 시점에서 인구 감소 현상이 일어났다. 세종 16년(1434년) 63,474명의 제주인구²⁰⁶⁾가 다음 해인 세종 17년(1435년)에는 63,093명²⁰⁷⁾으로 381명이 줄어들었다.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한 세종 17년(1435년)은 바로 우마적 사건으로 강제 이주가 있었던 해이다.

물론 대규모 출륙 유량은 제주유민 기사가 빈번해진 성종 대의 일로 보인다. 국왕까지 유시를 내릴 정도로 사회문제가 되었다는 것은 어떤 커다란 충격이 제주사회에 가해졌음을 암시한다. 성종 4년(1473년) 사노(私奴) 정의(性義) 등을 우마 도적의 죄로 참형에 처했던 조치²⁰⁸⁾는 제주민들을 더욱 궁지로 몰았을 것이다. 그것은 곧 제주사람들의 출륙 유량을 재축하여 대규모 유민 현상을 자아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정부의 강한 단속을 피하여 생존을 모색했던 제주민들은 말(馬)교역 대신 우마피 교역으로 활로를 찾고자 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밀도살과 밀교역을 했다. 그러나 그 행위는 오히려 정부의 더 강한 통제를 가져왔다. 평안도로의 강제 이주였다. 하지만 그런 강경 조치를 겪고도 생존을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었다. 밀도살과 밀교역은 끊이지 않았다. 그러다가 결국 경국대전 체제가 만들어지던 성종년간에는 급기야 참형을 당할 정도까지 통제가 심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경제는 더 크게 위축되었고, 제주민들은 이제 대규모 출륙 유량의 길로 나설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206) 『세종실록』 권66, 세종 16년(1434년) 12월 7일 庚戌 (今考三邑人丁之數, 壯老弱共六萬三千四百七十四名).

207) 『세종실록』 권70, 세종 17년(1435년) 12월 12일 己酉 (濟州三邑, 人多地窄, 民戶九千九百三十五, 人口六萬三千九十三).

208) 『성종실록』 권35, 성종 4년(1473년) 10월 22일 庚辰 (刑曹三覆啓: “濟州囚私奴性義、文面山、金元民、德命、宋石松、宋自山盜殺牛馬罪, 依受教, 斬待時” 從之).

2) 제주유민의 격감 시점

이렇게 15세기에 시작된 제주민의 출륙 유량은 오래도록 이어졌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륙 유량을 멈추긴 어려웠다. 하지만 정부의 입장에서 대규모 유민 발생은 큰 부담이 되었다. 우선 세금 수취원 상실이 큰 문제였다. 또한 남아 있는 자들을 동요시킬 우려가 있었다. 때문에 조선정부는 유민에 대한 쇄환(刷還)을 지속적으로 시도했다.²⁰⁹⁾ 또한 세금 감면과 진휼도 시행했다.²¹⁰⁾ 그러나 근본 모순 해결이 없는 미봉책이었기에 출륙 유량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래서 정부는 다시금 강경 통제책을 선택했다. 인조 7년(1629년) 8월 13일 기록에 등장하는 소위 ‘출륙 금지령’이 그것이다.

제주(濟州)에 거주하는 백성들이 유리(流離)하여 육지의 고을에 옮겨 사는 관계로 세 고을의 군액(軍額)이 감소되자, 비국(僻國)이 도민(島民)의 출입을 엄금할 것을 청하니, 상이 따랐다.²¹¹⁾

조세 징수의 근원인 주민 감소를 염려하여 제주도민의 육지 출입을 엄금하는 내용이다. 물론 그 이전에도 제주민의 출륙을 금지하는 조치가 있었다. 김상헌의 1602년 기록인 『남사록』에는 “을묘년(1555년) 이후부터 사선(私船)이 마음대로 출입하자, 섬 안에서 부역을 도피하는 자들이 가끔 배를 타고 육지로 도망하였다. 그 때문에 조천(朝天), 별도(別刀) 두 포구에서만 배를 내보내도록 허락하였다. 배를 내보내는 날에는 목사군관(牧使軍官) 한 사람이 장부와 대조하며 점검하였는데 이것을 출선기(出船記)라 한다. 비록 한 사람, 한 필의 말이라도 감히 몰래 숨어 나가지 못하니”라는 표현이 나온다. 이것은 인조 7년(1629년) 출륙금지령 이전에도 제주민의 출륙을 금지하고 있었음을 말한다.

특히 ‘한 사람, 한 필의 말이라도 몰래 숨어 나가지 못한다’라고 표현할 만큼, 인조 7년의 출륙금지령 이전에도 제주민의 출륙을 엄격히 통제했던 것 같다. 하

209) 『중종실록』 권92, 중종 35년(1540년) 1월 10일 癸卯 기사 등.

210) 『선조실록』 권170, 선조 37년(1604년) 1월 3일 甲寅 기사 등.

211) 『인조실록』 권21, 인조 7년(1629년) 8월 13일 乙丑 (濟州居民流移陸邑, 三邑軍額減縮。 備局請嚴禁島民之出入, 上從之).

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과 말은 나갔다. 생존을 위해 출륙했으며 생존을 위해 말(馬) 밀교역을 시도했던 것이다.

하지만 인조 7년(1629년) 출륙금지령은 아주 강력했던 것 같다. 17세기 이후에는 출륙 유민 관련 기사가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인조 7년(1629년) 출륙금지령을 제주유민 현상의 격감 계기가 된 시점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을 듯하다. 선행 연구²¹²⁾도 이 시점을 격감 시점으로 보고 있다.

또한 한반도 남해안에 유랑하던 제주유민들도 점차 정착 단계로 들어갔다. 韓榮國(1981)에 의하면 17, 18세기 豆毛岳들이 群聚成村하여 육지인들과는 격리된 가운데 그들 나름의 특수 마을을 이루어 정착했고, 특히 그 과정에서 1711년~1726년 사이에는 帳籍上에서 豆毛岳이라는 명칭마저 사라져 일반 군역을 진 良人으로 전환했다고 한다.²¹³⁾ 韓榮國(1981)은 또한 이 무렵 두모악의 소멸 원인으로 대동법 실시에 따른 포작역의 불필요와 출륙금지령과 그에 따른 撫恤策을 들었다.²¹⁴⁾ 그 역시 출륙금지령을 제주유민 소멸의 계기로 본 것이다.

그러나 출륙금지령 이후에도 완전히 소멸된 것은 아니었다. 이원진의 『탐라지』(1653년)에는 1651년 제주 안핵어사로 왔던 이경억(李慶億)이 올린 장계에 따라 “10년 안에 도망간 자들을 우선 잡아들였는데”²¹⁵⁾라는 대목이 나온다. 이경억이 장계를 올렸던 1651년으로부터 10전 전이라고 하면 1641년이다. 그때는 이미 출륙금지령이 내려진 1629년을 10년 이상 지난 시점이다. 즉 출륙금지령 이후에도 적지 않게 출륙 유랑이 이어졌다는 의미다.

그렇기는 하지만 긴 안목으로 제주유민 현상을 보면, 대략 17세기 중반을 기점으로 출륙이 많이 잦아들었다고 할 수 있다. 『조선왕조실록』 인조 7년(1629년) 출륙금지령 기사 이후에는 출륙 유랑과 관련된 기사가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 또한 韓榮國(1981)의 연구 역시 17세기 중반이 제주유민 현상의 소멸 시점임을 시사하고 있다. 그의 연구에 비춰볼 때 울산뿐만이 아니라 남해안을 유랑하던 유민들도 17, 18세기에는 그 지역에 정착하여 차츰 현지의 良人으로 변화해 갔을 것으로 생각된다.

212) 장혜련, 앞의 논문.

213) 韓榮國, 1981, 「豆毛岳考」, 『한우근박사정년기념사학논총』, 지식산업사, 814~816쪽.

214) 韓榮國, 앞의 논문, 821~822쪽.

215) 이원진, 1653, 『탐라지』, 제주목, 노비조.

이렇게 조선시대 제주유민 현상은 대략 15세기 중반부터 17세기 중반까지 대략 200년 정도 지속된 중기지속의 사회현상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다.

3. 제주유민의 구성

15~17세기 출륙 유랑의 길을 택한 제주민들은 특정 부류의 사람들이 아니었다. 제주사람 전반에 걸쳐 출륙 유랑민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말(馬) 사교역 금지로 제주경제의 기반이 붕괴되었기에 그 여파는 제주 섬사람 전체에게로 과급되었다.

물론 말(馬) 산업 관련자가 가장 직접적인 피해자였다. 하지만 말(馬)산업 관련자는 사실상 제주민 전반에 걸쳐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떤 특정 부류의 사람들만이 출륙 유민이 되지는 않았다. 말 소유주, 말 관리 경영인, 말을 직접 키우는 목자, 말 도살자, 도살된 말로 건포를 만드는 장인, 우마피를 만드는 장인, 유통과 관련된 상인, 육지로 실어 나르는 선주(船主), 배의 노를 짓는 격군(格軍) 등 말산업 관련자는 실제 제주민 전반에 있었다. 앞에서 살폈던 것처럼 농업으로는 생존할 수 없는 조건이었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출륙 유랑민 역시 제주사람 전반에 걸쳐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 안에서 발생했다.

게다가 출륙자의 수가 제주 인구의 절반에까지 이르렀기에, 출륙 유랑자의 구성을 어떤 특정 직역에 국한시켜 생각하긴 어렵다. 제주민 전반에 걸쳐 출륙 유랑 현상이 일어났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관련된 기록을 보자.

제주(濟州)는 바다로 둘러 있어 사면에서 적을 받게 되므로 방어가 가장 긴요한데, 요즈음 흉년으로 말미암아 군민(軍民)이 유산(流散)하여, 지금 전라도의 연변(沿邊) 여러 고을로 옮겨 사는 자가 많습니다. 이미 본도의 관찰사(觀察使)를 시켜 추쇄(推刷)하여 합계한 것이 양인(良人) 91, 정병(正兵) 3, 선군(船軍) 12, 공천(公賤) 29,

사천(私賤) 17입니다.²¹⁶⁾

정의(旌義)의 목자(牧子)·어호(漁戶)로 배정된 공천(公賤)·사천(私賤) 가운데 도망하여 흩어진 자가 많습니다.²¹⁷⁾

첫 번째 기사는 출륙 유민의 추쇄 결과를 보고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출륙 유민의 구성을 엿볼 수 있다. 양인(良人) 91명, 정병(正兵) 3명, 선군(船軍) 12명, 공천(公賤) 29명, 사천(私賤) 1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양한 계층과 직역의 사람들이다. 양인도 있고 공노비, 사노비도 다 있다. 즉 제주도민 전 부류에 걸친 인원 구성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특별히 관심이 가는 사람들은 선군(船軍)이다. 이들은 배를 부리는 사람들로서 과거 말(馬)교역 경제 때부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말 교역이 불법으로 몰리자 관련자들과 함께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서는 데에 일정한 역할을 담당했던 것 같다. 출륙에는 반드시 배 부리는 사람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기사는 중종 때의 기록으로 앞의 기록보다 약 50년 뒤의 현상을 보여 준다. 첫 발생 시점으로 추정했던 세종 대부터 생각하면 약 100년 뒤의 현상이다. 중종 때의 특징은 유민의 신분층이 앞 시기보다 낮아졌다는 점이다. ‘목자(牧子)·어호(漁戶)로 배정된 공천(公賤)·사천(私賤)’이 그들이다. 유민 현상이 장기화되면서 중상층은 어느 정도 정리되고 일체의 모순이 모두 하층민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즉 제주유민은 초기에는 제주민 전반에 걸쳐 형성되었고, 점차 시간이 흐를수록 일체의 사회모순을 떠맡아야 했던 하층민들로 구성되었다고 정리할 수 있겠다.

일부 연구에서 제시된 것처럼 제주유민의 대다수가 포작인으로 구성되었다고 보는 것은 타당성이 떨어진다. 사료에 ‘포작인(鮑作人)’이라는 호칭으로 등장하는

216) 『성종실록』 권28, 성종 4년(1473년) 3월 28일 戊午 (濟州環海, 四面受敵, 防禦最繁, 而近因年荒, 軍民流散, 今於全羅道沿邊諸邑, 移寓者甚多. 已令本道觀察使推刷, 計得良人九十一、正兵三、船軍十二、公賤二十九·私賤十七).

217) 『중종실록』 권41, 중종 16년(1521년) 3월 10일 壬戌 (旌義牧子、漁戶公賤, 多逃散).

경우가 많다고 해서²¹⁸⁾, 출륙 유민 대다수가 본래부터 포작(鮑作)²¹⁹⁾의 직역을 진 사람들이라 가정하는 것은 무리다. 『조선왕조실록』에도 처음엔 제주사람을 뜻하는 ‘두독야지(豆秃也只)’라는 명칭으로 나온다. 포작이 아닌 일반 제주사람들이었다.

하지만 출륙 후에는 달라졌다. 출륙 후 그들이 해상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한정될 수밖에 없었다. 앞서 인용한 『성종실록』 성종 8년(1477년) 8월 5일 기사에서 보듯이 ‘고기를 낚고 미역을 따는 것으로 업(業)’을 삼을 수밖에 없었다. 더 이상 말(馬) 관련 생업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그렇게 그들은 점차 직능상의 포작인으로 변화해 갔을 것이다. 그래서 『조선왕조실록』에 등장하는 포작이라는 명칭은 반드시 직능상의 포작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출륙 제주유민 일반을 가리키는 대명사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4. 제주유민의 분포 지역

15세기 중엽부터 제주섬을 떠나야만 했던 출륙 유랑민들은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서 유랑을 했을까? 흔히 남해안 경상도, 전라도 지역을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사료를 보면 그것만도 아니다. 또한 단번에 정착하는 것도 아니고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정착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제주(濟州)에서 출래(出來)한 포작인(鮑作人)들은 본래 항산(恒産)이 없고 오로지 고기를 잡는 것으로 업(業)을 삼아, 작은 배에 처자(妻子)를 싣고 해곡(海曲)으로 떠돌아다니며 우거(寓居)하는데, 이르는 곳이 만약 마음에 맞지 않음이 있으면, 곧 도망하여 흩어져서, 비록 거취(去就)가 일정함이 없으나²²⁰⁾

218) 『조선왕조실록』에는 ‘포작’류의 명칭이 총 61건의 기사에 등장한다(김나영, 「조선후기 제주지역 포작의 존재양태」, 제주대학교탐라문화연구소, 『탐라문화』 32호, 2008, 9쪽.).

219) 바다 속에 들어가 전복 등 해산물을 채취하는 사람인 ‘보자기’의 한자 차용 표현.

220) 『성종실록』 권178, 성종 16년(1485년) 윤4월 19일 己亥 (濟州出來鮑作人等, 本無恒産, 專以捉魚爲業. 扁舟載妻子, 流寓海曲, 所至之處如有不愜, 旋即逃散. 雖去就無常).

섬을 떠난 제주민의 생계는 여전히 불안했다. 항산(恒産)이 없었다고 했다. 그러니 해곡을 떠돌아다니며 물고기 잡이를 했다. 당연히 고정된 거처가 생길 수 없다. 그래서 곧 임시 거주 즉 우거(寓居)했다는 말이 나왔다. 그러다가도 마음에 맞지 않으면 곧 도망하여 흩어져 거처가 일정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렇다면 어디까지 흩어졌던 것일까?

우선 『조선왕조실록』의 기록부터 살펴며 그들이 유랑 우거했던 지역을 가급적 모두 읊었다. 이유는 기사의 빈도를 보기 위해서다. 빈도가 높을수록 많은 유민이 거주했던 지역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표-4> 『조선왕조실록』 속의 제주유민 분포 지역

| 번호 | 지명 (현재지명) | 道구분 | 내용 | 출처 |
|----|--------------|-----------|--|-------------------------|
| 1 | 해랑도 (해양도) | 중국 요녕성 | 해랑도에 정착했습니다. (중략)제주(濟州) 주민(住民) 20여 구(口)가 새로 가서 살고 있었습니다. 泊于海浪島,(중략) 濟州民二十餘口, 新往居之 | 성종23년(1492년) 8월 4일 |
| 2 | 해랑도 (해양도) | 중국 요동성 | 제주(濟州)의 백성으로 해랑도(海浪島)에 도망해 들어간 자가 많다고 합니다. 濟州民, 多有逃入海浪島者 | 성종23년(1492년) 8월 10일 |
| 3 | 해주 | 황해도 | 제도(諸道)를 수색 토벌할 때에 해주(海州)·웅진(甌津) 연해(沿海)의 각 고을에 와 살면서 포작(鮑作)하는 사람들을 諸道搜討時, 海州、瓮津, 沿海各官來居鮑作等, | 중종18년(1523년) 5월 28일 |
| 4 | 웅진 | 황해도 | 위와 같음 | 중종18년(1523년) 5월 28일 |
| 5 | 대청도 | 황해도 | 황해 감사(黃海監司)가 서장을 올리기를: 장연(長淵) 대청도(大淸島)의 포작간(鮑作干)들이 黃海監司書狀: 吾父浦萬戶元景全, 長淵地大淸島, 鮑作干等 | 선조23년(1590년) 12월 23일 |
| 6 | | 황해도 | 그 백성은 대부분 황해도와 충청도 지방으로 나오고 있으니, 그들을 다시 돌아와 살게 하려면 其民多流離出來于黃海、忠淸地方。 若欲還集 | 중종12년(1517년) 12월 1일 |
| 7 | | 황해도 | 듣건대 황해도에 와서 사는 제주 사람도 많다 하니 쇄환(刷還)해야 마땅한데 聞濟州之人, 來居黃海道者, 亦多有之。 當爲刷還 | 중종15년(1520년) 10월 18일 |
| 8 | | 충청도 | 그 백성은 대부분 황해도와 충청도 지방으로 나오고 있으니, 그들을 다시 돌아와 살게 하려면 其民多流離出來于黃海、忠淸地方。 若欲還集 | 중종12년(1517년) 12월 1일 |
| 9 | 가외덕도 | 충청도 | 충청도 수사(忠淸道水使) 황침(黃琛)이 장계(狀啓)하기를: “포작한(鮑作干) 최잉송(崔仍松) 등이 고기잡는 일로 가외덕도(加外德島)에 들어갔다가 忠淸道水使黃琛狀啓: 鮑作干崔仍松等以鈎魚, 入加外德島, | 중종18년(1523년) 7월 20일 |

| | | | | |
|----|----------|-----|---|---|
| 10 | | 충청도 | 충청도(忠淸道) 포작인(鮑作人)이 포획한 중국 사람 8명이 서울로 올라왔다 忠淸道鮑作人所獲唐人(回) [八] 名入來 | 증중 18년 7월 28일 |
| 11 | | 전라도 | 분주와 대정과 정의의 인민들이 경상도, 전라도에 흘러와서 우거(寓居)하는 자가 많다. 近聞本州及旌義、大靜人民流寓慶尙、全羅道者多 | 성종 8년 10월 16일 |
| 12 | 홍양(고흥) | 전라도 | 제주(濟州)의 3읍(邑)은 본래 탐라(耽羅)의 유종(遺種)인데(중략)진주(晉州)·사천(泗川)·고성(固城)·홍양(興陽)에 와서 우거(寓居)하는 자가 3백여 구(口)에 이르고 濟州三邑, 本是耽羅遺種(중략), 晉州、泗川、固城、興陽者, 至三百餘口, | 성종 8년 10월 25일 |
| 13 | | | 포작인들이 제주에서 와서 전라도·경상도 두 도의 바닷가에 흩어져 있는데 鮑作人等自濟州而來, 散處全羅、慶尙兩道海曲 | 성종 14년 12월 6일 |
| 14 | 낙안 | 전라도 | 낙안 군수(樂安郡守) 우배선(禹拜善)이 치보하기를(중략)연변 각처 포작인(鮑作人)들의 집도 모두 떠내려갔거나 날아가서 樂安郡守禹拜善馳報云(중략)沿邊各處, 鮑作廬舍, 竝爲漂飛 | 선조36년(1603년) 7월 23일 |
| 15 | 흥덕(고창) | 전라도 | 제주 포작인 김유월(金六月) 등 남녀 74명이 전라도 흥덕(興德) 지방에 이사하여 살면서 濟州鮑作人金六月等男女七十四名, 移居全羅道興德地面 | 증중17년(1522년) 5월 28일 |
| 16 | 추자도 | 전라도 | 추자도(楸子島) 근처에 도서(島嶼)가 많은데 포작인들이 모여 해적 노릇을 하니 楸子島近處多島嶼。鮑作人等聚爲水賊 | 증중17년(1522년) 5월 28일 |
| 17 | 보길도 | 전라도 | 전라도 우도(右道)의 포작간(鮑作干)들이 보길도(甫吉島)에서 왜적(倭賊)을 만나 全羅道右道鮑作干等逢倭于甫吉島, | 증중17년(1522년) 6월 20일 |
| 18 | 강진 남당포 | 전라도 | 강진(康津) 땅 남당포(南堂浦)에 사는 포작간(鮑作干)인 구질동(仇叱同)이 진고(進告)하기를 康津地南堂浦居鮑作干仇叱同進告內 | 증중24년(1529년) 4월 10일 |
| 19 | 사천 고성 진주 | 경상도 | *도내의 사천(泗川)과 고성(固城)·진주(晉州)지방에 「제주의 두독야지(豆禿也只)」라고 이름을 칭하는 사람이 道內泗川、固城、晉州地面, 濟州豆禿也只稱名人 *제주(濟州)의 3읍(邑)은 본래 탐라(耽羅)의 유종(遺種)인데(중략)진주(晉州)·사천(泗川)·고성(固城)·홍양(興陽)에 와서 우거(寓居)하는 자가 3백여 구(口)에 이르고 濟州三邑, 本是耽羅遺種(중략), 晉州、泗川、固城、興陽者, 至三百餘口, *제주(濟州)의 떠돌아다니는 백성[流移人民]들이 진주(晉州)와 사천(泗川) 지방에 많이 우거(寓居)하면서 호적(戶籍)에 등재(登載)하지 아니하고, 해중(海中)에 출몰(出沒)하며 濟州流移人民, 多寓於晉州、泗川地面, 不載戶籍, 出沒海中, | 성종8년(1477년) 8월 5일 성종8년(1477년) 10월 25일 성종 13년(1482년) 윤8월 12일 |
| 20 | 고성 | 경상도 | 위와 같음 | 위의 자료 |
| 21 | 진주 | 경상도 | 위와 같음 | 위의 자료 |
| 22 | | 경상도 | 분주와 대정과 정의의 인민들이 경상도, 전라도에 흘러와서 우거(寓居)하는 자가 많다.近聞本州及旌義、大靜人民流寓慶尙、全羅道者多 | 성종 8년 10월 16일 |

| | | | | |
|----|--------|-----|--|----------------------|
| 23 | | 경상도 | 포작인들이 제주에서 와서 전라도·경상도 두 도의 바닷가에 흩어져 있는데 鮑作人等自濟州而來，散處全羅、慶尙兩道海曲 | 성종 14년 12월 6일 |
| 24 | 동래 | 경상도 | 동래와 부산 등의 해안 지방에는 포작한(鮑作漢)들의 집이 잇달아 끊이지 않고 東萊、釜山濱海之地，鮑作漢家，連絡不絕矣 | 선조26년6월 21일 |
| 25 | 부산 | 경상도 | 위와 같음 | 위의 자료 |
| 26 | 곤양 | 경상도 | 곤양·사천·고성(固城)에 이르러 제주(濟州)에서와 사는 두무악 昆陽、泗川、固城，招集濟州來居頭無岳 | 성종17년 11월22일 |
| 27 | 김해도요저리 | 경상도 | 두무악(頭無岳)은(중략) 김해(金海) 지경에 도요저리(都要渚里)가 있는데, 그곳에 사는 사람이 무려 1천여 명이나 되어頭無岳(중략)金海地界，有都要渚里，其居人無慮千餘， | 중종5년 6월25일 |
| 28 | 마산 | 경상도 | 본포는 병영에 소속되어 있는데 다수의 포작인(鮑作人)들이 들어와 거접하고 있고, 本浦兵營所屬鮑作，多數入接 | 선조36년(1603년) 5월 2일 |
| 29 | | 강원도 | 상이 이르기를: 강원도의 금년 농사는 어떠한가?(중략)그 중에는 포작간(鮑作干)이 더욱 많은데, 上曰: 江原道，今年農事何如?(중략)其中鮑作尤多 | 선조34년(1601년) 10월 28일 |

『조선왕조실록』에서 이들이 거주했던 지역을 알려주는 기사는 총 29개였다. 본래는 27개 기사이지만 한 기사 안에 두 개 이상의 지명이 나오는 경우 있어 중복 계산했다. 세부적인 지명이 나온 경우도 있고 그냥 해당 도(道)만 표기된 경우도 있다.

세부 지명을 보면 중국 해랑도, 황해도, 해주, 용진, 충청도의 가외덕도, 전라도의 흥양(현재의 고흥), 낙안, 흥덕(현재의 고창), 추자도, 보길도, 강진 남당포, 경상도의 사천, 고성, 진주, 동래, 부산, 곤양, 김해 도여저리, 마산 등이 있다.

도(道) 단위 지역별 빈도수는 중국 해랑도 2회, 황해도 5회, 충청도 3회, 전라도 8회, 경상도 10회, 강원도 1회이다. 아무래도 경상도, 전라도 등 남해안이 가장 많이 나온다. 경상도, 전라도 합쳐 18회 등장한다. 이것은 제주섬을 떠난 제주유민들의 유랑, 우거(寓居) 지역이 우선은 남해안이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지리상 가장 가까운 거리라는 요소가 작용했을 것이다.

남해안과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서해안의 황해도, 충청도의 횡수도 적지 않다. 합쳐 8회의 기록이 등장한다. 반면 동해안 강원도의 경우는 단지 1회뿐이다. 이는 제주유민이 동해안 쪽보다는 황해도, 충청도가 있는 서해안을 선호했음을 말해준다.

동해안의 단조로운 해안지형보다는 남·서해안의 복잡한 해안지형이 유랑민들의 유랑 우거에는 유리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유랑은 본래 불법 행위다. 불법 행위자는 아무래도 은신하기에 유리한 지형을 택하기 쉽다. 또한 해산물 채취의 용이성에서도 동해안보다 남·서해안이 유리하게 작용했을 것 같다.

특이한 것은 중국 요동반도 아래의 해랑도에 제주유민이 살았다는 점이다. 해랑도 제주유민 기사는 2회 나온다. 기록상으로만 보더라도 제주유민들의 분포 범위가 결코 좁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는 임진왜란 당시 충무공 이순신의 기록을 통해 이들의 거주지를 추적해 본다.

<표-5> 이순신 기록 속의 제주유민

| 번호 | 지명 | 道구분 | 내용 | 출처 |
|----|------------------------|-----|--|---------------------|
| ① | 홍양 (고흥) | 전라도 | 홍양 포작 고읍동(高邑洞) | 見乃梁破倭兵狀 |
| ② | 홍양 (고흥) | 전라도 | 홍양 포작 막동 | 1594년 8월 26일 일기 |
| ③ | 순천 금오 도(여수 금 오도) | 전라도 | 제주도 사람이 아들딸과 함께 여섯 식구를 데리고 도망쳐 나와서 순천 땅 금오도에 배를 대었는데 | 1592년 2월 3일 일기 |
| ④ | 낙안 | 전라도 | 낙안 포작 업동 | 見乃梁破倭兵狀 |
| ⑤ | 발포(고흥 도화 내발 리) | 전라도 | 발포 포작 | 見乃梁破倭兵狀 |
| ⑥ | 함평 | 전라도 | 김돌손이 봉학을 거느리고 함평 땅으로 가서 포작을 모았다 | 1597년 12월 5 일 일기 |
| ⑦ | 당포(통영 시 산양읍 삼덕리) | 경상도 | 당포 포작이 피난민의 소 두 마리를 훔쳐 끌고 가면서 적이 왔다고 헛소문을 내었으나 . | 1597년 8월 25 일 일기 |
| ⑧ | 거제 | 경상도 | 거제 사동면 조양포 포작 최필 | 見乃梁破倭兵狀 |
| ⑨ | 창원 | 경상도 | 창원 구곡포의 포작 정말석(丁末石) | 釜山破倭兵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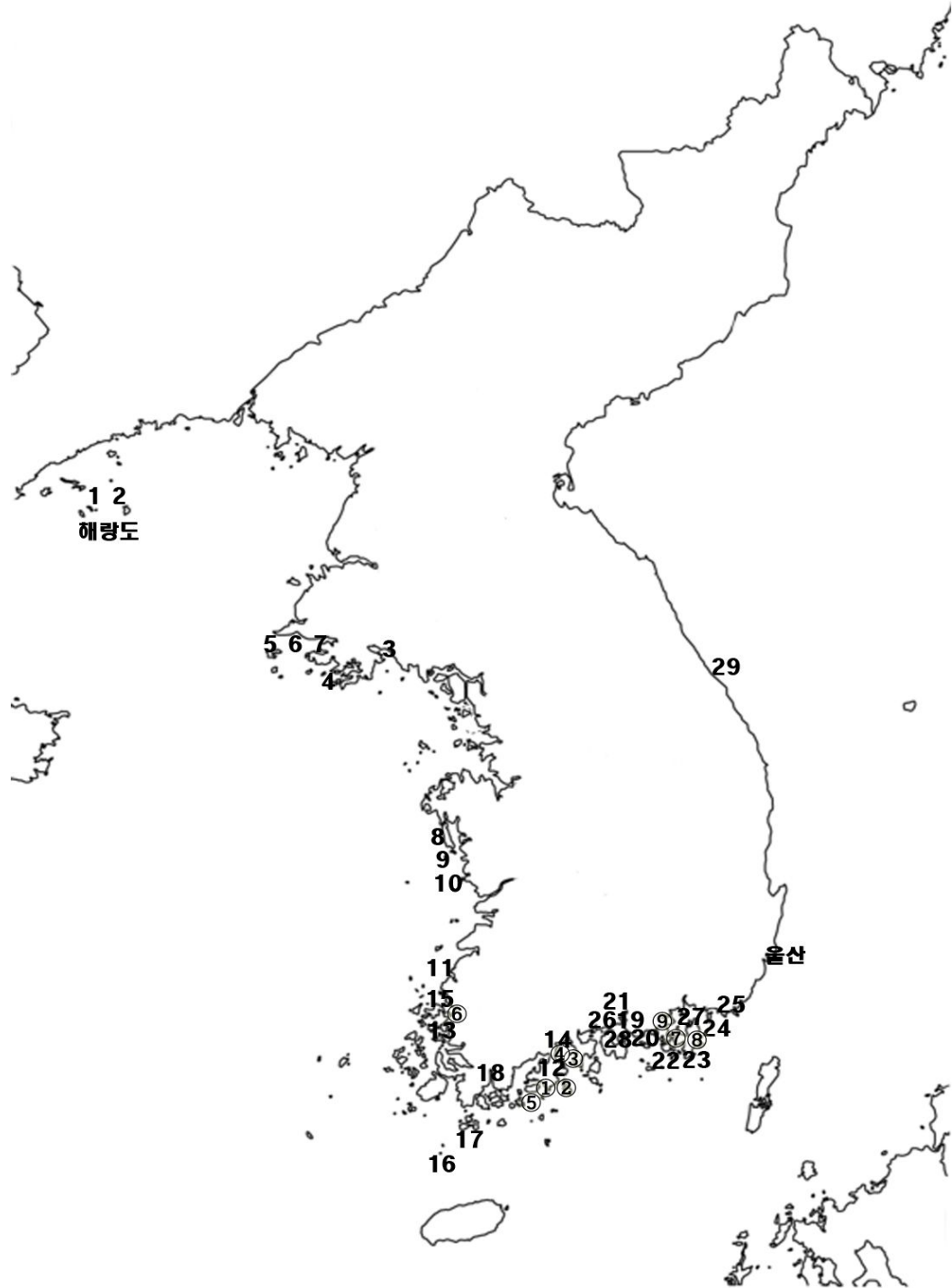
전라도의 홍양(고흥), 순천, 낙안, 발포 그리고 경상도의 통영, 거제, 창원 등이 등장한다. 이순신의 기록은 아무래도 남해안 중심일 수밖에 없다. 특히 전라도가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당연하다. 전쟁 초기를 제외하고 그의 주 작전지역이 전라도였기 때문이다. 총 9개 기사 중에 전라도가 6회, 경상도 3회가 나온다.

그리고 韓榮國(1981)이 분석한 『경상도울산부호적대장』을 통해서도 울산 지

역에도 제주유민이 많이 거주했음을 알 수 있다

위의 자료에 등장한 지역을 지도에 표기해 보면 다음의 <그림-1>과 같다.

<그림-1> 제주유민의 분포지역



물론 <그림-1> 나타난 제주유민의 분포지역은 국내 자료에서 확인한 곳만을 표기한 것이다. 실제로는 기록 밖의 장소에도 많이 갔을 것이라 생각된다. 중국 해랑도 뿐 아니라 그 이상의 지역도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다. 2012년 현재 전라남도 신안군 지도읍에는 있는 ‘대포작도(大包作島)’, ‘소포작도(小包作島)’ 역시 이들 제주유민의 출륙 정착지 중의 하나라고 생각된다.

밤에 출발하여 아침이면 육지에 가서 말(馬)을 팔고 저녁에 다시 돌아올²²¹⁾ 정도의 항해술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들의 항해 범위는 광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 만큼 그들의 유랑 우거 범위도 기록상의 그것보다는 훨씬 넓었을 것이다. 비단 한반도 해안지대에 국한되지는 않았으리라고 생각한다.

먼저 가장 가까운 일본을 상정해 볼 수 있다. 다만 아직까지 그 기록을 찾지 못했을 뿐이다. 당시 부산에서 대마도까지의 항해 시간은 5시간이면 충분했다고 한다. 다음은 선조년간의 이항복의 말이다.

대마도에서 배를 타고 진시(辰時)에 출발하여 순풍을 만나면 오시(午時) 말에는 부산에 닿을 수 있습니다. 바람이 순하지 않더라도 미시(未時)나 신시(申時) 사이에는 부산에 도착할 수 있는데, 정동풍(正東風)이 순풍입니다.²²²⁾

진시(辰時)에서 오시(午時) 말이면 5시간이다. 부산에서 대마도까지가 5시간이라면 대마도 너머 일본까지도 충분히 갔을 것이다. 당시 제주유민들이 일본 말을 하고 일본 옷을 입고 있었다는 기록²²³⁾을 보더라도 제주유민의 일본 진출은 당연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이들의 분포 범위는 기록에 등장하는 지역에만 국한시켜 생각할 것은 아니다. 기록 너머 즉 중국과 일본 이상의 지역까지 확대하여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21) 『예종실록』 권3, 예종 1년(1469년) 2월 29일 甲寅 (依憑商販…… 乘夜出陸, 朝往夕返).

222) 『선종실록』 권121, 선조 33년(1600년) 1월 29일 甲戌 (自馬島乘船, 辰時遇順風, 則午·未可泊釜山, 風雖不順, 未·申間則可到釜山。 正東風, 爲順風矣).

223) 『성종실록』 권178, 성종 16년(1485년) 윤4월 11일 辛卯 (爲倭服倭語).

5. 제주유민의 규모

15세기 중반부터 출륙한 제주유민들은 중국 요동반도 아래 해랑도를 포함해 한반도 각 지역 해안에 유랑 우거했다. 그렇다면 그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되었을까?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이들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서 우선은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을 통해 짐작해 보고, 다음으로는 인구 변동을 통해 추적해 보려고 한다.

먼저 성종 8년(1477년)의 다음 기록을 보자.

근년에 제주(濟州) 세 고을의 인민(人民)이 자칭 두독야지(豆禿也只)라 하면서 처자(妻子)들을 거느리고 배를 타고 경상도·전라도의 바닷가 연변(沿邊)에 옮겨 정박(碇泊)하는 자가 수천여 인인데²²⁴⁾

성종 8년(1477년)이면 기록상 등장으로는 초기이다. 발생 초기인데도 벌써 수천 명을 언급하고 있다. 물론 수천 명이라고 기록한 숫자는 막연하다. 어쨌거나 초기에는 1만 명까지는 안 되었던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로부터 약 30년이 경과한 중종 5년(1510년)의 다음 기록은 김해 도요저리(都要渚里)라는 하나의 마을만을 다루고 있다. 그런데 불과 한 개 마을에 거주하는 제주유민의 숫자로는 적지 않은 규모이다.

두무악(頭無岳)은 해채(海採)로 업을 삼아 배에 처자를 싣고 창해(滄海)로 집을 삼는데, 지금 왜변으로 인하여 관가에서 그 배를 구류하자 살아갈 수가 없어 도산(逃散)하려고까지 하니, 바다 밖 절도(絶島) 같은 데는 금해야겠지만, 사람이 척후(斥候)하여 바라볼 수 있는 곳은 왕래를 금하지 마소서. 또 김해(金海) 지경에 도요저리(都要渚里)가 있는데, 그곳에 사는 사람이 무려 1천여 명이나 되어 스스로 한 마을을 이루고 해채로 살아가니, 일체 바다에 들어가는 것을 금하면 살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배가 가볍고 빨라서 국가에서도 힘입어 쓸 수가 있으니, 해안 가까운 곳에

224) 『성종실록』 권86, 성종 8년(1477년) 11월 21일 甲申 (近年濟州三邑人民自稱‘豆禿也只’, 挈妻子乘船, 移泊慶尙、全羅沿邊者, 幾千餘人).

는 왕래를 금하지 마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225)

김해 도요저리(都要渚里)라는 한 마을에만도 무려 1천 명의 제주유민이 거주했다는 기사다. 한 마을에만도 1천 명의 제주유민이 거주했다면 전체적으로는 이제 상당히 증가한 숫자가 되었을 것 같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대거 출륙해버린 뒤의 제주도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다음의 중종 35년(1540년) 기록은 대규모 출륙 뒤의 제주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제주의 세 고을은 주민들이 날로 유망(流亡)하여 고을이 거의 빌 지경에 이르렀기에226)

당시의 제주 3읍 즉 제주목, 정의현, 대정현은 주민 유망으로 고을이 거의 빌 지경이라고 했다. 문학적이고 추상적인 표현이라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유민이 발생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고을이 거의 빌 지경(幾至空虛)’이라고 했으면 최소 반 이상의 주민이 유망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다.

『南槎錄』의 “옛날에는 사람이 매우 많아 군사가 12려(旅)였다. 그런데 50~60년 전부터 지금까지 전염성 열병으로 죽거나 부역을 도피한 자가 이루 다 셀 수가 없다. 戶口가 날로 감소하더니 지금은 다만 6려(旅)가 있을 뿐이다”227)라는 기록도 인구 절반이 감소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12려(旅)였던 군사가 6려(旅)로 줄었다고 한다. 절반의 감소다. 물론 이 기록은 전체 인구를 언급한 것이 아니라 군사 수를 말한 것이긴 하다. 하지만 군사의 비율이 반으로 줄었다면 전체 인구 수도 아마 이와 유사한 비율로 줄어들었을 것이다. 또한 인구 감소가 반드시 유망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전염병으로 인한 사망이 감소의 원인이기도 했다. 그런 점을 고려하고 보더라도 인구는 절반가량 줄었으며 그 중 상당수는 출륙 유망으로 인한 인구감소임을 짐작할 수 있겠다.

225) 『중종실록』 권11, 중종 5년(1510년) 6월 25일 己酉(頭無岳, 以海採爲業, 船載妻子, 滄海爲家。今因倭變, 官拘其船, 無以聊生, 至欲逃散。若海外絕島, 則可禁, 若人所候望處, 則勿禁其往來。且金海地界, 有都要渚里, 其居人無慮千餘 自成一村, 以海採資生, 一切禁其入海, 無以爲生。其船輕快, 國家可賴其用, 海岸近處, 勿禁往來何如).

226) 『중종실록』 권92, 중종 35년(1540년) 1월 10일 癸卯(濟州三邑, 居民日就流亡, 幾至空虛).

227) 김상헌, 1602, 『南槎錄』 1601년 12월 20일 癸未.

구체적 숫자를 밝힌 경우도 있다. 현종 5년(1664년) 충청 감사 이익한의 발언 속에 그 숫자가 나온다.

신이 일찍이 제주(濟州)를 맡고 있으면서 보니, 본주의 각사 노비로서 육지로 나와서 살고 있는 자의 숫자가 1만 명에 가까웠는데²²⁸⁾

이익한(李翊漢)이 제주목사에 재직하던 시기는 1662년~1663년이다.²²⁹⁾ 그 무렵 제주지역의 공노비 중에 육지에 거주하는 자가 1만 명 가까이 되었다고 한다. 앞의 15세기 몇 천 명 단위보다 많아졌다. 그것도 출륙한 공노비의 숫자만인데도 1만 명이었다. 공노비가 아닌 출륙인까지 헤아린다면 그보다는 많았을 것으로 생각된다.²³⁰⁾

지금까지의 기록 검토로는 출륙 초기인 15세기에 몇 천 명 규모의 출륙 유망민이 존재하다가, 이 현상이 지속되면서 17세기에 와서는 최소 1만 이상의 유망민이 발생했던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겠다.

다음에는 여러 사료의 인구 기록을 모아 표로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인구변화 추이를 검토한다. 그리고 그 인구변화를 통해 출륙 유망민의 규모를 추적해 보고자 한다. 하지만 전근대 사회 인구 기록의 한계로 인해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기는 힘들다. 또한 측정 기준 등이 명확히 나와 있지 않아 혼선을 초래하기도 한다. 때문에 기록 하나하나의 숫자에 의미를 두지 않고 전체적인 추세 파악에 만족할 것이다.

먼저 세종 16년(1434년)의 기록부터 살핀다. 63,474명²³¹⁾으로 조선전기 인구 기록 중에는 가장 많은 숫자다. 壯老弱共 즉 장정, 늙은이, 아이들을 합한 것이라 했으니 전체 인구수를 말한다.

1년 뒤인 세종 17년(1435년)에는 전 해보다 약간 줄어들었다. 63,093명이다.²³²⁾

228) 『현종개수실록』 권12, 현종5년(1664) 11월 13일 更子 (臣曾任濟州, 見本州各司奴婢出陸居生者, 其數近萬).

229) 제주시, 2005, 『朝鮮王朝實錄을 통해 본 濟州牧使』 351쪽.

230) 조성윤은 당시 출륙 유망민 수를 2~3만 명으로 추정했다(조성윤, 2005, 「조선시대 제주도 인구의 변화 추이」, 제주대학교탐라문화연구소, 『탐라문화』 26호, 61쪽).

231) 『세종실록』 권66, 세종 16년(1434년) 12월 7일 庚戌 (今考三邑人丁之數, 壯老弱共六萬三千四百七十四名).

232) 『세종실록』 권70, 세종 17년(1435년) 12월 12일 己酉 (濟州三邑, 人多地窄, 民戶九千九百三十五, 人口

작은 감소이지만 1년 단위 기록에서 이 감소는 나름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제까지 계속 인구 증가만 이어졌으나 처음으로 감소하는 기사이기 때문이다.

<표-6> 조선시대 제주도의 戶口·人口 수

| 구 분 연도 | 호(戶) | | | | 인구(人口) | | | |
|-------------------|-------|-----|-----|-------|--------|-------|-------|--------|
| | 제주목 | 정의현 | 대정현 | 합계 | 제주목 | 정의현 | 대정현 | 합계 |
| 세종 16년 (1434년) | | | | | | | | 63,474 |
| 세종 17년 (1435년) | | | | 9,935 | | | | 63,093 |
| 세조 10년 (1464년) | | | | | | | | (4만추정) |
| 성종 9년 (1478년) | | | | 9,400 | | | | |
| 선조 34년 (1601년) | 3,455 | 383 | 307 | 4,145 | 19,090 | 1,430 | 2,470 | 22,990 |
| 현종 11년 (1670년) | | | | | | | | 42,700 |
| 현종 13년 (1672년) | | | | 8,490 | | | | 29,578 |
| 숙종 5년 (1679년) | | | | | 26,330 | 5,750 | 2,900 | 34,980 |

세조 10년(1464년) 인구수는 역시 추정치다. 기록에는 인구수가 아니라 호패 발급자 수가 나와 있다. 제주 3읍의 호패 발급자 수가 16,470명이다.²³³⁾ 당시 호패는 성인 남성에게만 발급되었다. 그렇다면 성인 남성의 수가 16,470명이다. 여기에 여성과 노인, 어린이를 합치면 대략 4만 명은 될 것 같다. 물론 추정치이다. 하지만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세종 때에 비해서 인구가 확연히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20년 만에 2만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성종 9년의 기사도 무시하는 게 옳을 듯하다. 『성종실록』에 9400戶가 아니라 9400口로 나와 있다.²³⁴⁾ 이것을 글자 그대로 받아들여 인구 9400명으로 생각

六萬三千九十三).

233) 『세조실록』 권34, 세조 10년(1464년) 11월 23일 壬申 (三邑人受號牌數, 摠一萬六千四百七十名).

234) 『성종실록』 권91, 성종 9년(1478년) 4월 8일 己亥 (臣見濟州地隘而瘠, 其田九千八十餘結, 其民則九千四百餘口).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아마도 이 숫자는 인구가 아니라 호를 나타낸 것 같다. 그래서 위 표에서는 戶 표기란에 옮겨 놓았다. 일단 부정확한 기사이므로 분석은 생략하기로 한다.

안타깝게도 16세기 제주 인구를 짐작케 해주는 기록은 발견하지 못했다. 다만 다음의 기사를 통해 16세기 특히 중종 때의 인구 감소를 짐작해 볼 뿐이다.

대정현(大靜縣) 사람은 염병으로 거의 다 죽었으며²³⁵⁾

제주(濟州)의 일을 들으니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여역(厲役)이 크게 돌아 사람과 가축이 많이 죽고, 이뿐만 아니라 흉년이 매우 심하게 들어서 잇따라 사람이 죽어가므로, 정의(旌義)·대정(大靜) 같은 데는 인가가 다 비었다 하니²³⁶⁾

중종 8년(1513년)과 중종 15년(1520년)의 기록이다. 구체적인 숫자는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死亡殆盡” 즉 ‘거의 다 죽었으며’라든가 “人戶皆空云” 즉 ‘인가가 다 비었다 하니’ 등의 표현은 거칠게나마 당시의 상황을 짐작케 한다. 아마 절반 이상의 감소가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인구 감소는 출륙 유망에서 비롯된 게 아니다. 전염병에 의한 사망 때문에 발생한 인구 감소다. 그러니 출륙 유망민의 규모를 추정함에 있어서 인구 감소를 그대로 활용하긴 어렵다. 전염병에 의한 사망자는 제외해야 한다. 다만 전염병에 의한 사망이 증가할 때면 더불어 출륙 유량도 증가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선조 34년(1601년)의 기록은 김상헌의 『남사록』에 실린 내용이다. 이 책에서 소개한 인구도 壯老弱共 즉 장년, 노년, 어린이를 모두 합한 숫자라고 밝혀 놓았다. 전체 인구인 셈이다. 그런데도 인구가 22,990명에 불과하다.²³⁷⁾ 세종 16년(1434년) 63,474명을 기준으로 보면 대략 170년 만에 인구가 거의 4만 줄었다는 말이다. 앞의 16세기 중종, 명종, 선조년간에 엄청난 인구 감소가 있었음을 생각

235) 『중종실록』 권19, 중종 8년(1513년) 12월 26일 庚申 (又大靜縣人物, 以瘴癘, 死亡殆盡).

236) 『중종실록』 권40, 중종 15년(1520년) 10월 18일 壬寅 (臣聞濟州之事, 至爲可慮。厲疫大起, 人畜多死。非徒此也, 年凶太甚, 死者相枕, 如旌義、大靜, 人戶皆空云).

237) 『남사록』의 숫자는 제주목, 정의현, 대정현 기록에 각각 흩어져 있는 것을 찾아 합친 것이다.

할 수 있다.

그로부터 약 70년 지난 현종 11년(1670년) 기록에는 다시 인구가 늘었다. 42,700명이다.²³⁸⁾ 출륙금지령 이후 인구 유출이 어느 정도 진정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그래도 갑자기 2만 명이 증가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긴 하다. 앞의 『남사록』 기록과는 너무도 차이가 많다.

물론 이 기사가 기민 구제와 관련된 내용이라 기민 구제를 위해 인구를 과장해서 기술했을 수도 있다. 지방관에 따라서 더 많은 구제곡을 얻어내기 위해 간혹 기민의 수를 늘려 보고하는 경우가 있었다. 여기서도 인민은 많고(人民之數多) 곡식은 적어 구제하기 어렵다는 말이 이어지고 있다. 과장 외에도 인구 조사 방법이나 통계 방법이 달라 큰 차이를 빚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아무튼 중세의 인구 통계는 한계를 인정하고 접근해야 한다.

그런데 2년 뒤인 현종 13년(1672년) 기록에는 다시 인구가 크게 줄어들었다. 29,578명²³⁹⁾이다. 2년 사이에 13,121명이 감소했다. 2년 동안의 기근으로 상당 수 사람이 아사했기 때문에 감소한 것으로 추정해 볼 수도 있다. 하지만 그보다는 기록 누락에 의한 숫자일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 이 기사에서 “우리나라는 여자가 많고 남자가 적는데 호적에 들지 않은 여자가 매우 많다”²⁴⁰⁾라고 했으므로, 호적에 기재되지 않은 여자 수까지 고려한다면 29,578명보다는 많았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숙종 5년(1679년)의 인구수는 34,980명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증(李增)의 『南槎日錄』 숙종5년(1679년) 12월의 기록에 나온 숫자다.

지금까지 위의 <표-6> ‘조선시대 제주도의 戶口·人口 수’를 바탕으로 고려말부터 조선중기까지 제주도의 인구 변동을 추적해 보았다. 그러나 자료의 한계로 인해 정확한 인구를 밝힐 수는 없었다. 인구 조사 방법이 서로 다른 여러 종류의 자료에서 데이터를 뽑다보니 일관성을 갖기 어려운 점도 한계였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대략적인 추세만을 짐작해 볼 것이다.

우선 세종 때 가장 많은 인구수를 보이다가 성종 이후부터는 급격히 감소하는

238) 『현종실록』 권18, 현종 11년(1670년) 9월 10일 甲子 (留糶不過八千石, 而人民之數, 多至四萬二千七百餘口).

239) 『현종실록』 권20, 현종 13년(1672년) 10월 30일 辛未 (人口男一萬二千五百五十七口, 女一萬七千二十一口).

240) 『현종실록』 권20, 현종 13년(1672년) 10월 30일 辛未 (大抵我國, 女多男少, 而女子之不入籍者甚多).

모습을 보인다. 특히 16세기 중종년간에는 가장 급격한 감소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가장 많은 인구수를 보였던 기록은 세종 16년(1434년) 63,474명이며, 가장 적은 수를 보인 기록은 선조 34년(1601년) 22,990명이다. 데이터 그대로 해석한다면 170년 동안 대략 4만 명의 인구 감소가 있었다는 얘기다. 15세기 중반 세종 이후부터 17세기 초반 사이 170년 동안의 일이다. 물론 중세의 부실한 인구 데이터를 그대로 신뢰하기는 어렵다. 앞서도 말했지만 여기서는 대략적인 추세만을 살펴려고 한다.

15세기 중엽 세종 때부터 시작된 인구 감소는 그 무렵부터 발생한 출륙 유민 현상과도 연관이 있을 것이다. 세종년간에 제주지방엔 커다란 사회변동이 있었다. 정치적으로는 토관세력의 영향력이 사실상 대폭 감소되었다. 경제적으로 양전 사업이 실시되고 말(馬) 사교역이 강하게 통제되기 시작했다. 사회적으로 우마적의 평안도 강제 이주가 있었다. 이러한 상황의 세종년간부터 인구 감소가 시작되었던 것은 어쩌면 당연한 귀결일 수 있다.

그러나 인구 감소가 반드시 출륙 유랑 때문만은 아니었다. 앞서 살핀 중종 때의 기사들은 기근과 전염병으로 인해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했음을 보여줬다. 그로 인해 고을이 텅텅 빌 정도였다. 때문에 4만의 인구 감소가 모두 다 출륙 유랑 때문이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아쉽게도 유랑으로 인한 감소와 사망으로 인한 감소의 수를 구별하여 확인하기는 어렵다.

지금까지 검토한 자료를 토대로 출륙 유망민의 수를 추정하면 다음과 같다. 앞서 제주목사였던 이익한(李翊漢)이 제주지역 공노비 중에 육지로 나간 자가 1만 명가량 되었다는 기록²⁴¹⁾을 통해 일단 1만 명은 넘었을 것으로 판단한다. 출륙 공노비 수만 1만이기에 공노비가 아닌 출륙자까지 포함한다면 그 수는 당연히 1만을 넘었을 것이다.

6. 제주유민의 생업 및 활동

241) 『현종개수실록』 권12, 현종5년(1664) 11월 13일 更子 (臣曾任濟州, 見本州各司奴婢出陸居生者, 其數近萬).

제주유민의 생업 즉 먹고사는 방편은 그들의 호칭에 이미 잘 나와 있다. 남해안 사람들은 제주유민을 주로 포작인이라고 불렀다. 그 포작인이라는 명칭 자체가 그들의 생업을 보여준다. 즉 해산물을 채취해서 사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기록은 이들이 바다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는지 보여준다.

항상 물고기를 낚고 미역을 따는 것으로 업(業)을 삼았습니다.²⁴²⁾

물고기를 잡아 팔아서 생활하는 것으로 업(業)을 삼았습니다.²⁴³⁾

이들은 바다의 산물을 활용하고 있다. 釣魚 즉 물고기 잡기와 採藷 즉 미역 채취가 주된 생업이었다. 그리고 그것을 팔아서 다시 말해 식량과 교환해서 먹고 살았다고 한다.

이들의 생업을 묘사하는 표현으로 本以海釣生利²⁴⁴⁾ 혹은 以海採爲業²⁴⁵⁾라는 구절도 등장한다. ‘본래 낚시질로 이익을 낸다’라거나 ‘해산물 채취를 업으로 삼는다’라는 뜻이다. 앞에서 말한 생업과 다르지 않다.

이러한 생업 방식이 조선의 유교 지식인들의 눈에는 비정상적인 것으로 비춰졌다. 그래서 그들은 해산물 채취와 교역을 하는 제주유민들을 本無恒産²⁴⁶⁾ 즉 ‘본래 향산이 없었다’라고 묘사했다. 농업을 본(本)으로, 상업을 말(末)로 생각했던 그들에게 거친 바다 생활을 하며 해산물을 채취하고 그것을 팔아서 먹고 사는 제주유민은 향산(恒産)이 없는 비정상적인 존재였을 것이다.

비록 이들이 제주를 떠나기 전까지는 제주에서 말(馬)관련의 다양한 업종에 종사했다 하더라도 일단 제주섬을 떠나 남해안에 우거(寓居)하면서부터는 필연적으로 바다와 관련된 일에 종사할 수밖에 없었다. 그 바다 관련 일이라는 것이 바로 포작이라는 명칭 속에 나타나 있다. 해산물 채취가 바로 그들의 생업이었다.

242) 『성종실록』 권83, 성종 8년(1477년) 8월 5일 己亥 (恒以釣魚採藷爲業).

243) 『성종실록』 권197, 성종 16년(1485년) 윤4월 19일 癸亥 (以捉魚賣食爲業).

244) 『성종실록』 권197, 성종 17년(1486년) 11월 22일 癸亥.

245) 『중종실록』 권11, 중종 5년(1510년) 6월 25일 己酉.

246) 『성종실록』 권178, 성종 16년(1485년) 윤4월 19일 己亥.

그 채취한 해산물은 곧바로 교역물이 되었다. 팔아서 식량과 바뀔 먹었을 것이다. 과거 제주에서 말(馬)을 싣고 육지로 나와 팔아서 먹고 살던 이들이 이제는 아예 육지의 바닷가에 나와 살면서 말(馬) 대신 현지에서 해산물을 채취하고 팔아 그것으로 생업을 꾸렸던 것이다.

변화는 두 가지였다. 생업의 현장이 제주에서 남해안 등의 한반도 주변 해안으로 바뀐 점 그리고 주 교역 대상물이 제주산 말(馬)에서 현지 해산물로 바뀐 점이 그것이다.

물론 이들이 해산물 채취와 교역만으로 생업을 다 해결했던 것은 아니다. 때로는 주변 연안 마을이나 항해하는 선박을 습격해서 약탈을 자행하기도 했다. 물론 약탈은 전체적으로 볼 때 부차적인 생업이었다. 일상적으로는 해산물 채취가 우선이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 몰래 약탈을 종종 행하기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점은 다음의 IV장에서 자세히 다룰 것이다.

이들의 생업이 바다에서의 해산물 채취였던 것만큼 생활 역시 바다에서 이뤄졌다. 단순히 바닷가에 정착 거주하면서 해산물을 채취했던 것이 아니라 아예 배에서 생활하며 해산물을 채취했던 것이다. ‘無定居 寄生船上’²⁴⁷⁾ 즉 일정한 거처 없이 배 위에서 생활했다는 기록이 나온다. 혹은 以船爲家²⁴⁸⁾ 즉 ‘배를 집으로 삼았다’라거나 滄海爲家²⁴⁹⁾ 즉 ‘너르고 큰 바다를 집으로 삼았다’라는 기록도 나온다. 즉 이들의 생활은 기본적으로 정착이 아니라 배 위에서의 유랑이었다는 말이 된다.

하지만 이들이 한없이 떠돌이 생활만을 했던 것은 아니다. 이들이 유랑하던 지방의 수령들은 자신들의 목적에 맞게 이들을 활용하곤 했다. 인구 유입을 유도하고 이들로부터 각종 조세와 역을 거두어들이려고도 했다. 지방 수령들은 특히 이들이 가진 해산물 채취 능력을 활용했다.

뿐만 아니라 지역 수군 책임자들은 이들을 수군으로 등록하여 배를 조종하는 일 등의 수군의 몫을 맡기고자 했다. 이런 이유로 떠돌이 생활을 정리하고 일정 부분 국가의 장적에 등재되어 국가가 부과한 역을 지며 살아가기도 했다.²⁵⁰⁾

247) 『성종실록』 권177, 성종 16년(1485년) 4월 12일 癸亥 (無定居, 寄生船上).

248) 『성종실록』 권197, 성종 17년(1486년) 11월 22일 癸亥.

249) 『중종실록』 권11, 중종 5년(1510년) 6월 25일 己酉.

250) 『성종실록』 권197, 성종 17년(1486년) 11월 22일 癸亥; 『중종실록』 권87, 중종 33년(1538년) 2월 11

영국의 역사학자 에릭 홉스봄은 체제 밖의 비적(匪賊)들도 사회질서의 범위에 서는 벗어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사회의 범위 밖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다시 말해 그들도 통상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제도와의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이다. 체제 밖의 존재도 체제와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도적의 장물 처리 역시 체제를 이용해야 한다. 또한 지배층 역시 이들 체제 밖의 비적들을 활용하는 게 유리했다.

홉스봄은 이를 ‘비적의 정치경제학’이라는 장에서 설명했는데, “조용히 소동을 일으키지 않고 직무를 수행하고 싶어 하는 지방관들은 비적과 접촉을 계속하며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 한다”라고 했다.²⁵¹⁾ 물론 이것은 근대 자본주의 이전의 단계에서 가능했던 일이다. 중앙정부의 눈길이 향촌사회의 밑바닥까지 깊게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와 유사하게 조선시대 제주유민 역시 남해안의 지방관들과 일정한 관계를 유지하면 반(半) 합법적 존재로 자신을 위치지우며 살아갔다. 본래 유민 현상 그 자체가 불법이었다. 그렇기에 법에 따른다면 모두 쇠환되어야만 했다. 그러나 남해안의 지방관과 수적 지휘관들은 이들의 활용가치를 인식하고 있었기에 이들을 반(半) 합법적 존재로 남겨 놓았다. 이렇게 이들 제주유민들은 불안정하면서도 나름의 지위를 가지고 연해안을 유랑하며 혹은 우거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이러한 모습은 비단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을 통해서만 확인되는 것도 아니다. 개인 문집에서도 제주유민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다. 조선 중기의 문신이자 학자인 이준경(李浚慶)의 선조 21년(1588년) 시문집 『東臯遺稿』에 실린 “근래 흑산도에서 붙잡은 포작간들은 그대로 두어 (죄를)다스리지 말고 적을 발견하고 보고하는 방책으로 삼으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저들은 이미 고기잡이로 살아가고 있고 이르지 않는 데가 없습니다. 비록 엄하게 금하고자 해도 커다란 바다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잠입하는 사람들이니 어찌 완전히 금할 수가 있겠습니까?”²⁵²⁾라는 기록은 이들의 생활 모습을 잘 보여준다.

하지만 이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정착 단계로 들어갔다. 우거(寓居)²⁵³⁾

일 乙卯.

251) E.J.홉스봄, (황의방 역), 1978, 『義賊의 社會史』, 한길사, 109~127쪽.

252) 『東臯遺稿』 東臯先生遺稿卷之五 簡札 答舍兄書 (且頃日黑山所捉鮑作干。置之而勿治。以開見賊來告之路。爲善爲善。彼既以捉魚資生。無處不到。雖欲嚴禁。茫洋大海。抵死潛入之人。其可能盡禁乎)。

라는 표현 즉 임시로 거주한다는 표현이 종종 나온다. 그러니까 한정 없이 배를 타고 유랑한 것이 아니라 유랑하다가 종종 해안에 내려 임시 거주를 했다는 말이다.

그런데 그 유랑과 우거는 대부분 ‘가족과 함께였다.’²⁵⁴⁾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이들은 점차 정착 생활로 들어갔다. 그러나 남해안 주민들은 이들을 경계했다. 그래서인가 제주유민들은 따로 무리를 지어 하나의 촌락을 이루고 살아야만 했다.²⁵⁵⁾ 이런 경우는 남해안 마을의 호적에 錄案되어 주로 포작의 역을 지고 살아갔다. 그러나 錄案의 기회를 갖지 못했거나 거부한 부류들은 쇄환의 위험을 안은 채 유랑생활을 비교적 오래 지속했다.

물론 17, 18세기에 들어오면 거의 대부분의 제주유민들은 정착 단계를 밟아가기 시작한다. 한영국(1981)은 <경상도 울산부 호적대장>을 분석한 그의 글에서 제주유민의 정착 모습을 비교적 자세히 설명해 놓았다.²⁵⁶⁾ 이것은 물론 울산이라는 하나의 지역만을 보여주는 분석이긴 하지만, 다른 지역 역시 이와 유사했으리라 생각된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제주유민들은 육지인과는 격리된 가운데 그들 나름의 특수한 마을을 이루어 생활했다고 한다. 또 이들은 처음에 賤人으로 처우되었고 정부로부터 특정한 역을 부과 받았으며 그 주거와 출입이 각별히 통제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처음 정착 단계의 17세기를 지나 18세기가 되면 이들의 행정적 법적 처우가 향상되어 일반 良人과 유사한 대우를 받게 되었다고 한다. 이제는 유민의 단계가 아니라 ‘육지인’으로서의 사회경제적 기반을 구축했다는 의미다.

물론 울산의 경우 육지인들의 경계와 배타 속에 나름 정착이 성공했던 경우도 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었던 모양이다. 이들 정착하지 못한 제주유민들은 무인도로 숨어들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현재 전라남도 신안군에 있는 ‘큰포작도’, ‘작은 포작도’라는 지명은 어렵게 정착했던 제주유민의 흔적이 남은 것이라 생각된다.

253) 『성종실록』 권85, 성종 8년(1477년) 10월 16일 庚戌(近聞本州及旌義、大靜人民流寓慶尙、全羅道者多).

254) 『성종실록』 권178, 성종 16년(1485년) 윤4월 19일 己亥.

255) 이원진, 1653, 『탐라지』 노비조.

256) 韓榮國, 1981, 『豆毛岳考』, 『한우근박사정년기념사학논총』, 지식산업사, 814~816쪽.

IV. 제주유민과 기타 해양집단

중세까지의 바다에는 명확한 개념의 국경선이 존재하지 않았다. 또한 육지와는 달리 치안의 공백지대가 많았다. 그랬기에 제주유민들이 한반도 연안은 물론 중국의 해랑도까지 유랑이 가능했던 것이다. 그런데 그 바다에는 제주유민만이 있었던 게 아니다. 재물 약탈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 집단들도 있었다. 바다는 세곡선과 장사배가 이동하는 부의 통로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부가 몰리는 곳에 약탈세력이 뒤따르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제주유민 역시 생계 위기로 인해 바다로 나갔던 존재이기에 재물 약탈과의 관련성도 상정해 볼 수 있다.

당시 한반도 연안에 출몰했던 약탈 세력으로는 수적(水賊), 왜구, 중국인 수적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은 쉽지 않다. 그럼에도 이들의 활동 지역과 생태의 유사성을 고려할 때 이들 간의 교류 혹은 결합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 때문인지 조선정부에서도 이들 집단을 파악함에 있어서 많은 혼선을 빚기도 했다. 다음의 기록은 당시 조선 연해안에 출몰하던 여러 집단의 혼재 상황을 보여준다.

운산(雲山)의 이침(李砮)이 자상(刺傷)을 입은 상황을 보건대 왜인이 아니면 수적(水賊)입니다. 그런데 고존성이 도망한 자취를 헤아려 보건대 제주의 사람들이 스스로 진공할 물건을 탐내어서 왜변(倭變)이라고 핑계대어 말하고, 나라를 속이는 것인지 그 간교한 계책을 헤아리기가 어려우니²⁵⁷⁾

제주에서 올라오던 진공선(進貢船)이 정체불명의 집단에게 습격당하여 진공물도 빼앗기고 사람도 상한 상황을 보고하고 있다. 그런데 그 습격의 주체에 대해서는 논란이 분분했다. 자상(刺傷)으로 볼 때는 왜구 혹은 수적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사실 진상물을 노릴 정도라면 단순 유민보다는 전문 약탈 집단인 왜구나 수적일 가능성이 컸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다른 의견

257) 『성종실록』 권289, 성종 25년(1494년) 4월 18일 丙子 (以雲山李砮被刺之狀觀之, 非倭則水賊也, 而以存性等逃亡之迹料之, 濟州之人自偷進貢之物, 托言倭變, 欺罔國家, 奸計難測).

을 내고 있다. 제주의 출륙 유민들이 왜구를 가장해서 하는 일인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일단 이 기사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성종년간 한반도 남해안에는 출륙 제주 유민 외에도 적지 않은 수의 왜구와 수적이 생활하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럼에도 정부에서는 그들의 정체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왜구만이 아니라 명종년간에는 중국 수적들도 기록에 등장한다.

일본 배가 나왔으면 염탐하는 일이 없지 않을 것이니 방비에 관한 모든 일을 힘을 다해 조처하라. 중국배인지 일본배인지, 우리나라의 수적(水賊)인지를 상세히 살펴 치계(馳啓)할 것을 팔도 감사와 병·수사에게 하서하고²⁵⁸⁾

전라도 감사 이윤경이 중국배인지 일본배인지 분간되지 않는 배 10척이 평산포(平山浦)에서 나로도(羅老島)로 간 사건을 아뢰는 것에 대한 임금의 전교 내용이다. 여기에 등장하는 것은 비단 왜구나 수적만이 아니다. 중국 수적까지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정부에서 여전히 이들의 정체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카하시 기미아키(高橋公明)등 일련의 일본 학자들은 이 점에 주목하여 제주 유민, 일본인 왜구, 조선 수적, 그리고 중국인 수적까지를 포괄하여 사실상 이들을 왜구와 동일한 존재로 설명하고 있다.²⁵⁹⁾ 후기 왜구의 경우 포르투갈인, 중국인 등 다양한 국적의 해인(海人)들이 포함되어 있음²⁶⁰⁾을 고려할 때 이들의 주장은 일정 정도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가능성만으로 역사를 서술할 수는

258) 『명종실록』 권20, 명종 11년(1556년) 3월 23일 壬午 (倭船出來, 不無窺覘, 防備諸事, 極力措之。唐、倭船與我國水賊與否, 詳察馳啓事, 下書于八道監司、兵·水使, 此啓本).

259) 왜구의 주체를 중국인, 조선인, 일본인 혼합으로 주장하는 일본의 연구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다카하시 기미아키(高橋公明), 1989, 「中世東亞細亞海域에서의 海民과 交流」,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탐라문화』 제8호.

다카하시 기미아키(高橋公明), 2002, 「해역세계 가운데 제주도와 고려」, 목포대학교도서문화연구소, 『도서문화』 제20집.

村井章介, 1993, 『中世倭人伝』, 岩波書店.

荒野泰典·石井正敏·村井章介, 1992, 『アジアのなかの日本史Ⅲ 海上の道』, 東京大學出版會.

大石直正·高良倉吉·高橋公明 2001, 『周縁から見た中世日本』, 講談社.

260) 왜구에 대한 일본학계의 인식은 다음과 같다. 13세기부터 15세기까지의 왜구를 전기왜구라 하고 16세기 이후 활동한 왜구를 후기왜구라고 한다. 그런데 후기 왜구의 경우 실제로는 중국인이 주체였고 일본인은 1~2할에 불과했다고 인식하고 있다(이영, 1999, 「일본인이 보는 왜구의 정체」, 역사문제연구소, 『역사비평』 46호, 299쪽 참조).

없다. 『조선왕조실록』 등에는 이들 수적과 왜구가 분명히 구분되어 기록되어 있다. 이것은 당시 조선의 관리들이 이들을 명확히 구분하여 인식하고 있었다는 증거다. 때문에 이들 여러 해인들을 단일한 왜구 집단으로 간단히 설정하기는 어렵다.

여기 IV장에서는 제주유민에 대한 풍부한 이해를 위해 유사 집단인 수적, 왜구 그리고 중국의 수적과의 관계를 살핀다.

1. 제주유민과 水賊과의 관계

제주유민을 부르는 말로 포작이라는 용어가 있다. 제주유민 전체를 지칭하기도 하지만 직능적으로 말하자면 해산물을 채취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따라서 출륙 제주유민의 주된 생업은 포작업 즉 해산물 채취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이 반드시 해산물 채취로만 생계를 꾸렸다고 보기는 어렵다. 경제상황이 악화되면 약탈을 시도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았다. 이러한 현상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하다. 에릭 홉스봄의 설명에 의한다면 이런 사람들은 기존 사회에 동화되지 않고 한계상황 내지 무법상태로 몰린 사람들이다.²⁶¹⁾ 홉스봄은 어느 지역에서나 보편적으로 나타난 의적(義賊) 혹은 비적(匪賊) 현상을 분석했는데, 이런 보편적 현상은 우선 자본주의 사회로 이행하기 전 단계까지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한다. 근대 자본제 사회가 되면 교통, 통신 발달 등으로 정보력과 지역 통제력이 강해져서 비적 현상은 쉽지가 않다는 것이다.

역시 홉스봄에 따르면 비적 현상은 빈궁화가 심화되고 경제적 위기가 닥쳐오는 시기에 만연하다고 한다. 특히 너무 가난하여 강건한 남자에게 충분한 일자리 줄 수 없는 곳, 즉 농촌 과잉인구가 존재하는 곳에서 발생한다는 것이다.²⁶²⁾

정부에서도 역시 그와 유사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261) E.J.홉스봄,(황의방 역), 1978, 『義賊의 社會史』, 한길사, 31쪽.

262) E.J.홉스봄, 앞의 책, 11~29쪽.

남쪽 지방 연해(沿海)의 백성으로 해초(海草)를 캐고 고기 잡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형편을 노리다가 도적질하는 것이 그 유래가 이미 오래이어서²⁶³⁾

이들의 본업은 해산물 채취였다. 다만 형편에 따라 도적질을 했다. 때문에 이 정도의 도적질은 크게 사회문제로 비화하지는 않았다. 오래 전부터 있었던 작은 사안 정도로만 생각했을 뿐이다. 두독야지를 처음 소개했던 성종 8년(1477년) 8월 5일 기록에 “근처에 사는 백성들이 모두 생각하기를, 우리나라 사람을 약탈하는 자가 이 무리들인지 의심스럽습니다”²⁶⁴⁾라고 하여 출륙 제주인을 약탈자로 의심하고는 있지만, 그 자체가 심각한 문제가 된 것은 아니었다. 다만 이들을 “쇄출(刷出)하려고 하는데, 급히 하면, 저들 무리가 모두 움직여 바다 가운데로 도망해 들어가서, 변(變)을 장차 예측할 수 없을까 염려”²⁶⁵⁾하는 정도였다.

그러나 성종 20년(1489년) 무렵에는 상황이 달라졌다. 단순 도적 수준의 약탈이 아니라 본격적인 약탈 집단이 등장했던 것이다. 정부에서도 “근년에 남쪽 지방의 여러 섬에서 왜적(倭賊)과 수적(水賊)들이 나란히 일어났지만……남쪽 지방의 수적(水賊)은 예전에 듣지 못하던 일입니다”²⁶⁶⁾라며 긴장하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면서도 이들을 쉽사리 제어하지 못했다. 다음해인 성종 21년 기사에서 “근래에 남쪽 고을 바다 연안 지역에 혹은 왜적(倭賊) 또는 수적(水賊)이라고 하여 도서(島嶼)지방에 나타나서 여러 번 노략질하는데, 변장이 이를 제대로 막을 수가 없다고 한다”²⁶⁷⁾라고 했을 정도다.

그에 따라 제주유민을 의심하는 수위도 높아져 갔다. “역을 피해 도망쳐 흩어져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면서 수적과 더불어 서로 안팎이 될까 심히 두렵습니다”²⁶⁸⁾라든가, “옮겨가기를 제멋대로 하여 이로 인해 수적(水賊)이 된다면 그 폐

263) 『성종실록』 권234, 성종 20년(1489년) 11월 17일 辛未 (然南方沿海之民, 採捕爲業者, 乘便作賊, 其來已久, 亦不可不爲之計).

264) 『성종실록』 권83, 성종 8년(1477년) 8월 5일 己亥 (近處居民皆以爲掠我國人者疑是此徒).

265) 『성종실록』 권83, 성종 8년(1477년) 8월 5일 己亥 (今欲刷出, 恐急之則彼輩胥動走入海洋之中, 變將不測, 是不可不慮也).

266) 『성종실록』 권234, 성종 20년(1489년) 11월 17일 辛未 (近年南方諸島倭賊、水賊竝起……南方水賊, 古所未聞).

267) 『성종실록』 권247, 성종 21년(1490년) 11월 8일 丙戌 (近者南郡沿海之地, 或云倭賊, 或云水賊, 出沒於島嶼之間, 頻頻作耗, 邊將不能制之).

268) 『성종실록』 권226, 성종 20년(1489년) 3월 15일 癸酉 (則避役逃散, 彼此流移, 與水賊相爲表裏, 深可畏

단을 장차 금하기 어려울 것”²⁶⁹⁾이라며 수적으로 전환 가능성에 대해 경계했다. 더 나아가 3년 뒤의 기사에서는 “국가(國家)에서 수적(水賊)은 이 무리들의 소행이 아닌가 의심”²⁷⁰⁾하는 단계에까지 이르렀고, 다시 2년 뒤인 성종 25년에는 진공선(進貢船) 피습사건을 “제주의 사람들이 스스로 진공할 물건을 탐내어서 왜변(倭變)이라고 핑계대어 말하고”²⁷¹⁾ 일으킨 사건으로까지 생각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과연 제주유민들과 수적은 동일 존재였을까? 수적과 제주유민의 관계는 어떠했을까? 이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우선 수적에 대해 고찰해야 한다. 다음은 『조선왕조실록』에서 수적 관련 기사를 찾아 정리한 표이다.

<표-7> 『조선왕조실록』 속의 지역별·시기별 수적 관련 기사 횟수²⁷²⁾

| 지역 \ 시기 | 성종 | 중종 | 명종 | 선조 | 광해군 | 계 |
|-------------|----|----|----|----|-----|----|
| 전라 | 20 | 5 | 1 | 1 | | 27 |
| 충청 | 2 | | | | 2 | 4 |
| 경기(강화) | | 3 | | 1 | 1 | 5 |
| 황해 | | | 1 | 6 | 4 | 11 |
| 평안 | | | | 2 | 2 | 4 |
| 중국(해랑도, 산둥) | | | 1 | 2 | | 3 |
| 불특정 | 5 | 2 | 2 | 3 | | 12 |
| 계 | 27 | 10 | 5 | 15 | 9 | 66 |

也).

269) 『성종실록』 권227, 성종 20년(1489년) 4월 21일 己酉 (則去留自恣, 因爲水賊, 弊將難禁).

270) 『성종실록』 권262, 성종 23년(1492년) 2월 8일 己酉 (國家疑水賊必此輩所爲).

271) 『성종실록』 권289, 성종 25년(1494년) 4월 18일 丙子 (濟州之人自偷進貢之物, 托言倭變).

272) * 사건의 수가 아니라 기사의 수를 기재했다. 그러나 하나의 사건이 중복 계산되기도 했다. 반복해서 기록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사건의 중요성이 높았다는 의미다. 반면 본 논문의 관심 시기 밖인 인조~순조까지의 기사와 광해군일기 정초본의 기사 속에 등장하는 15건은 제외했다.

* 한 기사에 여러 지역이 서술된 경우는 모든 지역을 계산에 넣었다.

성종 21년 8월 7일 기사는 충청도 서천, 전라도 군산을 오가는 수적이라 2개 지역에 표기.

성종 22년 5월 30일 기사의 하삼도는 불특정 지역으로 분류.

중종 1년 10월 19일 기사는 “自濟州出來 道遇水賊”라고만 되어 지역 명시가 없으나 유배가 풀려 나오다가 당한 것이니 전라도 관할 지역으로 추정.

명종 1년 12월 15일 기사는 황해도 풍천, 중국 해랑도를 오가는 수적이라 2개 지역에 표기.

광해군 4년 7월 14일 기사에는 해서와 호서를 동시에 기록했으므로 2개 지역에 표기.

광해군 4년 10월 1일 기사에는 예산, 해서, 강화를 동시에 기록했으므로 3개 지역에 표기.

* 광해군 일기의 경우 중초본의 기사만 계산에 넣었다. 정초본과 동일한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위의 <표-7>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적 발생시기이다. 성종 때부터 발생했다.²⁷³⁾ 그리고 첫 발생 시기인 성종 대에 27건으로 가장 많다. 다음으로는 선조년간으로 15회이다. 성종 때 특히 빈발했으며 그 외의 시기에는 전체적으로 고르게 발생하고 있는 편이다.

둘째, 지역별 발생 회수를 보면 초기인 성종, 중종 시기에는 전라도에서 집중적으로 수적이 발생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16, 17세기 명종, 선조, 광해군 시기가 되면 오히려 충청, 경기, 황해 등 서해안에서의 빈도가 높다.

셋째, 특이하게도 경상도에서의 수적 발생 기사가 없다. 이점은 특별히 중요하다. 왜구와 수적이 다른 존재임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흔히 경인년 왜구라고 하는 전기왜구인 경우 침탈지가 경상도 남해안 혹은 경상도 전라도 경계지역에 집중되었다.²⁷⁴⁾ 만약 수적과 왜구가 동일 존재라면 수적 출몰 지역도 경상도라야 한다. 그러나 위 <표-7>에서 보듯이 경상도에서의 수적 발생 기사는 단 한 건도 없다.

또한 수적과 제주유민의 관계도 직접적이지는 않아 보인다. 앞의 III-4 ‘제주유민의 분포지역’에서 밝힌 대로 제주유민 관련 기사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지역은 경상도였다. 그런데 수적 관련 기사에서는 경상도가 전무하다. 때문에 제주유민을 곧바로 수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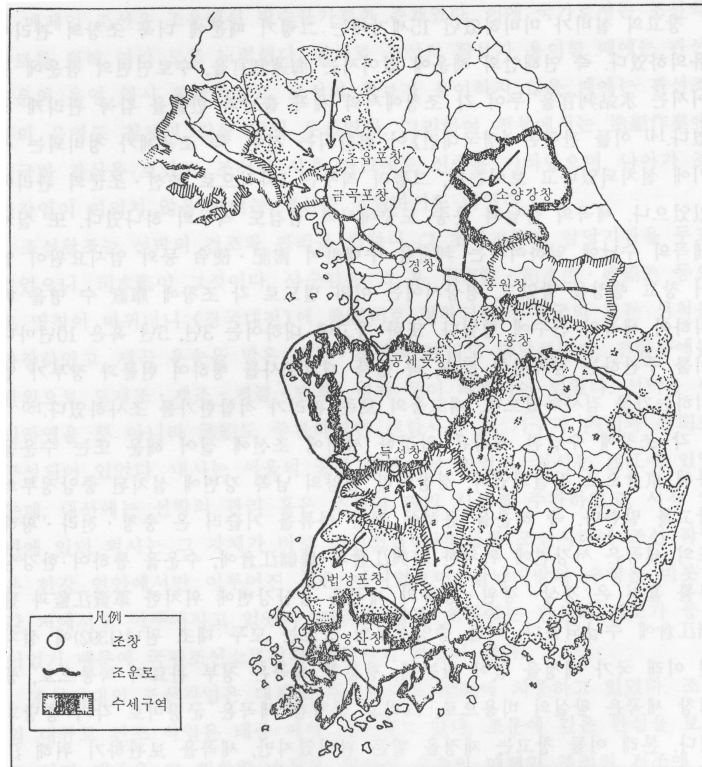
그렇다면 수적 관련 기사가 전라도에 집중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고민해봐야 한다. 우선 조운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조운세곡의 약 2/3가 전라도에서 나왔다.²⁷⁵⁾ 조운선이 움직이는 곳에 수적이 따라감은 어렵지 않은 가정이다. 다음의 <그림-2>를 보면 수적이 전라도 해안에서 주로 출몰했던 이유를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273) 수적 관련 『조선왕조실록』의 첫 기사는 성종 5년(1474년) 5월 20일의 기사다.

274) 이영, 2005, 「왜구의 주제」, 한일관계사연구논집 편찬위원회, 『왜구·위사문제와 한일관계』, 경인문화사, 178쪽.

275) 崔完基, 1980, 「朝鮮前期의 穀物賃運考」, 『史叢』 제23집, 15쪽.

<그림-2> 조창의 분포와 조운로²⁷⁶⁾



경상도에서 거둔 조세는 바다를 경유하지 않고 있다. 육로 수송인 것이다. 반면 전라도의 세곡은 전라도 연해안의 조창에 수집되었다가 바닷길로 남해, 서해를 거쳐 한강까지 운반되었다. 수적이 경상도 해안에 출몰할 이유가 없었고 전라도 해안에 집중되었음은 <그림-2>가 선명하게 설명해 준다.

場市와 무곡선상(貿穀船商)의 등장 역시 전라도 수적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 15세기 말 전라도 곡창지대에 처음으로 場市가 등장했다. 그리고 그 장소에서 거래된 곡물은 주로 무곡선상(貿穀船商)에 의해 買集되어 서울로 운송 소비되었다.²⁷⁷⁾ 이 과정에서 수적의 개입은 쉽게 상상해 볼 수 있겠다.

그리고 전라도가 타 지역에 비해 장물 처리가 쉬웠던 점도 주요 원인이 된다. 성종 18년(1487년) 기록에 “본도(本道)에서 도둑이 일어나는 것이 다른 도에 비해 더욱 심한 것은 장문(場門)이 있기 때문입니다. 도둑이 얻은 장물(贓物)을 장

276) 崔完基, 2003, 「수상교통과 조운」,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24, 탐구당, 529쪽.

277) 崔完基, 1992, 「朝鮮中期의 穀物去來와 그 類型」, 『한국사연구』 제76집, 23쪽.

문에 팔기 때문에 수색해 잡기가 어렵습니다”²⁷⁸⁾라는 대목이 나온다.

그렇다 하더라도 의문은 남는다. 조운은 건국 이래 계속되었던 현상이다. 그러기에 전라도에서의 수적 발생은 납득이 간다. 하지만 그것이 왜 성종 이후인가에 대해서는 또 다른 설명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서는 곡물의 상품화 현상이 15세기 이후 진행되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 설득력을 갖는다. 崔完基(1992)에 의하면 세조 6년(1460년)의 기록²⁷⁹⁾은 전라도 일대에서 활동한 무곡상의 실태를 단편적이거나 보여준다고 한다.²⁸⁰⁾

이영(2005) 역시 비슷한 견해를 밝혔다. 지주들이 지방농장에서 수확한 미곡을 운송할 때나 부상들이 원격지 교역을 통해 미곡 상품을 수송할 때, 주로 해상 운송을 이용했는데 이것이 수적 활동을 성행하게 만든 계기라는 설명²⁸¹⁾이다. 아직 유통경제가 발달하지 않았던 고려전기에는 수적활동 기사가 단 한 건밖에 확인되지 않는 반면²⁸²⁾ 과전법 체제가 무너진 15세기에는 부재지주의 농장이 전국으로 확산되었고, 그에 따라 소작료의 서울 운반을 위해 해상 수송이 더욱 절실해지는 상황²⁸³⁾이 되자, 관이 운영하는 조운선 외에도 賃私船運送이 활발해져서 이것이 수적 발생을 자극했다는 설명이다.

이상 수적에 대한 고찰을 통해 그들이 제주유민과는 다른 존재였음을 확인하게 된다. 조운선이나 미곡상선을 습격할 정도라면 규모가 큰 전문 집단이었을 것이다. 기록을 보더라도 수적의 위세는 대단했음을 알게 된다. “지금 이 수적들이 해상에 횡행하고 있는데도 계교로 체포하지는 못하고 끝내 병선을 빼앗기고 어채선(漁採船)을 불태우는 데까지 이르렀으니 몹시 놀랍습니다”²⁸⁴⁾라든가 “백령첨사(白翎僉使) 홍준(洪峻)은 군관이 타는 배를 수적(水賊)에게 약탈당하였으나, 준이 덮어두고 보고하지 않았습니까”²⁸⁵⁾등의 기록을 보면 알 수 있다.

278) 『성종실록』 권204, 성종 18년(1487년) 6월 20일 戊子 (本道盜賊興行, 比他道尤甚者, 以有場門也 盜賊所得贓物, 賣于場門, 故搜獲爲) 이영, 2005, 앞의 논문 170쪽에서 재인용.

279) 『세조실록』 권20, 세조 6년(1460년) 5월 21일 丙申 (듣건대 상인(商人)들이 전라도(全羅道)에 가서 배[布]를 곡식과 바꾸어서 득(得) 보는 것이 갑절이나 많다고 하지만, 그러나 금할 수가 없다. 지금 관가의 배를 가지고 곡식과 바꾸어 저장하여 두고자 하니: 聞商人等往全羅道以布換穀, 所得倍多, 然不可禁也. 今欲以官布買穀貯備)

280) 崔完基, 1992, 「朝鮮中期的 穀物去來와 그 類型」, 『한국사연구』 제76집, 50쪽.

281) 이영, 2005, 앞의 논문, 170쪽.

282) 이영, 2005, 앞의 논문, 171쪽.

283) 崔完基, 1992, 앞의 논문, 38쪽.

284) 『선조실록』 권209, 선조 40년(1607년) 3월 13일 丙子 (今此水賊, 橫行海上, 而既不能設機捕獲, 終至於被奪兵船, 焚燒漁採船事, 極爲駭愕).

또한 그런 만큼 나름의 조직 체계도 갖췄을 것이다. 명확적을 고찰한 裴亢燮(1986)의 연구를 참고한다면 수적은 일정한 조직원리 속에서 두목이 있고 종적인 명령 계통도 있는²⁸⁶⁾ 전문적인 약탈 집단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제주유민은 조직화되지 않은, 우연적이며 돌발적인 생계형 약탈 집단이었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즉 약탈을 전문으로 하는, 규모가 있고 조직 체계를 갖춘 왜구나 수적과는 달리 해안 마을 민가에서 생계형의 소규모 절도를 일삼는 수준이었을 것이다. 포작이라고 불린 이유도 기본 생업은 약탈이 아니라 해산물 채취였기 때문이다. 포작일을 기본으로 하다가 경우에 따라서 약탈을 병행한 정도로 보인다. 다음의 성종 16년(1485년)의 기록은 이를 짐작케 한다.

연해의 여러 고을에서 봉진(封進)하는 해산(海産)의 진품(珍品)은 모두 포작인(鮑作人)이 채취(採取)하는 것입니다. 신이 또 들건대, 포작인이 이따금 상선(商船)을 겁탈(劫奪)하고 사람과 재물을 약탈하며 살해하는데²⁸⁷⁾

위 기록에서 보듯이 평소에는 봉진(封進)용 해산진품(海産珍品) 채취가 주된 업무였다. 그러다가 “往往劫奪商船” 즉 ‘이따금씩(往往)’ 상선을 겁탈하며 인명 살상과 재물 약탈을 저질렀다.

정리해서 말한다면 수적은 전문적인 약탈 집단이었으며, 제주유민은 해산물 채취를 우선했던 집단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은 『조선왕조실록』상의 수적과 포작이라는 명칭에 국한했을 때의 구분이다. 실제 포작이 전문적인 수적 집단으로 발전했을 가능성도 있다. 실제 일부 포작들은 그렇게 변화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그 포작은 더 이상 포작이라고 기록되지 않고, 그때는 수적이라고 기록되었을 것이다. 이처럼 수적과 포작은 분명 다른 존재였다. 하지만 포작들이 수적으로 전환했을 가능성은 열어 두어야 한다.

다음의 기록은 이러한 변환을 보여준다.

285) 『광해군일기』 권46, 광해 3년(1611년) 10월 8일 甲戌(白翎僉使洪峻, 軍官所騎船隻, 爲水賊所掠奪, 而峻掩置不報).

286) 裴亢燮, 1986, 「壬戌民亂 前後 明火賊의 活動과 그 性格」,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43쪽.

287) 『성종실록』 권177, 성종 16년(1485년) 4월 12일 癸亥(沿海諸邑封進海産珍品, 皆鮑作人所採也 臣又聞鮑作人往往劫奪商船, 掠殺人物).

추자도(楸子島) 근처에 도서(島嶼)가 많은데 포작인들이 모여 수적 노릇을 하니
찾아서 쇄환(刷還)하고 수색하여 토벌함이 어떠하리까²⁸⁸⁾

추자도 근처의 포작들이 수적 노릇을 하고 있다는 기록이다. 물론 포작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들의 기본 업은 여전히 해산물 채취였겠다. 그
런데 그런 그들이 이제 수적 노릇을 했다는 것이다. 아마도 전문적인 약탈 집단
으로 전환하는 과정으로 보인다.

중국 영토 해랑도를 언급하며 제주유민의 해적 가능성을 거론하는 연구도 있
다. 대표적인 일본의 연구자 高橋公明(2001)는 해랑도를 해적의 섬으로, 해랑도의
제주 해민집단을 해적으로 설명했다.²⁸⁹⁾

앞서 제주유민의 분포 지역을 살필 때 중국 해랑도에 제주유민이 많이 도망해
들어갔음²⁹⁰⁾을 보았다. 그 해랑도가 수적들에 의해 이용되기도 했었다. “해랑도
(海浪島) 사이를 왕래하면서 수적(水賊)노릇을”²⁹¹⁾ 했다는 중종 21년의 기록이나,
수적(水賊) 고지종(高之宗)이 “해랑도(海浪島)·금주위(金州衛) 등 지역을 예사롭
게 왕래하며”²⁹²⁾ 수적행위를 했다는 명종 1년(1546년)의 기록, “해랑도(海浪島)의
수적(水賊)이 미곶(彌串)에서 양곡을 날라 오던 배를 약탈”²⁹³⁾ 했다는 선조 36년
의 기록이 이를 보여준다. 그렇다면 해랑도의 수적이 제주의 유민이었다고 추정
해 볼 수도 있겠다.

이처럼 제주유민은 언제든지 수적으로 전환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다. 일단
사료에 포작인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은 그 기본 생업이 해산물 채취임을 말해준
다. 하지만 그들은 경우에 따라서 포작업 외에 단순 약탈도 자행했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전문적인 약탈집단으로 변환하기도 했을 것이다.

288) 『중종실록』 권44, 중종 17년(1522년) 5월 28일 癸酉 (楸子島近處多島嶼。 鮑作人等聚爲水賊, 推刷搜討
何如).

289) 高橋公明, 2001, 「海域世界の交流と境界人」, 大石直正·高良倉吉·高橋公明, 『周縁から見た中世日本』, 講談
社, p.351

290) 『성종실록』 권268, 성종23년(1492년) 8월 10일 戊申 (濟州民, 多有逃入海浪島者).

291) 『중종실록』 권57, 중종 21년(1526년) 11월 16일 乙未 (必往來于海浪島之間, 以爲水賊).

292) 『명종실록』 권4, 명종 1년(1546년) 12월 15일 戊戌 (尋常往來於海浪島、金州衛等地).

293) 『선조실록』 권164, 선조 36년(1603년) 7월 1일 乙卯 (海浪島水賊, 自彌串運來糧船, 潛搶之後).

2. 제주유민과 倭寇와의 관계

한반도 연안에서 활동하던 약탈집단은 수적만이 아니었다. 일본의 왜구도 빈번하게 출몰했다. 그런 상황에서 제주유민은 왜구와도 일정 정도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특히 일부 제주유민들은 왜구로 위장하여 약탈을 자행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된 기사가 『조선왕조실록』에 종종 등장한다.

포작인이 이따금 상선(商船)을 겁탈(劫奪)하고 사람과 재물을 약탈하며 살해하는데, 간혹 사람이 쫓아가는 바가 있으면 왜인의 신발[倭鞋]을 버리고 가서 마치 왜인이 그런 것처럼 한다 한다.²⁹⁴⁾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무리들이 거짓으로 왜복(倭服)을 입고 왜말을 하며 몰래 일어나서 도적질을 한다’고 하니²⁹⁵⁾

대체로 남쪽 사람들은 가끔 왜복(倭服)을 입고 해상에 횡행, 자주 도적질을 하며 물화를 탈취할 목적으로 살인을 저지르니²⁹⁶⁾

위의 기사들은 제주유민의 특별한 형태의 약탈행위를 소개하고 있다. 즉 그들은 약탈을 자행하면서 일부러 왜인의 신발을 벗어놓고 간다든지, 왜복을 입고 왜말을 하곤 했다. 자신의 정체를 숨겨 주변에서 자신들을 왜인으로 오인케 하려는 의도였다. 제주유민의 활동 범위가 넓었고 또한 왜인들도 한반도 남쪽 바다 일정 구역에서 합법적인 어로작업을 했으므로 제주유민과 왜인들과의 교류는 충분히 가정해 볼 수 있다.

왜인의 신발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나, 왜인의 옷을 입었던 것 그리고 왜말을 하고 있었다는 것은 단기간의 일회성 교류로는 어려운 현상이다. 때문에 제주유

294) 『성종실록』 권177, 성종 16년(1485년) 4월 12일 癸亥 (鮑作人往往劫奪商船, 掠殺人物, 或爲人所逐, 則遺棄倭鞋而去, 似若倭人然).

295) 『성종실록』 권178, 성종 16년(1485년) 윤4월 11일 辛卯 (人言此徒詐爲倭服倭語, 竊發作耗).

296) 『중종실록』 권91, 중종 34년(1539년) 7월 29일 甲午 (大抵南方之人, 往往變着倭服, 橫行於海上, 頻行盜賊之事 殺人于貨).

민과 왜구와의 교류는 지속적으로 광범위하게 전개되었다고 가정할 수 있다. 바다에서 생활하는 생활 조건이 유사한 상황에서 이들의 교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을 것이다.

여기서 제주유민이 약탈 행위를 하면서 왜인으로 위장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왜인들의 약탈 행위가 일상적으로 존재했음을 의미한다. 거기에 제주유민들이 편승했던 것이다. 그렇게 되자 왜구들뿐만 아니라 제주유민들도 이미 상시적으로 약탈행위를 자행하며 살아갔던 것으로 생각된다. 규모가 크지 않고 비조직적 한계를 갖고 있었을지라도 이제 약탈행위는 제주유민의 삶의 한 모습을 구성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모습을 근거로 일부의 일본 학자들은 제주민이 곧 왜구였다는 논지를 펼치고 있다. 앞서 소개한 다카하시 기미아키(高橋公明)²⁹⁷뿐만 아니라 무라이 쇼스케(村井章介)²⁹⁸ 등이 그들이다. 이들의 공통된 특징은 중세 역사를 국가 중심이 아니라 지역 중심으로 서술하려 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단일한 일본이 아니라 지역별 역사로 설정하고 있다. 그 중 북큐슈(北九州)와 이키섬(壹岐島), 쓰시마(對馬島) 지역의 해인(海人)들은 일본 본토 사람들과는 달리 한반도 남부, 제주도, 남중국 해안의 해인들과 사실상 하나의 권역을 이루며 동일한 생활문화권을 형성했다고 주장한다. 소위 환중국해 권역이 그것이며 그곳에서 해양 생활을 하는 자를 모두 포괄하여 왜구라고 칭하였다. 즉 왜구의 구성 주체는 일본인만이 아니라 조선인, 제주도 사람, 중국 사람 등 다양했다는 주장이다.

그들은 그런 논리를 바탕으로 하고, 위의 기사들을 동원하여 제주유민을 사실상 왜구와 동일시했다. 물론 일본 학자들 사이에도 작은 견해 차이는 있다. 다카하시 기미아키(高橋公明)의 경우는 14세기 왜구 즉 전기왜구부터 이런 주장을 편 반면, 무라이 쇼스케(村井章介)는 전기왜구보다는 주로 16세기 왜구 즉 후기왜구를 중심으로 설명했다.

전기왜구를 조선 수적 혹은 제주유민으로 설정하는 주장에는 허점이 많다. 전기왜구는 14세기 현상인 반면 조선 수적은 15세기 중후반 이후에야 등장한다. 때

297) 다카하시 기미아키(高橋公明), 1989, 「中世東亞細亞海域에서의 海民과 交流」,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탐라문화』 제8호.

298) 村井章介, 1993, 『中世倭人伝』, 岩波書店.

문에 이들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 서로 이질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다.²⁹⁹⁾

반면 무라이 쇼스케(村井章介)의 주장 즉 후기왜구가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주장은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갖는다. 후기왜구의 활동 시기와 조선 수적의 활동 시기, 제주유민의 활동 시기가 상당 부분 겹치기도 한다. 그리고 앞서 인용에서 보았듯이 조선정부가 왜구와 수적을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제주유민들이 왜구로 위장하는 모습도 보았다. 때문에 어찌했든 이들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왜구가 일본인인가 조선인인가 하는 것보다 제주해민들이 왜인과 어떤 일체감을 공유하고 있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사실상 제주유민을 왜구로 설정³⁰⁰⁾하는 논지는 납득하기 어렵다. 무라이 쇼스케(村井章介)는 왜구의 민족 구성이 다양했다고 하면서 그 증거로 ‘일본 왜인’이라는 표현이 존재함을 내세웠다. 즉 ‘일본 왜인’이 있다면 조선 왜인도 중국 왜인도 있다는 논리다. 그러나 여기서 ‘일본 왜인’의 대응하는 왜인은 조선 왜인, 중국 왜인이 아니다. 삼포에 거주하는 다시 말해 조선에 오래 전부터 거주하는 ‘항거 왜인(恒居 倭人)’ 그리고 조선으로부터 관직을 받아 생활하는 ‘수직 왜인(受職 倭人)’ 등이 일본 왜인에 대한 대응항이 된다. 당시 조선에 거주하던 이들 왜인의 수는 3천 명을 넘었다.³⁰¹⁾

조선 정부의 기록에 수적, 왜구, 포작 등을 명백히 구분하여 서술했던 것은 이들의 존재가 달랐으며 당시 정부 관료들도 그렇게 구분하여 인식했다는 의미다. 같은 약탈 집단이었다면 굳이 이렇게 구분하여 이들을 기록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기록에는 ‘假倭’ 즉 ‘왜인을 가장하여’라는 표현이 여러 차례 나온다.³⁰²⁾ 이런 표현 자체가 왜구와 수적 그리고 포작인에 의한 약탈을 구분하여 인식했다는 증거가 된다.

물론 구분이 명확하였다고 해서 왜구의 일원으로 흡수된 사람이 없었다는 말은 아니다. 유사한 생활환경에서 민족의식이 존재하지 않았던 당시로서는 유리한 조건만 제시된다면 얼마든지 귀속 집단을 바꾸기도 했으리라 생각된다. 다만 그

299) 이영, 2005, 「왜구의 주체」, 한일관계사연구논집 편찬위원회, 『왜구·위사문제와 한일관계』, 경인문화사, 167쪽.

300) 村井章介, 1993, 『中世倭人伝』, 岩波書店, pp.34~37

301) 요시노 마코토(吉野誠), 2005, 『동아시아 속의 한일 2천년사』, 책과함께, 178쪽.

302) 『성종실록』 권35, 성종 4년(1473년) 10월 23일 辛巳 등.

때부터 그는 수적이나 포작인이라는 명칭이 아니라 왜적이라는 명칭으로 기록되었을 것이다.

실제 왜구로 흡수된 사람들이 있었음을 전하는 기록들도 있다.

진(鎭)이 위기는 순식간에 달려 있었는데 마침 어떤 사람이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크게 외치기를 ‘水使가 배 40척을 거느리고 온다!’하여 그들을 속이자 왜적은 곧 물러갔으니, 그것은 필시 우리나라의 어부가 왜선 가운데 있어서 듣고 알았을 것이다……이도 역시 우리나라 사람이 그들 배에 있었던 것입니다.³⁰³⁾

연해의 포작한들이 변장의 침탈에 견디지 못해, 왜인에게로 들어가는 것으로 침탈을 피하는 방법으로 삼는다고 합니다.³⁰⁴⁾

첫 번째 기사는 조선의 어부가 왜적의 뱃길을 안내하고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왜구의 배 안에 조선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은 결국 조선의 어부일 것이라는 추측이다. 조선 사람이 왜구와 함께 동행 하여 왜구의 배에 타고 있었기에 지원병이 온다는 조선말을 듣고 급히 배를 돌려 도망갔다는 얘기다.

두 번째 기사는 포작 즉 제주유민들이 변방 장수의 침탈을 못 이겨 왜인 집단으로 합류했음을 직설적으로 말하고 있다.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민족이 아니었다. 중세 민중 세계에는 민족의식이 존재하지 않았다.³⁰⁵⁾ 필요한 것은 생존이었다. 생존을 위해서 그들의 귀속 집단을 바꾸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때문에 제주유민이 왜구 집단으로 합류해 들어갔던 것도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왜구 세계가 생존에 유리했다면 얼마든지 자발적 편입이 가능했다. 특히 부역과 공납에 시달리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경우가 적지 않았을 것이다. 다음의 기사가 이런 점을 잘 보여준다.

303) 『중종실록』 권45, 중종 17년(1522년) 7월 15일 己未 (鎭將勢甚迫, 有人登山頂, 大呼而給之曰: ‘水使領船四十隻而來.’ 倭乃退去。是必我國漁人在倭船之中, 聞而知之也……遂退, 是亦我國人在其船矣).

304) 『명종실록』 권20, 명종 11년(1556년) 5월 14일 辛未 (沿海鮑作干等, 困於邊將之侵漁, 投入於倭, 以爲息肩之地).

305) 민족의식에 대해서는 베네딕트 앤더슨, 1983, 윤희숙 옮김, 2002(번역본), 『상상의 공동체: 민족주의의 기원과 전파에 대한 성찰』, 나남출판을 참고할 수 있다.

사화동이라는 자는 우리나라 진도 사람으로 왜노에게 잡혀가 온갖 충성을 다한 자인데, 저에게 이르기를 ‘이 곳은 풍속과 인심이 매우 좋아서 거주할 만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조선은 부역이 매우 고되고, 크고 작은 전복을 한정 없이 징수하여 감당할 길이 없으니, 이곳에 그대로 거주해라. 지난 연초에 마도와 가리포를 침범하려다가 바람이 불순하여 손죽도에 정박하였는데, 이는 내가 인도해 준 것이다’ 하였습니다.³⁰⁶⁾

부역과 공납에 지친 조선 어부가 왜구 세력에 편입되어 그들의 길 안내를 했던 구체적인 기록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제주유민이 모두 왜구와 친화적이었던 것은 아니다. 유사한 생활환경은 때로는 협조를 요구했지만 때로는 경쟁을 유발했기에 대립적인 측면도 강했다. 성종 16년(1485년) 기사에 “왜적(倭賊)이 이(포작인)를 만나면 도리어 두려워하고 피해서 달아납니다”라든가 “왜선(倭船)을 만났을 때 이 돌을 사용하여 던져서 치면 부서지지 않는 것이 없다”라는 기록³⁰⁷⁾이 나온다. 제주유민과 왜구와의 경쟁 대립 관계를 보여준다.

연산 8년(1502년) 10월 21일 기사에서는 왜적을 잡은 포작에게 상을 주는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³⁰⁸⁾ 반면 중종 17년(1522년) 기사에서는 포작인들이 왜적에게 습격당해 의복과 식량 등을 빼앗기고 배도 소실당했던 기록이 나오고 있다.³⁰⁹⁾ 또한 중종18년(1523년) 기사에서는 왜구와의 전투에서 패배했던 기록³¹⁰⁾이 등장하는 반면, 명종 12년(1557년) 기사에서는 왜구와의 전투에서 150명의 왜적이 탄 배를 불태우고 사살했던 기록³¹¹⁾이 등장한다.

이처럼 왜구와의 관계에서 제주유민들의 선택은 단일한 게 아니었다. 필요에

306) 『선조실록』 권22, 선조 21년(1588년) 11월 17일 丙寅 (有沙火同者, 我國珍島人也. 被擄而去, 因効忠於倭奴, 謂介同曰: ‘此地, 風俗人心甚好, 可居也, 汝可無懼. 朝鮮則賦役甚苦, 大小全馘, 無限徵出, 不勝支當, 因留居此. 前年初, 欲犯馬島加里浦, 風候不順, 泊于損竹島, 此乃我之所嚮導也).

307) 『성종실록』 권177, 성종 16년(1485년) 4월 12일 癸亥 (倭賊遇之, 反畏避而去……遇倭船, 用此石投擊, 則無不破碎).

308) 『연산군일기』 권46, 연산 8년(1502년) 10월 21일 庚申 (今捕賊倭論賞……鮑作人一等給絺布十四, 二等六匹, 三等三匹何如).

309) 『중종실록』 권45, 중종 17년(1522년) 6월 20일 乙未 (鮑作干等逢倭于甫吉島, 被奪衣糧雜物, 火其船隻).

310) 『중종실록』 권48, 중종18년(1523년) 6월 26일 乙丑 (鮑作船十二隻, 率驍勇軍百餘人, 入海搜討, 逢倭戰敗).

311) 『명종실록』 권23, 명종 12년(1557년) 7월 7일 戊午 (鮑作干等進告于南桃浦權管蔡淵洪. 淵洪率軍官等進擊接戰, 一船之倭幾至一百五十餘名, 而權管等盡力射斬, 燒焚全船).

따라서 교류하고 협력하고 혹은 그들에게 귀속되기도 했으나 반면 그들과 경쟁하여 갈등을 드러내며 전투를 벌이기도 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왜인에게 귀속된 경우나 그들과 전투하는 경우는 특수한 사례일 것 같다. 평소에는 유사한 생활환경에서 적지 않게 교류하는 모습으로 살아왔던 것으로 보인다. 제주유민과 직접적인 관계를 표현한 것은 아니지만 태종 11년(1411년) 기록에 “왜인의 흥리선이 늘 왕래하므로 거민들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해서”³¹²⁾라든가, 세종 즉위년 기사에 “왜구가 중국에서 침탈한 재물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남해지역에서 배를 세워 해변의 백성과 교역한지 오래이나”³¹³⁾라는 기록, 세종 3년 기사에 “상인들이 왜관을 왕래하면서 법의 제한을 넘어 지나치게 무역을 행하고 있다”³¹⁴⁾라는 기록 등은 왜인과 조선 해민 사이의 빈번한 교류 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다.

국가에서 왜인과의 사적인 교역을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그들과의 교류를 일상화하고 있는 모습도 보인다. “더욱 철저하게 군민(軍民)들이 은밀히 물화(物貨)를 가지고 왜관(倭館)에 가서 매매하는 것을 일체 금지시켰는데, 변방의 백성들은 원한을 품고 한 사람도 조정을 위하여 협력하지 않았고 왜인과 마음을 같이 하였습니다”³¹⁵⁾라고 했을 정도였다.

어쩌면 이런 모습은 당연한 현상이었을 것이다. 남쪽 바다 사람들에게 왜인은 익숙한 존재였기 때문이다. 배를 타고 다니며 생계를 꾸리는 유사한 생활환경이 이들의 교류를 일상화시켰을 것 같다. 그 교류의 일상화가 왜어(倭語)를 하는 제주유민, 왜인 복장을 한 제주유민을 만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그들 사이의 결합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교류하고 때론 섞이고 때론 전투를 벌였을지언정 그들이 하나의 집단을 형성했던 것은 아니다. 사서 기록 속에 그들이 다른 명칭으로 등장하는 것은 각각이 나름의 독립된 실체를 가지고 있었다는 의미다. ‘가왜(假倭)’라는 표현이 그 구체적 증거가 된다.

312) 『태종실록』 권22, 태종 11년(1411년) 7월 15일 甲戌 (倭人興利船尋常往來, 居民視以爲常).

313) 『세종실록』 권1, 세종 즉위년(1414년) 10월 3일 己卯 (倭賊侵掠中國, 以其所掠財物, 來泊我國南界, 與邊民互市久矣).

314) 『세종실록』 권12, 세종 3년(1421년) 6월 9일 庚子 (商賈之徒, 出入倭館, 汎濫貿易).

315) 『중종실록』 권96, 중종 36년(1541년) 9월 27일 庚戌 (使軍民人等, 潛帶物貨, 赴館買賣者, 一切禁斷, 而邊民抱怨, 無一人爲朝廷致力, 而與倭同心焉).

3. 제주유민과 중국 水賊과의 관계

16세기 명종 대가 되면 중국인 수적에 대한 기사도 등장한다. 그런데 이들의 특징은 많은 경우 왜인들과 섞여 있었다는 점이다. 앞서 언급했던 후기왜구와 관련이 있다. 후기왜구는 마구잡이식 약탈을 일삼던 앞의 14세기 전구왜구와는 많이 달랐다. 이들은 16세기 이후에 출현한 왜구로서 조공무역과 중국의 해금(海禁)정책 속에서 등장했던 존재이다. 교역의 이윤을 얻기 위해 해금을 깨뜨리고 바다로 진출한 중국인들과 서양 상인들이 일본 규슈의 해민들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면서 서로 결합했다. 이러면서 왜구의 성격은 무조건적 약탈자에서 교역 중개자로 점차 변모해 갔다.³¹⁶⁾

중국 상인들은 해금정책 아래의 조공무역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었다. 당시 아시아로 진출한 포르투갈인들 역시 조공무역으로는 그들의 상업적 이익을 채울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왜구가 만들어 놓은 사무역(私貿易) 시스템에 관심을 가졌다. 하지만 이 사무역은 사실상 불법 무역이었기에 필연적으로 폭력과 약탈이 동반되었다. 실제 중세까지의 해양교역에서는 상업과 무력행사가 결코 별개의 일이 아니었다. 상인들은 때로는 상업 활동을 하고 때로는 해적질을 하고 때로는 그 둘을 동시에 했다.³¹⁷⁾

이렇게 하여 후기왜구 안에는 중국 상인뿐만 아니라 포르투갈 상인들도 합류했다. 당시 왜구의 두목으로 알려진 사람은 중국 출신 왕직(王直)이었다. 이들에게 민족이라는 개념은 없었다. 필요에 따라 연대하고 약탈하다가도 다시 각기 흩어져 자신들의 이익을 챙겼다. 여기서 민족은 우선순위가 아니었다. 중세에는 민족이란 개념이 없었으며 특히 바다를 통한 교역에선 이처럼 가변적인 이해관계가 앞설 뿐이었다.

『조선왕조실록』에 등장하는 중국인 수적은 바로 이런 배경에서 나타났던 현상이다. 후기왜구의 복잡한 민족 구성 특징 때문에 조선 조정에서도 처음에는 이

316) 주강현, 2005, 『제국의 바다 식민의 바다』, 웅진, 181쪽.

317) 주경철, 2009, 『문명과 바다』, 산치럼, 168쪽.

들의 정체 파악에 혼란을 겪었다. 중종 18년(1523년) 기사에서 “중국 사람이 일본 사람의 옷을 입었고 배도 없었다고 하였으니 이것은 왜선(倭船)에 같이 타고 왔으면서 속이는 것이 틀림없다”³¹⁸⁾라며 그들의 실제 파악에 어느 정도 접근했음을 보인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처음에는 원정(原情)의 형식으로 추문하고 그 뒤에는 평문(平問)하여, 표류되어 온 이유를 끝까지 힐문하는 것이 가하다”³¹⁹⁾라는 기록에서 보듯이 중국인에 대한 조사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진행했다. ‘원정(原情)’의 형식으로 추문한다는 말은 사정을 하소연하면서 조사한다는 의미이며, ‘평문(平問)’한다는 말은 형구(刑具)를 사용하여 닦달하지 않고 그냥 신문한다는 말이다. 사대관계 속에서 중국 해민을 대하는 태도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수적이라고 의심하면서도 왜구와는 달리 조심스럽게 취조하고 있다. 특별대우였던 셈이다.

그러나 명종 대로 들어서면 달라진다. 약탈을 자행하는 수적임을 명백히 파악했던 것이다. 명종 대에는 중국인 수적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특징은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왜인과의 연합이었다. 다음의 인용 기사들은 명종 대에 왜구와 연합했던 중국 수적들을 보여준다.

중원(中原) 사람이 와서 수적(水賊)이 된 일은 다 중대한 일입니다. 복건(福建) 사람이 왜노(倭奴)와 내통하여 이미 병기(兵器)를 주고 또 화포(火炮)를 가르쳐 주었는데, 이것은 중국과 우리나라에 다 불리한 일입니다.³²⁰⁾

중국인 수적 등장을 중대 사안으로 파악했음을 보여준다. 구체적으로는 복건(福建)지방 사람들이다. 복건지방이라면 대만을 마주보는 중국 동남해안 지역이다. 후기왜구의 주요 구성원인 중국 남부 해안지대 사람들의 거주지다. 그들이 왜인에게 병기와 화포를 가르쳐 주었다고 한다. 그래서 조선 조정에서는 나름 긴장하며 중대 사태라고 규정했다.

그리고는 바로 이어 명종 7년(1552년)부터 명종 11년(1556년)사이 불과 5년

318) 『중종실록』 권48, 중종 18년(1523년) 7월 28일 甲午 (唐人衣倭衣, 且無船 必是乘倭船同來, 而諱之也).

319) 『중종실록』 권48, 중종 18년(1523년) 7월 28일 甲午 (初以原情問之, 其後平問, 窮詰漂來根因可也).

320) 『명종실록』 권5, 명종 2년(1547년) 4월 19일 庚子 (但勅書見倭及中原人來爲水賊, 皆是重事. 福建人, 交通倭奴, 既給兵器, 又教火(炮) [砲], 此上國與我國, 皆是不利之事也).

동안 이들에 대한 기사가 무려 5회나 등장한다. 본격적으로 후기왜구가 들끓었던 시기다.

이른바 왜인이란 자들은 절반이 중국인이고³²¹⁾

왜구 구성의 절반이 중국인임을 말하고 있다. 일본학자들은 후기왜구의 10~20%만이 일본인일 뿐 나머지는 중국인이 대다수를 이뤘다고 주장한다.³²²⁾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조선 조정에서마저 절반이 중국인이라고 파악했을 정도다. 실제 중국인이 많았던 것 같다. 왜구 두목마저 중국인 왕직(王直)이라는 사람이 차지하고 있었던 것을 보면 주도권도 중국인이 쥐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랬기에 일본인들이 오히려 중국옷을 입고 활동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는 분명히 왜인인데 의복은 중국의 것과 비슷합니다.³²³⁾

물론 어느 쪽이 더 중심적이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그들의 결합 자체가 중요하다. 왜인이건 중국인이건 국적을 굳이 따질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들에게는 민족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만 이익이 중요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국인이면서도 왜인과 결합하여 중국인을 살해하고 노략질을 해댔다.³²⁴⁾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조선 수적 혹은 제주유민도 가담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다음의 기사가 이를 암시한다.

그 중에는 우리나라 말을 조금 아는 자가 있었다니, 이는 반드시 우리나라에 왕래하던 왜인일 것이고 (중략) 이 말은 모두 중국에서 사용하는 말이니, 이번에 침범해 온 자들 중에 또한 반드시 중국 사람이 있거나(중략) 또한 왜인들은 ‘가정(嘉靖)’이란 연호(年號)를 쓰지 않는데 이번에는 ‘가정 34년’이라고 했으니 더욱 의심스럽습니다.³²⁵⁾

321) 『명종실록』 권13, 명종 7년(1552년) 7월 30일 庚戌 (所謂倭人者, 唐人居半).

322) 이영, 1999, 「일본인이 보는 왜구의 정체」, 역사문제연구소, 『역사비평』 46호, 299쪽.

323) 『명종실록』 권16, 명종 9년(1554년) 5월 25일 甲子 (明是倭人, 而衣服似同唐制云).

324) 『명종실록』 권17, 명종 9년(1554년) 7월 12일 庚戌 (但此唐人交通倭賊, 殺掠中原之人, 爲中朝叛賊).

325) 『명종실록』 권18, 명종 10년(1555년) 5월 19일 壬子 (其中有稍解我國言語者云, 此必往來我國之倭(중략))

우선 왜구 중에 우리말을 아는 자가 있다고 했다. 이를 두고 우리나라에 왕래하는 왜인일 것이라 추정했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다고 볼 것만도 아니다. 우리나라를 왕래하는 왜인이 아니라 왜인과 접촉하던 우리나라 사람일 가능성도 있다. 유사한 생활환경 속에서 평소 왜인과 교류하던 조선 해민이라면 그들 집단의 구성원으로 가담했을 수도 있다.

또 다른 특징은 이 왜구 집단 안에 중국인이 존재했다는 점이다. 중국에서 사용하는 말을 했다거나 특히 중국 연호 ‘가정(嘉靖)’을 쓴다는 점은 단순히 중국인이 가담했다는 수준을 넘어 선 것 같다. 일본 학자들의 주장대로 후기왜구의 중심 세력이 중국인임을 보여주는 근거로 볼 수도 있겠다.

다음 해인 명종 11년(1556년) 기사에는 정체불명의 선박을 추적하면서 “중국 배인지 일본배인지, 우리나라의 수적(水賊)인지를 상세히 살펴 치계(馳啓)”³²⁶⁾할 것을 요구하는 기록이 나온다. 이 기록 역시 후기왜구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으며 조선 수적까지 그들과 결합했을 가능성을 말해준다.

한편 왜구와의 관계를 언급함 없이 그대로 중국 수적을 표현한 기사도 있다. 선조 40년(1607년) 기사에 등장하는 중국 수적이었다. 이 중국 수적들은 공물 수송 선박을 약탈하려다가 조선 수군에 의해 체포당했다.³²⁷⁾

이들 중국 수적을 체포하는 일에 제주유민이 나선 경우도 있었다. 배가 난파되어 충청도 어느 섬에 표류해 있는 중국 수적을 포작인이 체포하여 압송했던 경우다.³²⁸⁾ 이러한 경우를 고려할 때 제주유민과 중국 수적과의 관계도 단순하게 하나의 관계로 설명하긴 어렵다.

기록에 명확히 등장하지는 않지만 후기왜구의 한 구성원으로 합류했던 조선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다. 중국 수적과 합류한 사람 중에 조선말을 알아듣는 자가 있었던 점을 보면 그렇다. 아마도 그런 사람은 바다 생활을 하던 조선 해인일 가

皆中原所用語也。今之來寇者，亦必有中國之人也(중략) 且倭人不奉嘉靖年號，而今稱嘉靖三十四年，尤可疑也。

326) 『명종실록』 권20, 명종 11년(1556년) 3월 23일 壬午(唐, 倭船與我國水賊與否, 詳察馳啓事).

327) 『선조실록』 권207, 선조 40년(1607년) 1월 19일 癸未(本州貢物, 載船上京次, 行到睡鳴島, 則荒唐船揚旗追逐 至泊於本州十里許玄地浦口 判官定將, 率軍兵馳進, 軍兵等踴躍往捕 觀其行止, 水賊無疑, 盡數縛結. (중략) 牧使, 判官親領唐人, 入州拘囚).

328) 『중종실록』 권48, 중종 18년(1523년) 7월 20일 戊子; 권48, 중종18년(1523년) 7월 28일 甲午.

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제주유민일 수도 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그들이 중국 수적에 합류하는 순간 그들은 제주 포작인이 아니라 중국 수적으로 분류되어 기록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중국 수적을 체포 압송하는 포작에 대한 기록을 봐서 알 수 있듯이, 중국 수적과 대척점에 선 제주유민들도 분명히 있었다. 그러므로 일본 학자들의 주장처럼 후기왜구의 주요 구성원으로 제주 포작인을 단순 설정하기는 어렵다.

물론 형편에 따라서 연합하고 약탈하고 또 흩어지고 했을 수는 있다. 후기왜구가 중국인, 포르투갈인 등 다민족으로 구성되었던 점을 생각할 때, 여기에 제주유민도 함께 합류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민족이나 국적에 관계없이 해양 생활 속에서 이해관계에 따라 묶이고 흩어지던 게 그들이었기 때문이다. 다만 제주 포작인이 왜구의 한 주체가 되었다는 직접적인 기록은 없다. 때문에 제주유민이 곧 왜구라고 선불리 단정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가능성 자체마저 부정하는 것 또한 옳지 않다. 기록만으로 볼 때는 후기왜구에 가담한 제주 포작인이 많았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단지 열려있는 가능성으로만 생각해 볼 수 있을 뿐이다.

후기왜구와 무관하게 제주유민과 중국 수적과의 관계를 생각해야 할 대목이 있다. 중국 해랑도 수적 문제이다. 후기왜구보다 오히려 해랑도 수적의 경우에서 제주유민과 중국 수적의 결합 가능성이 높다. 앞의 고찰에서 중국 해랑도가 수적의 근거지가 되었음을 보았다. 그리고 그 해랑도에 제주유민이 살고 있음도 확인했다. 따라서 제주유민이 해랑도 수적이 되었을 가능성은 충분했다.

이들 해랑도 수적은 주로 황해도와 평안도 연해 지방에 출몰하여 양곡 수송선을 약탈했다.³²⁹⁾ 선조 임금이 통탄하였듯이 해랑도를 시작으로 그 일대의 도적들이 해상을 횡행하여 조선 사람의 의복과 양식을 약탈³³⁰⁾하였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나포(搜捕)에 나선 병선을 빼앗기까지 하는 등 그 위세가 대단했다.³³¹⁾

중종 23년(1528년) 당시 해랑도에는 중국인 수천 명과 조선인 400~500명이

329) 서인범, 2011, 「조선시대 서해 북단 해역의 경계와 島嶼 문제 : 海浪島와 薪島를 중심으로」 명청사학회, 『명청사연구』 제36집, 366쪽.

330) 『선조실록』 권211, 선조 40년(1607년) 5월 2일 甲子 (攘奪我國人衣糧者也).

331) 『선조실록』 권209, 선조 40년(1607년) 3월 13일 丙子 (而今此賊, 猶橫行海上, 至於搜捕兵船見奪, 極爲痛愕).

거주했었다.³³²⁾ 한편 연산군 6년(1500년) 해랑도 토벌을 나가 그 일대에서 체포
 해 온 사람은 중국인이 78명, 조선인이 34명이었다.³³³⁾ 전체 인구 중에 몇 %가
 수적활동을 했을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중국인과 조선인이
 함께 거주했다는 점이며 또한 체포당한 자들 역시 중국인과 조선인이었다는 점
 이다. 그렇다면 해랑도 수적은 중국인, 조선인 혼합 수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
 고 그 조선인 중에는 제주유민이 들어 있을 가능성도 또한 많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일본학자 高橋公明(2001)는 중국 원명 교체기 절강성 주변 舟山列島の
 해상세력 반란인 난수산의 난(蘭秀山の亂)을 주목했다.³³⁴⁾ 그 난에서 패배한 해
 상세력 일부가 제주도로 도망 왔고, 그들이 다시 전라도 고부 땅에서 활동했던
 것을 중국 수적 현상에 연결시켰다. 난수산 세력의 이러한 이동 생활은 이미 해
 상세력 간의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본 것이다. 따라
 서 제주의 해상세력과 중국 남부 해상 세력은 일찍부터 연결되어 있었다는 주장
 이다. 그리고 그것은 곧 16세기 중국인 왜구의 뿌리가 깊다는 의미라고 하였다.

물론 타당한 지적일 수는 있다. 해상세력 사이의 교류는 일찍부터 있었을 것
 이다. 그러나 14세기 말 사건을 가지고 16세기 현상을 설명하는 것은 아무래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바탕에 해상세력 간의 네트워크라는 게 형성되어 있었을 수
 는 있다. 그러나 그것이 곧바로 16세기 중국 수적과 제주유민의 결합을 보증하기
 는 어렵다.

이상에서 살핀 제주유민과 중국 수적과의 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비슷
 한 생활환경 속의 해상세력인 까닭에 교류의 가능성, 연합의 가능성이 없지는 않
 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그들이 연합하여 하나의 세력을 형성했다는 기록은 없다.
 뿐만 아니라 중국 수적을 체포 압송하는 모습을 보인 기록이 있어 오히려 그 반
 대의 모습이 두드러진다. 하지만 16세기의 후기왜구가 중국인, 일본인, 포르투갈
 인 등 다민족으로 구성되었던 점을 생각한다면 제주유민 역시 일부는 이들 집단
 에 합류했을 가능성은 있다. 합류 이전에 교류했을 가능성 역시 열어 뒀야 할 것
 이다.

332) 『중종실록』 권62, 중종23년(1528년) 8월 6일 乙巳(海浪島中, 中原人數千, 我國人四五百居之).

333) 『연산군일기』 권38, 연산 6년(1500년) 6월 28일 庚戌(捕唐人七十八, 我國人三十四而還).

334) 高橋公明, 2001, 「海域世界の交流と境界人」, 大石直正·高良倉吉·高橋公明, 『周縁から見た中世日本』, 講
 談社, p364.

V. 임진왜란과 제주유민

하루 안에 제주도과 한반도 연안을 왕복하는 항해 능력,³³⁵⁾ 한반도 모든 연해와 중국 해랑도까지 펼쳐진 활동 범위 등은 제주해인(海人)의 해양능력을 보여준다. 때문에 제주사람들이 대거 출륙 유랑하던 15세기 성종 대부터 이들의 능력을 활용하자는 논의가 조정에서도 제기되었다.

“선체(船體)는 왜인의 배보다 더욱 견실하고, 빠르기는 이보다 지나치는데”³³⁶⁾라는 특징에 주목하고 “사람됨이 날래고 사나우며 그 배가 가볍고 빠르기가 비할 데 없어서, 비록 폭풍(暴風)과 사나운 파도(波濤)라 하여도 조금도 두려워하고 꺼려함이 없으며, 왜적(倭賊)이 이를 만나도 도리어 두려워하고 피해서 달아납니다”³³⁷⁾라고 평가하면서 이들의 군사적 활용을 논했던 것이다.

이 무리들은 이미 배[舟楫]로써 생활하고 있으니, 바다를 방어하는 데 이용하면 곧 국가의 이익입니다. 소재지[所在官]의 만호(萬戶)에게 부근의 가까운 곳에 분치(分置)하도록 이미 법을 세웠으니……만일 변방(邊方)에 위급한 일이 있으면 이 무리들이 가장 수상(水上)에서 쓸 만한 군사가 될 것입니다.³³⁸⁾

이 무리들은 배를 잘 다루니, 만약 그들을 활용한다면 왜적(倭賊)을 당할 수 있을 것이니 진실로 유익할 겁니다.³³⁹⁾

제주유민의 배 부리는 능력을 높이 사면서 그것을 활용하여 왜적에 대비하고자 논의하고 있다. 이들을 군사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소재지의 만호에게 포작인들을 분치하도록 법까지 세웠다고 한다. 그런데 성종 대의 이런 논의는 논의에서 그친 듯하다. 분치까지는 했을지 모르겠는데 이들을 군사적으로 활용하자는 건의

335) 『예종실록』 권3, 예종 1년(1469년) 2월 29일 甲寅 (乘夜出陸, 朝往夕返).

336) 『성종실록』 권83, 성종 8년(1477년) 8월 5일 己亥 (船體視倭尤牢實, 而迅疾則過之).

337) 『성종실록』 권177, 성종 16년(1485년) 4월 12일 癸亥 (爲人勇悍, 其船輕疾無比, 雖暴風虐浪, 略無畏忌 倭賊遇之, 反畏避而去).

338) 『성종실록』 권178, 성종 16년(1485년) 윤4월 19일 己亥 (但此輩既以舟楫爲生, 用以防海, 乃國家之利也. 所在官萬戶傍近處分置, 既已立法……則萬一邊上有警, 此輩最爲水上可用之兵也).

339) 『성종실록』 권262, 성종 23년(1492년) 2월 8일 己酉 (然此輩善操舟, 若用之以當倭賊, 誠爲有益).

에 대해서 왕은 대신들에게 잘 의논해 보라는 정도의 반응³⁴⁰만을 보였다. 아직은 군사적 활용보다도 소요나 일으키지 않게 안집(安集)시키는 게 우선이었던 것 같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군사적 활용에 대한 논의는 결실을 맺었다. 제주유민 중 일부가 조선 수군에 편입된 것이 확인되는 기록은 중종 대에 보인다. 전라 우수영에 소속된 포작들을 제주도로 쇄환하려 하자 병부와 전라도 관찰사가 이를 강력 반대했다. 왜적에 맞서 배를 작동할 사람이 없어진다는 논리였다.³⁴¹

언제 처음 편성된 것인지, 그리고 그 규모가 어떠한지는 드러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중종 대에 이들이 전라도 우수영 관할 속에서 군사적 역할을 담당했다는 것만큼은 확실히 나타나고 있다. 물론 이들의 예속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분명치 않다. 예속의 정도가 강했다면 이미 이들은 정착생활에 가까웠을 것이며, 예속의 정도가 느슨했다면 수군에 등록된 채 관내 지역 안에서는 여전히 특정 정주처 없이 떠돌이 생활을 했을 것이다. 그래도 전라도 우수영에 소속되었다는 점만으로도 이전 성종 대에 비해서는 예속의 정도가 심화되었으며 그런 만큼 그들 나름의 자율성은 많이 상실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다.

이들의 전투력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은 임진왜란 때이다. 국가와 국가 간의 충돌이 발생하자 비교적 국가의 통제로부터 자유롭게 생활하던 포작인들도 국가 무장력의 일부로 편성되어 그 역할을 담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일본 측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임진왜란 당시 선봉장에 나섰던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도 해적 겸 무역상 출신의 해상세력이었다.³⁴² 비교적 자율권이 강했던 그들 역시 국간 간 전쟁이 발발하자 국가 권력 안에 묶여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제주유민 역시 전쟁 속으로 휩쓸려 들어갔다. 조선 수군은 이들을 절실히 필요로 했다. 하지만 때로는 일본군의 일부로 살아가기도 했다. 그들이 가진 해상 능력은 전쟁의 두 당사자 모두가 탐내는 재능이었기 때문이다.

340) 『성종실록』 권262, 성종 23년(1492년) 2월 8일 己酉 (上曰 船隻事, 其諭觀察使 頭無岳事, 其令該司議啓).

341) 『중종실록』 권87, 중종 33년(1538년) 2월 11일 乙卯 (今若水營所屬鮑作漢, 一切勒還, 則凡干緩急, 制船無由, 防備疎虞, 至爲可慮); 『중종실록』 권92, 중종 35년(1540년) 1월 10일 癸卯(右道水營案付鮑作漢, 亦在刷還中 其時柳泓爲水使, 啓以爲, 彼人等, 皆被刷還本(道) [島], 無操舟人云.)

342) 이민웅, 2004, 『임진왜란 해전사』, 청어람미디어, 66쪽.

1. 조선 수군으로서의 제주유민

이순신의 <난중일기>를 번역한 김경수(2004)의 해설에 따르면 임진왜란 당시 조선 수군이 승리할 수 있었던 주요한 요인 중 하나가 바로 포작의 전시 투입이었다고 한다.³⁴³⁾ 일정한 거처 없이 해상을 떠돌며 고기잡이로 생계를 영위하던 포작은 본래 육군 훈련만 받아 바다에는 익숙하지 않았던 이순신에게는 해전 승리의 주요 요인이었다는 것이다.

조원래(2003) 역시 포작과 같은 비정규군이 임진왜란 이전에 이미 전라도의 수군편제와 연계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훗날 수군이 승첩하는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말한다.³⁴⁴⁾

당시 조선수군의 구성을 본다면 이들의 이야기가 전혀 근거 없지 않은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 본래 수군의 충원은 양인계층의 沿海民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연해민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라 실제로는 沿海民과 山郡人을 고루 나누어 포진(浦鎭)에 이속(移屬)시켰다.³⁴⁵⁾ 그런데 이들 수군은 육군과는 달리 1년에 6개월을 근무했으며 식량, 무기, 군복도 자체 조달해야 했고, 그 외에 노역이나 함선 건조, 소금 생산, 진상물 마련 등도 담당하여 부담이 컸다. 때문에 기피 대상이 되어 충원하기가 쉽지 않았다.³⁴⁶⁾ 그래서 실제로는 천인계층이나 범죄인으로 충당하기도 했다.³⁴⁷⁾ 『經國大典』에는 수군의 총 수가 48,800명으로 규정³⁴⁸⁾되어 있었지만 실제 그 수를 채우기는 힘들었다. 이순신의 장계에 “이름만 군적에 올랐을 뿐이지 그 중에는 잡동사니가 절반이나 되어 그 실제의 수는 아주 적습니다”³⁴⁹⁾라고 했을 정도로 실제 수군의 수는 많지 않았고 그마저도 바다에 익숙지 않은 사람들이었다.

343) 이순신 원저, 김경수 편저, 2004, 『평역 난중일기』, 행복한책읽기, 85쪽.

344) 조원래, 2003, 「수군의 승첩」,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29, 탐구당, 58쪽.

345) 方相鉉, 1991, 『朝鮮初期 水軍制度』, 민족문화사, 33쪽.

346) 오봉근, 1991(영인: 한국문화사, 1998), 『조선수군사』, 사회과학출판사, 222쪽.

347) 조원래, 2003, 앞의 논문, 56쪽.

348) 『經國大典』 番次都目 水軍 漕卒.

349) 『影印 李忠武公全書』, <請沿海軍兵糧器全屬舟師狀>, 成文閣, 1989, 120쪽(名雖載籍 雜頭居半其實鮮少).

이순신마저도 사실은 바다에 익숙한 사람은 아니었다. 때문에 제주유민인 포작의 활용가치는 매우 높았던 것이다.

임진왜란 발발 직후 이순신의 첫 출전에서부터 제주유민의 활동이 드러난다. 1592년 5월 4일 새벽의 모습이다. 이순신의 제 1차 옥포 승첩을 아뢰는 계본인 <玉浦破倭兵狀>³⁵⁰⁾에는 “여러 장수들과 판옥선(板屋船) 24척, 협선 15척, 포작선 46척을 거느리고 출전하여”³⁵¹⁾라는 대목이 나온다.

임진왜란의 첫 해전부터 제주유민이 동원되고 있었다. 전체 85척의 배 중에 제주유민이 타고 다니던 포작선이 46척이었다. 여기서 협선 15척은 승선 인원이 5명 이하인 소형 부속선에 불과했다.³⁵²⁾ 그렇다면 정작 주력은 판옥선(板屋船)과 포작선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중 포작선의 수가 판옥선(板屋船)의 거의 2배에 이른다.³⁵³⁾ 그만큼 전쟁 초기부터 포작인들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음을 보게 된다.

여기서는 임진왜란 초기부터 조선 수군의 일원으로 활동했던 제주유민을 그 역할별로 나누어 하나씩 살펴보면서 그들의 모습에 가까이 접근하고자 한다. 이들은 전쟁 수행 과정에서 때로는 긍정적 역할로 때로는 부정적 행위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었다.

1) 수로(水路) 안내인

앞에서 제주유민들의 이동 범위가 중국 해랑도까지 미침을 보았다. 그런 까닭으로 임진왜란 이전에도 지방관들은 이들 제주유민이 지닌 수로(水路) 정보를 활용하고 있었다. 성종 17년(1486년) 경상도 관찰사(慶尙道觀察使) 손순효(孫舜孝)가 연안 방비책을 조정에 올리면서 하던 말 중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신이 곤양·사천·고성(固城)에 이르러 제주(濟州)에서 와 사는 두무악(頭無岳) 등

350) 萬曆 20년(1592년) 5월 10일자 계본.

351) 『影印 李忠武公全書』, <玉浦破倭兵狀>, 성문각, 1989, 76쪽(諸將 板屋船 二十四隻 狹船 十五隻 鮑作船 四十六隻 領率發行).

352) 이민웅, 2004, 앞의 책, 79쪽.

353) 그런데 2차 출전 때부터는 포작선에 대한 기록이 보이지 않는다. 그것은 아마 1차 출전 때 정식 군선으로 등록되지 않았던 포작선들이 2차 출전 때부터는 정식 군선으로 등록되면서 다른 명칭으로 기록된 게 아닌가 싶다.

남녀를 불러 모아놓고 술을 먹이고 국령(國令)을 유시(諭示)하며, 또 수로(水路)를 자세히 물으니, 각각 소견을 아뢰는데, 못사람의 말이 한결 같았습니다. 대마도(對馬島)에서 남해 미조항까지 그 사이에 크고 작은 섬이 벌여 있어 서로 연하였는데……

..354)

남녀 두무악들을 모아 술을 먹여가며 물길 정보를 캐고 있다. 국가의 명령임을 엄하게 알리고서 조사하는 것인지를 두무악들이 허투루 말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이 모두 일치했다. 그들이 제공한 정보는 대마도에서부터 남해 미조항까지의 여러 섬과 물길에 대한 정보였다. 성종 대의 기록인지를 제주유민이 조선 수군에 편제되기 이전 상황이다. 그런 까닭에 단순히 관찰사에게 물길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중종 대에는 이들이 수군의 일원으로서 물길을 직접 안내하고 다녔다. 그런데 다시 쇄환 논의가 일어 이들의 거취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다. 병조(兵曹)에서는 당연히 이들의 쇄환을 반대했다.

허다한 여러 섬에서 왜적을 수색하거나, 혹 대양(大洋)에서 갑자기 적선(賊船)을 만나 공격하는 등의 일은 수로(水路)에 익숙한 자가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수영(水營)에 소속된 포작한(鮑作漢)을 일체 억지로 쇄환하면 모든 위급한 일이 생길 적에 배를 작동하게 할 방법이 없어서 방비가 소홀하여지고 잘못되는 일이 있을까 매우 우려됩니다.³⁵⁵⁾

“慣知水道者” 즉 수로에 익숙한 자가 아니면 적선을 만났을 때나 왜적을 수색할 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논리였다. 그러니 쇄환하지 말게 해달라고 건의하고 있다. 이에 임금은 의논한 대로 하라며 쇄환을 중지시켜 주었다. 남해안 다도해의 그 복잡한 지형을 떠올릴 때, 그 지형에 따른 물길을 제대로 알고 있는 자가 그만큼 필요했을 것이라 생각된다.

임진왜란이 시작되자 이들의 역할은 더욱 커졌다. 이순신의 장계에도 물길 안

354) 『성종실록』 권197, 성종 17년(1486년) 11월 22일 癸亥 (臣到昆陽、泗川、固城, 招集濟州來居頭無岳等男女饋酒, 諭以國令, 且詳問水路, 各陳所見, 衆口如一 自對馬島至南海彌造項……).

355) 『중종실록』 권87, 중종 33년(1538년) 2월 11일 乙卯 (但許多各島倭賊搜討, 或於大洋, 卒遇賊船, 勦擊等事, 非慣水道者, 不能. 今若水營所屬鮑作漢, 一切勒還, 則凡干緩急, 制船無由, 防備疎虞, 至爲可慮).

내인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대목이 있다. 다음은 전쟁 발발 보름만인 1592년 4월 30일 이순신이 올린 장계 <赴援慶尙道狀(2)> 중에 나오는 내용이다.

신의 외로운 他道の 군사로는 그 道の 물길이 험하고 평탄한 것을 알 수 없고, 물길을 인도할 배도 없으며³⁵⁶⁾

당시 이순신은 전라 좌수사였다. 그리고 원병을 요청했던 원군은 경상 우수사였다. 경상 좌도는 이미 완전히 유린당했고, 경상 우도의 수군절도사였던 원군은 절대적인 힘의 열세를 느꼈다. 그래서 전라 좌도 수군절도사 이순신과 전라 우도 수군절도사 이억기에게 원병을 청했던 것이다.

원군의 요청을 듣고 이순신이 경상도로 출병했다. 그러나 이순신은 출병하면서 물길을 몰라 힘들어 했다. 물길을 모르는 상태로 “경솔하게 행동을 개시한다는 것은 또한 천만 뜻밖의 실패가 없지도 않을 것”³⁵⁷⁾이기 때문이다. 위의 기록은 그 답답한 심경으로 올린 장계 내용 중 일부이다. 원문의 “孤單客兵”을 ‘타도의 군사’로 번역했는데, 이는 ‘경상도의 물길을 전혀 모르는 전라도의 군사’를 말한다.

그 당시에는 자세한 해도(海圖)가 없었고, 남해의 다도해는 평상시에도 조류와 암초, 그리고 바람의 움직임이 복잡해서 구역별로 수로 안내인이 필요했다.³⁵⁸⁾ 물길을 아는 병사로는 포작인 말고도 이순신의 장계에 자주 등장하는 ‘토병(土兵)’이 있었다. 그들도 물길을 알기는 했다. 그러나 그들은 토병이라는 말 그대로 그 지역의 물길만을 알 뿐이었다. 즉 그들은 구역별 수로 안내인이었다.

하지만 포작은 구역별 안내인이 아니었다. 모든 해안을 두루 다녔던 존재이기 때문에 남해안 전체 지역의 물길을 알고 있었다. 앞서 인용한 기록에서 보면 쓰시마에서 남해도 미조항까지의 물길을 일관되게 설명해줄 정도였다.

전쟁 중이라 적의 기동함대가 매복하고 있을 가능성도 높았다.³⁵⁹⁾ 때문에 이순신은 1차 출동 때 원군 수사에게 수로 안내인을 보내 달라고 요청했던 것이다.

356) 『影印 李忠武公全書』, <赴援慶尙道狀(2)>, 성문각, 1989, 75쪽(臣之孤單客兵未諳同道水路險夷既無引路之船).

357) 『影印 李忠武公全書』, <赴援慶尙道狀(2)>, 성문각, 1989, 75쪽(輕易啓行亦不無千里意外之慮)

358) 이순신역사연구회, 2005a, 『이순신과 임진왜란』 1, 비봉출판사, 198쪽.

359) 이순신역사연구회, 앞과 같음.

그러나 원군은 아무도 보내주지 않았다.³⁶⁰⁾ 때문에 당시 이순신 함대는 무척 애를 먹었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이순신은 수로 안내자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 제주유민 포작들이 이순신 함대로 유입된 것은 이순신의 이런 경험에서 비롯되었다. 물길 안내인을 충원한 결과 첫 출전에서 포작선 46척이 등장했다. 그리고는 3일 뒤 첫 해전 즉 옥포해전³⁶¹⁾은 이순신 수군의 승리로 끝났다.

2) 선박 조종인

제주유민 포작들의 배 다루는 능력이 주목받은 것도 유민 발생 초기부터였다. 다음의 성종 17년(1486년) 기사는 이들의 배 다루는 능력을 말해 준다.

곤양·진주·사천·고성에 두무악(頭無岳) 등을 나누어 두면, 모두 배를 잘 부려서 물결에 달려가는 것이 나는 새와 같으니, 그들을 어루만져 편히 살게 하면 급할 때에 쓸 수 있을 것입니다.³⁶²⁾

역시 포작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여 활용 방안을 논의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그들이 배 부리는 솜씨를 ‘正如飛鳥’ 즉 나는 새와 같다고 비유했을 정도다.

360) 원균 수사가 이순신에게 수로 안내인을 보내지 않은 것은 당시 수군 편제의 특성 때문이다. 본래 조선 전기의 지방 방어 체제는 진관(鎭管)체제였다. 진관체제는 각 지역의 방어를 그 지역에서 책임지고 해결하는 방식이다. 각 지역별 사령관이 따로 있고 각각 지역은 독자적으로 외적을 방어했다. 그러나 병농일치의 양인개병(良人皆兵) 원칙이 흐릿해지며 대립제(代立制)가 성행하고 결국 방군수포제(放軍收布制)로까지 변질되자 실제 병사가 되는 사람은 극히 적어졌다. 적은 수의 병사로는 진관체제를 유지할 수 없었다. 그래서 중앙에서 장수를 파견하고 주변 여러 고을의 병사를 불러 모아 대오를 편성하는 제승방략(制勝方略)체제로 전환할 수밖에 없었다. 제승방략체제는 을묘왜변 후 제주 목사 김수문의 제의에 의해 만들어졌다. 임진왜란 때 신립 장군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사령관 신립이 지방에 급파되어 그 지방의 군대를 끌어 모아 싸웠다. 물론 완패였다. 지역 실정을 모르고 또 평소에 지휘관과 병사간의 관계 형성이 전혀 되어 있지 않는 방식이라 약점이 많았다. 물론 약점을 알면서도 전환할 수밖에 없었던 게 당시의 현실이었다. 그런데 수군은 이런 전환을 하지 않았다. 육군과 달리 바다라는 특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수군에 대한 지휘는 중앙에서 파견되어 오는 고위 지휘관이라 하더라도 해전의 경험도, 배타는 능력도 없는 자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제승방략(制勝方略)체제로의 전환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때문에 진관체제를 고수했다. 그런데 진관체제의 단점은 바로 이순신의 요청을 원균이 무시한 데에서 알 수 있듯이 지역별 수군을 통괄할 사령관이 따로 없다는 점이다. 임진왜란 초기 경상우수사 원균, 전라 좌수사 이순신, 전라 우수사 이억기는 같은 수사로서 동급이었다. 이들은 같이 작전을 수행하면서도 통일적인 작전을 펴기가 어려웠다. 최고 사령관이 따로 없는 각각 독자적인 방어체제였기 때문이다.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나중에 3도수군통제사가 만들어진다. 이순신이 3도수군통제사가 되었던 때는 1593년 8월이었다(오봉근, 앞의 책, 201쪽; 차문섭, 2003, 「진관체제의 확립과 지방군제」,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23, 탐구당, 245쪽 등 참고).

361) 옥포해전은 1592년 5월 7일에 있었다.

362) 『성종실록』 권197, 성종 17년(1486년) 11월 22일 癸亥(昆陽、晉州、泗川、固城分置頭無岳等, 皆能操舟逐浪, 正如飛鳥, 撫以安業, 緩急可用).

반면 조선 수군의 배 다루는 능력은 많이 떨어졌다. 조정의 정책 자체가 해상 방위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선의 수군으로 일본군을 막아내기 어렵다고 속단하여 처음부터 육상방위에 주력할 것을 고집해 왔던 것이다. 즉 일본군은 해전에 능한 반면 조선군은 육전에 능한 것으로 오판하여 적이 쳐들어올 경우 그들을 육지로 끌어올려 대적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³⁶³⁾

『중종실록』에도 조선 수군의 배 다루는 기술이 떨어졌음을 지적하는 기사가 등장한다.

이른바 수군이라는 것도 직접 배를 움직이는 법을 익힌 사람들이 아니라 모두 고용되어 배를 탄 사람들로서, 이들이 수군의 역사(役事)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리하여 수군 자신은 집에 있으므로 전혀 배를 조종할 줄 모르는 자가 파다하여 비록 배는 있다 하더라도 이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 이 또한 매우 우려되는 일입니다.³⁶⁴⁾

왜인(倭人)들의 우월한 기술은 배를 잘 운행하는 것이어서, 우리나라의 특기는 아닙니다.³⁶⁵⁾

수군이라고 해 봐야 배를 움직이는 법을 아는 자가 거의 없었다. 전문적으로 배 다루는 법을 익힌 자가 아니라 그냥 고용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배가 있다 하더라도 무용지물이었던 게 당시 조선 수군의 현실이었다. 또한 왜인과 비교하며 조선 수군의 배 다루는 능력이 떨어짐을 말하고 있다.

그런데 초기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1510년 삼포왜란을 계기로 성곽시설이 없던 수군기지에 성곽을 쌓으면서부터 나타난 현상이었다. 성곽을 쌓은 이유는 함대가 조운(漕運) 등의 일로 어디 가고 없거나 해상전투에서 실패한 경우에도 적을 방어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였다. 즉 만약 바다에서 패전하더라도 성곽을 바탕으로 적의 상륙을 저지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 조치가 반드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왔던 것만은 아니다. 수군기

363) 조원래, 2003, 앞의 논문, 57쪽.

364) 『중종실록』 권48, 중종18년(1523년) 6월 26일 乙丑 (其所謂水軍, 亦非親習舟楫, 皆雇於騎船, 以代其役, 身則在家 專不知操舟者頗多 雖有船而無人 是亦甚可慮也).

365) 『중종실록』 권45, 중종 17년(1522년) 6월 22일 丁酉 (且倭人之長技, 在舟楫, 而非我國之長技也).

지에 성곽을 쌓은 후부터는 첩사, 만호 등이 이전과는 달리 성안에 틀어박혀 해안방어에 소홀 하는 경향이 나타났다.³⁶⁶⁾ 즉 “성(城)을 쌓고 방어한 뒤부터는 배를 타고 방어하는 제도가 폐기”³⁶⁷⁾되어 수군의 배 조종 능력이 현격히 떨어지게 되고 말았다.

임진왜란이 시작되었을 때 이순신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했던 모양이다.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적을 막는 방책에 있어서 수군이 작전을 하지 않고 오직 육전에서 성을 지키는 방비에만 전력하였기 때문에, 나라의 수백 년 基業이 하루 아침에 적의 소굴로 변해진 것입니다.³⁶⁸⁾

1592년 5월 10일 제 1 차 옥포 승첩을 아뢰는 장계를 올리면서 했던 말이다. 수군이 배를 타지 않고 성을 쌓아 육전만을 생각하며 바다를 스스로 포기했기 때문에 너무도 쉽게 부산 등지를 내줬다는 탄식이다.

그렇기에 이순신에게 포작은 더 없이 소중한 병력이었다. 전염병과 군량 부족, 전투에서 죽어간 병사들 중 포작에 대해 특히 애석해 하는 글이 남아 있다.

건강하고 활 잘 쏘며 배도 잘 부리던 토병과 포작³⁶⁹⁾

1593년 8월 10일자 왜군의 정세를 아뢰는 장계 중에 나온 표현이다. 건강하고 활 잘 쏘며 배 잘 부리던 포작이었다. 그 중 특히 ‘배를 잘 부렸다’는 것은 포작인들의 본래적 특질을 정확히 묘사한 것으로 보인다. 이순신 수군이 포작인을 수용한 것도 본래 그들의 배 다루는 기술을 높이 샀기 때문이다.

『선조실록』에도 두 차례 비슷한 기사가 나온다. “전선(戰船)은 포작한(鮑作干)이 없으면 운행할 수가 없습니다”³⁷⁰⁾라든가 “육지에 있는 수군은 배 다루는 것을 전혀 몰라 번(番)이 되면 목포(木布)를 마련하여 해변에서 포작인(鮑作人)을

366) 오봉근, 1991(영인: 한국문화사, 1998), 『조선수군사』, 사회과학출판사, 198쪽.

367) 『중종실록』 권99, 중종 37년(1542년) 8월 15일 壬辰(自築城防禦而後, 乘船防禦之制廢).

368) 『影印 李忠武公全書』, <玉浦破倭兵狀>, 성문각, 1989, 80쪽(臣之妄意禦敵之策不以舟師作綜進退而全務陸戰守成之備使 國家數百年基業一朝變成賊藪).

369) 『影印 李忠武公全書』, <陳倭情狀>, 성문각, 1989, 111쪽(壯健能射慣熟舟楫土兵鮑作之輩).

370) 『선조실록』 권121, 선조 33년(1600년) 1월 4일 己酉(戰船無鮑作, 則不得制船).

고용해서 대립(代立)시키는데”³⁷¹⁾라는 기록이 그것이다.

이처럼 선박 조종 능력이 모자랐던 조선 수군에게 포작인의 존재는 해전 승리의 중요한 바탕이 되었을 것이다.

3) 전투병

임시 편성된 비정규군이라고 할지라도 전쟁의 참화는 포작인들을 비껴가지 않았다. 물길 안내와 선박 조종만으로 그들의 역할이 끝난 게 아니었기 때문이다. 전쟁은 상황에 따라 모든 병사를 전투병으로 내몰기도 한다.

임진왜란 중 제주유민들도 마찬가지였다. 앞서 ‘건강하고 활 잘 쏘며 배도 잘 부리던’ 포작이라고 표현했던 이순신의 글을 봤다. 포작인들은 배도 잘 부렸지만 전투 능력도 뛰어났던 모양이다. 이들이 실제 전투에도 참여했음을 보여주는 기록들이 있다.

이순신이 전쟁 중에 올린 장계 안에는 전사자, 부상자를 보고 하는 내용이 있다. 이순신은 출전 때마다 메모 형식의 선상일지를 적어놓고 귀항 후 이를 문장으로 고쳐서 조정에 장계를 올렸다.³⁷²⁾ 그 안에 전사자, 부상자 명단이 들어갔던 것이다.

萬曆 20년(1592년) 6월 14일 올린 장계 <唐浦破倭兵狀>³⁷³⁾의 말미에는 “접전할 때 사졸로서 화살이나 철퇴를 맞은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는”³⁷⁴⁾이라며 전사자와 부상자의 직함과 이름을 차례대로 나열하고 있다. 모두 47명의 이름이 나온다. 正兵부터 鎭撫, 射夫, 私奴, 格軍 심지어 牧子까지 그 지위가 다양하다. 그 중 포작은 내은석(內隱石), 남산수(南山水), 문세(文世), 말손(末孫), 혼손(欣孫)이라는 이름으로 5명이 나온다.

그 중 내은석(內隱石)은 철퇴에 맞아 죽었으며, 남산수(南山水)와 문세(文世)는 철퇴에 맞았으나 중상에 이르지 않는다고, 말손(末孫)과 혼손(欣孫)은 화살에 맞았으나 중상에 이르지 않는다고.

371) 『선조실록』 권136, 선조 34년(1601년) 4월 1일 戊辰(陸地水軍, 全不解操舟, 當番則責木布, 雇立海邊鮑作人).

372) 이순신역사연구회, 2005a, 『이순신과 임진왜란』 1, 비봉출판사, 15쪽.

373) 이 장계는 1592년 6월 2일의 당포해전과 6월 5일의 당항포해전의 경과를 보고한 장계이다.

374) 『影印 李忠武公全書』, <唐浦破倭兵狀>, 성문각, 1989, 87쪽(接戰時 士卒逢箭中丸人中).

전사자는 전체가 13명이며 이 중 포작은 1명이다. 그리고 부상자는 34명 중에 4명이 포작이다. 전사자와 부상자를 합하면 전체 47명 중에 포작인은 5명, 대략 10%가 된다. 이 비율을 그대로 적용하여 당시 수군의 구성을 엿볼 수도 있겠다. 물론 전투 참가자와 전사·부상자의 비율이 같지 않은 수도 있다. 하지만 부족한 자료를 감안하여 추론할 때 유사하다고 가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당포와 당항포 해전에서 제주유민의 전투 참여 비율은 대략 10% 내외라고 말할 수 있겠다.

반면 토병(土兵)은 전체 47명 중에 3명으로 약 6%이다. 현지에서 징발된 토병보다 남해안 전체의 물길을 아우르는 포작인의 비율이 높다. 그만큼 임진왜란에 말려들어간 포작인의 수가 많다는 의미겠다.

1592년 7월 15일 올린 제3차 한산도 승첩을 아뢰는 계본 <見乃梁破倭兵狀>³⁷⁵⁾에도 말미에는 전사자와 부상자의 명단이 실려 있다. 전투의 규모가 컸던 만큼 앞의 당포해전보다는 전사자, 부상자의 숫자가 많다. 전사자는 19명, 부상자는 115명으로 전체 134명의 직함과 명단이 실려 있다.

이중 포작은 15명이다. 포작 장동(張同), 고평손(高風孫), 본영 일선 수군 포작 이보인(李甫仁), 낙안 격군 포작 업동(業同), 세천(世千), 이담(李淡), 손망룡(孫望龍), 포작 화리동(禾里同), 홍양 일선 포작 고읍동(高邑同), 남문동(南文同), 진동(進同), 본영 삼선 격군 포작 이문세(李文世), 발포 이선 포작 마구지(馬仇之), 망이(望已), 흥복(欣福) 등이 그들이다. 비율로 보면 약 11%가 되어 앞의 당포해전에서의 비율과 유사하다. 다만 특징적인 점은 이 전투에서는 포작 사망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는 점이다. 전체 사망자가 19명인데 여기에 들지는 않았고, 철환에 맞았으나 중상에까지는 이르지 않은 부상자 명단에 15명이 들어가 있다. 그러나 그것만을 가지고 포작이 덜 위험한 자리에 있었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1592년 9월 17일 제4차 부산포 승첩을 아뢰는 장계 <釜山破倭兵狀>³⁷⁶⁾에도 사상자 보고가 실려 있다. 철환에 맞아 사망한 자는 5명이다. 그 중 하나가 포작 김숙연(金叔連)이었다. 그리고 부상자는 25명이며 그 중 포작은 김억부(金億富), 김개동(金開東), 북개(北開), 금동(今同) 등 4명이었다. 전체적으로 보면 30명 중

375) 이 장계는 1592년 7월 8일 한산대첩의 경과를 보고한 장계이다.

376) 이 장계는 1592년 9월 1일 부산포해전의 경과를 보고한 장계이다.

에 5명으로 약 16.7%의 비율이다.

이순신이 올린 위의 세 장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점은 다음과 같다. 임진왜란 중에 제주유민은 물길 안내나 선박 조종만이 아니라 실제 전투에도 참가했다. 그 과정에서 철환에 맞아 전사하거나 혹은 부상을 입었고 화살로 부상을 입은 자들도 있었다. 전사, 부상병 가운데 포작의 비율을 보면 10%~17% 정도가 된다. 이 비율은 전체 전투 참가 수군 가운데서 포작의 비율로도 추정해 볼 수 있겠다. 즉 임진왜란 당시 조선 수군 구성에서 제주유민은 전체의 10% 이상이 되었다는 말이다. 배 다루는 능력과 물길 안내의 능력 때문에 타 지방민에 비해 훨씬 높은 전투 참여 비율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4) 정보 제공인

포작인의 특징 중 하나는 유랑 생활이었다. “작은 배에 처자(妻子)를 싣고 해곡(海曲)으로 떠돌아다니며 우거(寓居)하는데, 이르는 곳이 만약 마음에 맞지 않음이 있으면, 곧 도망하여 흩어져서 거취(去就)가 일정함이 없었다”³⁷⁷⁾라는 기록에서 보듯이 그들은 정착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 때문에 유랑 속에 여러 지역의 정보를 가지게 되었다. 특히 해양 정보를 많이 가지게 되었고, 이들이 가진 정보는 관에서도 필요한 것이었다. 수로에 관한 정보만이 아니라 왜구의 동향은 특히 관에서 관심을 가진 분야였다.

왜구의 동향을 파악하는 문제는 임진왜란 이전부터 포작에게 많이 의존했다. “포작간(鮑作干)이 고하기를 ‘왜선(倭船) 4척이 평두도(平斗島)에 왔다’고 하기에, 신이 즉시 좌우로 나뉘어 쫓아나가”³⁷⁸⁾라거나 “포작간(鮑作干)들 말이 ‘매년 9월 초승이면 왜적(倭賊)들이 삼도(三島)에 와 정박하고 옷과 양식을 약탈해 가니, 만일 복병(伏兵)해 놓고 기다린다면 잡을 수 있을 것이다’ 하므로, 수사(水使) 방호의(方好義)가 초이튿날 군사를 거느리고 바다로 내려가”³⁷⁹⁾라는 중종 대의 기록과 “왜선 한 척이 초도(草島)에 정박했는데 포작간(鮑作干) 등이 남도포 권관(南

377) 『성종실록』 권178, 성종 16년(1485년) 윤4월 19일 己亥 (專以捉魚爲業。扁舟載妻子，流寓海曲，所至之處如有不愜，旋即逃散 雖去就無常).

378) 『중종실록』 권55, 중종 20년(1525년) 9월 22일 戊寅 (鮑作干告云 ‘倭船四隻，至平斗島’ 臣，卽分左右進逐).

379) 『중종실록』 권56, 중종 21년(1526년) 2월 9일 壬戌 (鮑作干等云 每年九月初生，倭賊來泊三島，規奪衣糧，若伏兵而待之，則可得捕捉 水使方好義，初二日領兵下海).

桃浦權管) 채연홍(蔡淵洪)에게 보고했습니다. 연홍이 군관 등을 데리고 진격해서 접전하여 한 배에 왜적이 거의 1백 50여 명이나 되었는데도 권관 등이 힘껏 사살하고 배를 불태웠습니다”³⁸⁰⁾라는 명종 대의 기록이 이를 잘 보여준다. 왜적 토벌에 있어서 포작이 제공해주는 정보를 많이 활용했던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임진왜란 중에도 계속되었다.

항해 중 올라오는 포작인(鮑作人)을 연이어 만나 하도(下道)의 왜적 형세를 자세히 물어보니, 왜적의 배가 3~4척, 혹은 8~9척씩 영광 이남의 여러 섬에 들어가 살육을 자행하니 지극히 참혹하며³⁸¹⁾

임진왜란 중인데도 위 기사 속의 포작인들은 여전히 이동생활을 했다. 이들은 조선 수군에 편제되지 않았던 포작인인 듯하다. 관에서는 이들에게 하도(下道) 왜적에 대한 정보를 묻고 있었다. 자연스레 포작인들은 정탐인, 정보 제공인의 역할을 떠맡게 되었던 것이다.

5) 밀사

전쟁 중에는 전투만이 있는 게 아니다. 앞에서는 전투를 하고 뒤에서는 막후 협상을 한다. 임진왜란 당시에도 이게 많았다. 주지하다시피 특히 명군과 왜군 사이에는 협상 사절들이 여러 차례 오갔다.

조선 수군 역시 왜병과 여러 차례 협상을 벌였다. 그런 과정에서 제주유민인 두모약이 일종의 밀사 역할을 맡기도 했다. 바다에서 이동생활을 하는, 비교적 덜 속박적인 존재라서 그런 역할을 담당했던 모양이다.

우병사가 송충인(宋忠仁), 두모약(豆毛岳) 김아동(金牙同) 등을 부산포 왜장 평행장(平行長)에게 보내 밀약을 했다.³⁸²⁾

380) 『명종실록』 권23, 명종 12년(1557년) 7월 7일 戊午 (倭船一隻, 依泊于草島, 鮑作干等進告于南桃浦權管 蔡淵洪 淵洪率軍官等進擊接戰, 一船之倭幾至一百五十餘名, 而權管等盡力射斬, 燒焚全船).

381) 『선조실록』 권93, 선조 30년(1597년) 10월 13일 庚午 (在海中時, 連遇上來鮑作人, 詳問下道賊勢, 則賊船或三四隻, 或八九隻, 入靈光以下諸島, 殺擄極慘).

382) 『선조실록』 권85, 선조 30년(1597년) 2월 20일 辛巳 (右兵使令 宋忠仁 豆毛岳金牙同等, 釜山浦倭將平行長處, 使送密約).

부산포 정탐병이 보고한 내용을 도원수 권율이 인용하며 말하는 대목이다. 왜장 加藤清正을 유인해 동시에 참살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밀약이었다. 권율도 이 보고를 언급하면서 황당하다고 하여 신뢰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밀약의 사실 여부를 떠나 밀사로 파견되었다는 사람을 주목할 필요는 있다. 두모약 김아동(金牙同)이라는 이름이 보인다. 제주유민을 말하는 것이다. 제주유민은 임진왜란 중에 이처럼 밀사 역할도 때론 담당했다.

밀사라면 권력자의 측근일 가능성이 크다. 제주유민 중에 당시 수군 사령관에게 신임을 얻은 자가 몇 있었던 모양이다. 이순신의 일기에도 이순신의 막후에서 중요 실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보이는 포작의 이름이 나온다.

1597년 9월 1일 일기에 “포작 점세(占世)가 제주에서 소 다섯 마리를 싣고 와 바쳤다”라는 기록³⁸³⁾이 있다. 그런데 그 포작 점세(占世)가 며칠 뒤인 1597년 12월 5일 일기 속에 다시 등장한다. “포작 수색을 책임진 정응남이 새로 만드는 배의 부정 사실을 적발할 일로 점세를 데리고 함께 진도로 떠났다”³⁸⁴⁾라는 대목이다. 배를 검열하는 일에 파견된 정응남이 포작 점세를 데리고 갔다. 앞서 제주도에 소 다섯 마리를 싣고 온 것도 어떤 임무 수행의 한 과정이 아닐까 생각된다.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이순신 휘하에서 중요 실무를 맡은 포작인 것 같다.

6) 탈영병

수군역(水軍役)은 조선 초기부터 고역으로 인식되어 회피의 대상이었다. 게다가 전쟁이 시작되자 기아와 전염병 그리고 전상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더욱 꺼려하는 역이 되었다. 이순신 함대의 수군 중에도 이런 참혹한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도망자가 발생했던 것은 당연하다. 포작 역시 그런 상황에서 다르지 않았다.

다만 약간의 특이한 점을 엿볼 수 있다. 다음의 <표-8>은 이순신의 『난중일기』를 토대로 작성한 1593~1594년 사이의 수군 도망자 발생 상황이다.

383) 초고 필사본에만 있고 『影印 李忠武公全書』에는 존재하지 않는 기록이다. 全書를 편찬하는 과정에서 누락시킨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는 송찬섭 엮어 옮김, 2004, 『임진년 아침이 밝아오다 난중일기』, 서해문집, 381쪽을 참고했다.

384) 초고 필사본에만 있고 『影印 李忠武公全書』에는 존재하지 않는 기록이다. 全書를 편찬하는 과정에서 누락시킨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는 이순신역사연구회, 2006b, 『이순신과 임진왜란』 4, 비봉출판사, 353쪽을 참고했다.

<표-8> 1593~1594년 사이의 수군 도망자 발생 상황³⁸⁵⁾

| | 일시 | 내용 | 처벌 |
|----|------------|------------------------------|-----------|
| 1 | 1593.02.03 | 귀환 포로 80여명 도망, 70명 되찾아 전선 배치 | 주모자 2명 처형 |
| 2 | 1593.05.07 | 발포 수군 도망가다 잡힘 | 처형 |
| 3 | 1593.07.13 | 순천 거북선 격군 태수 도망치다 잡힘 | 처형 |
| 4 | 1594.02.01 | 도망자 신고 가는 배 8척 붙잡음 | 2일 결죄 |
| 5 | 1594.05.13 | 경상우수영 포작들이 격군 신고 도망가다 발각 | 우수사 관할 |
| 6 | 1594.05.30 | 도주 유도한 광양1호선 군사와 경상도포작 3명 | 처벌 |
| 7 | 1594.06.12 | 본영 격군 7명 도망 | 없음 |
| 8 | 1594.07.04 | 도망 병사 1명 처형 | 처형 |
| 9 | 1594.07.26 | 도망자 8명 체포 | 주모자 3명 처형 |
| 10 | 1594.08.26 | 홍양 포작 막동 30명 신고 도망하다 잡힘 | 막동 처형 |

위 <표-8>에 의하면 1593~1594년의 2년 동안 『난중일기』에 기록된 탈영병 사건은 모두 10건이다. 그런데 그중 3건이 포작과 관련이 있다. 비율로 보면 높은 편이다. 앞서 전투병의 경우 비율이 10~17%였는데 탈영병 비율에서는 30%에 이른다. 포작은 본래 정규군도 아니었고 또한 이동생활을 하던 자들이라 탈영이 더 심했던 것 같다.

비율만 높은 게 아니라 그 방식이 특이하다. 그 탈영 방식을 보면 이들의 높은 탈영 비율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1594년 5월 13일 일기에 나오는 탈영은 “경상 우수사에 속한 포작들이 격군을 신고 도망가다가”³⁸⁶⁾ 붙들린 사건이었다. 그냥 도망이 아니라 격군을 신고 도망했던 경우다.

1594년 5월 30일 일기에는 “아침에 도망가자고 편 광양 1호선 군사, 경상 포작 3명을 처벌했다”³⁸⁷⁾라는 구절이 있다. 포작이 혼자만 도망가는 게 아니라 다

385) 이민웅, 2004, 앞의 책, 143쪽의 표를 약간 변형시켜 다시 작성했다.

386) 『影印 李忠武公全書』, 성문각, 1989, 179쪽(慶尙右水使所屬鮑作等載格軍而逃).

387) 『影印 李忠武公全書』, 성문각, 1989, 180쪽(逃誘引光陽一船軍慶尙鮑作三名決罪).

른 병사들을 띄어내다가 붙잡혀 처형당했다. 다른 병사에 비해 이탈의 경향이 더 커 보인다.

1594년 8월 26일자엔 “장흥의 군사 30명이나 몰래 자기의 배에 싣고 도망친 죄로 홍양 포작 막동이란 자의 머리를 베어 효시했다³⁸⁸⁾”라는 구절이 나온다. 역시 혼자만 했던 탈영이 아니다. 군사 30명을 싣고 도망쳤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포작이 자신의 배를 이용해 군사 혹은 격군을 빼돌린 점이다. 전쟁의 와중에서도 포작은 여전히 자신의 배를 부리고 자신의 배를 이용해 탈영하고 있었다. 이것은 다른 군사에 비해 이들은 국가에 대한 예속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았음을 말해주고 있다. 그런 점이 포작의 높은 탈영 비율을 설명해주는 것 같다. 다른 병사는 탈영하려고 해도 교통수단을 가지고 있지 못했기에 어려웠던 반면, 포작은 자신의 배가 있었기에 그게 쉬웠던 것으로 보인다.

포작 단독의 탈영이 아니라 격군 혹은 군사를 싣고 탈영했던 것도 바로 포작이 가진 배 때문으로 생각된다. 포작이 자신의 배를 가지고 유인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일반 병사가 포작의 배를 염두에 두고 포작에게 접근했을 수도 있겠다. 아무튼 이순신 수군에서의 탈영은 자신의 배를 가지고 있었던 포작과 관련이 깊어 보인다.

임진왜란 이전 1555년 을묘왜란 당시의 탈영에서도 포작의 배가 활용되었다. 군졸들이 탈영을 위해 포작과 연결하여 배를 확보했던 기록이 있다.³⁸⁹⁾ 그만큼 수군에서의 탈영은 배가 있어야 결행하기 쉬웠고, 그 때문에 포작의 탈영 관련 사건도 많았던 것이다.

그래서인가, 1597년 12월 5일 일기에는 ‘포작 수색을 책임진 정응남’이라는 구절이 나올 정도다. 이 말은 평소 포작들이 수색과 단속의 대상이 되었다는 의미다. 포작의 높은 탈영 비율, 반(半)독립성, 비(非)정착성 때문에 나온 현상인 것 같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포작을 수색해야 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들은 본성적으로 어디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388) 『影印 李忠武公全書』, 성문각, 1989, 185쪽(興陽鮑作莫同者長興軍三十名潛載其船逃出故行刑梟示).

389) 『명종실록』 권19, 명종 10년(1555년) 8월 19일 辛巳 (加里浦守城軍卒, 於昏夜之間, 交通鮑作干之船, 多數逃散).

7) 기타

기록에 나타난 포작의 활동 중 부정적인 면들도 적지 않다. 원군이 포작들을 왜인으로 변장시켜 조선의 피난 어민들을 목 벤 후 일본군의 목이라고 속여 전공을 세우는데 활용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난중일기』 1593년 2월 28일자에는 “경상 수사의 군관과 가덕첨사의 탐색선 두 척이 섬 사이를 들락날락하였다. 그 하는 꼴이 황당하여 잡아다가 경상 수사에게 보냈다. 그랬더니 수사가 크게 화를 내었다. 그 본래 뜻이 군관으로 하여금 고기잡이 하는 사람들의 머리를 베어 오는 데 있었기 때문이다”³⁹⁰⁾라는 구절이 나온다.

『난중일기』 1593년 7월 28일자에도 “사도 첨사가 매복을 썼을 때 사로잡은 포작 10명이 왜인복 차림을 하고 있었다. 하는 짓이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다그쳐 물었더니 경상 수사가 시킨 일이라고 하였다.”³⁹¹⁾

원군이 포작을 시켜 어민의 목을 베고 왜병의 목을 벤 것처럼 위장하다가 이순신 군대에게 적발되는 장면이다. 포작이 이런 데에도 동원되고 있었다. 전쟁 과정 중에 장수가 자신의 공을 세우기 위해 자국 국민의 목을 베고 전공으로 삼으려는 행동은 분명 비정상적인 현상이다. 이런 비정상적인 사건에 동원되는 군인들도 역시 일반적 병사보다는 특별한 병사일 가능성이 크다.

조선 수군의 정식 편제에 들지 않았던 존재 즉 비정규군이었기 때문에 포작은 이런 곳에서도 쉽게 동원되었던 것 같다. 나쁜 일을 하다가 적발되더라도 비정규군인 까닭에 책임 소재를 흐릴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난중일기』 1597년 8월 25일자에는 “당포³⁹²⁾의 포작이 놓아먹이던 소를 흠쳐 끌고 가면서 헛소문을 퍼뜨리되 ‘왜적이 왔다, 왜적이 왔다’라고 하는 것이었다. 나는 이미 그것이 거짓임을 알고 헛소문을 퍼뜨린 2명을 잡아 곧바로 목 베어 효시하니 군중의 인심이 크게 안정되었다”³⁹³⁾라는 구절이 있다. 포작의 탈

390) 『影印 李忠武公全書』, 성문각, 1989, 155쪽(慶尙水使軍官及加德僉使伺候船并二隻出沒島嶼其情態荒唐故縛送于元水使則水使大怒其本意皆在送軍官搜得漁採人首故也).

391) 『影印 李忠武公全書』, 성문각, 1989, 164쪽(蛇渡僉使伏兵時所捉鮑作十名倭衣變着所行網繆故窮問則慶尙水使所使云).

392) 통영시 산양읍 삼덕리.

393) 『影印 李忠武公全書』, 성문각, 1989, 246쪽(唐浦鮑作偷牛牽去而虛警賊來余已知其誣拿虛警者二名卽令斬之軍中大定).

법 행위다. 물론 포작이 아닌 일반인들도 이런 탈법 행위를 했을 것이다. 그런데도 특별히 포작의 탈법 행위는 기록이 되었다. 이것은 아마도 포작이 뜨내기적인 존재인 까닭에 범죄 자행의 가능성도 높았고 또 그만큼 주변으로부터 쉽게 의심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짐작된다.

2. 왜병에 편입된 제주유민

현재 한국인의 일반상식과는 달리 임진왜란 당시 조선 사람으로서 왜병에 가담했던 사람의 수는 상당한 정도이다. 때문에 제주유민이 임진왜란 당시 왜병의 일원으로 행동했던 것도 특별한 현상은 아니다. 다만 그들이 가진 물질 정보나 배 부리는 기술 등은 왜병 측에서도 많이 활용했을 것임으로 일반인에 비해 더 많이 왜병에 편입되었을 수는 있겠다. 하지만 기록상으로 큰 차이를 찾아보긴 어렵다.

포작인들이 왜병에 가담했던 것은 임진왜란 이전부터 있었다. “연해(沿海)의 포작간(鮑作干)들이 변장(邊將)의 침탈(侵奪)에 견디다 못해 왜인에게로 들어가는 것으로 침탈을 피하는 방법으로 삼는다”³⁹⁴⁾라는 기록이 『명종실록』에 보인다. 당시 이들에게 민족은 중요한 게 아니었다. 엄밀한 의미에서 중세 때 민중들에게는 민족의식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다.³⁹⁵⁾ 중요한 것은 민족이 아니라 생존이었다.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왜인 집단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다.

임진왜란이 시작되자 그러한 현상은 더욱 심하게 나타났다. 평소 조선정부의 학정이 심했기 때문인지 왜병이 들어오자 왜병을 환영하거나 왜병에 가담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1592년 4월 13일 부산에 상륙하여 파죽지세로 밀고 오는 왜병을 피해 조선 조정은 4월 30일 새벽 경복궁을 버리고 북으로 피난을 시작했다. 5월 1일 개성에

394) 『명종실록』 권20, 명종 11년(1556년) 5월 14일 辛未 (沿海鮑作干等, 困於邊將之侵漁, 投入於倭, 以爲息肩之地).

395) 베네딕트 앤더슨, 1983, 윤희숙 옮김, 2002(번역본), 『상상의 공동체: 민족주의의 기원과 전파에 대한 성찰』, 나남출판 참조.

도착하고 다시 5월 3일 개성을 출발하여 평양을 향했다. 다음의 인용문은 평양으로 향하던 5월 4일 조정 회의에서 던진 임금의 질문과 윤두수의 답변이다.

임금이 ‘적병이 얼마나 되던가? 절반은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하던데 사실인가?’ 하니 윤두수가 아뢰기를 ‘그 말의 사실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라고 답했다.³⁹⁶⁾

확인된 정보는 아니지만 왜병의 절반이 조선 사람이라고 한다. 이게 사실이라면 지독한 민심이반을 보여주는 기록이다. 물론 윤두수의 답변대로 사실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다. 아무래도 절반이라는 것은 과장되어 보인다. 어쩌면 평소 민에 대한 수탈을 심하게 했던 정부가 필요 이상의 피해의식을 가지고 상상한 숫자일 수도 있겠다. 어쨌든 이런 논의가 불과 전쟁 시작 20일 뒤에 나왔다. 전쟁 초기부터 민심이반이 심했음을 말해준다.

며칠 뒤의 조정 회의에서 윤두수가 비슷한 상황을 보고했다. “어제 임진에서 얻은 지도를 보니 강화(江華)·교동(喬桐) 등지의 뱃길의 거리를 자세히 적어서 왜적에게 준 것이었습니다. 인심이 이러하니 매우 통분스럽습니다.”³⁹⁷⁾ 앞서 임금의 질문에 대한 윤두수의 대답이라 할 수 있겠다.

비슷한 시기의 다음 기록은 민심이반의 현장을 더욱 생생하게 보여준다. 역시 조정 회의의 한 대목으로 한음도정(漢陰都正) 이현(李峴)의 보고 중 일부이다.

싸우러 가던 병사들도 병기를 질질 끌고 도망가면서 ‘임금이 왔으니 이제는 살아 있구나. 기꺼이 적군을 맞이해야지’ 하였습니다.³⁹⁸⁾

‘임금이 왔으니 이제는 살아있구나’라는 대목은 《서경(書經)》 상서(商書) 중혜지교(仲虺之誥)에 나온 구절로써, 학정에 시달리던 백성들이 침구해온 나라의 군대를 환영한다는 뜻이다. 상(商)나라 때 갈백(葛伯)이 학정을 하였으므로 성탕(成湯)이 이를 쳤는데 이때 성탕이 이르는 곳마다 “우리 임금을 기다렸었는데 이제

396) 『선조실록』 권26, 선조25년(1592년) 5월 4일 癸亥 (賊兵幾何 半是我國人云 然耶 斗壽曰 此言 不知虛實矣).

397) 『선조실록』 권26, 선조25년(1592년) 5월 23일 壬午 (昨見臨津所得地圖, 江華、喬桐等地水路遠近, 歷歷書之, 以給倭賊 人心如此, 極爲痛憤).

398) 『선조실록』 권26, 선조25년(1592년) 5월 14일 癸酉 (軍民之赴難者 曳兵而赴曰 ‘後來其蘇 簞食可迎).

오셨으니 이제는 살아났구나”라고 했다는데서 유래한 구절이다.

왜병을 ‘우리 임금 성탕’에 비유했을 정도라면 민심이반이 극에 달했음을 말해 준다. 이런 상황에서 조선 사람들이 왜에 투탁했던 것은 어쩌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수군에서도 이런 상황이 감지되었다.

이순신이 1592년 5월 10일 올린 장계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온다.

그 왜적들이 어제 이 포구로 와서 여염집에서 빼앗은 재물을 우마로 싣고 가서 그들의 배에 나눠 싣고서는 초저녁에 배를 바다 가운데에 띄워 놓고 소를 잡아 술을 마시며 노래하고 피리를 불며 날이 새도록 그치지 않았는데, 숨어서 그 곡조를 들어 보니 모두 우리나라의 곡조였습니다.³⁹⁹⁾

왜병에 갔다가 다시 도망 나와 귀화한 향화인(向化人) 이신동(李信同)의 보고 내용이다. 왜적이 밤새 술 마시고 노래하고 피리를 부는데, 곡조가 모두 우리나라 곡조였다는 것이다. 왜적이 우리나라 노래를 불렀다는 것은 그 출신이 조선 사람이었음을 의미한다. 전쟁 시작 한 달이 안 되었는데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 이들이 전쟁 전부터 왜병에 가담했던 자들인지, 아니면 전쟁 개시 이후에 왜병에 들어간 자들인지는 분명치 않지만 어쨌든 조선 사람으로서 왜병에 가담했던 경우가 결코 적지 않았음을 보게 된다.

이순신은 얼마 뒤 이러한 보고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했다. 1592년 6월 2일~5일의 당포·당항포 해전 때의 일이다. 해전에서 수세에 몰린 왜적들이 배를 버리고 육상에 올라 이순신 함대에 총격을 가했다. 산 위와 언덕 아래 그리고 배를 지키는 세 곳에서 왜적들이 철환을 쏘아 댔는데 “간혹 우리나라 사람들도 섞여서 쏘고 있었다.”⁴⁰⁰⁾ 이순신은 이를 직접 목격하고 장계에 그 기록을 남겼다.

물론 강제로 동원된 조선 사람일 수도 있겠다. 하지만 다음의 이순신의 장계 기록을 보면 꼭 그것만도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왜인들 속에서 3분의 1은 우리나라 사람들로 서로 섞여 일하고 있다.⁴⁰¹⁾

399) 『影印 李忠武公全書』, <玉浦破倭兵狀>, 성문각, 1989, 78쪽(賊徒所爲則倭賊等昨日到此浦口閭閻所掠財物牛馬馱去分載其船夜初更泛舟中流屠牛飲酒唱歌吹笛達曙不止暗聽其曲調則皆是我國之音:1952년 5월 10일자).

400) 『影印 李忠武公全書』, <唐浦破倭兵狀>, 성문각, 1989, 81쪽(間或我國人相雜發射:1592년 6월 14일자).

왜인들 속의 1/3이 조선 사람이었다고 한다. 어쩌면 이것이 중세 전쟁의 실상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조선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 조선을 위해 싸웠던 게 아니다. 일반 민중은 그냥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갔을 뿐이다. 지배자가 일본인이든 조선인이든 그들에게는 상관없이 없었다. 하루의 일상을 꾸려 가는데 유익한 쪽을 찾아갔던 것은 어쩌면 너무도 당연했던 현상이다.

특히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왜병의 영토로 변한 영남지방에서는 이런 일이 일상이 되었다. 왜병에 잡혀갔다가 탈출하여 온 제만춘을 심문한 내용 중에는 이런 모습이 잘 묘사되어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수많이 살면서 적들과 사귀어 왕래하기를 조금도 꺼려하지 않았는데, 소인은 이를 동안 머물다가 양산 땅 사대도에 사는 사람들이 배를 가지고 지나가므로 그 편으로 사대도에 이르러본즉, 천성 가덕의 수비하던 수군들이 무려 4백여 호나 살면서 왜적 20명을 추장이라 일컬으며 농사짓기와 추수하기를 평상시와 같이 하는 것이었습니다.⁴⁰²⁾

부산 동래 남면의 상황을 설명한 대목이다. 전쟁 전 일상의 모습과 다를 게 없다. 농사짓고 추수하고 사람들과 어울리며 조금도 꺼려함이 없다. 다만 그 사람이 조선인에서 일본인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섬기는 권력자도 조선 양반이 아니라 추장이라 불린 왜적 20명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그게 본질은 아니다. 전쟁 전에도 그들은 피지배민이었고 전쟁 후에도 여전히 피지배민이었다. 조선 양반이나 왜적 추장 20명이나 그들에게겐 다르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전쟁이 소강상태에 들어간 국면에서 전쟁 전과 마찬가지로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다.

다음의 기록은 훈련주부(訓練主簿) 김경상(金景祥)이 부산의 적세를 탐침한 뒤 서계를 올린 내용 중 일부이다. 당시 부산의 일반 민중들의 삶이 묘사되어 있다.

401) 『影印 李忠武公全書』, <陳倭情狀>, 성문각, 1989, 110쪽(倭人三分之一則我國人相雜役事:1593년 8월 10일자).

402) 『影印 李忠武公全書』, <登聞被擄人所告倭情狀>, 성문각, 1989, 114쪽(我國人物 數多巨生 與賊交通 少無忌憚 小人留二日矣 梁山地蛇代島居人等 持船過涉到蛇代島 則天城加德 入防水軍 無慮四百餘戶 居生倭賊二十餘名 稱爲酋長 耕農牧獲 有如平日:1594년 9월 4일자).

또 시장을 개설하여 왜적의 남녀 및 우리나라 백성들이 날마다 물화(物貨)를 교역하고 있었습니다. 동평(東平)으로부터 범천(凡川)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거집하는 자는 3백여 호나 될 정도로 많았습니다. 좌자천(佐子川) 근처에 포작(鮑作)하며 거집하는 자가 또 1백여 호나 되었습니다.⁴⁰³⁾

시장을 개설하여 왜적의 남녀와 우리나라 백성이 매일 교역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 중 포작인들도 100여 호나 그들과 접하여 살고 있었다. 역시 일상 삶의 모습이다. 전쟁 전과 전쟁 개시 이후의 삶이 똑 같다. 당시 부산은 일본의 점령지로서 일본의 통치권이 행사되고 있었다. 그러니 사실상 일본 영토라 할 수 있고 또 그곳 백성들은 이제 일본의 백성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민족이 다르고 언어가 달랐을지언정 백성들은 전쟁 전과 하등 다를 바 없는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러니 포작들이 일본군에 가담했다고 하는 게 민중들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전혀 특별한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나 조선의 지배층은 포작이 일본군에 투항하는 행위를 상당히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기록에 남겼다.

영남의 포작한(鮑作漢)들이 이익만을 탐해 처자를 거느리고 잇달아 적에 투항하니 그 정상을 따지면 아주 통탄할 일입니다.⁴⁰⁴⁾

포작의 왜적 투항에 대해 ‘極爲痛惋’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다. 앞서 기록에서 보았듯이 일반 백성들이 왜인과 교역하고 섞여 사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분노하지 않았다. 하지만 포작의 투항에 대해서는 상당할 정도로 민감해 했다. 분명 일반 백성들의 투항과는 또 다른 무엇이 있었다. 그 이유는 다음의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적이 우리나라의 포작한(鮑作干)을 많이 잡아갔기 때문에 해로의 형세에 대해 허

403) 『선조실록』 권69, 선조 28년(1595년) 11월 2일 庚午 (又設市場, 倭賊男女及我國人民, 日日物貨交易矣. 自東平至凡川, 我國人居接者, 多至三百餘戶, 佐子川近處, 鮑作居接者, 又百餘戶).

404) 『선조실록』 권64, 선조 28년(1595년) 6월 14일 乙卯 (嶺南鮑作之輩, 惟利是甘, 挈其妻子, 連續投入, 原其情狀, 極爲痛惋).

실을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⁴⁰⁵⁾

문제는 바로 海路形勢, 이것 때문이었다. 적이 조선의 해로를 상세하게 파악하게 된다면 상황은 몹시 불리해진다. 그런데 당시 한반도 연해의 해로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던 존재들이 포작인들이었다. 그 때문에 왜병은 조선의 포작인 즉 제주유민들을 많이 잡아갔다. 그러니 조선 조정으로서는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 그야말로 통탄했던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포작들은 때론 왜적에게 또 때로는 조선 수군에게 가서 생활을 영위했다. 두모악(豆毛岳) 김담손(金淡孫)이라는 자는 왜병에 가담했다가 다시 도망하여 조선 수군으로 옮겨 오기도 했다.⁴⁰⁶⁾ 이처럼 제주유민 포작들은 임진왜란 전쟁 내내 조선 수군과 왜병 사이에서 두 가지 얼굴로 살아가야만 했다.

3. 수전과 포작선

임진왜란 당시 제주유민의 활동이 주목받게 된 것은 전적으로 그들의 해상생활 능력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 해상생활은 그들이 타고 다니던 배의 능력과도 관련이 깊다.

제주사람들은 일찍부터 뛰어난 배 건조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 섬이라는 환경 조건 때문이었다. 고려시대 현종 3년(1012년) 탐라인이 고려 정부에 대선(大船) 2척을 바쳤다는 기록⁴⁰⁷⁾이나 원종 9년(1268년) 원나라가 탐라에 100척의 배를 건조할 것을 명했던 기록⁴⁰⁸⁾이 이를 잘 보여준다.

그와 같은 배 건조 기술이 있었기에 일찍부터 해상 교역으로 나설 수 있었던 것이며 또한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하자 바다로 나가 유랑민이 되기도 했

405) 『선조실록』 권121, 선조 33년(1600년) 1월 29일 甲戌 (賊多擄我國鮑作干等, 海路形勢, 虛實已知之).

406) 『선조실록』 권86, 선조 30년(1597년) 3월 24일 甲寅 (附賊逃還人豆毛岳金淡孫).

407) 『고려사』 권4, 세가 현종 3년(1012년) 8월 壬寅 (耽羅人 來獻大船二艘).

408) 『고려사』 권26, 세가 원종 9년(1068년) 10월 庚寅 (耽羅 已與造船之役 不必煩重 如其不與 棄令別造百艘).

다. 뿐만 아니라 전쟁이 발발했을 때 그들의 배는 다시 한 번 주목을 받게 되었다. 이순신의 첫 해전인 옥포해전에서 포작선 46척이 동원되었음은 앞에서 살펴 보았다.

그것은 전쟁 이전부터 제주배⁴⁰⁹⁾의 성능을 조선 정부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처음 제주유민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었던 성종 때부터 조정은 포작선을 주목했다.

선체(船體)는 왜인의 배보다 더욱 견실하고, 빠르기는 이보다 지나치는데⁴¹⁰⁾

그 배는 가볍고 빠르기가 비할 데 없어서⁴¹¹⁾

위에서 인용한 기록은 포작선이 왜인의 배보다 견실하고 가벼우며 속도가 빨라 비할 데가 없다고 말한다. 조선 조정이 주목했던 이유가 바로 포작선의 이러한 특성이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곧바로 군사적 활용 논의로 이어졌다. 그 결과 변고가 생기면 “근처 두무악선(頭無岳船)을 많이 모아서 들어가, 구원하려는 성세(聲勢)를 크게 벌여서 성원할 것”⁴¹²⁾을 건의하거나 “아울러 포작선(鮑作船)을 초발(抄發)하여 기계의 수리를 완비하고 병졸과 화포(火炮)의 제구를 극진히 정선하여 훌륭한 장수를 얻어서 나누어 거느리게 하고, 날짜를 약속하여 아울러 나아가 위와 아래에서 협격(挾擊)”할 것을 건의하기도 했다. 즉 포작선을 직접 작전에 투입하자는 논의였다.

뿐만 아니라 포작선을 본 따 배를 만들어서 변란에 대비하자는 논의도 계속 이어졌다.

청컨대 여러 포구(浦口)의 병선(兵船)을 이것에 의거하여 만들도록 하여 위급한 데 쓰도록 하소서.⁴¹³⁾

409) 『조선왕조실록』에는 제주배를 가리키는 용어로 두독야지선 1회(성종 20년 12월 10일), 제주선 1회(성종 22년 4월 11일), 두무악선 1회(중종 5년 8월 20일) 그리고 포작선이 9회(연산 3년 5월 29일 기사 등) 등장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들이 모두 같은 배라고 가정하고 가장 많이 쓰인 포작선으로 통일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410) 『성종실록』 권83, 성종 8년(1477년) 8월 5일 己亥 (船體視倭尤牢實, 而迅疾則過之).

411) 『성종실록』 권177, 성종 16년(1485년) 4월 12일 癸亥 (其船輕疾無比).

412) 『중종실록』 권12, 중종5년(1510년) 8월 20일 癸卯 (多聚近處頭無岳船, 大張入救之勢, 以爲聲援).

왜선(倭船)이 도둑질할 때 바람이 순하면 돛을 달고 바람이 없으면 노를 젓는데, 오로지 배가 경쾌(經快)하여 쓰기에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청컨대 여러 포(浦)에 두 독야지선(豆禿也只船)의 체제에 의하여 가벼운 배를 만들어서 예기치 못할 일에 대비하게 하소서.⁴¹⁴⁾

포작선 체제에 따른 가벼운 배를 만들어 변란에 대비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왜적의 배가 경쾌하여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그를 따라잡을 배로 포작선과 같은 배를 건조해야 한다는 논의였다.

그런 논의 끝에 임진왜란 전부터 이미 포작선을 작전에 활용하고 있었다. 그것은 해랑도 수적을 토멸하러 갔을 때 “포작선(鮑作船) 26척에 나누어 타게 하여 녹도(鹿島)를 거쳐 밤중을 이용하여 이튿날 아침에 소장산도(小長山島)에 이르러 남녀 70명을 사로잡았습니다”⁴¹⁵⁾라는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 만큼 포작선은 수전에서 활용하기에 유용했던 선박이었다고 볼 수 있겠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포작선이 어떤 구조로 만들어졌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규모이다. 군용과 조운을 겸용했던 맹선(猛船)과 비교했던 다음의 기사를 참고하자.

대맹선은 선체가 크고 경쾌하지 못하여 위급할 때는 쓸 수 없었으므로 모두 포작선(鮑作船)을 모아 사용하였었습니다. 만일 대대적으로 거병(擧兵)할 경우라면 마땅히 맹선을 써야 하겠지만 갑자기 서로 싸우게 될 경우에는 작은 배를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⁴¹⁶⁾

대맹선은 선체가 커서 많은 군사를 실어 나르기에는 적합하지만 반면에 속도가 느려 갑작스런 소규모 전투가 발생할 때는 비효율적이라고 했다. 갑작스런 상

413) 『성종실록』 권85, 성종 8년(1477년) 10월 16일 庚戌 (請諸浦兵船, 依此造作, 以爲緩急之用).

414) 『성종실록』 권235, 성종 20년 12월 10일 癸巳 (倭船作賊, 風順則懸帆, 無風則搖櫓, 全是舟楫輕快, 利於行用故也, 請於諸浦, 依豆禿也只船體制造輕船, 以備不虞).

415) 『연산일기』 권38, 연산 6년(1500년) 7월 9일 辛酉 (分乘鮑作船二十七艘, 由鹿島乘夜而往, 平明至小長山島, 捕獲男女七十口).

416) 『중종실록』 권48, 중종18년(1523년) 6월 26일 乙丑 (大猛船體大不快, 非緩急可用者也, 皆聚鮑(昨) [作] 之船用之. 若大學則當用猛船, 卒然相戰, 不可不用小船).

황에서는 오히려 포작선을 사용하는 게 낫다는 것이다. 그 이유로 든 것이 ‘작은 배(小船)’라는 점이다.

여기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포작선은 대맹선보다 작다는 점이다. 『경국대전』에 따르면 대맹선의 정원은 80명, 중맹선은 60명, 소맹선은 30명이었다.⁴¹⁷⁾ 그렇다면 포작선은 정원이 80명보다 작은 소형 선박으로 추론할 수 있겠다. 게다가 굳이 소맹선도 아니고 포작선을 활용했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포작선은 소맹선보다도 규모가 작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정원이 30명에 미치지 않는 소형 선박일 가능성이 크다.

포작선이 소형 선박이었음을 전하는 기록이 또 있다.

주사(舟師)는 전선이 매우 적어 갑자기 갖추기가 어려워 포작선(鮑作船)으로 대신 편성하였는데, 작은 배가 3백여 척이었습니다.⁴¹⁸⁾

정규 작전용 전선이 몇 되지 않아 대신 포작선으로 군사대오를 편성했는데, 그 포작선을 설명하면서 小船凡(작은 배)이라고 했다. 아마 비교 대상은 정규 전투선인 판옥선(板屋船)이었을 것이다. 판옥선(板屋船)에 비하면 포작선은 작았다. 그러나 그것이 비거도선(鼻居刀船)⁴¹⁹⁾만큼 작은 소형이었는지 그보다는 조금 큰 중형이었는지는 확실치 않다.

그들의 생활 형태를 묘사한 기록 중에도 배의 크기를 짐작케 하는 내용이 있다.

작은 배에 처자(妻子)를 싣고 해곡(海曲)으로 떠돌아다니며⁴²⁰⁾

‘작은 배’가 원문에는 ‘扁舟’라고 나와 있다. 이 정도면 아주 작은 배로 여겨진다. 물론 문학적인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작은 배임은 틀림없다. 그 작

417) 『경국대전』 兵典 諸道兵船.

418) 『선조실록』 권142, 선조 34년(1601년) 10월 19일 癸未 (且舟師戰船極少, 倉卒難辦, 鮑作之船, 盡皆作綜, 小船凡三百餘隻).

419) 비거도선의 규모는 대략 대맹선의 1/10 보다 약간 큰 정도로 여겨진다. 배 건조에 소요되는 목재의 조수가 대맹선은 230조, 중맹선은 210조, 소맹선은 110조가 소요되는 반면 비거도선은 24조만이 소요된다 (金在瑾, 1989, 『우리배의 歷史』, 서울대학교출판부, 200쪽 참고).

420) 『성종실록』 권178, 성종 16년(1485년) 윤4월 19일 己亥 (扁舟載妻子, 流寓海曲).

은 배에 처자를 싣고 다녔다. 단편적인 기록으로 정확한 판단이 서지는 않지만 여러 가족이 아니라 한 가족만이 탑승했다는 느낌이다. 물론 포작선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크기는 아닐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큰 배도 있겠고 위의 예에 서처럼 한 가족이 탑승할만한 규모일 수도 있겠다.

선행 연구 중에는 포작선을 제주 덕판배와 동일시하는 경우가 있다.⁴²¹⁾ 단정적으로 이 견해가 옳다고 판단할 근거는 없다. 문헌상 덕판배와 포작선이 같은 배라고 기록된 것은 없기 때문이다. 물론 제주도에서는 어선을 ‘낙배’라 하고 連陸船·商船·進上船을 일반적으로 덕판배라고 했다는 주장도 있다.⁴²²⁾

하지만 확정하긴 어렵다. 그러나 거꾸로 그것을 부정하기도 힘들다. 1996년 복원된 덕판배의 구조와 기능이 문헌 속 포작선의 기능을 담보할 만하기 때문이다. 제주와 육지를 하루 만에 오갈 정도의 배라면 복원된 덕판배 정도의 견고성과 기능, 속도 등을 갖춰야 한다. 때문에 비록 동일한 배가 아니라 할 지라도 덕판배는 포작선을 계승한 배라고 추정할 수는 있다. 포작선 역시 제주 특유의 배이며, 덕판배 역시 그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덕판배를 포작선이라 확정하지 않고, 다만 유사성, 계승성이 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참고하는 수준에서 소개한다.

고광민(2004a)은 1794년 기록인 「日報草臚錄」이라는 고문서를 소개하며 덕판배의 크기는 대부분 중강(中艙)급으로 1척의 배에 진상말(馬)을 평균 30마리씩 싣었다고 한다. 그리고 1996년 복원한 덕판배의 실측 크기가 길이 약 9m, 폭이 약 2.7m 그리고 높이가 약 1.4m라고 소개했다.⁴²³⁾ 또 다른 연구에서는 최부의 『표해록』을 인용하며 1척에 43명이 승선했다고 소개하고, 보통 2세대 가족이 살 수 있는 규모라고 했다.⁴²⁴⁾

이상에서 살핀 것을 종합하면 80명 정원의 대명선보다는 훨씬 작았지만 30마리의 말을 싣고 다닐 만 했던 규모라고 추정할 수 있겠다. 물론 그보다 더 작은扁舟급의 소형 선박도 있었을 것이다.

다음으로 바닥의 모양이다. 전통적으로 韓船은 바닥 모양이 ㄱ형인 평저형(平

421) 송성대, 1997, 『문화의 원류와 그 이해』, 파피루스, 298~303쪽; 김나영, 앞의 논문, 44쪽 등.

422) 高光敏, 2004a, 『濟州島浦口研究』, 각, 306~309쪽.

423) 高光敏, 2004a, 『濟州島浦口研究』, 각, 306~309쪽.

424) 송성대, 1997, 『문화의 원류와 그 이해』, 파피루스, 298~303쪽.

底型)의 선박이었다.⁴²⁵⁾ 평저형 배는 간조시 바닥에 배를 대어도 기울어지지 않는 점, 안정성, 방향전환 등에서 장점을 갖는다. 그러나 속도가 느린 단점이 있다. 또한 파도가 거센 바다에서는 파도를 제어하고 진행하기가 쉽지 않다. 때문에 주로 섬이 많아 파도가 거의 없는 연안용 배로 사용했다. 앞서 언급했던 맹선이나 임진왜란 때 주력선이었던 판옥선(板屋船) 등은 모두 평저형이었다. 방향전환에 뛰어나서 포를 자유자재로 쏠 수 있었지만 속도가 느린 단점은 어찌지 못했다. 때문에 항상 속도 빠른 거도선(居刀船)이나 사후선(伺候船) 등의 보조 선박을 곁에 두고 작전을 펼쳤다.⁴²⁶⁾

반면 바닥이 V형인 첨저형(尖底型) 배는 거센 파도를 제어하고 선박의 운항을 용이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로 연해와 심해를 왕래하는데 유리했다.⁴²⁷⁾ 또한 江船과는 달리 海船의 경우 吃水가 깊고 배의 바닥이 좁은 첨저선을 주로 사용했다는 연구⁴²⁸⁾도 있다. 이런 연구 결과를 놓고 볼 때, 제주 포작선은 V형의 첨저형 구조를 가졌을 가능성이 높다. 첨저형이 아니어서는 앞의 사료에서 자주 언급하는 속도를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거친 제주바다를 건너갔던 배라면 의당 첨저형 구조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 언급한 복원 덕판배도 용골 布材가 부착된 V형의 첨저형 구조로 되어 있다.

물론 제주도의 배가 모두 첨저형이었던 것은 아니다. 『耽羅巡歷圖』 속의 古船은 평저형의 배였다.⁴²⁹⁾ 『耽羅巡歷圖』의 41개의 도면 중 「牛島點馬」, 「正方探勝」, 「明月操點」, 「涯月操點」, 「屏潭泛舟」, 「浩然琴書」라는 그림 속에 배가 등장한다. 그런데 그 그림 속의 배는 주로 가까운 연안에서 사용했던 배들이다. 그러니 첨저형보다 안전성이 강한 평저형이 적절했을 것이다. 그러나 먼 바다를 향해해야 했던 포작선은 연안의 유희용 배와는 용도가 달랐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첨저형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으로는 동력의 문제이다. 이는 기술 발전 수준과 선박의 규모에 따라 달

425) 金在瑾, 1989, 『우리배의 歷史』, 서울대학교출판부, 12~18쪽.

426) 金在瑾, 1989, 『우리배의 歷史』, 서울대학교출판부, 200쪽.

427) 최완기, 1989, 『朝鮮後期船運業史研究』, 일조각, 211~212쪽.

428) 최병문, 2004, 「朝鮮時代 船舶의 船型特性에 관한 研究」, 부경대 대학원 조선해양시스템공학과 박사학위논문, 172쪽.

429) 이창억, 2000, 「『耽羅巡歷圖』 古船의 船舶史的 意義」, 耽羅巡歷圖研究會, 『耽羅巡歷圖研究論叢』, 제주시, 179쪽.

라진다. 대양 항해용으로는 선박 규모가 크면 노를 사용하여 추진하기에는 선박 구조, 운항비용 등에서 무리가 있다.⁴³⁰⁾ 반면 포작선처럼 규모가 크지 않은 배는 노를 사용하는 게 유리하다. 그렇다고 하여 노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바람을 이용하기도 했다. 즉 범(帆)전용선이 아니라 범노(帆櫓)겸용선이었다는 말이다. 이를 확인해 주는 기록이 있다.

대맹선(大猛船)은 바탕이 무거워서 역풍(逆風)을 만나면 가지를 못하니 왜적을 만날지라도 잡을 이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포작선(鮑作船)은 가볍고 빨라서 비록 역풍을 만날지라도 노만 저으면 갈 수 있으며⁴³¹⁾

대맹선은 큰 배라서 역풍에 추진력이 약했다. 맹선 역시 범노(帆櫓)겸용선⁴³²⁾이라고는 하지만 역풍 속에서 노 젓는 힘만으로는 왜적을 따라잡지 못했다. 반면 포작선은 가벼워서 역풍 속에서도 그것이 가능했다. 역풍에서도 노만 저으면 갈 수 있었다는 것으로 보아 포작선이 범노(帆櫓)겸용선이었음이 확인된다.

북해에서 활약했던 바이킹선 역시 범노(帆櫓)겸용선이었다.⁴³³⁾ 범노(帆櫓)겸용선은 보편적으로 선형과 구조가 간략하고 별로 크지도 않았다. 바이킹선의 경험은 오히려 크지 않은 범노(帆櫓)겸용선이 전투에서는 실용적이었음을 말해준다. 포작선이 수전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던 것은 같은 이치에서였다고 하겠다.

하지만 실제 성능비교를 해 본 결과를 보면 포작선의 속도는 왜선만큼 못했다.

신이 순행(巡行)하면서 여러 포구(浦口)에 이르렀는데, 고공(篙工)으로 하여금 시험 삼아 왜선(倭船)·제주선(濟州船)·조선(漕船)을 새로 만들도록 하여 동시에 출발시켜 물이 흐르는 쪽으로 따라 내려가게 하였더니, 왜선이 가장 빨랐고 제주선이 그 다음이었으며 조선(漕船)이 가장 느렸습니다. 그리고 거슬러 올라가게 하였는데도 역시 같았습니다.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왜선은 판자가 얇아 빨리 가기에 편리하기 때

430) 최근식, 2005, 『신라해양사 연구』, 고려대학교출판부, 99쪽.

431) 『연산군일기』 권26, 연산 3년(1497년) 8월 17일 丙戌(大猛船質重, 遇逆風不得行, 雖遇倭賊萬無捕獲之理。 鮑作船輕疾, 雖遇逆風, 若能搖櫓則可行).

432) 金在瑾, 1989, 『우리배의 歷史』, 서울대학교출판부, 98쪽.

433) 金在瑾, 1980, 『배의 歷史』, 정우사, 78쪽.

문입니다.⁴³⁴⁾

순방향일 때나 역방향일 때나 모두 왜선이 가장 빨랐다고 했다. 다음이 제주선 즉 포작선이었고 당연히 조운선은 늦었다. 왜선이 그렇게 빠른 이유는 무엇보다 판자가 얇아 가벼웠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것을 뒤집어 해석하면 포작선은 판자가 두꺼웠다는 말이 된다. 제주도는 해안지형이 대부분 현무암으로 되어 있어 배가 단단하지 않으면 접안시 파손되고 만다. 때문에 제주 포작선의 판자는 당연히 왜선보다 두터웠을 것이다. 하지만 그 때문에 속력은 조금 뒤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조선 수군의 입장에서는 포작선을 중시할 수밖에 없었다. 주력 전투선인 판옥선(板屋船)의 단점을 보완해주었고 또한 물길에 익숙한 제주 포작들이 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순신의 첫 출전이었던 1592년 5월 4일 새벽에 판옥선(板屋船) 24척, 협선(狹船) 15척과 함께 포작선(鮑作船) 46척이 등장⁴³⁵⁾했던 것은 그 때문이다. 하지만 다음 전투 기록부터는 포작선이 등장하지 않았다. 그것에 대해 이민웅(2004)은 ‘협선과 포작선은 몇 척이나 동원되었는지에 관해서는 생략하는 경우가 많았다. 협선과 포작선은 1차 출동 때와 비슷한 숫자가 동원된 듯하다’⁴³⁶⁾라고 했다. 그의 분석대로 포작선은 기록에 등장하지 않지만 계속해서 동원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왜냐면 이후에도 전투에 참여했던 포작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이다.

434) 『성종실록』 권252, 성종 22년(1491년) 4월 11일 丙辰 (臣巡到諸浦, 令篙工試令新造倭船、濟州船、漕船, 一時發之, 順流而下, 則倭船最疾, 濟州船次之, 漕船最遲; 逆流而上亦然, 此無他, 倭船板薄便疾故也).

435) 『影印 李忠武公全書』, <玉浦破倭兵狀>, 성문각, 1989, 76쪽(諸將 板屋船 二十四隻 狹船 十五隻 鮑作船 四十六隻 領率發行).

436) 이민웅, 2004, 앞의 책, 122쪽.

VI. 제주유민의 성격

지금까지 본 연구는 조선시대 제주유민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제주유민의 발생 배경부터 발생 시기, 그들에 대한 명칭, 그 규모와 확산 범위, 유민의 구성, 유사집단과의 비교 그리고 그들의 생활 중 특히 임진왜란 당시의 생활을 살펴보았다.

그 과정을 통해 테마별로 나누어 그들의 모습에 접근할 수 있었다. 이제 VI장에서는 지금까지의 고찰과정에서 분절적으로 접했던 제주유민의 모습을 종합하여 전체적으로 조망하면서 그들의 성격을 하나씩 규정해 보고자 한다.

또한 성격 규정 과정에서 논의를 더욱 확장할 것이다. 즉 제주유민 현상이 역사 속에서 그리고 오늘날 중세 역사 연구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도 함께 찾아본다. 성격 규정의 과정을 통해 제주유민 현상에 대해 보다 깊은 이해가 가능해질 것이며, 함의(含意)를 밝히는 과정에서 역사 인식의 지평이 더욱 확대되리라 생각한다.

한 사회의 기본적인 성격은 그 사회를 둘러싼 물적 환경과 그에 대응하는 인간의 작용 사이에서 형성되는 상호 교호적인 관계에 따라 그리고 그 관계가 역사적으로 구조화될 때 규정된다.⁴³⁷⁾ 마찬가지로 사회집단의 성격도 그 집단을 둘러싼 물적 환경과 그에 대응하는 인간의 작용 사이에서 규정될 수 있을 것이다.

조선시대 제주유민 현상을 분석함에 있어서도 그러하다. 그들을 둘러썬 물적 환경과 이에 대한 그들의 대응과정 속에서 만들어지는 상호작용의 결과에서 성격은 추출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에 대한 성격 규명 작업도 조선시대 제주사회를 둘러싼 물리적 환경부터 접근하면서 시도하려 한다. 조선시대 제주사회의 물리적 환경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제주도를 둘러싼 바다이다. 즉 제주사회는 바다로 둘러싸인 섬이라는 공간에서 형성되었음을 주목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는 브로델의 모델에 따르면 거의 변하지 않는 역사를 잉태하는 요소이기도 하다. 이들의 성격에 대한 논의에서 먼저 해양성에 주목하는 것도 그 때문

437) 신행철, 1995, 「서장-제주사회의 기본적 성격」, 신행철 외, 『제주사회론』, 한울, 7쪽.

이다.

1. 해양적 성격

조선시대 제주유민의 성격을 무엇보다 우선 해양성으로 규정할 수 있겠다. 물론 해양성이라는 용어가 명확히 정의된 것은 아니다.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게 의미 부여를 할 수는 있다. 그렇다하더라도 바다에 거주하고, 바다를 생업의 터전으로 삼은 존재에게 해양성이라는 성격 규정은 그다지 무리한 시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해양적 성격은 제주유민과 다른 지역 유민을 확연히 구분해 준다. 제주도가 아닌 육지의 여러 지역에서 나타났던 유민 현상은 기본적으로 농민적이었다. 바다로 나가는 게 아니라 더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가 화전을 일구거나 도시 특히 서울지역으로 유망하는 경우가 많았다.⁴³⁸⁾

이는 물리적 환경이 달랐기 때문에 나타났던 필연적인 현상이다. 정치·경제의 모순 속에서 국가가 이를 통제할 수 없을 때 유랑민이 발생⁴³⁹⁾한다는 점은 제주유민이나 타 지역 유민이나 공통적이었다. 하지만 이처럼 주변의 물리적 환경이 다르면 유민 현상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제주도의 물리적 환경은 기본적으로 바다로 둘러싸인 섬이라는 점이다. 이것이 타 지역 유랑민과는 다른 현상을 만들어 냈던 것이다.

그런데 제주유민의 해양성이 반드시 물리적 환경 때문에만 나타났던 것은 아니다. 물리적 환경에 따른 경제구조의 변동도 해양성을 만든 하나의 요인이다. 아놀드 토인비는 ‘도전과 응전’으로 역사 현상을 설명했다. 제주민들이 15세기 이후 바다로 나간 것 역시 그들 앞에 놓인 도전 즉 제주경제의 기반 붕괴라는 상황에 대한 응전이였다.

만약 조선전기 제주의 경제구조가 농업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었다면 응전의

438) 변주승, 1995, 「18세기 流民의 실태와 그 성격」, 『全州史學』 제3집, 10~11쪽.

439) 오창훈, 1984, 「朝鮮初期 流民研究」, 송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쪽.

방식은 달랐을 것이다. 유리걸식하거나 한라산 깊은 곳으로 숨어들어 관의 수취를 피하며 화전을 일구며 살았을 가능성이 높다.

전근대사회는 보편적으로 농민과 토지의 지배를 통한 물적 토대 확보로 국가 체제를 유지했다. 그런 상황에서 농민이 토지에 긴박되지 않고 유망하다는 것은 국가의 수취체제를 무너뜨리는 결과가 되어 국가로서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다.⁴⁴⁰⁾ 그러나 제주 지역의 경우는 이와 달랐다. 인민의 노동력 장악은 공통점이었지만 물적 토대가 되었던 것은 토지가 아니었다. 때문에 유민 현상도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조선전기 제주도의 경제적 토대는 말(馬)이었다. 말(馬)교역의 유통 경제가 핵심이었다. 때문에 그들의 응전이 다르게 나타났던 것이다. 말(馬) 자유교역이 통제를 받아 경제 기반이 무너지긴 했지만, 그들에겐 배를 몰아 장사를 나다녔던 경험이 풍부했다. 응전의 방식이 출륙 해양유랑이라는 방식으로 나타났던 건 그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의 성격을 무엇보다 해양성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배를 몰고 나가 한반도 연해에서 우거(寓居)했다. 한 곳에 정착한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니며 살았다. 배와 항해 능력이라는 해양성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었기에 출륙유랑이 가능했던 것이다.

신이 전일(前日)에 연해(沿海)의 여러 고을을 두루 살펴보니, 포작간(鮑作干)이 해변(海邊)에 장막[幕]을 치고 일정한 거처(居處)가 없이 선상(船上)에 기생(寄生)하고 있는데⁴⁴¹⁾

‘無定居 寄生船上’ 즉 일정한 거처 없이 배 위에서 살아갔다는 말이다. 육지의 유랑민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다. 농사짓던 사람들이 아니어서 정착할 수가 없었다. 바다를 끼고 교역하던 사람들이라 평상시에 배 위에서 살았던 것이다. 이들의 이런 모습을 以船爲家⁴⁴²⁾ 즉 ‘배를 집으로 삼았다’라거나 滄海爲家⁴⁴³⁾ 즉 ‘너르고 큰 바다를 집으로 삼았다’라고 사관(史官)들은 묘사했다. 이 표현은 단순

440) 정형지, 1996, 「19세기 전반 유민에 관한 연구」, 『국사관논총』 제72집, 185쪽.

441) 『성종실록』 권177, 성종 16년(1485년) 4월 12일 癸亥(臣前日歷觀沿海諸邑, 鮑作干結幕海邊, 無定居, 寄生船上).

442) 『성종실록』 권197, 성종 17년(1486년) 11월 22일 癸亥.

443) 『중종실록』 권11, 중종 5년(1510년) 6월 25일 己酉.

한 문학적 수식이 아니었다. 실제 그들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표현이었다.

물론 항상 바다 위에서만 살았던 것은 아니다. 때로는 연안에 잠시 내려 장막을 치고 임시로 거주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것은 정착이 아니었다. 일정한 거처가 없었다는 표현은 지속적인 이동생활을 했다는 의미이며 배를 타고 옮겨 다녔다는 말이다.

육지인들과는 달리 배를 타고 다녔던 게 이들에겐 큰 어려움이 아니었다. 이들은 해양유민이었기 때문이다. “비록 폭풍(暴風)과 사나운 파도(波濤)라 하여도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꺼려함이 없으며”⁴⁴⁴라고 했을 정도였다.

그렇게 거친 바다를 오갔지만 젊은 남성들만이 선상(船上)생활을 했던 것도 아니다. 가족이 한꺼번에 출륙해서 함께 바다 위에서 살았다.

작은 배에 처자(妻子)를 싣고 해곡(海曲)으로 떠돌아다니며 우거(寓居)하는데, 이르는 곳이 만약 마음에 맞지 않음이 있으면, 곧 도망하여 흩어져서, 비록 거취(去就)가 일정함이 없었다.⁴⁴⁵

‘載妻子’ 즉 가족을 싣고 다녔다는 기록이다. ‘載妻子’라는 표현은 중종 5년(1510년) 6월 25일의 기록에서도 다시 나온다. 그 외에 ‘率妻子’라는 기록⁴⁴⁶ 즉 ‘처자를 이끌고’라는 표현도 이들이 가족과 함께 해상 유랑생활을 했음을 말해준다. 교역 혹은 어로작업 등 경제생활만을 위해 바다로 나갔던 게 아니다. 경제활동이 아니라 거주 자체가 바다에서, 배 위에서 가족과 함께 이뤄졌다.

이들의 생업 역시 바다를 끼고 이뤄지는 작업이었다. 앞의 III-6에서 이들의 생업을 살폈다. 물고기 잡이, 미역 등 해산물 채취, 그리고 그것을 팔아 식량을 구입해서 살았음을 보았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조선시대 제주유민은 거주와 생업이라는 기본적인 면에서 철저한 해양성을 보여주고 있다. 해양성이야말로 육지의 다른 지방에서 발생한 유민 현상과는 확연하게 다른 성격이라고 하겠다. 그러기에 이 해양성은 여

444) 『성종실록』 권177, 성종 16년(1485년) 4월 12일 癸亥 (雖暴風虐浪, 略無畏忌).

445) 『성종실록』 권178, 성종 16년(1485년) 윤4월 19일 己亥 (扁舟載妻子, 流寓海曲, 所至之處如有不愜, 旋即逃散 雖去就無常).

446) 『성종실록』 권178, 성종 16년(1485년) 윤4월 19일 己亥 (鮑作人等無家舍, 率妻子寄生於船上).

러 성격 중 하나라고 말하기보다는 제 1의 성격 혹은 근본적 성격이라고 말하는 게 옳을 것 같다. 한마디로 이들을 ‘해양유민’이라고 부를 만하다.

이들 해양유민의 존재는 중세 한국사를 풍부하게 구성하는 데에 기여한다. 한국사 안에서 滄海爲家 혹은 以船爲家の 존재가 지금까지 주목받은 적은 별로 없다. 지금까지의 한국사회 연구는 주로 사람들이 밭 딛고 선 육지에서의 현상에 국한된 경향이 강했다. 이것은 역사연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그만큼 지금까지는 바다 혹은 해양문화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다는 의미다. 이는 기본적으로 인간이 육상동물이기에 응당 육지에 흔적을 많이 남겼던 데에서 기인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육지에서만 역사를 일궈낸 것은 아니다. 특히 제주도의 경우 섬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바다의 중요성은 매우 컸다. 다만 윤명철(2002)이 말한 것처럼 해양문화의 ‘불보존성’⁴⁴⁷⁾ 때문에 그 동안 관심 밖에 내쳐졌을 뿐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고찰한 제주 해양유민의 예에서 보듯이 사료의 한계가 없지는 않지만 불보존성도 어느 정도는 극복할 수 있다.

어쩌면 해양성은 육지의 논리가 아니라, 바다 자체의 특질을 넣은 새로운 관점일 수도 있다. 실제 바닷길은 때론 육로보다 훨씬 효율적이었다. 특히 철도나 항공운송 수단이 발명되기 전까지는 수로가 보다 많은 물량 수송에 더욱 적합하기도 했다. 서두르거나 당황하지 않고 일기의 변화를 충분히 관찰하여 항해한다면 평온한 바다만큼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로는 없었다. 바다는 장벽이기도 하지만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길이기도 하며 특히 고요한 바다는 넓고 안정적인 교통로였다.⁴⁴⁸⁾

이런 관점에서 제주의 해양유민 현상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육지의 논리로 볼 수 없는, 구체적 실상에 접근할 수 있다. 하루 안에 제주와 육지를 왕복하는 항해 능력⁴⁴⁹⁾ 등은 육지의 상상력으로는 도저히 생각하기 어려운 구체적 사례였다.

표류민 송환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갖춰진 도요토미 정권 이후 메이지 유신까지, 일본에서 송환되어온 조선인의 사례가 약 1,000건에 이르렀는데 그중 단일지

447) 윤명철, 2002, 『한민족의 해양활동과 동아시아중해』, 학연문화사, 212쪽.

448) 아미노 요시히코(網野善彦), 2000, (번역본2003), 『일본이란 무엇인가』, 창작과비평사, 36~39쪽.

449) 『예종실록』 권3, 예종 1년(1469년) 2월 29일 甲寅(乘夜出陸, 朝往夕返).

역으로는 제주출신이 130건으로 가장 많았던 것도⁴⁵⁰⁾ 해양의 관점에서 살펴야 한다. 그만큼 중세의 제주사람들이 바다로 많이 나갔다는 말이다. 그런데도 이를 외면하고 육지의 역사만으로, 육지의 논리만으로 중세 제주사를 복원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정리해서 말하자면 제주유민의 가장 두드러진 성격은 해양성이며, 이 해양성은 중세 역사 인식에서 육지가 아닌 바다를 터전으로 살았던 사람들에게도 정당한 눈길이 주어져야 함을 촉구한다고 하겠다.

2. 교역경제인적(交易經濟人的) 성격

앞의 III-6에서 제주유민의 생업을 살폈다. 이들은 자신들이 유랑 우거(寓居)하는 한반도 해안에서 해산물을 채취하고 그것을 팔아 식량을 구해 먹고 살았다. 이들은 한국 중세사를 대표하는 농민, 토지에 긴박된 농민이 아니었다. 그들의 명칭 즉 ‘포작인’이라는 이름 속에 이미 이들의 생업이 드러나 있다. 이들은 해산물 채취인이기도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것을 팔아 생계를 꾸렸던 교역 경제인이었다.

이들의 존재는 근대사학의 과학적 법칙성에 문제를 제기한다. 이들이 지닌 교역경제인적(交易經濟人的) 성격 때문이다. 맑스주의 역사학을 포함한 대부분의 근대사학은 과학적 법칙성을 중시한다. 생산력 발전을 사회진보의 원동력으로 간주하기에 전근대 사회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농업에 초점을 둔다. 그리하여 자연경제에서 교환경제로, 자급자족경제에서 상품화폐경제로 이행한다는 법칙을 하나의 공식으로 설정한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는 이러한 ‘진보의 공식’이야말로 커라단 편견이라는 지적들이 제기되고 있다. 아미노 요시히코(2002)는 이러한 주장을 펴는 대표적인 학자인데, 그는 상품생산 즉 교환과 교역을 목적으로 하는 생산이 반드시 근대 자본주의 경제의 산물만은 아니라고 말한다. ‘자급자족’이라는 경제활동은 학자들이

450) 이훈, 2003, 「조선인의 표류와 기록물」, 국립제주박물관 편, 『항해와 표류의 역사』, 술, 109쪽.

만들어낸 환상이며 또한 물건을 생산하지 않는 유통·운수·상업·금융 등의 활동 역시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⁴⁵¹⁾

오오르크 해역의 소수민족을 연구한 오스트레일리아의 테사 모리스-스즈키(2002) 역시 수렵, 채집, 사육이나 농업, 도시, 산업사회라는 단계를 거쳐 하나하나 진보해나간다는 인류 진화의 인습적인 이미지는 이제 우리에게 어떤 지침으로서 아무런 도움도 못 될 것이라며, ‘진보라는 관념의 유행’에서 벗어날 것을 주문했다.⁴⁵²⁾

왜구가 창궐했던 것도 농업보다 해상활동에 유리한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일 것이다. 이것은 비단 일본의 경우에 국한된 게 아니다. 동인도회사로 상징되는 네덜란드 사람들의 해양 진출도 농업에 적합하지 않은 저지대와 자연환경의 악조건 때문이었다는 지적⁴⁵³⁾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이것은 제주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앞서 중세 제주의 산업이 발전사관의 공식에 따른 농업이 아니라, 해산물 채취와 해양 교역, 그리고 말(馬) 교역이었음을 밝혔다. 이것은 근대 자본주의 경제 이전의 교역 경제였다. 농업이 아닌 교역 경제도 근대 이전부터 하나의 경제양식으로 존재하고 있었다는 의미다.

말(馬) 사교역이 통제를 당한 뒤 출륙한 제주민은 이제 표박 편력 생활로 들어갔다. 그러나 이것 역시 단계론적 발전사관으로 재단할 일이 못된다. 단계론적 발전사관으로 본다면 표박 편력 생활은 정착 이전의 단계에 불과하다. 그러나 농업경제보다 교류·교역의 경제가 유리한 환경이었다면, 농업이 아닌 교류·교역 혹은 약탈이 그 사회의 핵심 경제가 되었을 것이다.

표박보다 정주가, 편력보다 정착이 더 발전한 단계라는 주장은 신화에 불과하

451) 아미노 요시히코(網野善彦), 2000, (번역본2003), 『일본이란 무엇인가』, 창작과비평사, 12~14쪽. 그가 이를 증명하기 위해 동원한 것은 고고학적 발굴 성과다. 이미 죠오몬 시기에도 일상적인 교역·교류를 배경으로 많은 인구의 대규모 집락이 안정된 정주생활을 영위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13세기 카마꾸리 후기에 이미 액면가 십관문짜리 환어음이 유통될 정도로 전국적인 하천교통 역시 발달해 있었다고 한다. 그러면서 그는 전근대 사회가 유통성이 떨어지는 농업사회였다는 주장은 이미 ‘신화’에 불과하다고 단언한다. 다시 말해 표박과 정주, 편력과 정착은 인간생활의 두 가지 존재방식이 그 두 요소가 단계적 발전을 이룬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환경이 농업에 적합하면 농업에 종사했고, 오히려 농업보다 교류·교역에 유리하면 또한 그에 맞게 생활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전근대 사람들의 유형으로 해상교역자, 소금 제조자, 숲 제조업자, 상인, 직인 등 다양한 생활인들을 복원해 내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산·들·강·바다의 세계와 그곳에서 살던 사람들의 생활을 살피며 이전까지 진보사관이 무시하고 차별 하던 세계에까지 시야를 넓혔다.

452) 테사 모리스-스즈키, 2002, 『변경에서 바라 본 근대』, 산치림, 30~32쪽.

453) 오카 야수마사(岡 泰正), 2003, 「네덜란드 동인도회사의 도자기 교역과 동아시아」, 국립제주박물관 편, 『항해와 표류의 역사』, 숲, 346쪽.

다. 두 가지가 모두 인간의 존재방식이며 자신의 환경에 적합한 것을 인간이 단지 선택할 뿐이다. 제주유민은 자신들 앞에 놓은 환경에서 표박 편력을 택했다. 이것은 역사발전 과정에서의 역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정리해서 말하자면 제주유민은 교역경제인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것의 함의(含意)는 근대 이전에도 상업 교역이 하나의 경제양식으로 존재하고 있었음을 증명한 점이라 하겠다.

3. 약탈적 성격

이들의 주된 생업은 앞서 언급한 해산물 채취와 교역이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살아갔던 것은 아니다. 종종 약탈을 자행했다. 해산물 채취와 교역만으로는 생존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래서 동원한 수단이 약탈이었다.

이들의 약탈행위가 적지 않았음은 다음의 사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다른 도적 집단이 약탈을 자행하면서 제주민을 사칭했던 경우다.

낙안 장교(樂安將校) 김배(金倍)와 순천(順天)에 거주하는 사노(私奴) 배영달(裴永達)·옥산(玉山)·박장명(朴長命) 등 30여 인이 작당하여 네 척의 배를 타고 궁시(弓矢)를 가지고서 혹 왜인(倭人)이라 속이고, 혹은 제주인(濟州人)이라 하며, 여러 섬에 정박하여 해산물을 채취하는 사람을 겁탈하고, 또 변방 고을에서 방화(放火)하여 도둑질을 한다.⁴⁵⁴⁾

낙안의 장교와 순천의 사노 등이 저지른 약탈행위와 관련된 기록이다. 명백히 제주유민은 관계가 없다. 그런데도 주목할 가치가 있는 기사다. 약탈 받는 측의 인식을 역이용했던 사례다. 제주유민을 사칭하면서 약탈을 자행했다는 것은 평소 제주유민의 그런 행위가 적지 않았음을 말해준다. 남해안 주민들 인식 속의 제주

454) 『성종실록』 권15, 성종 3년(1472년) 2월 27일 甲午 (樂安將校金倍、順天居私奴裴永達·玉山·朴長命等三十餘人作黨, 乘四船, 持弓矢, 或詐爲倭人, 或爲濟州人, 依泊諸島, 劫掠探海人, 又於邊邑放火作賊).

유민은 약탈자였고 그런 만큼 남해안 주민들은 제주유민을 두려워하였다는 증거다.

정부에서의 인식은 의심과 확신, 두 가지로 나타난다. 성종 8년(1477년)의 “이 말을 다 믿을 수는 없더라도, 또한 허망하다고 이를 수도 없다”⁴⁵⁵⁾라는 기록을 포함하여 『조선왕조실록』에는 제주유민을 의심하는 기사가 4회 등장한다.⁴⁵⁶⁾

반면 제주유민들이 약탈을 자행하고 있다고 단정적으로 기술한 경우는 “몰래 도적질을 한다”⁴⁵⁷⁾라는 성종 14년(1483년) 기사를 포함하여 『조선왕조실록』에 6회 등장한다.⁴⁵⁸⁾

약탈 대상으로는 남해안 주민, 상선(商船), 진상선(進上船) 등이 기록되어 있다. 이는 민간에 대한 소규모 도둑질에서부터 국가를 상대로 한 노략질에 이르기까지 대상과 규모가 다양했음을 말해준다. 또한 인명 살상도 경우에 따라서는 병행되었다.⁴⁵⁹⁾

특이한 경우는 숙종 30년(1704년)의 기록이다. 숙종 30년이면 출륙 유량이 시작된 뒤 200년이 더 지난 시점이다. 처음 출륙했던 제주유민들의 자손이라면 이제 고향에 대한 기억도 없는 존재들이다. 남해안에 유랑 우거하던 그들이 이제는 거꾸로 제주도에 가서 노략질을 했다.

호남(湖南) 연해(沿海) 포구의 백성들이 탐라(耽羅) 3읍(邑)에서 몰래 채취하고 약탈하며 해치는 폐단이 이미 오래 되었습니다. 전 목사(牧使) 이형상(李衡祥)이 장계(狀啓)하여 금포(禁捕)하기를 청한 것도 이로부터 말미암은 것인데, 포작(鮑作)이 당(黨)을 결성해 몰래 채취하는 습성이 여전하니⁴⁶⁰⁾

455) 『성종실록』 권83, 성종 8년(1477년) 8월 5일 己亥 (是言未可盡信, 亦不可謂虛妄也).

456) 『성종실록』 권85, 성종 8년(1477년) 10월 15일 己酉 (近來海賊殺人者, 疑是此人也); 『성종실록』 권 246, 성종 21년(1490년) 10월 24일 壬申 (皆疑此輩); 『성종실록』 권262, 성종 23년(1492년) 2월 8일 己酉 (國家疑水賊必此輩所爲).

457) 『성종실록』 권161, 성종 14년(1483년) 12월 6일 乙丑 (潛行剽竊).

458) 『성종실록』 권145, 성종 13년(1482년) 윤8월 12일 戊寅 (侵掠探海人民); 『성종실록』 권177, 성종 16년(1485년) 4월 12일 癸亥 (劫奪商船, 掠殺人物); 『성종실록』 권178, 성종 16년(1485년) 윤4월 11일 辛卯 (竊發作耗); 『중종실록』 권44, 중종 17년(1522년) 5월 28일 癸酉 (鮑作人等聚爲水賊); 『숙종실록』 권39, 숙종 30년(1704년) 5월 17일 乙卯 (掠奪戕害)

459) 『성종실록』 권85, 성종 8년(1477년) 10월 15일 己酉 (爲近來海賊殺人者 疑是此人也); 『성종실록』 권 177, 성종 16년(1485년) 4월 12일 癸亥 (鮑作人往住劫奪商船, 掠殺人物).

460) 『숙종실록』 권39, 숙종 30년(1704년) 5월 17일 乙卯 (湖南沿海浦民之偷采於耽羅三邑, 掠奪戕害, 爲弊已久 前牧使李衡祥之狀請禁捕, 蓋由於此, 而鮑作之結黨潛採, 其習如前).

이 기사를 통해 몇 가지를 확인하게 된다. 우선 호남 연해에서 거꾸로 이들의 본래 출신지인 제주섬에 약탈하러 왔다는 점이다. 그런데 이들의 제주 약탈 행위가 오래 전부터 있었다고 했다.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제주유민 혹은 그들의 후손들이 남해안 일대뿐만 아니라 제주도를 오가며 약탈행위를 저질렀다는 의미다. 유랑민에게 고향은 중요한 개념이 아니었다. 이들의 관심은 오로지 생존 그 자체였을 것으로 보인다. 생존이 급했던 제주유민들에게 어쩌면 약탈은 자연스러운 선택이었을 것이며 약탈 대상지 역시 가릴 게 못되었을 것이다. 약탈이라고 하는 이들의 선택을 도덕으로 재단할 바는 못 된다. 또한 반대로 이들의 약탈적 성격을 무시하고 진취적 존재라며 무작정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이데올로기적 활용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과거의 역사적 현상을 최대한 있는 그대로 밝히려는 노력만이 중요할 뿐이다.

정리해서 말하자면 제주유민은 약탈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 약탈적 성격은 앞의 교역경제인적 성격과 마찬가지로 주어진 환경에 따라 농업이 아닌 또 다른 경제방식이 있었음을 알려주는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4. 용병적(傭兵的) 성격

용병(mercenary)은 일정한 대가를 받고 복무하는 병사를 말한다. 용병은 매춘과 함께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직업⁴⁶¹⁾이라고 할 정도로 역사가 길다. 이들은 군역(軍役) 즉 징병제도에 의한 의무병과는 달리 급료나 기타의 계약조건에 따라 임시 고용되는 병사이다. 양인개병제를 원칙으로 하던 조선사회에서 용병은 임시적이며 비정규적인 병사라 할 수 있다.

물론 제주유민을 용병이라고 표현한 기록은 없다. 다만 이들의 복무 형태가 용병적인 모습을 띠고 있을 뿐이다. 이들은 일정한 거처가 없이 해상을 유랑하던 사람들이라 정규군에 편성시킬 수가 없었다. 조선시대 군역 부과는 일정한 거주지에 정착해 살던 사람들에게만 가능했다. 제주유민처럼 바다를 유랑하는 사람들

461) 기쿠치 요시오 지음, 김숙이 옮김, 2011, 『용병 2000년의 역사』, 사과나무, 17쪽.

은 임시적으로 그 지역에 우거할 때에만 수군 편성이 가능했다. 그러기에 이들은 임시적인 비정규군 즉 용병적 성격을 띤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양인개병의 원칙에 의해 군역을 진 일반 정병(正兵)의 경우는 의무군역이었기 때문에 급료를 받지 못하였다.⁴⁶²⁾ 반면 제주유민들은 그들의 가진 해양능력으로 인해 일정한 대가를 받고 고용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이 역시 이들의 용병적 성격을 말해주는 요소다. 다음의 기사는 이를 잘 보여준다.

전선(戰船)은 포작한(鮑作干)이 없으면 운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가(代價)를 지급하지 않으면 전장(戰場)에 나가려 하지 않기 때문에⁴⁶³⁾

포작인들이 있어야만 전투선을 조종할 수 있다고 했다. 이는 제주유민의 해양능력을 말해준다. 바로 그 해양능력, 구체적으로는 선박 조종 능력으로 인해 일반 수군과는 다른 대접을 받았다. 대가를 받고서야 전장에 나갔던 것이다. 대가를 받아야 전장에 나가는 것은 전형적인 용병의 모습이다. 인용문은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면 전장에 나가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박 운행에 차질을 빚었던 상황을 전하고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완벽한 용병은 아니었다. 몸값은 자신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관에서 무휼(撫恤) 차원에서 내리는 정도에 불과했다. 즉 이들에게 선택권이 있는 게 아니라 관에서 이들을 동원한 뒤 그에 대해 대가를 지불하는 형식이었다.

그러나 그 정도의 대가도 지불되지 않으면 동원에 응하지 않고 도망가는 방식으로 소극적 선택권이나마 행사했다.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형태의 용병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급료가 없는 의무병으로서의 일반 수군과는 확실히 달랐다. 그랬기에 용병적 성격을 지녔다고 말할 수 있다.

관에서 대가를 지불하여 포작인을 고용하는 것과 달리, 일반 수군이 대립가(代立價)를 지불하고 이들을 고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물론 대립가가 높지 않았을 것이기에 회피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다.

462) 차문섭, 2003, 「초기 군사제도의 정비」,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23, 탐구당, 214쪽.

463) 『선조실록』 권121, 선조 33년(1600년) 1월 4일 己酉(戰船無鮑作, 則不得制船, 鮑作不給價, 則不肯赴戰).

육지에 있는 수군은 배 다루는 것을 전혀 몰라 번(番)이 되면 목포(木布)를 마련하여 해변에서 포작(鮑作)하는 사람을 고용해서 대립(代立)시키는데, 그 포작하는 무리들도 모두 흩어져 도망가고 없어⁴⁶⁴⁾

이 기사 역시 제주유민의 항해능력부터 말하고 있다. 수군 중에서도 배를 운행할 수 없는 자가 많았다. 그런 사람들은 제주유민의 항해능력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다. 제주유민을 대신 내세우고 그 대가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군역을 수행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에 응하는 제주유민은 많지 않았다. 고역이면서도 대립가가 높지 않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어쨌거나 제주유민은 대가를 받고 고용되는 성격 즉 용병적 성격을 여기서도 보여주고 있다.

이순신의 『난중일기』 1597년 12월 5일자 “김돌손(金玆孫)이 봉학(奉鶴)을 거느리고 함평 땅으로 가서 포작을 모았다”⁴⁶⁵⁾라는 기록도 제주유민의 용병적 성격을 드러내 준다. 일반 수군이 아니라 군이 포작을 모았다는 것은 그들의 항해능력 때문일 것이다. 그 해양능력으로 인해 의무병적 징발 대상이 아니라 선택적 모집 대상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제주유민은 불법적 이탈자였기에 본래부터 쇄환 대상자였다. 쇄환되어 본 고장 제주섬에서 군역을 저야 했다. 그러나 남해안 현지의 수군 사령관들은 이들의 쇄환을 반대하고 자신의 수군에 편입시키려 애썼다.⁴⁶⁶⁾ 이 역시 배 부리는 능력 때문이었다. 본적지에서 정규군에 편입되지 않고 유랑처의 수군에 편입된다는 모습 자체도 용병적인 면모이다.

유랑처 수군에 편입된다는 것은 영속성을 담보하지 못했다. 한 장소에 정주하지 않는 한 이들은 계속해서 유랑했다. 때문에 특정 수군에 고정적으로 편성되지는 않았다. 필요한 때에 현지에서 이들을 불러 모아 활용할 수밖에 없었다. 임시적이고 비정규적인 병사라고 하겠다. 그래서 “이들을 어루만져 편히 살게 하면

464) 『선조실록』 권136, 선조 34년(1601년) 4월 1일 戊辰(陸地水軍, 全不解操舟, 當番則責木布, 雇立海邊鮑作人, 而鮑作之輩, 亦皆散亡).

465) 『影印 李忠武公全書』에는 누락된 내용이라서, 송찬섭 엮어옮김, 2004, 『난중일기』, 서해문집, 404쪽의 내용을 인용했다.

466) 『중종실록』 권92, 중종 35년(1540년) 1월 10일 癸卯(右道水營案付鮑作漢, 亦在刷還中 其時柳泓爲水使, 啓以爲, 彼人等, 皆被刷還本(道) [島], 無操舟人云 大臣與該曹議之, 使敬差官、水使(一) [眼] 同, 可留者留之).

급할 때에 쓸 수 있을 것”⁴⁶⁷⁾이라 했고. 그렇게 안집(安集)시켜 관리하다가 실제로 “수색 토벌해야 할 상황이 생겼을 때에 연해(沿海)의 각 고을에 와 살면서 포작(鮑作)하는 사람들을 골라 뽑아 병선(兵船)에 나누어 태워”⁴⁶⁸⁾ 작전을 수행했다. 이처럼 이들은 상비군이 아니라 상황 발생시 임시적으로 골라 뽑혀 고용되던 병사들이었다.

또한 용병은 본래 성격상 급료나 기타의 계약조건에 따라 고용되기에 아군이 나 적군을 가리지 않고 수시로 소속을 바꾸기도 한다. 변방 장수의 침탈을 피해 왜병에 의탁하고 그들에게 고용되어 살아갔던 제주유민의 경우⁴⁶⁹⁾가 이들의 또 다른 용병적 성격을 보여주기도 한다. 용병에게는 국가나 영원한 소속 집단 같은 것은 없다. 필요에 따라서 자신의 존재를 판매할 뿐이다.

이들의 용병적 성격은 체제의 안과 밖을 넘나들며 때로는 조선 수군으로, 때로는 왜병으로 살아가던 존재가 중세 역사 속에 존재했음을 보여준다. 중세에는 토지에 긴박된 농민만이 존재했던 게 아니다. 병농일치의 정군(正軍)만이 군역을 졌던 게 아니다. 토지에 긴박되지 않은 비정규군 더 나아가 왜적의 병사로까지 고용되던 사람들이 있었다. 이것이 제주유민의 용병적 성격이 가진 함의다.

5. 국제적 성격

해양국가는 취약한 토지생산을 보충하기 위해 바다를 통한 대외교역과 유통에 관심을 가지게 되며, 그를 위해 원거리 지역으로의 이동이 불가피해진다. 또한 이에 따라 보다 넓은 범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되며 그러한 네트워크를 유지하기 위해 다른 집단이나 공동체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다.⁴⁷⁰⁾

중세 시대 제주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취약한 토지생산성으로 인해 일찍부터

467) 『성종실록』 권197, 성종 17년(1486년) 11월 22일 癸亥 (撫以安業, 緩急可用).

468) 『중종실록』 권48, 중종 18년(1523년) 5월 28일 丁酉 (諸道搜討時, 沿海各官來居鮑作等, 抄擇分騎兵船等事).

469) 『명종실록』 권20, 명종 11년(1556년) 5월 14일 辛未 (沿海鮑作干等, 困於邊將之侵漁, 投入於倭, 以爲息肩之地).

470) 박중기, 2008, 『새로 쓴 5백년 고려사』, 푸른역사, 32쪽.

바다로 나가 대외교역을 했다. 그 과정에서 다른 지역과 자연스레 네트워크를 형성했을 것이며 그만큼 다른 집단에 대해서도 개방적인 자세를 가졌을 것이다.

이는 앞서 IV장에서 ‘제주유민과 기타 해양집단’을 다루면서 확인했던 내용이다. 제주유민은 자연스레 왜인들과 섞였다. 사료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중국 해인(海人)들과도 섞였을 가능성은 충분했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16세기 이후 중국인 중심의 왜구가 동아시아 해역에서 크게 활동하면서부터는 더욱 빈번하게 나타났다. 다음의 기사들은 제주유민들이 왜인들과 적극적으로 섞이며 교류했음을 증명한다.

의복은 왜인과 같으나, 언어는 왜말도 아니고 한어(漢語)도 아니며⁴⁷¹⁾

제주(濟州)의 떠돌아다니는 백성들이……해중(海中)에 출몰(出沒)하며 왜인(倭人)의 말을 배우고 의복(衣服)을 입고서⁴⁷²⁾

제주유민들이 왜인의 옷을 입고 왜인의 말을 배우며 해중에 출몰하고 있던 상황을 전하고 있다. 이것은 제주유민과 왜인들 사이의 교류가 활발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며 또한 이들이 가진 국제적 성격을 말해준다.

이들 사이의 교류는 당연한 일이었다. 중세의 바다에는 국경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육지의 논리가 아니라 바다 자체의 특질을 시야에 넣은 바다의 논리가 필요하다. 더하여 1국적 역사인식도 극복해야 한다. 바다의 논리와 1국적 역사인식 극복은 중세 인민의 생활 특히 바다 사람들의 생활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민족은 ‘상상의 공동체’일 뿐이며 원초적 구성물이 아니라 근대국민국가 성립기에 만들어진 역사적 산물⁴⁷³⁾이라고 설파한 베네딕트 앤더슨의 지적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근대국민국가 성립 전까지만 해도 일반 인민들 사이에 민족적 결속감 같은 것은 없었다는 주장이다. 물론 이에 대한 반론도 여전히 만만치 않

471) 『성종실록』 권83, 성종 8년(1477년) 8월 5일 己亥 (衣服混於倭人, 言語非倭非漢).

472) 『성종실록』 권145, 성종 13년(1482년) 윤8월 12일 戊寅 (濟州流移人民……出沒海中, 學爲倭人言語衣服).

473) 베네딕트 앤더슨, 1983, 윤희숙 옮김, 2002(번역본), 『상상의 공동체: 민족주의의 기원과 전파에 대한 성찰』, 나남출판.

다. 하지만 인식의 확대를 위해서는 ‘내셔널 히스토리’ 극복의 목소리⁴⁷⁴)에도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실제 중세 조선의 일반 백성들은 민족의식을 가지고 살진 않았다. 하루의 생업이 그들의 주된 관심이었 뿐 조선 사람으로서의 정체성 같은 것을 의식하고 산 것은 아니었다. 이는 임진왜란 당시 일반 백성들이 보여준 태도에서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지금은 왜적이 변경에 머물러 있는 지가 오래 되었고 세월도 많이 흘렀습니다. 살육이 약간 줄어들었고 또한 거짓으로 온화한 체하면서 서로 침포(侵暴)하지 말자 하고 먹을 것을 주니, 본성(本性)을 잃고 기아에 시달리던 어리석은 백성들이 분분히 서로 이끌고 그들에게로 돌아감을 금할 수도 없습니다. 왜적을 위하여 농사를 지어 조세를 바치고 그들의 노역에 이바지하면서도 부끄러운 줄을 모르며 세월이 갈수록 거의 그들과 동화하여 서로간의 관계를 잊고 있습니다.

전해 들으니, 동래·부산·김해 등지에는 발가는 자들이 들녘에 가득한데 3분의 2가 모두 우리나라 백성들이며 그들 중에는 이따금 머리를 깎고 이를 물들이는 등 그들의 풍속을 따른 자들도 있다고 하고, 또한 먼 지방의 장사꾼들이 각각 그들의 물건을 가지고 왕래하며 적진 속에서 장사를 하는데도, 조금도 금지시키지 않는다 하니, 이보다 더 한심한 일이 없습니다.⁴⁷⁵)

도원수 권율이 올린 장계 속의 내용으로 임진왜란이 시작되어 불과 3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의 상황이다. 겨우 3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왜병이 주둔하고 있는 경상도 지역은 사실상 일본국의 일상과 별로 달라 보이지 않는다.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조선 선조 아래에서의 일상이나 일본 도요토미 히데요시 아래에서의 일상이나 다를 바가 없었다. 밭에 가서 일을 하고, 장사를 하고, 왜국

474) 이를 주도하는 그룹은 임지현 등이 포진해 있는 ‘당대비평’이다. 이들은 2002년에 『당대비평』 특집호 등을 통해 ‘내셔널 히스토리’의 해체를 주장했다. 근대의 국민국가가 개인의 기억을 모두 장악하여 공식화 제도화하고 있다며, 내셔널 히스토리 해체를 통해 침묵을 강요당했거나 역사의 하위 범주로 종속된 민중의 기억을 복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475) 『선조실록』 권61, 선조 28년(1595년) 3월 1일 甲戌(賊久居邊境, 歲月既多, 而殺戮稍戢, 又佯爲煦濡之狀, 不相侵暴, 資以飲食, 則愚民之失其常性, 困於飢餓者, 已紛然相率而歸之, 不可禁抑. 爲之耕田納租, 以供其役而不恥, 日往月來, 幾與之化而相忘焉. 傳聞東萊, 釜山, 金海等處, 耕犁滿野, 三分之二, 皆爲我國之民, 而往往有剃髮·染齒, 以從其俗者. 又有遠處買賣之人, 各持其物往來, 互市於賊陣, 略無防範界限, 事之寒心, 無過於此).

에 세금을 내고 노역을 제공했다. 언어와 풍습이 조금 달랐을 뿐 백성들의 일상은 사실상 마찬가지였다. 풍습 역시 그랬다. ‘머리를 깎고 이를 물들이는 등’ 일 본인의 풍습도 자연스레 받아들였다. 중세 인민들에게 민족은 없었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생존이었을 뿐, 국가나 민족의식이 아니었다. 국가나 민족의식은 민을 자신의 지배하에 두려웠던 권력층에게만 중요했던 요소이다.

중세의 인민들에게도 민족이 있었다는 말은 신화에 불과하다. ‘실제로 어떠했는가’하는 경험적 인식을 뛰어넘어 곧바로 ‘마땅히 그래야 했다’라는 규범적 인식을 그 신화는 우리에게 강요해 왔다. 그리고 그 규범적 인식은 다시 신화적 이해를 사실로 규정하고, 사실로 상징된 신화는 다시 규범적 인식을 정당화하는 순환 논법의 덫에 우리를 가둬왔던 것이다.⁴⁷⁶⁾

제주유민이 왜인들과 쉽게 교류하고 때로는 합류했던 것은 바로 이 때문이었다. 조선시대 인민들에게 지금과 같은 민족의식이 없었다. 바다를 끼고 사는 삶의 조건이 유사했기에 중국 수적이든, 왜구든 필요에 따라서 교류하고 협력하고 때로는 경쟁하고 갈등하고 쟁투를 벌이면서 살았을 뿐이다.

이것은 근대에 성립한 국가의 영역이나 그 영역의 사람들 즉 ‘국민’이 단위가 되어 지금까지 오랜 인류의 역사가 전개되어 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⁴⁷⁷⁾ 근대 이전의 사람들은 이처럼 국가라는 단위와 무관하게 자신의 삶을 전개하고 있었다. 특히 바다에는 무정부성이 더욱 컸다. 중세 바다에는 국경이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해양문화의 무정부성은 더 큰 역동성을 가져오는 요소이기도 했다.⁴⁷⁸⁾

정리해서 말하자면 제주유민은 국제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그 국제적 성격은 중세 역사에서의 ‘내셔널 히스토리’ 극복이라는 함의를 우리에게 던진다고 말할 수 있겠다.

6. 경계인적(境界人的) 성격

476) 임지현, 1999, 『민족주의는 반역이다』, 소나무, 5쪽.

477) 이성시, 2001, 『만들어진 고대』, 삼인, 137쪽.

478) 윤명철, 2002, 『한민족의 해양활동과 동아지중해』, 학연문화사, 211쪽.

경계인(marginal man, 境界人)이란 집단이나 사회의 주변부에 위치하여 성원(成員)으로서의 지위나 역할을 완전하게 갖고 있지 않은 이른바 ‘주변인’의 의미로 사용되는 말로서, 일반적으로는 성질이 크게 다른 두 개 이상의 집단 또는 사회에 동시에 소속하여 그 때문에 행동의 기준 틀이 대단히 불안정한 사람을 말한다.⁴⁷⁹⁾

두 개 이상의 집단에 속하면서 그 어느 쪽의 중심에도 들어가지 못해 오히려 더 불안한 것이 경계인의 특징이다. 이는 제주유민의 모습에도 그대로 투영되어 있다.

조선의 백성으로 남해안 지방에서 해산물 진상을 맡았으면서도⁴⁸⁰⁾ 지방 수령(守令)들이 고의로 호적(戶籍)에 편입시키지 않아 백성이 아닌 것처럼 만들어 놓았다.⁴⁸¹⁾ 또한 “여러 고을 수령이 복작간(鰵作干)이라고 일컬으며 모든 진상(進上)하는 해물(海物)을 오로지 이들에게 의뢰하여 채포(採捕)하는 까닭에 이들을 사랑해 보호하여 편안히 살 수 있도록”⁴⁸²⁾ 해주면서도, 한편으로는 심하게 침책(侵責)하여 이들이 “다른 고을로 떠나서 정처 없이 옮겨 다니게”⁴⁸³⁾ 만들어 버리기도 했다.

이처럼 이들은 어느 한 집단 안에 안착하지 못했던 존재다. 그런 만큼 모순적 존재이기도 했다. “비록 역을 정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오로지 진상(進上)을 위하여 해산물을 채포하였으니, 역이 없다고 이를 수 없습니다”⁴⁸⁴⁾라는 기록에서 보듯이, 역이 정해지지 않았으면서도 역을 지고 있는 존재였다. 즉 체제 밖의 존재이면서도 체제 안에 묶여 있는 존재였던 셈이다.

479) 이태신, 2000, 『체육학대사전』, 민중서관. 이 용어는 나치즘을 등지고 미국으로 향한 쿠르트 레빈(K. Lewin, 1890~1947)이 미국인 사회 속으로 이주해 온 유대인과 같이 다수자 집단과 소수자 집단의 경계에 있는 사람을 경계인으로 부르면서부터 널리 사용되었다고 한다(이종수, 2009, 『행정학사전』, 대영문화사). 한편 송두율은 경계인이라는 단어가 본래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국경지방에 출몰하던 마적을 의미했다고 하며, 경계의 이쪽에도 저쪽에도 속하지 못하고 마치 좁은 수평대 위에 서 있는 체조선수처럼 불안한 모습을 하고 있는 자신의 처지에 빗대어 말하기도 했다(송두율, 2002, 『경계인의 사색』, 한겨레신문사).

480) 『성종실록』 권177, 성종 16년(1485년) 4월 12일 癸亥 (沿海諸邑封進海產珍品, 皆鮑作人所採也).

481) 『성종실록』 권178, 성종 16년(1485년) 윤4월 11일 辛卯 (守令以故不編戶爲民).

482) 『성종실록』 권226, 성종 20년(1489년) 3월 15일 癸酉 (故諸邑守令, 稱爲鰵作干, 凡進上海物, 專賴此人採採, 因而愛護之, 其人亦愛守令, 得安其生).

483) 『성종실록』 권226, 성종 20년(1489년) 3월 15일 癸酉 (若遇侵責, 則移寓他官, 遷徙無定, 常態也).

484) 『성종실록』 권226, 성종 20년(1489년) 3월 15일 癸酉 (雖不定役, 專爲進上採海物, 則不可謂之無役也).

그러기에 한때는 “녹안(錄案)하여 수(數)만 파악하고 역은 정하지 말도록”⁴⁸⁵⁾ 하자는 의견이 개진되기도 했다. 장부에 이름을 올려 녹안(錄案)한다는 것은 조선의 지배 체제 안에 백성으로 포함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이들의 유동성이 컸기에 실제 그들에게 역을 지우기는 쉽지 않았다. 그러니 역을 정하지 말자는 의견이 나왔던 것이다. 하지만 역을 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조선의 체제 밖에 위치 지워진다는 의미다. 이렇게 이들은 체제의 안과 밖을 넘나들면서 안착하지 못하는 모순적이고 이중적인 존재들이었다.

이들은 소속도, 거처도 불분명했다. 제주사람이면서도 남해안 연안의 유랑민이어서 두 개의 집단에 동시에 속했다. 그러나 제주섬은 이미 떠났기에 제주사회의 중심에는 들어가지 못했다. 그렇다고 해서 남해안의 정착 주민이 된 것도 아니었다. 역시 주변에서만 맴돌 뿐이었다.

전쟁 때에는 조선 수군의 역할을 수행했다. 하지만 기회가 닿으면 탈영을 시도했다.⁴⁸⁶⁾ 그러고는 심지어 왜병의 측에 가담하기도 했다.⁴⁸⁷⁾ 역시 한 집단의 중심에 들어가지 못하고 두 집단 사이를 오가는 모습이다. 왜인의 옷을 입었으면서도 왜어도 아니고 한어도 아닌 말을 썼던 것도 유사한 모습이다.⁴⁸⁸⁾

한마디로 말해 하나의 정체성을 가질 수 없었던 존재, 즉 경계인적 존재였다. 이순신의 장계에서도 이들 존재는 경계인으로 나타난다. 일반 조선 백성과는 다른 존재로 파악했던 것이다. 다음의 장계가 이들 존재의 특성을 보여준다.

그 중에서도 귀화인과 포작인들이 부모처자들을 데리고 이웃 친척과 함께 본영성내로 들어오는 자가 연속부절인데, 전후 의탁해 온 수가 거의 2백 명에 달했습니다.⁴⁸⁹⁾

임진왜란 전쟁의 와중에 이순신 부대에 삶을 의탁해 온 피난민에 대한 설명이다. 그런데 의탁해 온 포작인 집단이 귀화인 집단과 병렬적으로 서술되고 있다.

485) 『성종실록』 권226, 성종 20년(1489년) 3월 15일 癸酉 (錄案知數, 勿定役).

486) 『명종실록』 권19, 명종 10년(1555년) 8월 19일 辛巳 (於昏夜之間, 交通鮑作干之船, 多數逃散).

487) 『명종실록』 권20, 명종 11년(1556년) 5월 14일 辛未 (沿海鮑作干等, 困於邊將之侵漁, 投入於倭, 以爲息肩之地).

488) 『성종실록』 권83, 성종 8년(147년) 8월 5일 己亥 (衣服混於倭人, 言語非倭非漢).

489) 『影印 李忠武公全書』, <唐浦破倭兵狀>, 성문각, 1989, 85쪽(其中如向化鮑作之輩携親挈家率其隣族自投營城者連續不絕前後來托之數幾至二百餘名:1592. 6.14)

귀화인은 조선으로 투항한 왜인⁴⁹⁰⁾ 혹은 왜인 측에 가담했다가 도망 온 사람 혹은 왜인들에게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을 뜻한다. 어쨌거나 일반 백성과는 다른 존재이다. 이런 귀화인과 병렬적으로 포작인 집단을 서술했다는 것은 포작인 역시 일반 백성과는 다른 존재로 받아들여졌음을 뜻한다. 완전한 조선 백성도 아니면서 그렇다고 해서 왜인도 아닌 존재, 여기에도 저기에도 끼지 못한 이중적 존재 즉 경계인이었음을 보여준다.

이순신의 1592년 6월 14일 계본에는 “경상도 연안의 포작들이 화살에 맞아 죽은 왜적의 머리를 많이 베어서 신(臣)에게 갖고 왔지만, 신은 타도의 대장으로서 그것을 받는다는 것이 사리에 맞지 않기에 원균에게 갖다 바치라고 타일러 보냈다”라는 대목이 나온다. 경상 우도의 포작 즉 원균 휘하의 포작인데도, 전라좌도 수사인 이순신에게로 갔던 것이다. 자신의 소속이 어디인지 분명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이순신이 보기에 는 경상우도 포작이었겠지만 이들 스스로는 경상 전라를 모두 휘젓고 다녔기에 특정 지역을 자신의 소속지로 생각지 않았던 것이다. 역시 이중적 소속이면서 그 어느 쪽의 중심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주변인 즉 경계인의 모습이다.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 집안 출신으로 그 자신 스스로가 이방인이기도 했던 게오르그 짐멜은 본 연구에서 말하는 경계인, 주변인을 ‘이방인’이라는 이름으로 그 특징을 설명했다. “이방인은 비록 비유기적으로 집단에 덧붙여 있는 존재이기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집단의 구성원이다. 집단의 통일적 삶은 이방인이라는 요소를 특별한 조건으로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방인의 지위가 지니는 독특한 통일성은 일정한 정도의 가까움과 일정한 정도의 멀음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 가까움과 멀음의 정도는 다양한 조합을 통해서 모든 관계에 특성을 부여하는 바, 어느 일정한 비율과 상호 긴장 속에서 ‘이방인’에 대한 특별하고 형식적인 관계를 초래한다.”⁴⁹¹⁾

제주유민 역시 짐멜이 말하는 이방인이었다. 조선 통치체제라는 유기체에 비유기적으로 붙어 다시 유기체를 이뤘다. 다만 그 체제와의 거리가 멀고 가까움에

490) 임진왜란 당시 일본 병사로서 조선측에 투항한 사람은 1만 명에 이르렀다(한일공통역사교재 제작팀, 2005, 『조선통신사』, 한길사, 64쪽 참조).

491) 게오르그 짐멜, 김덕영 윤미애 옮김, 2005, 『짐멜의 모더니티 읽기』, 새물결, 88쪽.

따라 그 경계인성이 크고 작았을 뿐이다. 하지만 조선이라는 하나의 통일적 유기체로 보면 제주유민 같은 비유기적 존재 역시 특별한 조건으로 포함하고 있었다. 그 특별한 조건을 만드는 가까움과 멀의 정도에 따라 이들 제주유민의 경계인적 성격은 오르고 내렸을 것이다.

이들 경계인으로서의 제주유민의 존재는 전근대 사회가 유동성이 떨어지는 농업사회였다는 주장에 의문을 제기한다. 중세의 인민들이 기본적으로 토지에 긴박되어 있었다는 것은 국가주의 사관, 중앙 중심의 사관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중앙을 벗어나 변방적 시선으로 중세를 바라보면 수많은 경계인들을 만날 수 있다. 체제의 안과 밖을 넘나들며 살았던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복권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그간 진보사관이 무시하고 차별하던 세계에까지 시야를 넓혀줄 수 있다. 이것이 경계인적 성격이 가진 함의이다.

또한 경계인적 성격은 앞서 보았던 국제적 성격과 같이 1국적 역사인식, 내셔널 히스토리의 극복이라는 함의도 함께 갖는다. 경계인은 사실상 국적이 불분명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비록 지배 권력은 이들에게 국적을 부여했을지라도 정작 이들 제주유민은 자신의 국적을 중요하게 생각지 않았다. 단지 자신의 생활환경에 적합한 삶의 방식으로 일상을 살았을 뿐이다. 그 결과가 이중 소속의 주변인 즉 경계인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VII. 맺음말

이 연구는 조선시대 특히 15~17세기 기간 중에 제주 사람들이 배를 타고 제주도를 떠나 유랑하던 역사를 고찰한 것이다. 이들은 왜 제주도를 떠났을까, 떠난 이들은 바다에서 어떤 삶을 살았을까 그리고 그들의 삶이 지금 우리에게 남기는 의미는 무엇일까 등의 문제를 고민했다.

기존의 연구는 이들의 출륙 배경으로 척박한 토지, 자연재해, 지나친 수취, 지방관과 토호의 수탈 등에 주목했다. 특히 제주에 가해진 지나친 공물과 진상은 출륙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설명이 가능한 것은 아닐 것이다. 경제구조의 변동과 그에 따라 산업기반이 흔들릴 때도 사람들은 살 길을 찾아 나서게 된다. 말(馬) 사교역 중심의 경제구조를 살핀 것은 본 연구가 기존 연구의 성과를 계승하면서도 나름의 독자적 분석을 시도한 대목이다.

이들의 삶을 고찰하기 위해 우선 아날학과 역사학자 페르낭 브로델(Fernand Braudel)의 3층구조의 역사들을 활용했다. 역사는 거의 변하지 않는 지리적 시간과 천천히 변하는 콩종튀르(국면) 그리고 단기지속 시간의 결합으로 이뤄진다. 척박한 토지, 바다로 둘러싸인 섬이라는 조건은 오래 전부터 해양교역의 장기지속 역사를 만들었다. 그 위에 200년 지속된 출륙 유랑의 중기지속의 역사가 형성되었다. 그리고 역사 흐름의 표면에서는 우마적 사건이나 출륙금지령 등의 개별 사건이 존재했다.

어떠한 사회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반드시 그 원인이 있기 마련이다. 15세기부터 대규모 출륙유랑이라는 현상이 발생했다면 원인은 반드시 그 앞의 시기에 있어야 한다. 그래서 조선초기부터 배경을 추적했다.

II장은 바로 그런 배경 찾기였다. 조선 건국은 제주사회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조선은 고려와는 달리 중앙집권국가였다. 때문에 비교적 자치성이 강했던 제주도마저도 조선 건국 이후에는 고려 때에 비해서 중앙의 통제를 많이 받게 되었다. 특히 세종 이후 중앙정부의 통제력은 강화되는데, 그 통제력 강화는 곧바로 수탈로 나타났다. 수탈은 공물 진상의 부과로 표현되었다

수탈과 함께 제주 경제구조의 변동은 출륙 유량의 직접적 배경이 되었다. 고려말부터 시작된 목마(牧馬)경제의 번성과 그에 따른 말(馬) 교역은 조선 초기 제주의 주된 경제기반이 되었다. 하지만 조선의 중앙집권 강화와 그에 따른 중앙 정부의 제주 말(馬)경제 장악 그리고 제주 말(馬) 사교역 통제는 제주의 경제기반을 뿌리째 흔들고 말았다. 이렇게 하여 악화된 경제 사정은 제주민의 출륙 유량의 직접적 배경으로 작용했다.

뿐만 아니라 빈번한 자연재해와 척박한 토지 요인도 출륙유량의 주요 배경이 되었다.

Ⅲ장에서는 본격적으로 이들 제주유민의 발생을 다뤘다. 먼저 이들에 대한 명칭을 살폈다. 명칭은 크게 두 가지 계통이 있다. 두무악(頭無岳)계 명칭과 포작(鮑作)계 명칭이 그것이다. 두 명칭 모두 본래는 한자어가 아니었다. 본래 토속의 민간 명칭에 그 의미를 살리며 발음이 가까운 한자어를 조합했던 것이다. 둥그런 모양을 뜻하는 ‘두무’ 혹은 ‘두모’, ‘두피’가 두무악계 명칭의 본음이며, 해산물 채취를 주업으로 삼은 ‘보재기’가 포작(鮑作)계 명칭의 본음이다.

물론 포작과 두무악은 의미가 본래 다르다. 포작은 직능상의 명칭이며 두무악은 제주도민을 뜻했다. 그러나 『조선왕조실록』 속에 등장하는 이들은 사실상 같은 존재 즉 출륙 제주유민을 뜻했기에 이 연구에서는 이들을 동일한 존재로 다뤘다.

그리고 제주유민의 발생 시점과 격감 시점을 고찰했다. 선행 연구에서는 대부분 성종년간을 제주유민 발생의 시점으로 삼았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른 견해를 폈다. 성종년간은 나중에 크게 사회문제화되었던 시점이며, 발생은 그 이전 즉 세종 때부터였다고 논증했다. 격감 시점은 선행 연구와 일치한다. 인조7년(1629년) 강력한 출륙금지령이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들 제주유민의 삶을 추적했다. 우선 이들의 구성을 살폈다. 초기 유민은 제주도민 전반에 걸쳐 형성되었다. 말(馬) 경제 관련자들이 제주도민 전반에 걸쳐 형성되어 있었으므로 말(馬) 경제 타격에 따라 떠난 출륙 유량민 역시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층민으로 집중되고 있음을 보았다.

제주유민이 섬을 벗어나 진출했던 지역은 실로 방대했다. 멀리 중국 요동반도 아래의 해랑도에서부터 한반도 전역의 해안에 걸쳐 이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이 없었다. 물론 남해안이 이들의 집중적인 우거지였다. 기록으로는 확인되지 않지만 일본 열도로도 나갔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들 제주유민의 규모는 최소 1만 명, 이는 기록상에서 확인되는 출륙 공노비 숫자이다. 중세 인구 기록은 사실상 신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략적인 추세를 살피는 것으로 만족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제주민의 절반가량이 출륙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료도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확정적으로 말하지 않았다. 그래서 대략 1만 명 이상으로만 추정했다.

이들의 생업은 기본적으로 해산물 채취와 이의 교역이었다.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약탈도 병행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들의 생활은 처음엔 배 위에서의 해상생활이었다. 그리고 그 해상생활은 가족이 함께 하는 생활이었다. ‘率妻子’, ‘以船爲家’라는 표현이 이를 상징한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해안가에서 임시 거주를 하기도 했다. 그러나 17세기 이후부터는 점차 정착 단계로 들어간 것으로 추정했다.

IV장에서는 이들과 유사했던 집단 즉 수적과 왜구와 중국인 수적과의 관계를 살폈다. 제주유민이 때로는 약탈을 자행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들을 수적으로 의심하기도 했다. 그러나 수적은 보다 조직적으로 약탈을 일삼던 전문적인 집단이며, 제주유민은 우발적이고 일회적인 즉 비조직적인 단순 약탈자로서 수적과는 조금 달랐다. 물론 이들 중 일부가 수적에 편입되기도 했을 것이며 점차 수적으로 진화하기도 했을 것이다.

왜구와의 관계를 보면 일부 일본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제주유민이 곧 왜구인 것은 아니었다. 당시 조선 정부에서는 이들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었다. 하지만 삶의 환경이 비슷했기에 이들 집단은 서로 상당한 교류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때론 협력하고 때론 갈등하던 관계라고 하겠다. 특히 후기왜구의 활동기인 16세기에는 일본인, 중국인, 제주유민이 어느 정도 섞여 있을 가능성도 있었다. 그러나 사료상으로는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다만 바다 생활이라는 생태적 공통점 때문에 이들의 협력 관계는 가정해 볼 수 있겠다.

V장에서는 임진왜란 당시 제주유민의 삶을 다뤘다. 이들이 가진 물길 정보, 배 다루는 능력 때문에 이들은 일찌감치 수군의 주목을 받았다. 그것은 곧바로 임진왜란 전쟁이 터지자 효력을 발휘했다. 충무공 이순신의 기록에 이들의 활동

상이 적지 않게 드러난다. 여러 전투에서 사망 부상자 현황을 보면 이들 제주유민의 비율이 10%를 넘었다. 그만큼 그 전쟁에서 맡았던 역할이 컸던 셈이다.

반면 왜병으로 편입되기도 했다. 조선 관료의 수탈이 심할 때 이들은 왜병의 일원이 되기도 했다. 이들에게 중요했던 건 근대의 민족의식이 아니라 생존 그 자체였기 때문이다. 이들의 배 즉 포작선도 전투에 동원되었다. 소규모 배로서 아주 빠른 장점이 있었기에 대형 전투선인 판옥선의 보조 역할을 담당했다.

VI장은 종합 정리의 장이다. 이들의 삶을 총화한 뒤 이들에 대한 성격 규정을 시도했다. 그리고 그 성격 규정을 통해 그 성격이 가진 함의 즉 당시 역사와 오늘날 역사 연구에 던지는 의미를 찾아보았다. 본 논문은 이들의 성격을 해양적 성격, 교역경제인적 성격, 약탈적 성격, 용병적 성격, 국제적 성격, 경계인적 성격으로 규정했다. 그리고 그 성격 규정을 통해서 내셔널 히스토리의 극복과 해양 역사에의 주목, 농업중심 중세사 극복 등을 제기했다. 국가주의적 시선으로는 변방의, 해양의, 비농업인의 중세사를 들여다 볼 수 없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조선시대 제주를 떠나 바다로 나갔던 사람들의 삶을 살폈다. 그러나 이 연구의 한계는 너무도 뚜렷하다. 무엇보다 사료 부족이었다. 특히 말(馬)경제의 실상을 구체적 데이터를 가지고 실증하지 못한 것은 가장 큰 맹점이라고 하겠다. 말(馬) 자유 교역 경제의 붕괴를 제주유민 발생의 가장 직접적인 요인으로 설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상 그 말(馬) 경제의 규모조차 밝히지 못했다. 단지 앞뒤의 맥락으로 추정했을 뿐이다. 그러기에 이 연구가 주장하는 말(馬) 교역 경제의 붕괴 요인은 앞으로 더 많은 자료 동원을 통해 보완할 필요가 절실하다.

또한 앞으로의 연구 과제도 많다. 우선 중국, 일본 측의 자료를 검토해야 한다. 중국과 일본으로 흘러들어간 제주유민이 적지 않았을 것이라 추정했다. 그러나 그쪽의 자료를 검토하지 못함으로 해서 하나의 가능성으로만 남겨 두었다. 향후 중국, 일본 등의 자료를 통해 이 연구를 더욱 풍부히 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남해안 정착민의 정착 이후 삶을 추적하는 것도 과제로 남아 있다. 관찬 사료만이 아니라 남해안 여러 마을의 마을지나 개인 문집에서도 단서가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 이런 자료 보완을 통해 제주유민의 구체적 실상에 더욱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육지가 아닌 바다, 농업이 아닌 교역에 중심을 두고 살았던 변방 제주사람들의 중세사를 조금이라도 풍부하게 구성하고, 그 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변방인, 해양의 역사를 역사의 주 무대로 끌어 올리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참 고 문 헌

사료

『三國志』, 『元史』, 『高麗史』, 『高麗史節要』, 『朝鮮王朝實錄』, 『新增東國輿地勝覽』 (1486/1530), 『經國大典』, 『濟州風土錄』 (金淨, 1520), 『東臯遺稿』 (이준경, 1588), 『쇄미록』 (오희문, 1591~1593), 『南槎錄』 (김상헌, 1602), 『濟州風土記』 (李健, 1629), 『耽羅志』 (이원진, 1653), 『南槎日錄』 (李增, 1679), 『李忠武公全書』 (1795), 『萬機要覽』 (1808), 『大東地志』 (김정호, 1866)

저서

- 강봉룡, 2005, 『바다에 새겨진 한국사』, 한얼미디어.
- 게오르그 짐멜, 김덕영 윤미애 옮김, 2005, 『짐멜의 모더니티 읽기』, 새물결.
- 高光敏, 2004a, 『濟州島浦口研究』, 각.
- 고광민, 2004b, 『제주도의 생산기술과 민속』, 대원사.
- 고용희, 2006, 『바다에서 본 탐라의 역사』, 각.
- 고유봉, 2011, 『제주島해양수산사』, 각.
- 고창석 편, 1995, 『耽羅國史料集』, 신아문화사.
- 국립진주박물관 편, 2003, 『임진왜란과 도요토미 히데요시』, 오만, 장원철 역, 부키.
- 金璟東, 1985, 『現代의 社會學』, 博英社.
- 金在瑾, 1980, 『배의 歷史』, 정우사.
- 金在瑾, 1989, 『우리 배의 歷史』, 서울대학교출판부.
- 金泰永, 1983, 『朝鮮前期 土地制度史研究』, 지식산업사.
- 기우섭 피오라반조, 조덕현 옮김, 2006, 『세계사 속의 해전』, 신서원.
- 기쿠치 요시오 지음, 김숙이 옮김, 2011, 『용병 2000년의 역사』, 사과나무.
- 김순자, 2007, 『韓國 中世 韓中關係史』, 혜안.
- 김응중, 1991, 『아날학과』, 민음사.
- 김응중, 2006, 『페르낭 브로델』, 살림.

- 김일우, 2000, 『高麗時代 耽羅史 研究』, 신서원.
- 김찬흡·고창석 등 옮김, 2002, 『역주 탐라지』, 푸른역사.
- 南都泳, 1996, 『韓國馬政史』, 한국마사회 마사박물관.
- 南都泳, 2003, 『濟州島牧場史』, 한국마사회 마사박물관.
- 무라이 쇼스케 지음, 이영 옮김, 2003, 『중세 왜인의 세계』, 小花.
- 박종기, 2008, 『새로 쓴 5백년 고려사』, 푸른역사.
- 方相鉉, 1991, 『朝鮮初期 水軍制度』, 민족문화사.
- 베네딕트 앤더슨, 1983, 윤형숙 옮김, 2002(번역본), 『상상의 공동체: 민족주의의 기원과 전파에 대한 성찰』, 나남출판.
- 송두율, 2002, 『경계인의 사색』, 한겨레신문사.
- 송성대, 1997, 『문화의 원류와 그 이해』, 파피루스.
- 慎鏞廈 編, 1982, 『社會史와 社會學』, 創作과批評社.
- 아미노 요시히코(網野善彦), 2000, (번역본2003), 『일본이란 무엇인가』, 창작과비평사.
- 안병직 외, 1998, 『오늘의 역사학』, 한겨레신문사.
- 안토니오 그람시, 1987, 『그람시의 옥중수고』 I, 거름.
- 알프레드 세이어 마한(Alfred Thayer Mahan), 김주식 옮김, 1999, 『해양력이 역사에 미치는 영향』 1, 책세상.
- 앤서니 기든스(Anthony Giddens) 지음, 김미숙 외 옮김, 1992, 『현대 사회학』, 을유문화사.
- 앵거스 컨스텀, 이종인 옮김, 2002, 『해적의 역사』 가람기획.
- 양승윤 외, 2003, 『바다의 실�크로드』, 청아출판사.
- 梁鎭健, 2001, 『濟州教育行政史』, 제주문화.
- 오봉근, 1991(영인: 한국문화사, 1998), 『조선수군사』, 사회과학출판사.
- 오창명, 1998, 『제주도 오름과 마을 이름』, 제주대학교 출판부.
- 오희문, 1591~1593, 『쇄미록』, 1990년 영인, 탐구당.
- 요시노 마코토(吉野誠), 2005, 『동아시아 속의 한일 2천년사』, 책과함께.
- 윤명철, 2000, 『바닷길은 문화의 고속도로였다』, 사계절.
- 윤명철, 2002, 『한민족의 해양활동과 동아시아중해』, 학연문화사.

- 윤성익, 2007, 『명대 왜구의 연구』, 경인문화사.
- 李景植, 1986, 『朝鮮前期 土地制度研究』, 일조각.
- 이민웅, 2004, 『임진왜란 해전사』, 청어람미디어.
- 이성시, 2001, 『만들어진 고대』, 삼인.
- 이수건, 1984, 『한국중세사회연구』, 일조각.
- 이순신 지음, 김경수 편저, 2004, 『평역 난중일기』, 행복한책읽기.
- 이순신 지음, 송찬섭 엮어옮김, 2004, 『난중일기』, 서해문집.
- 이순신 지음, 조성도 옮김, 1983, 『임진장초』, 연경문화사.
- 이순신, 1977, 『亂中日記 親筆本』, 대학서림.
- 이순신, 1989, 『影印 李忠武公全書』, 成文閣.
- 이순신역사연구회, 2005a, 『이순신과 임진왜란』 1, 비봉출판사.
- 이순신역사연구회, 2005b, 『이순신과 임진왜란』 2, 비봉출판사.
- 이순신역사연구회, 2006a, 『이순신과 임진왜란』 3, 비봉출판사.
- 이순신역사연구회, 2006b, 『이순신과 임진왜란』 4, 비봉출판사.
- 이영권, 2005a, 『새로쓰는 제주사』, 휴머니스트.
- 이영권, 2005b, 『왜곡과 미화를 넘어 제주역사 다시 보기』, 신서원.
- 이은상, 1968, 『亂中日記』, 현암사.
- 이은상, 1989, 『완역 이충공전서』 상, 하, 성문각.
- 李清圭, 1995, 『濟州島 考古學 研究』, 學研文化社.
- 임영일 편저, 1985, 『국가 계급 체계모니』, 풀빛.
- 임지현 등, 2002, 『기억과 역사의 투쟁: 2002년 당대비평 특집호』, 삼인.
- 임지현, 1999, 『민족주의는 반역이다』, 소나무.
- 장덕지 외, 2002, 『제주도 제주마』 제주도.
- 장덕지, 2007, 『제주마 이야기』, 제주문화.
- 井上秀雄 외, 1994, 『고대한일관계사의 이해-倭』, 이론과 실천.
- 정운경 지음, 정민 옮김, 2008, 『탐라문견록, 바다밖의 넓은 세상』, 휴머니스트.
- 제주시, 2005, 『朝鮮王朝實錄을 통해 본 濟州牧使』.
- 제프리 알렉산더, 이윤희 옮김, 1993, 『현대 사회이론의 흐름』, 민영사.

- 曹永祿 外, 1997, 『中國의 江南社會와 韓中交涉』, 집문당.
- 趙恒來 等, 1994, 『講座 韓日關係史』, 玄音社.
- 좌승훈, 1996, 『포구』, 나라출판.
- 주강현, 2005, 『제국의 바다 식민의 바다』, 웅진.
- 주강현, 2006, 『관해기 1』, 웅진지식하우스.
- 주경철, 2009, 『문명과 바다』, 산처럼.
- 주희춘, 2008, 『제주 고대항로를 추적한다』, 주류성출판사.
- 진영일, 2008, 『고대 중세 제주역사 탐색』, 보고서.
- 최근식, 2005, 『신라해양사 연구』, 고려대학교출판부.
- 최완기, 1989, 『朝鮮後期船運業史研究』, 일조각.
- 테다 스카치폴 엮음, 박영신 외 옮김, 1986, 『역사 사회학의 방법과 전망』, 한국사회학연구소.
- 테사 모르스-스즈키, 2002, 『변경에서 바라 본 근대』, 산처럼.
- 페르낭 브로델, 강주헌 옮김, 2012, 『지중해의 기억』, 한길사.
- 페르낭 브로델, 주경철 옮김, 1995, 『물질문명과 자본주의』, 까치.
- 필립 아브람즈 著, 愼鏞廈 외 譯, 1986, 『역사사회학』, 文學과知性社.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한일공동역사교재 제작팀, 2005, 『조선통신사』, 한길사.
- 홍기표 역주, 2008, 『南槎錄』, 제주문화원.
- E.J. 홉스봄, (황의방 역), 1978, 『義賊의 社會史』, 한길사.

연구논문

- 姜恩景, 1998, 「高麗後期 戶長層의 變化와 『世宗實錄地理志』의 土姓·亡姓」, 『동방학지』 99.
- 高昌錫, 1986, 「高麗朝時 濟州民亂의 性格」, 『濟州島研究』 3집.
- 권인혁·김동전, 1998, 「조선후기 제주지역의 수취체제와 주민의 경제생활」, 제주대학교탐라문화연구소, 『탐라문화』 19호.
- 김나영, 2008, 「조선후기 제주지역 포작의 존재양태」, 제주대학교탐라문화연

구소, 『탐라문화』 32호.

金東柱, 1991, 「朝鮮時代 濟州島의 郡縣構造와 支配體制」, 『제주도사연구』 창간호.

金東柱, 1993, 「18·19세기 沓漢의 신분적 지위와 그 변동」, 『역사민속학』 3.

김병하, 1989, 「乙卯倭變考」, 제주대학교탐라문화연구소, 『탐라문화』 8호.

김순자, 1999, 「麗末鮮初 對元·明關係 研究」,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창현, 2010, 「탐라의 지배층」, 제주사정립사업추진협의회, 『탐라사』 II.

金泰能, 1964, 「濟州의 牛馬賊 小考」, 『제주도』 14호.

나가모리 미쓰노부(長森美信), 2003, 「조선후기 제주 進上物 조달과 수송」, 제주대학교탐라문화연구소, 『탐라문화』 23호.

나중일, 1992, 「17세기 위기론과 한국사」, 『세계사를 보는 시각과 방법』, 창작과 비평사.

南都泳, 1975, 「鮮初의 牛馬盜賊」, 『東國大學校大學院論文集』 14.

남영우, 1996, 「古地名 ‘두모’ 研究」, 『地理教育論集』 제36호.

다카하시 기미야키(高橋公明), 1989, 「中世東亞細亞海域에서의 海民과 交流」,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탐라문화』 제8호.

다카하시 기미야키(高橋公明), 2002, 「해역세계 가운데 제주도과 고려」, 목포대학교도서문화연구소, 『도서문화』 제20집.

문경현, 2010, 「탐라국 성주·왕자」, 제주사정립사업추진협의회, 『탐라사』 II.

박성래·소광섭·김연옥, 1996, 「이태진교수의 ‘소빙기 연구’에 관한 논의」, 역사학회, 『歷史學報』 제149집.

朴成柱, 2002, 「15세기 朝·明間 流民의 發生과 送還」, 『慶州史學』 제21집.

박찬식, 1995, 「濟州海女の 抗日運動」, 『濟州海女抗日鬪爭實錄』

박찬식, 1996, 「19세기 濟州지역 進上의 실태」, 탐라문화연구소, 『탐라문화』 제16호.

박찬식, 2000, 「『탐라순력도』에 보이는 제주진상의 실태」, 탐라순력도연구회, 『탐라순력도연구논총』, 제주시.

박찬식, 2004, 「제주해녀의 역사적 고찰」, 『역사민속학』 제19호.

裴亢燮, 1986, 「壬戌民亂 前後 明火賊의 活動과 그 性格」, 고려대학교 석사학

위논문.

변주승, 1992, 「19세기 流民의 실태와 그 성격」, 『史叢』 제40·41집.

변주승, 1995, 「18세기 流民의 실태와 그 성격」, 『全州史學』 제3집.

서인범, 2011, 「조선시대 서해 북단 해역의 경계와 島嶼 문제 : 海浪島와 薪島를 중심으로」 명청사학회, 『명청사연구』 제36집.

신행철, 1995, 「서장-제주사회의 기본적 성격」, 신행철 외, 『제주사회론』, 한울.

양진석, 2004, 「18·19세기 제주의 收取制度和 特徵」, 제주대학교탐라문화연구소, 『탐라문화』 24.

오창훈, 1984, 「朝鮮初期 流民研究」, 송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오카 야수마사(岡 泰正), 2003, 「네덜란드 동인도회사의 도자기 교역과 동아시아」, 국립제주박물관 편, 『항해와 표류의 역사』, 솔.

元昌愛, 1995, 「朝鮮時代 濟州島 馬政에 대한 小考」, 濟州島史研究會, 『濟州島史研究』 제4집.

劉承源, 2003, 「양인」,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25, 탐구당.

尹誠翊, 1997, 「16세기 倭寇에 대한 연구」, 경희대 석사학위논문.

尹誠翊, 1999, 「元代 倭寇에 관한 考察」, 『東洋學研究』 5.

尹誠翊, 2001, 「明代 倭寇論에 대한 재고찰」, 『明清史研究』 14.

이수건, 2003, 「지방 통치체제」,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23, 탐구당.

이영, 1996, 「高麗末期 倭寇構成員에 관한 고찰」, 한일관계사학회, 『한일관계사연구』 5호.

이영, 1999, 「일본인이 보는 왜구의 정체」, 역사문제연구소, 『역사비평』 46호.

이영, 2005, 「왜구의 주체」, 한일관계사연구논집 편찬위원회, 『왜구·위사문제와 한일관계』, 경인문화사.

이영권, 2012, 「여말선초 제주사회의 변동과 해양유민의 발생」,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바라로 열린 세계, 제주의 해양문화(2012탐라대전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이영훈, 1989, 「日帝下 濟州島의 人口變動에 關한 研究」, 고려대학교대학원

경제학과 석사학위논문.

李載薰, 1966, 「朝鮮初期의 土官에 對하여」, 『진단학보』 29·30합본호.

李載薰, 2003, 「국가재정」,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24, 탐구당.

이재범, 2003, 「고려 후기 倭寇의 성격에 대하여」, 『史林』 19호.

李載貞, 1996, 「嘉靖 後期 福建 沿海地域의 倭寇·海寇와 地域支配構造」, 『조선대전통문화연구』 4.

李載貞, 1997, 「16~17세기 福建의 倭變에 관한 연구: 지역지배구조와 관련하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이창익, 2000, 「『耽羅巡歷圖』古船의 船舶史的 意義」, 耽羅巡歷圖硏究會, 『耽羅巡歷圖硏究論叢』, 제주시.

이태진, 1996, 「小氷期 전재변이 연구와 『朝鮮王朝實錄』-global history의 한 장」, 『歷史學報』 제149집, 역사학회.

이훈, 2003, 「조선인의 표류와 기록물」, 국립제주박물관 편, 『항해와 표류의 역사』, 솔.

장혜련, 2006, 「조선중기 제주유민의 발생과 대책」, 제주대학교 석사논문.

鄭暎錫, 1994, 「조선전기 湖南의 倭寇에 대하여-乙卯倭變을 중심으로」, 『朝鮮大傳統文化硏究』.

정형지, 1996, 「19세기 전반 유민에 관한 연구」, 『국사관논총』 제72집.

조성윤, 1989, 「조선시대 제주도 지방의 양반」, 『제주도』 87호.

조성윤, 1992, 「조선 후기 제주도 지배세력에 관한 연구」, 濟州島史硏究會, 『濟州島史硏究』 2집.

조성윤, 2001, 「조선후기 제주도 부자 이야기: 김만일 집안과 산마감목관」, 濟州島史硏究會, 『濟州島史硏究』 10집.

조성윤, 2005, 「조선시대 제주도 인구의 변화 추이」, 제주대학교탐라문화연구소, 『탐라문화』 26호.

조원래, 2003, 「수군의 승첩」,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29, 탐구당.

좌혜경, 2005, 「제주 출가 해녀의 현지적응」, 『제주해녀와 일본의 아마』, 민속원, 210쪽.

秦榮一, 1994, 「古代耽羅의 交易과 ‘國’形成考」, 濟州島史硏究會, 『濟州島史硏

究』 제3집.

차문섭, 2003, 「진관체제의 확립과 지방군제」,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23, 탐구당.

차문섭, 2003, 「초기 군사제도의 정비」,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23, 탐구당.

최병문, 2004, 「朝鮮時代 船舶의 船型特性에 관한 研究」, 부경대 대학원 조선해양시스템공학과 박사학위논문.

최병욱, 1993, 「倭寇의 어의」, 국방군사연구소, 『倭寇討伐史』.

崔完基, 1980, 「朝鮮前期의 穀物貨運考」, 『史叢』 23.

崔完基, 1983, 「朝鮮中期의 貿穀船商」, 『韓國學報』 30.

崔完基, 1992, 「朝鮮中期의 穀物去來와 그 類型」, 『한국사연구』 76.

崔完基, 2003, 「수상교통과 조운」,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24, 탐구당.

韓榮國, 1981, 「豆毛岳 考」, 『한우근박사정년기념사학논총』, 지식산업사.

허남린, 2007, 「제주도의 역사적 토포스: 페리퍼리 그리고 프론티어」, 제주대 학교탐라문화연구소, 『탐라문화』 31호.

국외자료

Becker, Howard, 1963, *Outsiders: Studies in the Sociology of Deviance*, New York: Free Press.

John Rex, 1973, *Discovering sociology: Studies in the Sociological theory and method*, London and Boston: Routledge and Kegan Paul.

Alberto Martinelli, 1968, "In Defense of the Dialectic: Antonio Gramsci's Theory of Revolution", *Berkeley of Sociology*, 13.

Fernand Braudel, 1949, (Translated by Sian Reynolds, 1992) *THE MEDITERRANEAN: and the Mediterranean World in the Age of Philip II*, New York: HarperCollinsPublishers.

Fernand Braudel, 2004, 浜名優美 譯, 『地中海』, 東京: 藤原書店.

綱野善彦, 1995, 『惡黨と海賊』, 法政大學出版社.

- 網野善彦, 1997, 『海の國の中世』, 平凡社.
- 金谷匡人, 1998, 『海賊たちの中世』, 吉川弘文館.
- 大石直正・高良倉吉・高橋公明 2001, 『周縁から見た中世日本』, 講談社.
- 山内 讓, 1997, 『海賊と海城』, 平凡社.
- 松浦章, 1995, 『中國の海賊』, 東方書店.
- 李頌, 1999, 『倭寇と日麗關係史』, 東京大學出版會.
- 長沼賢海, 1996, 『日本海事史研究』, 九州大學出版會.
- 田中健夫, 1982, 『倭寇-海の歴史-』, 教育史歴史新書.
- 田中健夫, 1987, 『日本の社會史』, 岩波書店.
- 池上裕子, 1979, 「倭寇-その戦力源は何か」, 佐藤和彦 編, 『日本史の謎と発見』, 南朝と北朝, 毎日新聞社.
- 川添昭二, 1988, 『鎖國日本と國際交流』, 吉川弘文館.
- 村井章介, 1993, 『中世倭人伝』, 岩波書店.
- 太田弘毅, 2002, 『倭寇-商業・軍事史的研究』, 春風社.
- 太田弘毅, 2004, 『倭寇-日本あふれ活動』, 文藝社.
- 荒野泰典・石井正敏・村井章介, 1992, 『アジアのなかの日本史Ⅲ 海上の道』, 東京大學出版會.

Abstract

A Sociohistorical Study on the Jeju Migrants in the 15th~17th Centuries

Yeong-Kwon Lee
Department of Sociology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delves into the history of Jeju folks who left Jeju island and wandered around on a boat especially during the 15th to 17th century in the Joseon Dynasty. The author was wondering why they left the island, how they led a life at sea and what their lives mean to us today. To investigate their lives, the author employs the three-level history structure by Fernand Braudel, who belongs to the Annales School.

The earlier studies have focused on barren soil, natural disaster, arm-twisting tribute collection from the government, exploitation by local governors and landowners and so on as the background of their leaving the island. These factors, however, are not confined to the 15th to 17th century. These adversities occurred throughout the pre-modern Jeju society. Yet their leaving of the island on a large scale was concentrated around the 15th to 17th century alone. Considering this, the above factors alone can't explain the large scale exodus of Jeju folks' drifting away in the 15th to 17th century. This is why the author raises the afore-mentioned questions and tries to

solve them.

In Chapter II, the study focuses mainly on the background of Jeju folks' leaving the island. When the Ming Dynasty occupied the central position after the decline of Yuan, Ming demanded Jeju horses from the Koryo government. This is when the economy of breeding and free trading horses in Jeju began to suffer greatly. After the foundation of the Joseon Dynasty, the central government began to control the horse economy severely. Especially from the Great King Sejong period on, the economy in Jeju began to lose vitality because of the strict control over the free trade of horses. This is the very reason Jeju folks left Jeju island in a boat to make a living.

The two factors for their leaving the island are examined, the natural environment aspect and the social structure one. In the natural environment background, barren soil and frequent natural disaster constitute the main factors for the occurrence of wandering folks. In the social structure background, factors included the collapsed Jeju economy because of the excessive collection and the strict control over the horse trade, and the study is centered on the latter.

The trade shut-off forced Jeju folks to go to sea and rebuild their lives since the main economy of Jeju in the Middle Ages was not farming but marine trade. In Arnold Toynbee's view, Jeju folks battled back against the challenge of the economic base collapse caused by the horse free trade ban, by leaving the island and wandering around. Despite the collapsed economic base from the horse trade ban, they had wide experiences in doing business on a boat. That's why the battling back took the shape of leaving the island and wandering around the ocean on a boat.

In Chapter III, the study focuses mainly on the occurrence of Jeju migrants. The author investigates the names of Jeju folks. There are two names: Doomooak and Pojak. The two names don't originate from Chinese characters. Similar sounding Chinese characters are added by keeping the

meanings to the native folk names. Of course, the meaning of Doomooak is different from that of Pojak. In this study, the two names, however, mean the same thing: two Jeju folks who leave the island and wander around.

The times when Jeju migrants originated and disappeared are investigated. The earlier studies contend the wandering Jeju folk phenomenon occurred during the King Seongjong era. This study suggests a different view. This study proves that Jeju migrants first started during the King Sejong era and they became a big social issue during the King Seongjong. The earlier studies and this study have the same view on the time when Jeju wandering folks disappeared. The strict ban on leaving the island in the 7th year of King Injo (1629) may serve as the main cause for their disappearance.

The study investigates who constituted Jeju migrants. The early Jeju migrants came from all over the Jeju island since horse economy-related folks did so. As time went on, Jeju migrants came mainly from the lower classes.

Jeju migrants advanced a vast range of areas far off the Jeju island. The areas range from all the coastal areas of the Korean peninsula to the remote Herang island below the Liaotung Peninsula. Of course, the Southern coast areas of the Korean peninsula were the main destination for them. Though not confirmed in records, it is estimated that they advanced even to the Japanese Islands.

The number of Jeju migrants rose to at least ten thousand, which is the number of public servants leaving the island. They made a living by collecting and trading sea products or sometimes by looting.

In Chapter IV, Jeju migrants' relations with similar groups such as Chinese and Japanese marine raiders are examined. The government suspected Jeju migrants of being marine raiders since they sometimes committed looting. The raiders were well organized and experts in looting, but Jeju migrants

were simple looters as an accidental and temporary group. Of course, some of the folks could have become the raiders and made a living.

As some Japanese scholars maintain, Jeju migrants were different from Japanese marine raiders. The then Joseon government distinguished these two groups clearly. The two groups, however, shared a similar living environment, so they kept a considerable trading relationship. Cooperating and conflicting relations alternated with each other between them. Especially during the Japanese marine raiders' furious activity period in the late 16th century, there is a high probability that Jeju migrants worked together with Chinese and Japanese marine raiders. Though historical records don't refer to their cooperative relations, the same shared marine living might have led to this.

In Chapter V, Jeju migrants' living during the Japanese Invasion of Korea is covered. The folks drew attention from the naval forces because of their knowledge of the sea routes and skillful management of a boat. Upon the occurrence of the Japanese Invasion of Korea, their skillfulness was completely exercised. Records on their excellent activities were well revealed in the Admiral Yi Soonshin's War Diary. The percentage of the deaths and the wounded of Jeju migrants exceeded over 10% in several battles, which shows their brilliant exploits well.

On the other hand, some of Jeju migrants were incorporated into Japanese marine raiders. When the Joseon government officials plundered innocent folks atrociously, some of Jeju migrants became members of the Japanese marine raiders. What mattered to them was not modern national consciousness but survival itself. Their boats named Pojakseon, used for collecting marine products, were mobilized for battle. Pojakseon was a small but fast boat, so they served an assistant role to the large-scale battle ships, named Panokseon.

In Chapter VI, Jeju migrants' lives are pieced together and their characteristics are identified. The author tries to find the implication of their

identified natures, namely, what they mean for the study on the then history and the current history. The historical characteristics of Jeju migrants are identified as marine, trade economic, looting, mercenary, international and marginal. These features raise questions about overcoming mono-national perceptions of history, attending to marine history, overcoming agriculture-centered medieval history, etc.. The nationalistic view alone can't see marginal, marine and non-agricultural medieval history.

key words: the 15th to 17th century, Jeju migrants, wandering by leaving the island, the three-level structure of history frame by Fernand Braudel, control over horse-trade, Doomoak, Pojak, Herangdo, migrants, southern coast, marine raiders, Japanese marine raiders, marine characteristics, trading economic characteristics, looting characteristics, mercenary characteristics, international characteristics, marginal characteristics.